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소관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원 모

전 문 위 원 전 완 희

목 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Ⅰ. 결산 개관 ····· 3

1. 총괄 ····· 3

(1)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및 정원 ····· 3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현황 ····· 4

2.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 7

(1) 세입 및 수입 결산 ····· 7

(2) 세출 및 지출 결산 ····· 8

(3) 재정구조 ····· 9

3. 세입·세출 결산 ····· 12

(1) 일반회계 ····· 12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0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 21

4. 기금 결산 ····· 22

(1) 개요 ····· 22

(2) 문화예술진흥기금 ····· 27

(3) 영화발전기금 ····· 30
(4) 지역신문발전기금 ····· 33
(5) 언론진흥기금 ····· 35
(6) 관광진흥개발기금 ····· 38
(7) 국민체육진흥기금 ····· 41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 44

6. 재무결산 ····· 45
(1) 재정상태 분석 ····· 45
(2) 재정운영 분석 ····· 47
(3) 순자산변동 분석 ····· 49

7. 2023회계연도 신규 및 종료사업 ····· 51

Ⅱ. 검토의견 ····· 54

1. 총괄 및 기획조정실 등 ····· 54
(1) 총괄 ····· 54
<관서운영경비 관련 집행기강 확립 필요> ····· 54
(2) 일반회계 세입 총괄 ····· 59
<세입예산 징수 누락 및 편성오류 등 재발 방지 필요> ····· 61
(3) 기관운영 기본경비(일반회계, 7111-210, 7112-250) ····· 66
<과다한 이·전용 등 주의 필요> ····· 68

(4) 정책연구개발(R&D)(일반회계, 7132-600) ····· 77
<이월·불용 증가 및 수의계약 과다 주의 필요> ····· 78
(5)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일반회계, 7133-500) ····· 84
<보조금 예산 편성·집행 방식 개선 필요> ····· 85

2. 문화정책관 ····· 89
(1)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일반회계, 1531-304) ····· 89
<재정사업 예산감액 시 신중한 접근 필요> ····· 90
(2)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일반회계, 1533-301) ····· 93
<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수행방식을 강구할 필요> ····· 94
<보조사업의 사전절차,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강화 필요> ····· 97
(3)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일반회계, 1533-306) ····· 102
<지원기간 이후 기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103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 106

3. 예술정책관 ····· 108
(1)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일반회계, 1632-324) ····· 108
<신규 편성 사업 지연 해소 및 실집행 관리 강화> ····· 110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의 예산 편성 필요> ····· 114
(2)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일반회계, 1632-326) ····· 117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른 내역 사업간 예산 조정 지양> ····· 118
(3)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일반회계, 1632-327) ····· 122
<내역변경 및 전용절차를 생략한 예산 집행 주의> ····· 123

(4) 미술진흥기반구축(일반회계, 1635-311) ····· 126
<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사업의 실집행 부진 해소 필요> ····· 128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의 연례적 이월 및 집행잔액을 통한 신규 용역 발주 지양> ·· 131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총괄(문화예술진흥기금) ····· 1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상 적정 비목 예산 집행 필요> ····· 136
(6)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총괄(문화예술진흥기금) ····· 140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면밀한 수입 추계 필요> ····· 141
(7) 예술창작지원(문화예술진흥기금, 1761-300) ····· 145
<편성되지 않은 예산 신규 사업 집행 유의> ····· 146

4. 지역문화정책관 ····· 150

(1)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일반회계, 2131-301) ····· 150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장기간 미구성으로 인한 불용 유의> ····· 151
(2) 문화유산과학센터 건립(일반회계, 2831-316) ····· 155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시정> ····· 156
(3)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일반회계, 2831-362) ····· 159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 및 예산 추계 필요> ····· 160
(4)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2831-362) ····· 163
<아시아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 사업 중단으로 인한 불용 주의> ····· 166

5. 국제문화홍보정책실 ····· 170

(1)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일반회계, 1231-303) ····· 170

<예산 조정 및 집행 시 재정 관계 법령 준수 노력 필요> ····· 171

<제품개발 기간 확보 등 사업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등> ····· 175

(2)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일반회계, 3131-304) ····· 181

<재외문화원 주요사업비가 운영경비로 소진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등> ····· 182

6. 종무실 ····· 186

(1) 종교문화시설건립(일반회계, 1131-302) ····· 186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 ····· 189

7. 콘텐츠정책국 ····· 192

(1) 콘텐츠정책국 소관 보조사업 총괄 ····· 192

<보조사업의 실집행 부진 등 개선 필요> ····· 192

(2)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일반회계, 1231-306),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일반회계, 1231-322) ····· 201

<내실있는 콘텐츠 정책금융 실시 필요> ····· 203

(3) 게임산업 육성(일반회계, 1232-302) ····· 211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게임시간선택제의 실효성 제고 필요> ····· 212

(4)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일반회계, 1232-304) ····· 218

<보조금 집행의 철저한 관리 필요> ····· 219

(5)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일반회계, 1232-306),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일반회계, 1232-307) ····· 224

<등급분류 관련 신뢰 확보 노력 필요> ····· 226
(6)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일반회계, 7132-303) ····· 230
<사업 통폐합 등 편성체계 개편 필요> ····· 231
(7) 기타잡수입(영화발전기금, 69-691) ····· 236
<수입계획 계상오류 시정 필요> ····· 237
(8) 영화유통지원(영화발전기금, 1261-301) ····· 267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관련 제도개선 등 필요> ····· 241
(9) 영화기획개발지원(영화발전기금, 1261-305) 등 ····· 246
<면밀한 기금운용 및 집행관리 필요> ····· 247

8. 저작권국 ····· 252
(1)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일반회계, 1331-303) ····· 252
<「저작권법」 개정 취지에 맞는 사업개편 필요> ····· 253

9. 미디어정책국 ····· 257
(1)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일반회계, 1432-300) ····· 257
<효과적인 콘텐츠기획개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 259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일반회계, 1433-302) ····· 265
<북토큰 지원 사업 일정 지연 및 수혜대상 선정의 문제> ····· 266

10. 국민소통실 ····· 272
(1) KTV 운영(일반회계, 3831-300) ····· 272
<편성비목에 부합한 예산 집행 및 자체전용권 제한을 우회하는 예산 전용에 주의할 필요> ····· 274

11. 체육국 ····· 280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00) ····· 280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료의 탄력적 이용 허용, 국민체력 100과의 사업 연계 필요> ····· 282

(2)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01) ····· 286

<해(달)맞이 체조교실: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실내 공간 보안 활용방안 마련 필요> ····· 288

<한국체육인회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291

(3)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10) ····· 294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국가의 비용부담 확대 검토 필요> ····· 295

(4)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164-300) ····· 299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지위 및 고용안정성 향상과 다양한 스포츠 종목 강사 및 프로그램 제공 필요> ····· 300

(5) 대한체육회 운영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261-300) ····· 303

<체육인교육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 확정 필요> ····· 304

(6)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국민체육진흥기금, 5365-300) ····· 308

<이원적 방식의 스포츠산업융자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필요> ····· 309

(7) 재해복구비(체육)(일반회계, 5131-302) ····· 313

<재해복구를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 검토> ····· 314

12. 체육협력관 ····· 319

(1) 스포츠 종목 보급(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11) ····· 319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신속한 지정과 국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노력 필요> ····· 321

(2) 국립체육박물관 건립(국민체육진흥기금, 5261-315) ····· 324

<국립체육박물관과 한국체육박물관의 소장물품 및 컨텐츠의 통합 또는 교류・협력 필요> ····· 325

(3) 태권도진흥(국민체육진흥기금, 5461-304) ····· 328

<외국인 관광객 모집을 위한 태권도 스테이 내실화 필요> ····· 329

13. 관광정책국 ····· 331

(1)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일반회계, 4331-308) ····· 331

<관광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방안 개선 필요> ···· 332

(2) 법정부담금(관광진흥개발기금, 59-593) ····· 339

<출국납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강구 필요> ····· 340

(3) 전통문화체험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4262-303) ····· 345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 회복을 위한 운영사업 개선 방안 검토 및 개별 사찰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 필요> ····· 346

(4) 관광산업 융자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4267-300) ····· 356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신청 저조의 원인 파악 및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357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 필요> ···· 362

14. 관광산업정책관 ····· 366

(1) 광역관광자원개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53-308, 309, 315) ···· 366

<광역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368

<광역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업주기 및 사업권역 지정 기준 마련 필요> ····· 377

<국회증액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전액 불용 문제> ·· 380

(2)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53-316) ····· 383

<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점검 및 섬 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방안 마련 필요 > ····· 384

(3) 국내관광 역량 강화(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09) ····· 393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의 정기적인 추진을 위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 394

(4) 관광활성화 기반구축(관광진흥개발기금, 4462-300) ····· 400

<베니키아 체인 호텔의 민간이양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402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의 조속한 사업완료 및 예산비효율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407

(5)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관광진흥개발기금, 4463-306) ····· 412

<방한 의료관광 수요를 웰니스관광 수요로 연계하는 등 방한 웰니스관광객 유치 활성화방안 모색 필요> ····· 413

1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422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일반회계, 4631-300) ····· 422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에서 외국인 카지노 제외 검토 필요> ····· 42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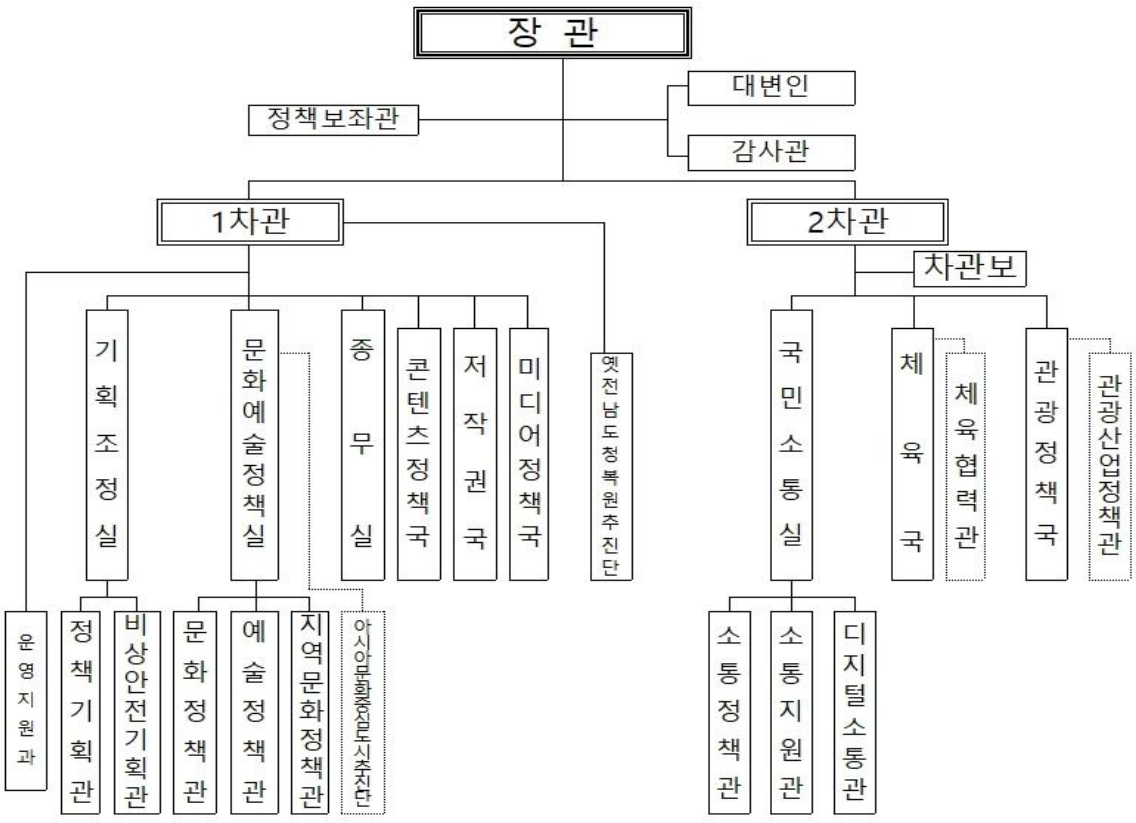
Ⅰ. 결산 개관

1. 총괄

(1)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및 정원

2023회계연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은 장관·2차관·1차관보·1단·4실·5국·12관·58과·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90명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도]



* 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정원]

(단위: 명)

계	정무직	별정직	고위공무원	3·4급이하	연구직	전문경력관
690	3	4	23	605	6	4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현황

2023회계연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중앙박물관 등 19개 기관으로 정원은 2,328명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현황 및 정원]

(단위: 명)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276)	(60)	(34)	(61)	(26)	(584)	(53)	(306)	(59)	(161)	(95)	(51)	(43)	(21)	(95)	(156)	(115)	(119)	(1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회계연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31개 기관으로 정원은 6,075명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산하기관명	정원	주요 기능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1,728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강남 코엑스점, 강북 힐튼점, 부산 롯데점 3개소 운영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816	○ 기금조성사업(경륜·경정·투표권 등)을 통한 기금 조성·운영 ○ 생활·전문·장애인 체육진흥 및 국제체육교류 지원 등
한국언론진흥재단	191	○ 언론산업 진흥, 신문의 발행·유통 발전, 언론진흥기금 조성·운용 ○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등
한국관광공사	656	○ 국제관광진흥, 국민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 관광산업 연구·개발,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266	○ 콘텐츠 사업기반 조성, 콘텐츠 창업 지원·기업 육성 ○ 문화기술 R&D, 콘텐츠 전문인력 약성, 해외진출·금융지원 등
국제방송교류재단	213	○ 해외 국제방송 사업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이해증진 ○ 국제방송을 통한 문화예술 선양 및 국제교류협력
한국문화정보원	44	○ 문화정보화 전문기술 지원,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지원 ○ 문체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대국민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109	○ 문화예술 진흥, 문화산업·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통계분석 ○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 등
세종학당재단	49	○ 외국어로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기관을 세종학당으로 지정·지원 ○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등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150	○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원, 민족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발전 ○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지원, 소외계층 문화예술 창작·보급 등
(재)예술경영 지원센터	46	○ 예술 유통구조의 체계화·활성화 지원, 문화예술기관 경영 컨설팅 ○ 문화예술 경영 인력 양성, 문화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45	○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 직업안정·고용창출 등 지원 ○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
한국문화진흥(주)	135	○ 뉴서울컨트리클럽 운영 ○ 뉴서울컨트리클럽 시설물 및 토지관리 등
한국문학번역원	43	○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 번역·출판 및 번역가 양성 ○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사업 등
예술의전당	139	○ 예술의전당 운영,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보급 ○ 문화예술 관계자료 수집관리 및 보급·조사연구 등
재단법인 국악방송	72	○ 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등
한국공예디자 인문화진흥원	60	○ 한국 공예 및 디자인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 한국 공예디자인, 한복 산업 진흥·육성 등

산하기관명	정원	주요 기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84	○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 강화 ○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및 연수 등
국립박물관문화재단	40	○ 국립박물관 공연장 운영,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출판사업 ○ 문화예술 창작품 보급, 문화상품의 제작 및 보급 등
영화진흥위원회	116	○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영,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 소형·단편영화 진흥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40	○ 영화·비디오물에 대한 연령별 등급분류 ○ 영화·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등
한국영상자료원	69	○ 영화필름 등의 수집 ○ 국내외 영화·비디오물과 문헌·음향자료 등 수집 및 보존·복원 등
게임물관리위원회	58	○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및 청소년 유해성·사행성 확인 ○ 등급분류 사후관리,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업무 지원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111	○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관련 사항 등 심의 등
한국저작권보호원	84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지원·집행,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4	○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연구·조사·기획, 전문인력 양성 ○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등
대한체육회	230	○ 체육회 회원단체 및 시·도 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지원 ○ 종합체육대회 개최, 국제경기 선수단 파견, 선수·지도자 육성, 체육인 권익증진 등
한국체육산업개발(주)	193	○ 올림픽시설물, 경륜·경정시설물 유지 관리 ○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및 올림픽시설 대관·부대사업 등
태권도진흥재단	58	○ 태권도원 조성·운영, 태권도 보존·보급·홍보에 관한 사업 ○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87	○ 장애인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지원 ○ 장애인체육경기대회 개최·참가 및 국제교류, 장애인선수 양성 등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79	○ 도박중독 예방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세입 및 수입 결산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 예산액은 세입예산액은 6조 210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조 1,300억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6조 833억원임.

미수납액은 467억원,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수납률(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2%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음.

수납률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상황 종료로 인한 법정부담금 수납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임.

[2023회계연도 세입 및 수입 결산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총 계(I+II)	60,210	61,300	60,833	0	467	99.2
	(56,793)	(59,231)	(58,588)	(0)	(644)	(98.9)
예 산(I)	2,465	3,396	2,980	0	416	87.8
	(2,236)	(4,340)	(4,043)	(0)	(298)	(93.2)
기 금(II)	57,745	57,904	57,853	0	51	99.9
	(54,557)	(54,891)	(54,545)	(0)	(346)	(99.4)

* 주: 1. 괄호는 2022회계연도 결산
2. 기금은 여유자금 운용시 발생하는 중복 거래액을 제외한 순액 기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세출 및 지출 결산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회계연도 총지출 기준 예산현액은 6조 8,962억원이며, 집행액은 6조 6,442억원으로 96.3%를 집행하였음. 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은 94.7%이며, 주요 미집행사유는 계약기간 미도래에 의한 이월, 사업계획변경 및 집행잔액 불용 등임.

기금의 경우 계획현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은 98.1%로 나타났음.

[2023회계연도 세출 및 지출 결산 총괄(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총지출(I+II)	68,002	68,962	66,442	880	1,639	96.3
	(75,066)	(76,292)	(73,262)	(673)	(2,356)	(96.0)
예 산(I)	34,941	35,794	33,905	867	1,022	94.7
	(38,253)	(39,296)	(37,499)	(566)	(1,230)	(95.4)
기 금(II)	33,061	33,168	32,537	13	617	98.1
	(36,812)	(36,996)	(35,763)	(107)	(1,126)	(96.7)

* 주: 1. 괄호는 2022회계연도 결산현황
2. 사업비 지출 결산[여유자금운용, 기금·계정간 거래 미포함]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 재정 구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문화및관광(060) 분야에 속한 문화예술(061), 관광(062), 체육(063), 문화및관광일반(065) 부문에 해당되며, 1분야, 4부문, 36프로그램의 체계를 갖추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프로그램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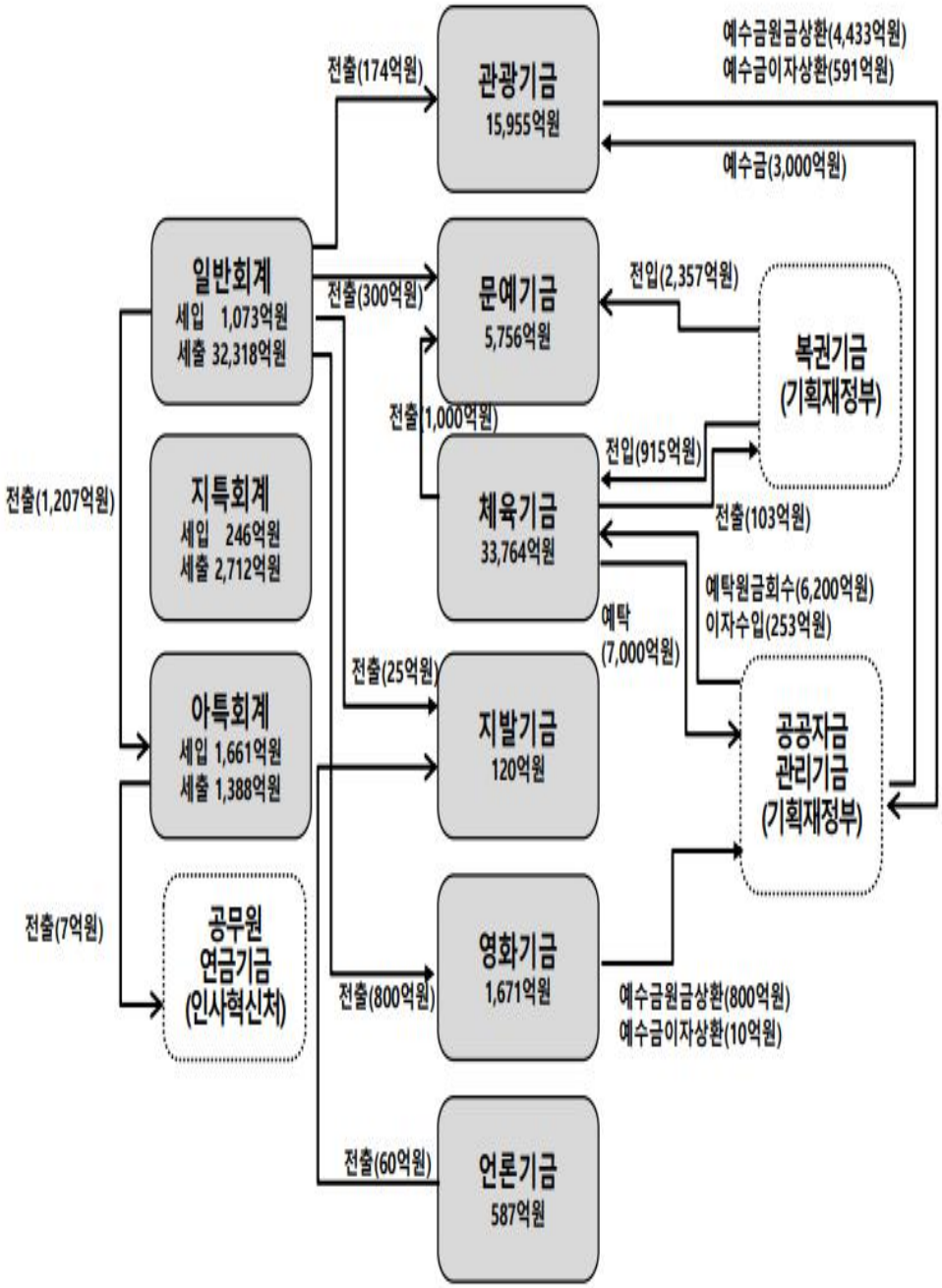
회계 · 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1,207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25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3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74억원, 영화발전기금으로 800억원이 각각 전출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7억원이 전출되었음.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000억원을 전출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7,000억원을 예탁하였으며, 예탁원금 6,200억원을 회수하고, 예탁이자수입 253억을 받았음. 또한, 복권기금으로부터는 915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 사업 잔액 103억원을 반환함.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2,357억원을 전입받았으며, 영화발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원금 800억원, 예수이자 10억원을 상환함.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00억을 예수금으로 받고 예수원금 및 이자로 5,02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 60억을 전입받았음.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 주: 총계 기준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3.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56억 1,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75억 9,000만원임. 이 중 84.1%인 1,073억 2,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02억 6,8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없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75,618	127,590	107,322	0	20,268	84.1
	(60,513)	(214,341)	(198,910)	(0)	(15,431)	(92.8)
○ 재산수입	12,356	14,875	13,772	0	1,103	92.6
	(7,574)	(15,682)	(13,061)	(0)	(2,621)	(83.3)
- 관유물 대여료	8,951	5,701	5,042	0	659	88.4
	(4,270)	(6,029)	(3,872)	(0)	(2,157)	(64.2)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405	9,174	8,730	0	444	95.2
	(3,304)	(9,653)	(9,189)	(0)	(464)	(95.2)
○ 경상이전수입	50,116	100,983	81,898	0	19,085	81.1
	(40,351)	(188,617)	(175,887)	(0)	(12,730)	(93.3)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0	858	147	0	710	17.1
	(0)	(862)	(241)	(0)	(621)	(28.0)
- 변상금및위약금	0	806	124	0	682	15.4
	(0)	(562)	(222)	(0)	(340)	(39.5)

- 가산금	0	672	0	0	672	0
	(0)	(671)	(0)	(0)	(671)	(0)
- 기타경상이전수입	50,116	98,648	81,627	0	17,021	82.7
	(40,351)	(186,523)	(175,424)	(0)	(11,099)	(94.0)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3,146	11,677	11,597	0	80	99.3
	(12,588)	(10,028)	(9,949)	(0)	(79)	(99.2)
- 입장료 수입	4,515	6,269	6,269	0	0	100
	(4,256)	(4,929)	(4,929)	(0)	(0)	(100)
- 면허료 및 수수료	857	49	49	0	0	100
	(843)	(51)	(51)	(0)	(0)	(100)
- 잡수입	7,774	5,358	5,278	0	80	98.5
	(7,489)	(5,048)	(4,969)	(0)	(79)	(98.4)
○ 관유물매각대	0	55	55	0	0	100
	(0)	(14)	(14)	(0)	(0)	(100)

* 주: 괄호는 2022회계연도 결산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1,275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7억 5,100만원(40.5%) 감소하였고, 2023회계연도 수납액은 1,073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5억 8,800만원(46%) 감소하였으며, 수납률은 84.1%로 전년 대비 8.7%p 감소하였음.

미수납액 202억 6,800만원은 전년 대비 48억 3,700만원 증가한 규모로서 그 주요내역은 경상이전수입 191억원, 관유물대여료 11억원 등임.

미수납 사유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146억원), 관계기관 예산 부족(40억), 납기미도래(11억원) 등임.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세입대비 수납률 (C/A)	징수대비 수납률 (C/B)	미수납액
2019년	56,687	72,069	51,668	91.1	71.7	20,401
2020년	58,669	69,705	50,726	86.5	72.8	18,979
2021년	61,058	92,693	67,665	110.8	73.0	25,028
2022년	60,513	214,341	198,910	328.7	92.8	15,431
2023년	75,618	127,590	107,322	141.9	84.1	20,26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예산액보다 7,010억원(9.0%) 감소한 3조 3,035억원이며, 예비비 9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02억원, 이체액 194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3,824억원임.[1)]

지출액은 3조 2,3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를 지출하였음.

1) 내부거래를 포함한 총계 기준

[2023회계연도 주요지출 내역]

(단위: 억원)

주요 지출 항목	지출액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등 종교문화지원	79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등 콘텐츠산업육성	7,086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등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983
방송영상콘텐츠 활성화 등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2,189
문화·인문 진흥 등 창의적 문화정책구현	2,006
기초예술역량강화 등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5,433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국정홍보기획	421
박물관·도서관 정책 활성화 등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기반 조성	974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소속기관 운영	6,763
인건비, 기본경비 등 문화·관광행정지원	3,012
전출금 등	2,658
계	**32,31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연도 이월액은 729억원으로 전년대비 227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용역 및 건설사업 계약기간 미도래 등 계약 관련 이월임.

불용액은 777억원으로 전년대비 125억원 감소였으며, 주요 내역은 인건비, 사업계획 변경 및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등에 따른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변경 내역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전용	이체					
합 계	33,035	502	93	±87	±110	194	33,824	32,318	729	777	95.5
	(32,463)	(593)	(0)	(±68)	(±120)	(0)	(33,056)	(31,652)	(502)	(902)	(95.8)
종교 문화	848	0	0	-13	0	0	835	793	0	42	95.0
	(607)	(0)	(0)	(1) (-14)	(±3)	(0)	(594)	(559)	(0)	(35)	(94.1)
콘텐츠산업	7,097	10	17	0	±8	0	7,124	7,086	9	28	99.5
	(8,900)	(28)	(0)	(0)	(0)	(0)	(8,937)	(8,843)	(17)	(77)	(99.0)
저작권 생태계	988	0	0	0	0	0	988	983	0	5	99.5
	(1,002)	(0)	(0)	(0)	(0)	(0)	(1,002)	(998)	(0)	(4)	(99.6)
미디어 산업	2,190	0	0	0	±1	0	2,190	2,189	0	1	99.9
	(1,952)	(0)	(0)	(0)	(±1)	(0)	(1,952)	(1,942)	(0)	(9)	(99.5)
문화 정책	2,028	32	0	-24	±1	0	2,036	2,006	0	30	98.5
	(1,959)	(100)	(0)	(0)	(±12)	(0)	(2,060)	(1,985)	(32)	(42)	(96.4)
예술 진흥	5,664	223	0	0	±2	0	5,886	5,433	369	84	92.3
	(6,393)	(102)	(0)	(35)	(±33)	(0)	(6,531)	(6,255)	(223)	(53)	(95.8)
국정 홍보	434	1	0	0	±1	0	435	421	2	13	96.7
	(407)	(0)	(0)	(0)	(0)	(0)	(407)	(396)	(1)	(10)	(97.4)
지역 문화	825	5	0	0	0	192	1,022	974	13	36	100.0
	(4,375)	(2230	(0)	(0)	(0)	(0)	(4,598)	(4,285	(5)	(307)	(93.2)
소속기관 운영	7,192	217	76	4 -47	±57	0	7,443	6,763	327	353	90.9
	(7,451)	(304)	(0)	(1) (-53)	(±59)	(0)	(7,706)	7,117	(219)	(370)	(92.4)
행정 지원	3,107	13	0	1 -2	±39	2	3,121	3,012	8	100	96.5
	(3,148)	(4)	(0)	(1) (-6)	(±11)	(0)	(3,146)	2,996	(13)	(137)	(95.2)
전출금 등	2,663	0	0	81	0	0	2,744	2,659	0	85	96.9
	(1,860)	(45)	(0)	(30)	(0)	(0)	(1,935)	(1,915)	(0)	(20)	(99.0)

* 주1: 괄호는 2022회계연도 결산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체액은 193억 7,500만원으로, 청와대 권역 국유재산 관리위임 수임사무의 이관 등으로 발생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액은 87억원임. 주요 이용 내역은 재해복구비 지원 81억 4천만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법령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5억 6천만원 등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109억 6,500만원임. 주요 전용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액 21억 5,600백만원,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인건비 6억 5,800만원 등을 전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주요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용액	주요 전용내역
합 계	10,965	
사업수행 경비	7,151	○ (사업수행 필수경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비, 일반용역비 등 예산 조정 실시
행정지원	3,156	○ (기본경비) 기관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여비, 공공요금 등 부족액 충당
청년인턴	658	○ (청년인턴 채용)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예산 마련 * 관련 근거: 공공부문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23) 및 「청년인턴 운영 가이드라인(인사혁신처)」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월액은 총 729억 1,000만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공사 190억 1,000만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122억 8,900만원 등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주요 이월내역	
합 계	72,908		
콘텐츠산업	910	신기술융합콘텐츠 전시 및 체험관 조성 등	910
예술진흥	36,944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및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등	36,944
지역문화	1,287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등	1,287
소속기관 운영	32,747	문화유산과학센터 및 박물관 문화관 건립 공사 등	16,745
		한국예술종합학교 리모델링 사업 등	4,500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 등	4,959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 등	4,689
		국립국악원 등 소속기관 운영	1,854
행정지원 등	1,022	정책연구개발 등	1,02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총 777억 1,300만원임. 주요 불용내역은 문화예술인프라 구축 48억 2,200만원,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대전) 45억 6,100만원 등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주요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불용액	주요 불용내역	
합 계	77,719		
종교문화	4,201	종교문화시설 건립 등 사업계획변경 및 집행잔액	4,201
콘텐츠산업	2,836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등 집행잔액	2,836
저작권생태계	457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등 집행잔액	457
미디어산업	98	광고산업 활성화 등 집행잔액	98
문화정책	3,014	전통생활문화진흥 등 사업계획변경 및 집행잔액	3,014
예술진흥	8,432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등 사업계획변경 및 집행잔액	8,432
국정홍보	1,277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등 집행잔액	1,277
지역문화	3,553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집행잔액	3,553
소속기관 운영	35,310	미술관, 박물관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19,552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 운영 집행잔액	15,758
문화행정 지원	10,048	인건비 집행잔액	7,808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2,240
전출금 등	8,48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전출금 등	8,48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3년(2021 ~ 202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비율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1년	3,055,877	3,103,176	2,948,914	95.0	59,294	94,969
2022년	3,246,303	3,305,597	3,165,160	95.8	50,202	90,235
2023년	3,303,513	3,382,377	3,231,750	95.5	72,908	77,71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57억 8,400만원임. 이 중 212억 2,5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53.6%임.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B/A)
합 계	18,621	45,784	24,558	0	21,225	53.6
지역자율계정	14,338	35,576	22,013	0	13,564	61.9
지역지원계정	4,202	6,776	2,533	0	4,243	37.4
제주특별자치도계정	75	3,428	10	0	3,419	0.3
세종특별자치시계정	6	3	3	0	0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80억 100만원으로, 이 중 2,712억 3,200만원을 지출하여 246억 9,400만원이 불용되었음.

주요 지출내역은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으로 488억 4,900만원, 지역콘텐츠 산업 균형발전 지원 사업으로 450억 1,900만원을 사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298,001	298,001	271,232	2,075	24,694	91.0
지역자율계정	43,485	43,485	38,165	0	5,320	87.8
지역지원계정	249,616	249,616	228,167	2,075	19,374	91.4
제주특별자치도계정	4,125	4,125	4,125	0	0	1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775	775	775	0	0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가.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662억 3,100만원이고, 이 중 1,661억 3,8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9%임.

[2023회계연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B/A)
재산수입	460	1,153	1,146	-	7	99.4
경상이전수입	1,500	4,421	4,335	-	85	98.1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50	251	251	-	-	100.0
세계잉여금	21,070	39,735	39,735	-	-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29,006	120,671	120,671	-	-	100.0
합 계	152,286	166,231	166,138	-	93	99.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22억 8,600만원으로, 이 중 1,388억 700만원을 지출하여 82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

주요 지출내역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사업으로 655억 7,500만원,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사업으로 493억 7,700만원을 사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합 계	152,286	158,730	138,807	11,704	8,220	87.4
문화중심도시추진	59,691	59,691	57,305	50	2,336	96.0
아시아문화전당운영	77,012	82,985	76,960	2,857	3,169	92.7
옛전남도청복원	15,583	16,054	4,542	8,797	2,715	28.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 기금 결산

(1)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현황]

구 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영화발전기금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언론진흥기금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진흥	신문법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 증대	관광기본법 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기금 수입계획현액은 문화예술진흥기금 5,396억원, 영화발전기금 2,300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98억원, 언론진흥기금 452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7,293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조 2,205억원 등 총 5조 7,745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4,083억원(7.6%)이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금 수입결산 총괄]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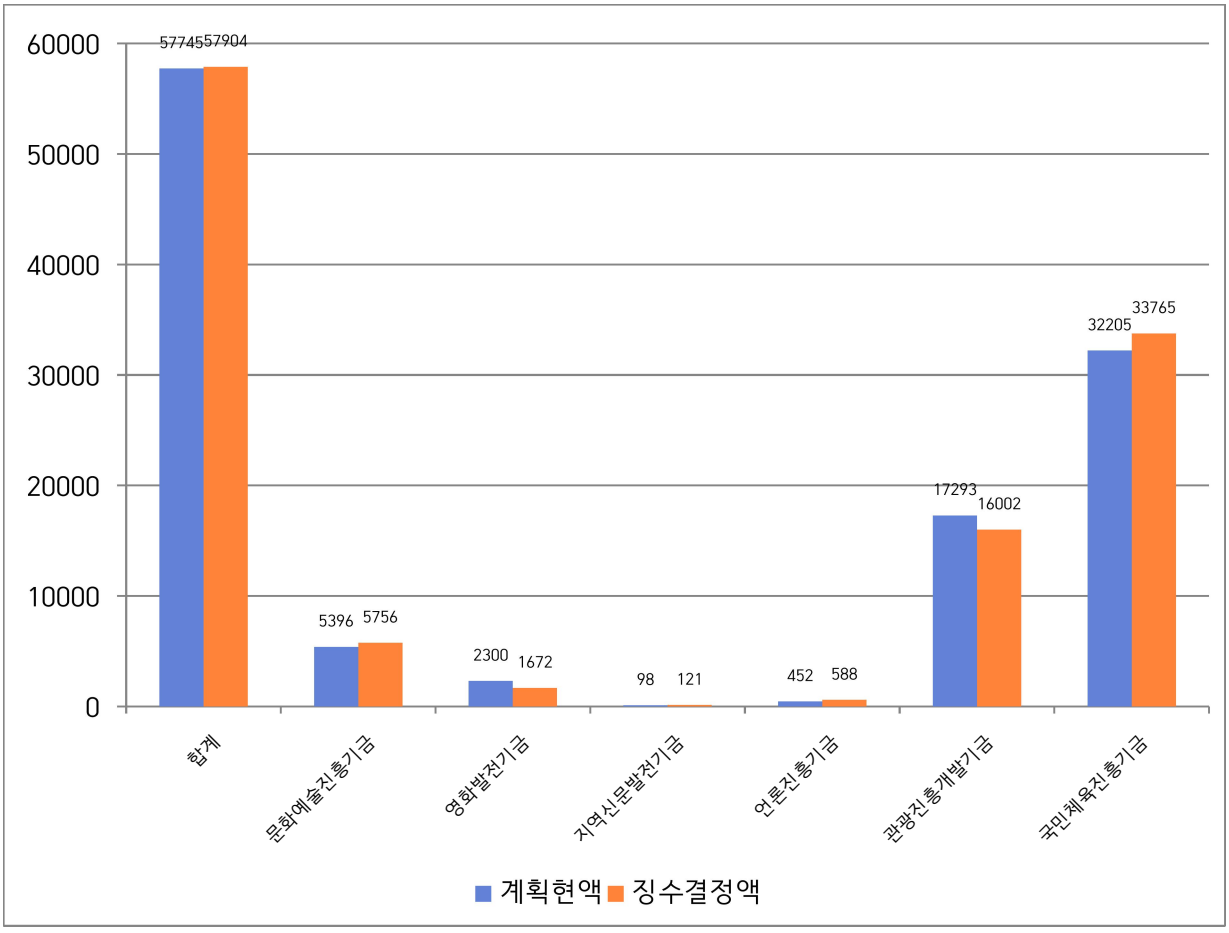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57,745	57,904	57,853	0	51	99.9
	(54,557)	(54,891)	(54,545)	(0)	(346)	(99.4)
문화예술 진흥기금	5,396	5,756	5,756	0	0	100.0
	(5,240)	(4,392)	(4,392)	(0)	(0)	(100.0)
영화발전 기금	2,300	1,672	1,671	0	1	99.9
	(2,004)	(1,632)	(1,630)	(0)	(3)	(99.8)
지역신문 발전기금	98	121	120	0	1	99.2
	(95)	(115)	(114)	(0)	(1)	(99.2)
언론진흥 기금	452	588	587	0	1	99.8
	(382)	(486)	(485)	(0)	(1)	(99.8)
관광진흥 개발기금	17,293	16,002	15,955	0	47	99.7
	(18,734)	(16,158)	(15,845)	(0	(313)	(98.1)
국민체육 진흥기금	32,205	33,765	33,764	0	1	100.0
	(28,102)	(32,109)	(32,080)	(0	(29)	(99.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수납액 기준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5,756억원, 영화발전기금 1,671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120억원, 언론진흥기금 587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5,955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조 3,764억원이고, 수납률은 100.0%임.

[기금별 계획현액 및 징수결정액 비교]

(단위: 억원)



각 기금별 계획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비교해 보면, 계획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국민체육진흥기금 4.8%, 문화예술진흥기금 6.7%, 언론진흥기금 30.2%, 지역신문발전기금 22.8%가 많으나, 관광진흥개발기금과 영화발전기금은 각각 7.5%, 27.3% 계획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적음.

한편, 기금별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금은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0.3%, 언론진흥기금은 0.2%, 영화발전기금 0.1%, 지역신문발전기금 0.8%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금 전체의 사업비 지출계획액은 3조 3,061억원, 계획현액은 3조 3,168억원으로 계획액 대비 107억원(0.7%)이 증가함.

기금 전체의 사업비 지출 실적을 보면, 계획액인 3조 3,061억원 보다 1.6%(524억원)가 적은 3조 2,537억원(계획현액 대비 98.1%)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총괄]

(단위: 억원)

구 분	계획액	계획현액 (A)	지출액(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 계	33,061	33,168	32,537	13	617	98.1
	(36,812)	(36,996)	(35,763)	(107)	(1,126)	(96.7)
문화예술 진흥기금	4,109	4,109	4,078	0	31	99.3
	(4,108)	(4,109)	(4,078)	(0)	(32)	(99.2)
영화발전 기금	851	857	816	2	40	95.2
	(1,100)	(1,109)	(1,036)	(6)	(67)	(93.4)
지역신문 발전기금	88	88	84	0	4	95.4
	(88)	(88)	(85)	(0)	(3)	(96.3)
언론진흥 기금	204	204	198	0	6	96.8
	(213)	(213)	(208)	(0)	(5)	(97.4)
관광진흥 개발기금	11,032	11,096	10,850	2	244	97.8
	(13,079)	(13,091)	(12,218)	(64)	(809)	(93.3)
국민체육 진흥기금	16,777	16,814	16,512	9	293	98.2
	(18,223)	(18,385)	(18,139)	(36)	(210)	(98.7)

* 주: 1. 괄호는 2022회계연도 결산현황
2. 사업비 지출 결산[여유자금운용, 기금·계정간 거래 미포함]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문화예술진흥기금

가) 수입결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운용되고 있음.

2023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5,756억원 대비 100%인 5,756억원이 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5,397	5,756	5,756	0	0	100.0
○재산수입	66	59	59	0	0	100.0
- 건물대여료	12	8	8	0	0	100.0
- 기타재산이자수입	54	51	51	0	0	100.0
○경상이전수입	473	580	580	0	0	100.0
- 민간출연금	279	173	173	0	0	100.0
- 기타경상이전수입	194	407	407	0	0	100.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7	64	64	0	0	100.0
- 입장료수입	62	32	32	0	0	100.0
- 잡수입	15	32	32	0	0	100.0
○관유물매각대	0	0	0	0	0	100.0
○융자원금회수	179	126	126	0	0	1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63	1,269	1,269	0	0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739	3,657	3,657	0	0	100.0
- 기금전입금(복권,관광,체육)	3,439	3,357	3,357	0	0	100.0
- 일반회계 전입금	300	300	300	0	0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사 업 명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5,397	0	0	5,397	5,756	0	-
【 사 업 비 】	4,079	0	30	4,109	4,078	0	31
○예술창작역량강화	1,034	0	30	1,064	1,054	0	10
- 예술창작지원	516	0	0	516	509	0	7
- 예술인력육성	326	0	0	326	324	0	3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180	0	30	210	210	0	0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11	0	0	11	11	0	0
○지역문화예술진흥	104	0	0	104	104	0	0
- 지역문화예술지원	33	0	0	33	33	0	0
- 예술의 관광자원화	71	0	0	71	71	0	0
○예술향유기회확대	2,708	0	0	2,708	2,700	0	9
-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221	0	0	221	214	0	6
- 문화예술향유지원	2,488	0	0	2,488	2,485	0	3
○기금운영비	233	0	0	233	221	0	12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	1,318	0	△30	1,288	1,678	0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지출결산

2023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액 4,079억원에 계획변경액 30억원을 더한 계획현액 4,109억원 중 99.3%인 4,078억원이 지출되었고, 31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그 외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1,678억원이 지출되었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은 ①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등의 ‘예술창작역량강화’, ②지역문화예술지원, 예술의 관광자원화 등의 ‘지역문화예술진흥’, ③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문화예술향유지원 등의 ‘예술향유기회확대’ ④기관운영비, 지원심의평가제도 운영 등의 ‘기금운영비’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집행액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사업은 ‘예술향유기회확대’ 사업으로서,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4,078억원 중 66.2%인 2,700억원을 집행함. 그 외 ‘예술창작역량강화’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25.8%인 1,054억원,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2.6%인 104억원을 집행함.

한편, 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4,079억원)의 약 7.4% 규모의 금액인 30억원을 기재부 협의변경을 통해 증액하였는데, 이는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비임

(3) 영화발전기금

가) 수입결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을 주요재원으로 함.

2023회계연도 영화발전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1,672억원 대비 99.9%인 1,671억원이 수납되었고, 1억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영화발전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300	1,672	1,671	-	1	99.9
○재산수입	36	23	23	-	-	100.0
- 기타재산이자수입	36	23	23	-	-	100.0
○경상이전수입	539	271	270	-	1	99.6
- 가산금	0.1	0.2	0.1	-	0	76.8
- 법정부담금	524	264	263	-	1	99.6
- 기타경상이전수입	14	7	7	-	-	100.0
○잡수입	31	5	5	-	0	100.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894	573	573	-	-	100.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92	227	227	-	-	100.0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02	346	346	-	-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00	800	800	-	-	100.0
- 일반회계 전입금	800	800	800	-	-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지출결산

2023회계연도 영화발전기금 전체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액 2,300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원을 더한 계획현액 2,307억원 중 72.4%인 1,671억원이 지출되었고, 2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34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영화발전기금 사업은 ①영화제작지원, ②영화유통지원, ③영화정책지원, ④첨단영화기술육성, ⑤영화기획개발지원, ⑥영화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으로 구분됨.

사업비의 경우 계획액 729억원에 이월액 6억원을 더한 계획현액 736억원 중 94.6%인 696억원이 집행되었고, 2억원은 이월되었으며, 39억원 불용되었음.

기금운영비는 계획액 121억원(이월 7백만원) 중 98.8%인 120억원이 집행되었고, 1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그 외 여유자금 운용 및 기금간거래로 855억원이 지출되었음.

[2023회계연도 영화발전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사 업 명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300	6	-	2,307	1,671	2	40
【 사 업 비 】	729	6	-	736	696	2	38
○영화제작지원	233	2	20	255	252	-	4
○영화유통지원	205	2	△1	207	197	-	9
○영화정책지원	176	2	△2	175	155	1	19
○첨단영화기술육성	27	-	△1	27	26	-	1
○기획개발지원	70	1	△17	54	48	1	5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18	-	1	19	19	-	0
【 기금관리비 】	121	0	-	121	120	-	1
○영화발전기금 인건비	99	-	-	99	98	-	1
○영화기금 기금관리비	22	0	-	22	22	-	1
【 기금간거래 】	810	-	-	810	810	-	0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10	-	-	10	10	-	0
○공자기금 예수원금이자상환	800	-	-	800	800	-	-
【 여유자금 운용 】	639	-	-	639	45	-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186	-	-	186	3	-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454	-	-	454	42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 지역신문발전기금

가) 수입결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실시,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2023회계연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120억 7천만원 대비 99.2%인 119억 7천 8백만원이 수납되었고, 9천2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98.32	120.7	119.78	-	0.92	99.2
○재산수입	1.6	3.79	3.15	-	0.64	83.1
- 기타재산이자수입	1.6	3.79	3.15	-	0.64	83.1
○경상이전수입	-	3.01	2.73	-	0.28	90.7
- 기타경상이전수입	-	3.01	2.73	-	0.28	90.7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1.72	28.9	28.9	-	-	100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6.86	28.9	28.9	-	-	1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4.86	-	-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85	85	85	-	-	100
- 일반회계 전입금	25	25	25	-	-	100
- 기금전입금	60	60	60	-	-	1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지출결산

2023회계연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액 및 계획현액 82억 5천 1백만원 중 95.3%인 78억 6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3억 8천 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그 외 기금관리비,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41억 1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음.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은 지역신문발전지원 ①지역신문역량지원, ②지역공헌활동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집행액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사업은 '지역신문역량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78억 6천 5백만원 중 52.5%인 41억 2천 9백만원을 집행함. 그 외 '지역공헌활동지원'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47.5%인 37억 3천 6백만원을 집행함.

[2023회계연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사 업 명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9,832	-	-	9,832	11,978	-	408
【 사 업 비 】	8,251	-	-	8,251	7,865	-	386
ㅇ지역신문발전지원	8,251	-	-	8,251	7,865	-	386
- 지역신문역량지원	4,501	-	-	4,501	4,129	-	372
- 지역공헌활동지원	3,750	-	-	3,750	3,736	-	14
【 운 영 비 】	562	-	-	562	540	-	22
ㅇ기금관리비	562	-	-	562	540	-	22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	1,019	-	-	1,019	3,573	-	-

(5) 언론진흥기금

가. 수입결산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뉴스미디어진흥, 뉴스유통구조 개선, 언론공익사업 등으로 운용되고 있음.

2023회계연도 언론진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588억원 대비 99.8%인 587억원이 수납되었고, 1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음.

[2023회계연도 언론진흥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452	588	587	0	1	99.8
○재산수입	3	11	11	0	0	99.5
- 기타재산이자수입	3	11	11	0	0	99.5
○경상이전수입	280	300	299	0	1	99.7
- 기타경상이전수입	280	300	299	0	1	99.7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69	277	277	0	0	100.0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5	46	46	0	0	10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64	231	231	0	0	100.0

나. 지출결산

2023회계연도 언론진흥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및 계획변경액이 발생하지 않아 계획액과 계획현액이 204억원으로 동일함. 이 중 96.8%인 198억원이 지출되었고, 6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그 외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389억원이 지출되었음.

언론진흥기금 사업은 ①뉴스미디어산업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 대응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뉴스미디어진흥', ②신문 유통망의 안정적 유지, 배달 한계지역의 신문 보급 확대를 위한 '뉴스유통구조개선', ③전국민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 및 읽기문화진흥, 언론의 자율적 심의 지원을 위한 '언론공익사업'으로 구분됨.

전체 집행액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사업은 '뉴스미디어진흥' 사업으로,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196억원 중 45.0%인 88억원을 집행함. 그 외 '뉴스유통구조개선'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14.7%인 29억원, '언론공익'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40.3%인 79억원을 집행함.

[2023회계연도 언론진흥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사 업 명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52	0	0	452	587	0	6
【 사 업 비 】	202	0	0	202	196	0	6
○뉴스미디어진흥	91	0	0	91	88	0	2
- 뉴스콘텐츠인프라구축	69	0	0	69	67	0	2
- 뉴스콘텐츠생산지원	22	0	0	22	21	0	0
○뉴스유통구조개선	31	0	0	31	29	0	2
- 뉴스유통지원	31	0	0	31	29	0	2
○언론공익사업	80	0	0	80	79	0	2
- 미디어교육사업	35	0	0	35	34	0	1
- 읽기문화진흥사업	17	0	0	17	17	0	0
- 신문윤리심의지원	28	0	0	28	28	0	0
【기금운영비】	2	0	0	2	2	0	0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	248	0	0	248	389	0	0

(6) 관광진흥개발기금

가) 수입결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1973년부터 운용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1조 6,002억원 대비 99.7%인 1조 5,955억원이 수납되었고, 46억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17,293	16,002	15,955	-	47	99.7
○관유물대여료	4	4	4	-	-	100.0
- 토지대여료	2	-	-	-	-	-
- 건물대여료	2	4	4	-	-	100.0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42	643	641	-	2	99.8
-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92	492	492	-	-	100.0
- 기타재산이자수입	50	151	149	-	2	99.0
○경상이전수입	6,084	5,281	5,236	-	45	99.1
- 법정부담금	5,893	4,994	4,994	-	-	99.9
- 기타경상이전수입	191	287	242	-	45	84.3
○융자원금회수	6,525	5,483	5,483	-	-	100.0
○여유자금회수	1,364	1,417	1,417	-	-	100.0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	30	30	-	-	10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1,364	1,387	1,387	-	-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174	3,174	3,174	-	-	100.0
- 일반회계전입금	174	171	174	-	-	100.0
- 기금예수금	3,000	3,000	3,000	-	-	100.0

나) 지출결산

2023회계연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액 1조 580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64억원 및 계획변경액 452억원을 더한 계획현액 1조 1,096억원 중 97.8%인 1조 850억원이 지출되었고, 2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44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그 외 여유자금 운용 및 기금간거래(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상환) 등으로 5,106억원이 지출되었음.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은 ①관광기반확충(이월), ②관광사업체 융자지원 등의 '국내관광활성화', ③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 등의 '외래관광객 유치', ④관광사업 활성화 지원 등의 '관광산업활성화'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집행액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사업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등의 '국내관광활성화' 사업으로서,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1조 850억원 중 60.8%인 6,598억원을 집행함. 그 외 '외래관광객유치' 사업은 전체 사업비 집행액 중 23.2%인 2,591억원, '관광산업활성화' 사업은 전체 사업비 집행액 중 15.8%인 1,709억원을 집행함.

한편,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1조 580억원)의 약 4.3% 규모의 금액인 452억원을 자체변경을 통해 증액하였는데,

주된 내역을 보면, ① '국내관광활성화'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내관광육성 지원에 필요한 442억원, ②'관광산업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에 필요한 10억원, ③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환 부족액 53억원 등을 증액하고, ‘여유자금운용’에서 총 505억원을 감액함.

[2023회계연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사 업 명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7,293	64	-	17,357	15,955	2	244
【 사 업 비 】	10,580	64	452	11,096	10,850	2	244
○관광기반확충	-	6	2	- 6	6	-	- 2
- 관광자원 활성화	-	6	2	- 6	6	-	- 2
○국내관광활성화	6,307	33	442	6,782	6,598	-	192
- 관광인프라 조성	507	2	-	509	508	-	1
- 국내관광 육성지원	993	-	442	1,435	1,428	-	7
-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215	-	-	215	156	-	59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4,591	31	-	4,622	4,497	-	125
○외래관광객유치	2,526	3	-	2,529	2,519	1	8
-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2,137	1	-	2,138	2,134	1	3
-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유치	389	2	-	391	386	0	5
○관광산업활성화	1,741	2	10	1,753	1,709	1	43
-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1,097	2	-	1,099	1,064	1	34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644	-	10	654	645	-	9
○기금운영비	6	-	-	6	6	-	0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	6,713	-	-452	6,261	5,106	-	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7) 국민체육진흥기금

가. 수입결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의 진흥, 체육인의 복지 향상 및 체육단체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을 수행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3조 3,765억원 대비 99.9%인 3조 3,764억원이 수납되었고, 96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

구 분	계획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32,205	33,765	33,764	0	1	99.9
○자체수입	20,871	21,777	21,776	0	1	100.0
- 기타민간이자수입	42	202	202	0	0	100.0
- 기타재산이자수입	113	244	244	0	0	100.0
- 법정부담금	251	239	239	0	0	100.0
- 기타경상이전수입	1,394	927	927	0	0	100.0
- 기타잡수입	264	283	283	0	1	99.6
- 기타영업외잡수익	18,124	19,084	19,084	0	0	100.0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683	798	798	0	0	100.0
○정부내부수입	7,335	7,368	7,368	0	0	100.0
- 기금전입금(복권기금)	915	915	915	0	0	100.0
- 공공예탁금원금회수	6,200	6,200	6,200	0	0	100.0
- 공공기금예탁금이자수입	221	253	253	0	0	100.0
○여유자금회수	3,999	4,620	4,620	0	0	100.0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999	4,620	4,620	0	0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지출결산

2023회계연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비 지출결산 내역을 보면, 계획액 1조 6,665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36억원 및 계획변경액 112억원을 더한 계획현액 1조 6,814억원의 98.2%인 1조 6,512억원이 지출되었고, 9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93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그 외 여유자금 운용 등으로 1조 7,252억원이 지출되었음.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은 ①생활체육활성화, 학교체육육성 등의 '생활체육육성', ②체육인복지사업 등의 '전문체육육성', ③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 등의 '스포츠산업육성', ④ '국제스포츠역량강화', ⑤'장애인체육육성'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집행액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사업은 '생활체육육성' 사업으로서, 사업비 기준 전체 집행액 1조 6,512억원 중 38.1%인 6,295억원을 집행함. 그 외 '전문체육육성'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26.6%인 4,384억원, '스포츠산업육성' 사업은 전체 집행액 중 20.7%인 3,417억원을 집행함.

한편, 2023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은 당초 계획액(1조 6,665억원)의 약 0.7% 규모의 금액인 112억원을 기재부 협의와 자체변경을 통해 증액하였는데,

주된 내역을 보면, ①'국제스포츠역량강화'에서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97억원, ②'장애인체육육성'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세 납부에 필요한 9억원, ③'전문체육육성'에서 스포츠윤리센터 정보보안강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6억원을 증액함

[2023회계연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사 업 명	계획액	전년 이월	계획 변경액	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32,205	36	0	32,242	33,764	9	336
【 사 업 비 】	16,665	36	112	16,814	16,512	9	293
○생활체육육성	6,513	0	0	6,513	6,295	0	218
- 생활체육활성화	3,409	0	0	3,409	3,386	0	23
- 생활체육시설 지원	2,582	0	0	2,582	2,387	0	195
- 학교체육 육성	304	0	0	304	304	0	0
- 도박문제 예방 치유	218	0	0	218	218	0	0
○전문체육육성	4,393	0	6	4,400	4,384	1	15
- 전문체육육성	3,853	0	6	3,860	3,844	1	15
- 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	302	0	0	302	302	0	0
- 체육인복지사업	238	0	0	238	238	0	0
○스포츠산업육성	3,428	34	0	3,463	3,417	5	40
-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256	1	0	257	257	0	1
- 기금조성 기반시설지원	1,549	20	0	1,570	1,569	0	1
- 스포츠산업 활성화	1,623	13	0	1,636	1,591	5	39
○국제스포츠역량강화	1,052	0	97	1,150	1,139	0	11
- 국제스포츠 교류 활성화	1,052	0	97	1,150	1,139	0	11
○장애인체육육성	961	0	9	969	966	0	3
- 장애인 체육육성	961	0	9	969	966	0	3
○기금운영비	318	2	0	319	311	3	5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	15,540	0	△112	15,428	17,252	0	4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의 배정액은 92억 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82억 8,300만원, 불용액은 10억 4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대통령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및 2023 잼버리 k-pop 콘서트 방송제작 및 송출로 배정·지출되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9,287	8,283	-	1,004
대통령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1차)	4,155	4,155	-	-
대통령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2차)	3,472	2,570	-	902
2023 잼버리 k-pop 콘서트 방송제작 및 송출	1,660	1,558	-	10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6. 재무결산

(1) 재정상태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중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자산은 17조 3,324억 6,800만원이고, 부채는 2조 6,426억 1,300만원이며, 순자산은 14조 6,898억 5,500만원임.

자산은 17조 3,324억 6,800만원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인 8,633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14.6%인 4,427억 3,100만원 감소한 2조 5,958억 300만원임. 투자자산은 전년대비 17.9%인 1조 1,699억 1,000만원 증가한 7조 7,214억 1,200만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은 전년 대비 1.8%인 1,197억 1,100만원 증가한 6조 8,992억 2,100만원임.

부채는 2조 6,426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인 1,886억 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순자산은 14조 6,898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인 1조 519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A-B)	
			금 액	비 율
자 산	17,332,468	16,469,137	863,331	5.2
Ⅰ. 유동자산	2,595,803	3,038,534	△442,731	△14.6
Ⅱ. 투자자산	7,721,412	6,551,502	1,169,910	17.9
Ⅲ. 일반유형자산	6,899,221	6,779,510	119,711	1.8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105,396	88,383	17,013	19.2
Ⅵ. 기타비유동자산	10,636	11,208	△572	△5.1
부 채	2,642,613	2,831,220	△188,607	△6.7
Ⅰ. 유동부채	147,198	564,606	△417,408	△73.9
Ⅱ. 장기차입부채	2,431,163	2,201,934	229,229	10.4
Ⅲ. 장기충당부채	10,558	10,992	△434	△3.9
Ⅳ. 기타비유동부채	53,694	53,688	6	0.0
순자산	14,689,855	13,637,917	1,051,938	7.7
Ⅰ. 기본순자산	7,851,861	7,152,081	699,780	9.8
Ⅱ. 적립금 및 양여금	3,668,759	3,487,565	181,193	5.2
Ⅲ. 순자산 조정	3,169,236	2,998,271	170,965	5.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재정운영 분석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조 5,428억 2,700만원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23.4%인 7,755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음.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A-B)	
			금 액	비 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5,188,933	5,547,946	△359,013	△6.5
Ⅱ. 관리운영비	412,020	403,931	8,089	2.0
Ⅲ. 비배분비용	100,297	77,805	22,492	28.9
Ⅳ. 비배분수익	333,136	312,807	20,329	6.5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5,368,114	5,716,875	△348,761	△6.1
Ⅵ. 비교환수익 등	2,825,287	2,398,543	426,744	17.8
Ⅶ. 재정운영결과(순비용, Ⅴ-Ⅵ)	2,542,827	3,318,332	△775,505	△23.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프로그램 순원가(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총원가에서 관련 수익을 차감한 금액)'는 5조 1,889억 3,300만원[2]으로, 전년 대비 6.5%인 3,590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음.

2) <프로그램 순원가 현황>

프로그램 순원가	33개 프로그램 5조 5,479억 4,600만원

‘관리운영비(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비용)’는[3] 4,120억 2,0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 대비 2.0%인 8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비배분비용(프로그램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4]은 1,002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9%인 224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음.

‘비배분수익(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익)’은 3,331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인 203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비교환수익 등(비교환수익과 무상이전)’은 전년 대비 17.8%인 4,267억 4,400만원이 증가한 2조 8,252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음.

3) 관리운영비는 기업의 판매·관리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정부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나 소모품비와 같은 행정운영경비를 말함.
4) 비배분비용은 프로그램원가처럼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처분손실 등 상황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대표적인 사례임.

(3) 순자산변동 분석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을 합산한 결과를 '기말순자산'으로 표시함.

문화체육관광부의 순자산은 2023회계연도 기준 14조 6,898억 5,500만원으로, 기초순자산은 13조 6,379억 1,700만원, 재정운영결과 2조 5,428억 2,7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조 4,238억원, 조정항목 1,709억 6,500만원임.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표의 맨 마지막 수치를 반영한 것으로, 2조 5,428억 2,700만원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가가 재정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내역을 나타내는 것으로,[5] 3조 4,238억원임.

'조정항목'은 순자산의 변동을 초래하지만, 수익·비용거래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로서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을 말하며, 전년 대비 2,527억 4,200만원 증가한 1,709억 6,500만원임.

5)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국세, 부담금, 기부금 등을 수납하는 경우 그 수익금은 중앙관서가 아닌 한국은행의 국고 계좌에서 통합하여 관리되며, 이 때의 국고금 이전거래를 순자산의 증감으로 표시하게 됨.

[2023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A-B)	
			금 액	비 율
Ⅰ. 기초순자산	13,637,917	13,415,379	222,538	1.7
Ⅱ. 재정운영결과	2,542,827	3,318,332	△775,505	△23.4
Ⅲ. 재원의조달 및 이전	3,423,800	3,622,647	△198,847	△5.5
Ⅳ. 조정항목	170,965	(81,777)	252,742	309.1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14,689,855	13,637,917	1,051,938	7.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7. 2023회계연도 신규 및 종료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회계연도 신규사업은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ODA), 메타버스 콘텐츠IP 구축 연구 개발(R&D) 등 10개 세부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집행액은 총 1,002억 9,100만원임.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액	집행액
일반회계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ODA)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실연-가상 공연환경을 조성하여 메타버스 기반 가상공연 신 패러다임 창출	730	728
	메타버스 콘텐츠IP 구축 연구 개발(R&D)	○전문기관 및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획평가관리비를 통합 관리·운영하여 효율적인 운영 도모	3,300	3,300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사업	○복식문화 체험·교육·전시 등 이용자 참여형 디지털 스마트 복합공간 조성 및 아카이브 공간 구축 등 복식문화를 대표하는 전문박물관 건립	440	430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	○국·공립예술단체의 공연예술 무대용품 보관 및 대여, 전시·체험 복합문화서비스 제공	5,443	483
	영화발전기금 전출	○한국 영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안정적 기금 운용 기반 마련을 위한 국고 전입금	80,000	80,000
지특회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남부권이 보유한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 지역의 독보적 매력 자원을 경험하는 문화 예술・휴양・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5,500	-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액	집행액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섬 관광 편의시설 개선·프로그램 개발·주민역량 강화 교육·홍보·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섬 관광 활성화	5,150	5,000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폐광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 개발 등 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	2,750	2,350
체육기금	종목별 경기력 향상지원(R&D)	○국가대표 및 개인의 운동 역량과 신체능력을 개발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기술 개발	2,000	2,000
언론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	○언론진흥기금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	6,000	6,000
계			111,313	100,29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중 2023회계연도에 종료된 사업은 지역연계첨단CT 실증사업(R&D) 등 13개 세부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집행액은 총 1,417억 5,3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료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현액	집행액
일반회계	지역연계 첨단CT 실증사업(R&D)	○지역문화공간을 활용한 6대 첨단 문화공간(박물관, 테마파크, 공연장, 경기장, 축제, 공원) 구축 및 실증	4,400	4,400
	문화콘텐츠 R&D전문인력양성(R&D)	○문화콘텐츠 장르와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다학제 교육과정 및 기술개발 지원, 공학이 결합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통한 문화기술인력 양성 지원	5,500	5,500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현액	집행액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온라인으로의 예술 영역 확장을 위해 기초예술분야의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및 확산 지원	5,061	5,061
	지역문화 진흥	○특색있는 지역문화자원 발굴·활용 및 지역문화 활력촉진 프로그램 지원 등	20,078	19,924
	어르신문화활동지원	○어르신 대상 문화활동 지원 및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3,589	3,589
	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4,135	4,131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	○일반회계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의 전출금	2,500	2,500
	영화발전기금 전출	○한국 영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안정적 기금 운용 기반 마련을 위한 국고 전입금	80,000	80,000
지특회계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제주)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새로운 문화예술공간 조성지원(리모델링)	1,814	1,814
문예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예술 프로젝트 연구 활동 지원	3,294	3,275
체육기금	스포츠친화기업 선정지원	○스포츠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스포츠친화기업 인증 실시 및 지원	85	85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청사이전	○조선왕릉(태·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원형복원계획에 따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토지 소유권자인 문화재청의 청사이전 요구에 따라 과학원 청사 이전(현 태릉 소재 청사 → 올림픽문화센터)	6,474	6,474
	지역사회 기반 재활운동 서비스(R&D)	○운동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의 재활운동 지원을 위한 지능형 재활연계 생활체육 서비스 기술개발, 장애유형별 신체·인지증강 기술개발, ICT융합 재활 생활체육 기술 개발	5,000	5,000
계			141,930	141,75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Ⅱ. 검토의견

1. 총괄 및 기획조정실 등

(1) 총괄

<관서운영경비 관련 집행기강 확립 필요>

정부 기관이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관서운영경비[6]를 집행함에 있어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7] 등 목적인 일반수용비(210-01)를 해당 비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목적에 편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8] 및 예산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고 있음.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는 지난해 '2023년 문체부 공무원 노사합동워크숍'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임차료(210-07)로 집행해야 하는 행사장 대관료, 국내여비(220-01)로 집행해야 하는 콘도 객실 숙박료,

---

6) 관서운영경비는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통상적 경비로, 주로 소액으로 자주 집행되는 등의 성질상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일반적 지출 절차(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고, 지출관이 그에 따라 자금 이체 등 집행)를 따르는 대신, 미리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정부구매카드 등을 통해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 건당 한도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임.

7)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

8)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업무추진비(240)로 집행해야 하는 오·만찬 등 식·음료비와 같이, 업무상 소규모 물품 구입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비용을 비목 구분 없이 모두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였음.[9)]

이는 일반수용비(210-01) 예산의 경우 업무상 필요한 소규모 물품 등을 구매할 용도로 편성·집행된다는 특성상 예산액이 다소 여유 있게 배정되고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성 및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도 다른 비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행정편의적으로 이를 다른 용도에 집행해 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러한 편의적 집행은 특정 사업이나 특정 사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실·국 및 소속기관에 걸쳐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음.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 포함 전체 실·국 등 공통)는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업무추진비(240)[10)]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각종 식당·카페 등 식·음료비를 '업무상 소규모 물품 구입비'로 보고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음.

---

9)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뿐만 아니라 위 워크숍을 최초로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관련 경비를 모두 일반수용비로 집행해 왔으며,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적당한 비목이 없어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에는 대관료(임차료, 210-07), 숙박비(국내여비, 220-01), 식대(업무추진비, 240)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목이 모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더욱이 '정부 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보조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임.

10) 그중 특히 관서업무추진비(240-02)

업무추진비(240)는 이전부터 그 용처나 목적 등 집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국회나 감사원은 물론 언론 등으로부터도 많은 지적과 논란이 있었던 비목으로,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에도 다른 비목에 비해 더욱 엄격한 지침이 명시되어 있는바,[11]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일반수용비(210-01)를 이러한 업무추진비(240)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외 출장 시 통역비·선물비 등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지역문화정책관) 등, 업무추진비(240)의 목적에 일반수용비(210-01)를 편의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다수 있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편의적으로 이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한 경우도 있었는바, 'K-컬쳐의 통합적 이미지 구현을 위한 이미지 로고' 제작비용 및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기획조정실), '특별전 전시기획' 관련 자료 디자인 및 제작비용(지역문화정책관), '영상산업 도약 전략' 발표행사 진행경비(콘텐츠정책국), 저작권 보호 홍보영상 제작비용 및 저작권 정책발표 기자 브리핑 진행 용역 대금(저작권국) 등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례가 대표적임.

---

11)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에 따르면 물건비(200목) 내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때에도 타 비목에서 업무추진비(240목)로의 전용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는 업무추진비가 그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비목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함.

[편의적으로 다른 비목의 용도에 일반수용비를 집행한 사례(예시)]

용 도		적정비목	사용비목	소관부서
워크숍 비용	행사장 대관료	임차료(210-07)	일반수용비 (210-01)	운영지원과
	객실 숙박료	국내여비(220-01)		
	식·음료비	업무추진비(240)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회의·간담회 등 관련 식·음료비 등		업무추진비(240)	일반수용비 (210-01)	기획조정실 포함 전체 실·국 등 공통
국외 출장 통역비·선물비 등		업무추진비(240)	일반수용비 (210-01)	지역문화정책관
로고 제작, 콘텐츠 제작, 특별전시 관련 자료 디자인 및 제작, 전략발표 행사 진행, 홍보영상 제작, 정책발표 기자 브리핑 용역 등		일반용역비 (210-14)	일반수용비 (210-01)	기획조정실, 지역문화정책관,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회의실 대관료, 차량·사무가구·용품 등 임차비용		임차료(210-07)	일반수용비 (210-01)	지역문화정책관,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등
등기우편 등 발송료, 전기료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일반수용비 (210-01)	저작권국
근조 화환 등, 정부업무평가 우수부처 직원에 대한 부상		기타운영비 (210-16)	일반수용비 (210-01)	문화정책관,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국민소통실
특근 관련 식비		특근매식비 (210-05)	일반수용비 (210-01)	관광산업정책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실 등의 대관료 및 차량·사무가구·용품의 임차비용 등을 임차료(210-07)가 아니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한 사례가 있었고(지역문화정책관,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등), 등기우편 등 발송비나 전기료를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가 아니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으며(저작권국), 기타운영비(210-16)로 집행해야 하는 근조 화환(문화정책관,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및 정부업무평가 우수부처 직원에 대한 부상(국민소통실), 특근매식비(210-05)로 집행하여야 하는 식비(관광산업정책관)까지도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는 등, 특정 사업·경비·부서를 불문하고 일반수용비를 편의에 따라 목적 외로 집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행정편의적으로 비목 구분을 무시함으로써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관행을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관서운영경비와 관련한 집행기강 확립을 위해 전 부서 경비집행 실태 점검 및 담당자 교육 실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일반회계 세입 총괄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토지·건물 등의 대여에 따른 수입인 '관유물대여료(51)'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정산 및 이자 반납 등에 따른 '기타경상이전수입(59)'과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54)', 그 밖에 각종 소속기관 등의 '입장료수입(64)' 및 '잡수입(69)'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756억 1,800만원이었으나, 1,275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73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02억 6,900만원임(미수납률 15.9%).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일반회계 세입 총계	75,618	75,618	-	75,618	127,591	107,322	20,269	-	76,857
▪ 토지대여료 (51-511)	890	890	-	890	956	668	288	-	917
▪ 건물대여료 (51-512)	7,233	7,233	-	7,233	4,530	4,159	371	-	2,863
▪ 기타관유물 대여료(51-513)	828	828	-	828	215	215	-	-	853
▪ 기타재산이자 수입(54-546)	3,405	3,405	-	3,405	8,979	8,535	444	-	3,507
▪ 기타재산이자외 수입(54-547)	-	-	-	-	195	195	-	-	-

목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벌금및과료 (56-561)	-	-	-	-	87	-	87	-	-
▪ 과태료 (56-563)	-	-	-	-	452	14	438	-	-
▪ 징계부과금 (56-564)	-	-	-	-	45	45	-	-	-
▪ 과징금 (56-565)	-	-	-	-	274	88	186	-	-
▪ 변상금 (57-571)	-	-	-	-	636	106	530	-	-
▪ 위약금 (57-572)	-	-	-	-	170	18	152	-	-
▪ 가산금 (58-581)	-	-	-	-	672	-	672	-	-
▪ 기타경상이전 수입(59-596)	50,116	50,116	-	50,116	98,648	81,627	17,021	-	53,019
▪ 입장료수입 (64-641)	4,515	4,515	-	4,515	6,270	6,270	-	-	4,708
▪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857	857	-	857	49	49	-	-	883
▪ 기타잡수입 (69-691)	7,774	7,774	-	7,774	5,358	5,278	80	-	8,007
▪ 건물매각대 (71-711)	-	-	-	-	-	-	-	-	2,100
▪ 기타고정자산 매각대(71-713)	-	-	-	-	55	55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예산 징수 누락 및 편성오류 등 재발 방지 필요>

「국가재정법」 제18조[12]에 따라 국가의 세출은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므로, 세입예산의 정확한 징수 및 편성은 전체 세입·세출 규모의 합리적 판단 및 예산 편성·집행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다음과 같이 세입예산의 징수 및 편성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

첫째, 면허료 및 수수료(65-651)의 세입액 대부분에 대한 징수결정 및 수납이 지난 3년간 누락되었음.

2023회계연도 면허료 및 수수료(65-651)는 당초 예산액이 8억 5,7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총 4,900만원만을 징수결정 및 수납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5.7%에 불과한 수납률을 보였음.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13]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관련 수수료가 전혀 수납되지 않은 것에 기인함.

---

12) **「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외국정부·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13)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①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체육지도자의 종류·등급·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회계연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면허료 및 수수료	857	857	-	857	49	49	-	-	883
▪ 국립중앙극장	30	30	-	30	44	44	-	-	30
▪ 체육지도자 양성사업 수험료	**756**	**756**	**-**	**756**	**-**	**-**	**-**	**-**	**853**
▪ 기타 부정기적 수수료	71	71	-	71	5	5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료의 경우 2020회계연도까지는 당시 예산액 7억 1,9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매년 수납되었으나, 2021회계연도 이후로는 해당 항목이 전혀 수납되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수수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19	719	719	-	719	773	773	107.5	100.0	-	-
2020	719	719	-	719	891	891	123.9	100.0	-	-
2021	**719**	**719**	**-**	**719**	**-**	**-**	**-**	**-**	**-**	**-**
2022	**741**	**741**	**-**	**741**	**-**	**-**	**-**	**-**	**-**	**-**
2023	**756**	**756**	**-**	**756**	**-**	**-**	**-**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위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수수료에 대한 징수결정 및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2024년에 들어서야 이를 국고로 수납처리 하였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나,[14] 그 과정에서도 세입 항목을 '면허료 및 수수료(65-651)'가 아니라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이자 및 수익금 등 반납 항목인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으로 처리한 문제가 있었음.

세입예산 징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와 같은 부정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지난 3년간 면허료 및 수수료(65-651)의 세입에 적지 않은 흠결이 발생하였고, 국가 전체의 세입 및 재정운영 전반에도 일부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15]

둘째, 건물대여료(51-512)의 세입예산 편성에 오류가 있었고, 다른 세입예산 또한 그 추계의 오차가 커 전체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음.

먼저, 건물대여료(51-512)의 경우 2023회계연도 예산액이 72억 3,3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총 45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1억 5,900만원을 수납함에 따라 수납률이 57.5%에 그쳤음. 이는 당초 '관광진흥개발기금에 4억 5,000만원 규모'로 편성되어야 했던 '해외문

14) 2020년 8억 3,900만원, 2021년 9억 8,200만원, 2022년 10억 3,700만원

15)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수수료 등과 같이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은 항목의 경우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서 해당 내용의 설명을 아예 삭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위 사례와 같이 세입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사유 및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국회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이번처럼 자료를 삭제하고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겠음.

화홍보원 코리아센터 대여료’가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입력 오류로 인해 ‘일반회계에 45억원 규모’로 잘못 계상되었던 것이 주요 원인임.[16)]

[2023회계연도 건물대여료 세입예산 산출 및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수납액
▪ 국립국악원 사무실 임대료 등	600	475
▪ 국립국어원 사무공간 등 대여료	196	91
▪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 및 편의시설 등	656	504
▪ 국립민속박물관 전통차 판매대(카페) 등	476	27
▪ 국립박물관 박물관협회 사무실 등	208	139
▪ 국립현대미술관 카페테리아 등	121	62
▪ 국립중앙극장 공연장 대관료 등	372	882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강의실 등	9	1
▪ 국립한글박물관 강의실 등 대관료	95	3
▪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센터 대여료	**4,500**	-
▪ 기타(옛 충북도청·경북도청 등 국유재산 사용료)	-	1,975
계	7,233	4,15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54)과 기타경상이전수입(59)의 경우 2023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각각 269.4% 및 162.9% 규모가 수납되었는바, 이들 항목은 지난 2022회계연도에도 각각 291.8% 및 434.7% 규모로 수납되어 예산액과 수납액의 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한 바 있음.

16)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도 이와 동일한 오류가 남아있었으나, 당시 우리 위원회의 지적(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23. 11.) 등에 따라 2024년도 확정 예산에서는 삭제된 바 있음.

그 외에도 기타관유물대여료(51-513) 및 기타잡수입(69-691)의 경우 2023회계연도 수납률이 각각 26.0% 및 67.9%로서 매년 수납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토지대여료(51-511)의 경우 2022회계연도에는 225.3%, 2023회계연도에는 75.0%의 수납률을 기록하는 등, 세입 항목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격차가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주요 세입 항목별 예산액 대비 수납률]

(단위: %)

연 도	토지 대여료	건물 대여료	기타 관유물 대여료	기타이자 수입 및 재산수입	기타 경상이전 수입	입장료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기타 잡수입	세입 전체
2019	77.5	47.8	14.9	91.8	97.5	118.4	108.8	71.7	91.1
2020	69.3	17.1	7.5	96.3	103.1	41.4	117.8	41.4	86.5
2021	67.8	43.2	15.6	79.6	140.9	31.1	6.3	47.8	110.8
2022	225.3	70.2	20.2	291.8	434.7	115.8	6.0	66.3	328.7
2023	**75.0**	**57.5**	**26.0**	**269.4**	**162.9**	**138.9**	**5.7**	**67.9**	**141.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세입 항목을 전년 대비 3.0% 일괄 증액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해오고 있는바, 향후에는 위와 같은 편성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세입예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3) 기관운영 기본경비(일반회계, 7111-210, 7112-250)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각종 기본적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경비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7111-210)’와 그 외의 ‘기관운영 기본경비(7112-250)’로 구분되어 있음.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의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이·전용 등 3억 1,000만원 감액을 반영한 41억 4,200만원으로, 이 중 40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8,300만원을 불용하였음. 그 외 기본경비의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이·전용 등 6억 800만원 증액을 반영한 39억 9,700만원으로, 이 중 37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4,452	4,452	-	△310	-	4,142	4,059	-	83	4,498
▪ 상용임금 (110-03)	554	554	-	△122	-	432	432	-	-	569
▪ 일용임금 (110-04)	-	-	-	119	-	119	118	-	1	-
▪ 특근매식비 (210-05)	142	142	-	△5	-	137	133	-	4	149
▪ 일·숙직비 (210-06)	38	38	-	-	-	38	38	-	-	38
▪ 복리후생비 (210-12)	2,737	2,737	-	△458	-	2,278	2,226	-	52	2,748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기타운영비 (210-16)	110	110	-	41	-	151	141	-	10	115
▪ 직책수행경비 (250-02)	721	721	-	△25	-	696	692	-	4	721
▪ 특정업무경비 (250-03)	37	37	-	-	-	37	37	-	-	37
▪ 고용부담금 (320-09)	112	112	-	142	-	254	242	-	12	121
□ 기관운영 기본경비	3,389	3,389	-	608	-	3,997	3,784	-	213	3,607
▪ 일반수용비 (210-01)	1,423	1,423	-	34	-	1,457	1,445	-	12	1,437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32	332	-	237	-	570	561	-	9	420
▪ 급식비 (210-04)	2	2	-	△2	-	-	-	-	-	2
▪ 임차료 (210-07)	170	170	-	75	-	245	234	-	11	170
▪ 유류비 (210-08)	30	30	-	-	-	30	27	-	3	32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80	80	-	31	-	110	109	-	1	80
▪ 일반용역비 (210-14)	30	30	-	63	-	93	93	-	-	30
▪ 국내여비 (220-01)	316	316	-	202	-	518	504	-	14	344
▪ 국외업무여비 (220-02)	55	55	-	△28	-	27	27	-	-	55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29	229	-	30	-	259	253	-	7	256
▪ 일반연구비 (260-01)	114	114	-	-	-	114	114	-	-	114
▪ 포상금 (310-03)	22	22	-	-	-	22	12	-	10	22
▪ 자산취득비 (430-01)	585	585	-	△136	-	449	304	-	145	645
▪ 무형자산 (440-00)	-	-	-	102	-	102	102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과다한 이·전용 등 주의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회계연도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총 36차례에 걸쳐 이·전용 및 내역·세목변경 등을 실시하였음.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경비를 모아 편성해둔 것이므로, 그 특성상 매년 세부항목 및 금액에 대한 이·전용 등이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이·전용 등을 지나치게 자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세목변경을 실시한 경우도 있었고, 해당 항목을 연말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이 면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2023회계연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변경 (1.1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1	31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14	재무결산 자문용역, 언론 모니터링 보도분석 계약을 위한 부족분 마련
세목변경 (2.3.)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1	3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7	임차료 부족분 마련
내역변경 (2.8.)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7	13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7112-256)	210-07	임차료 부족분 마련
자체전용 (3.27.)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1	24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7119-256)	210-02	파견 공무원에 대한 부임비(항공료, 이전비) 및 의료보험료 등 각종 수당 지출에 따른 114백만원 추가 소요 발생
		210-01	55		210-07	
		210-01	35		220-02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4.6.)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430-01	10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7112-259)	430-01	관광수출전략추진단 출범계획에 따른 사무공간 비품구입
세목변경 (6.1.)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1	0.2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3	피복비 충당
자체전용 (7.24.)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7119-252)	210-02	5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2	장애인고용부담금 기관별 비례 부담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7119-253)	210-02	10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7119-254)	210-02	3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7119-255)	210-02	17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7119-256)	210-02	10			
	국악중고 기본경비 (7119-262)	210-02	4			
자체이용 (7.24.)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3731-300)	210-02	8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2	장애인고용부담금 기관별 비례 부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3631-301)	210-02	5			
	국립국악원 운영 (3431-300)	210-02	20			
	KTV 운영 (3831-300)	210-02	15			
자체이용 ·전용 (7.26.)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7119-259)	210-02	2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2	장애인고용부담금 기관별 비례 부담 대상 이·전용 사업 정정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2	20	국립국악원 운영 (3431-300)	210-02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7.28.)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7119-260)	210-02	3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2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 부족분 마련
세목변경 (9.7.)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1**	6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14	행사 관련 예산 마련
세목변경 (9.12)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1**	15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7**	임차료 부족분 마련
세목변경 (9.26.)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1**	2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7**	임차료 부족분 마련
내역변경 (10.4.)	종무실 기본경비 (7112-251)	240-02	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40-02**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 부족분 마련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7112-252)	240-02	2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7112-254)	240-02	1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7112-255)	240-02	2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7112-256)	240-02	2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7112-257)	240-02	5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7112-260)	240-02	1			
	체육국 기본경비 (7112-261)	240-02	1			
자체전용 (10.4.)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7119-251)	240-02	1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40-02**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업무 관련 비용 부족분 마련
	한국예술종합 학교 기본경비 (7119-252)	240-02	1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7119-253)	240-02	2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7119-255)	240-02	1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7119-256)	240-02	10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7119-260)	240-02	1			
	국악중고 기본경비 (7119-262)	240-02	0.2			
자체전용 (10.12.)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111-210)	210-12	17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1**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업무 관련 비용 부족분 마련
		210-12	50		210-07	
		210-12	30		210-09	
		210-12	170		220-01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7119-253)	210-01	30		**210-01**	
내역변경 (10.20.)	저작권국 기본경비 (7112-253)	240-02	1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40-02**	필수적인 업무추진비 여유분 확보를 위한 부족분 마련
	관광정책국 기본경비 (7112-259)	240-02	2			
자체전용 (10.20.)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118-221)	240-02	1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40-02**	필수적인 업무추진비 여유분 확보를 위한 부족분 마련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7119-254)	240-02	1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7119-259)	240-02	2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이용 (10.30.)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2731-303)	320-09	25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2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금 마련
	국립극장 운영 (3231-300)	210-12	20			
	국립국악원 운영 (3431-300)	210-12	20			
	한글박물관 운영 (3731-300)	260-01	20			
자체전용 (10.3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7102-115)	110-01	31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2	
세목변경 (11.6.)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1	3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9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마련
내역변경 (11.1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40-02	3	관광산업정책관 기본경비 (7112-260)	240-02	업무추진비 부족분 마련
자체전용 (11.17.)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430-01	102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440-00	임대보증금 부족분 마련
자체전용 (11.23.)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430-01	2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2	공공요금 부족분 마련
내역변경 (11.2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40-02	1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7112-254)	240-02	업무추진비 부족분 마련
내역변경 (12.1.)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40-02	1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7112-256)	240-02	업무추진비 부족분 마련
자체전용 및 내역변경 (12.14.)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7112-257)	210-12	5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1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부족분 마련
	국민소통실 기본경비 (7112-257)	210-12	4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20-01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111-210)	250-02	2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1**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40-02**	**2**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7112-256)	240-02	
		210-02	3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1**	
		210-04	2			
		210-09	2			
		210-14	28			
		220-02	28		220-01	
자체전용 (12.18.)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7132-300)	210-01	20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2-250)	**210-01**	기관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부족분 마련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회계연도가 개시된 직후인 1월·2월부터 일반수용비(210-01) 일부를 일반용역비(210-14) 및 임차료(210-07) 등으로 변경하고, 기관운영 기본경비(7112-250) 내의 임차료(210-07) 일부를 예술정책관 기본경비(7112-256) 내의 임차료(210-07)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처음부터 2023년도 예산이 실제 수요에 맞도록 면밀하게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이미 2월에 부족한 임차료(210-07)를 충당하기 위해 일반수용비(210-01)로부터 세목변경이 있었음에도, 또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항목 간에 세목을 재차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일반수용비(210-01)를 예산이 부족한 다른 여러 항목에 나눠주는 재원으로 활용하다가 연말에 오히려 일반수용비(210-01)가 부족하게 되자 거꾸로 다른 항목으로부터 다시 변경해오기도 하였음.

또 이와 반대로, 10월경 각 실·국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관서업무추진비(240-02)를 일정 금액씩 거두어 기관운영 기본경비(7112-250)의 관서업무추진비(240-02)로 변경한 후, 연말에 이를 다시 해당 실·국에 일부 되돌려주는 등의 내역변경도 있었는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을 이·전용하거나 내역·세목변경을 하는 과정에서도 향후의 집행계획이나 실제 예산 소요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의 편성·집행 시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기본경비의 과다한 이·전용 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2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청년인턴 추진계획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 인건비 7억 2,900만원을 기본경비로 전용하여 총 57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청년인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의·확정 단계에서는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6조[17]제3항에 저촉된다는 문제가 있음.

17)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2023회계연도 청년인턴 채용 관련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7102-115)	110-01	3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111-210)	110-14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7102-116)	110-01	57		
본부인건비 (7101-100)	110-01	86		
	110-01	8		320-09
국립박물관 인건비 (7102-103)	110-01	186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118-213)	110-04
	110-01	17		320-09
국립국어원 인건비 (7102-104)	110-01	72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118-214)	110-04
	110-01	6		320-09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7102-105)	110-01	86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118-215)	110-04
	110-01	8		320-09
국립국악원 인건비 (7102-109)	110-01	129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118-219)	110-1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건비 (7101-100)	110-01	7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118-223)	110-14
계		72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⑥ (생 략)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하여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각 중앙관서별로 배정된 인원 이상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여야 했으며, 채용 예산은 기관별 자체예산을 활용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산을 전용하여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전용 재원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점, ② 면밀한 계획수립과 구체적인 심사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그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③ 국회의 심의 없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며,[18]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 또한 그러한 취지에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등을 위한 예산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바,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

18) 정부 ‘청년인턴’ 사업 전반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종합)」, 2023. 11. 참조

(4) 정책연구개발(R&D)(일반회계, 7132-600)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정책연구개발(R&D)’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정책현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정책연구용역 실시를 위한 ‘정책연구비(260-02)’로 편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3,900만원을 포함한 22억 3,400만원으로, 이 중 15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정책연구개발(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정책연구개발 (R&D)	1,795	1,795	439	-	-	2,234	1,597	505	132	1,616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월·불용 증가 및 수의계약 과다 주의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회계연도 본 사업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총 34건(전년도 이월 사업 제외), 17억 6,200만원 규모(계약액 기준)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2023회계연도 정책연구개발 용역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명	계약방식	금액	수행기관	연구기간		공개여부
				시작일	종료일	
(가칭)이건희 기증관 전시프로그램 연구	제한경쟁 계약	97	㈜리마크프레스	23.02.20	23.08.19	비공개
영상저작물 수익 분배에 관한 해외 법제 및 실태 연구	**수의계약**	44	한국저작권 위원회	23.02.21	23.06.20	공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탄소발자국 측정 정책연구	**수의계약**	50	재단법인한국 기후변화연구원	23.03.06	24.03.02	공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표준위원회(CWS) 협상 저작권 분쟁 대응방안 연구	**수의계약**	34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3.03.08	23.09.03	공개
OTT 구독료 소득공제 연구	제한경쟁 계약	39	(사)미디어 미래연구소	23.03.24	23.09.19	공개
전통 초상화 활용 방안 연구	**수의계약**	78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3.03.28	23.11.28	공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수의계약**	80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3.04.24	23.12.20	공개
저작권 보상금 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의계약**	39	한국저작권 위원회	23.04.25	23.09.21	공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의 손실액 추정	**수의계약**	53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3.05.16	23.12.12	부분공개
예술인 실태조사 운영방안 연구	**수의계약**	71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3.05.19	23.12.14	공개

연구명	계약방식	금액	수행기관	연구기간		공개여부
				시작일	종료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수립을 위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 연구	**수의계약**	21	순천향대학교	23.05.22	23.10.18	공개
2023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수의계약**	20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	23.05.26	23.08.23	공개
대전환 시대의 미래 문화전략 연구	**수의계약**	49	한국행정학회	23.05.26	23.12.21	공개
인쇄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수의계약**	22	(사)대한인쇄문화협회	23.06.08	23.12.04	공개
예술인의 산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제한경쟁계약	49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3.06.12	23.12.08	공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제한경쟁계약	9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3.06.13	24.03.08	공개예정
민원서비스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수의계약**	20	주식회사 더디랩	23.06.14	23.12.10	공개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 연구	**수의계약**	5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3.06.22	23.12.18	공개
초등학생의 씨름 교실 참여가 운동량과 체력 및 그릿(GRIT)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의계약**	40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3.06.23	23.12.31	공개
스포츠 인권침해 및 비리사건 처리 개선방안 연구	제한경쟁계약	72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3.06.26	23.12.17	공개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 수립 연구	**수의계약**	53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3.06.27	23.12.23	공개
서예 실태조사 연구	**수의계약**	49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23.07.04	24.02.28	비공개
한국영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 수립 기초연구	**수의계약**	40	영화진흥위원회	23.07.06	23.12.02	공개

연구명	계약방식	금액	수행기관	연구기간		공개여부
				시작일	종료일	
사이시옷 표기 정책 개선 방안별 사회적 영향 연구	**수의계약**	148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3.07.07	24.03.29	비공개
옥외매체(전광판)를 활용한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	**수의계약**	39	(사)한국 광고학회	23.07.12	23.10.09	공개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의 심층평가	**수의계약**	49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3.08.02	24.01.27	공개
문화 디지털 혁신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 연구	**수의계약**	21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23.08.04	23.10.02	공개
제1차 체육인복지 증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의계약**	74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3.09.06	24.02.23	공개예정
지역문화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수의계약**	98	재단법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3.10.04	24.05.31	미완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초 연구	**수의계약**	20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23.10.23	23.12.21	공개
미술진흥법 하위 법령 제정 연구	**수의계약**	36	한국법제연구원	23.10.30	24.04.26	공개예정
한국문학번역 분야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수의계약**	40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3.07.10	23.11.21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안정화 및 연계활용 방안 연구	**수의계약**	50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3.12.14	24.06.10	미완료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개선 방안 연구	제한경쟁 계약	26	사단법인 위노베이트	23.12.28	24.04.25	공개예정
계(총 34건)		1,762				

* 주: 음영 표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한 용역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 및 불용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023회계연도 정책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위 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총 9건의 용역이 다음연도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설정되었고, 그에 따라 5억 5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예산액 대비 28.1%), 불용액은 1억 3,200만원 발생하였음(7.4%).

이처럼 정책연구용역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 것은 처음부터 정책연구 관련 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해당 예산이 실제 정책연구 수요에 맞게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과거 예·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 등에서도 정책연구용역의 이월집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어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음.

정책연구와 관련해서는 긴급한 정책 소요의 발생이나 연구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연말이 되어서야 연구가 시작되거나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예산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월액 및 불용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음.

[최근 3년간 정책연구개발(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1,940	1,940	527	2,467	2,233	115.1	90.5	137	97
2022	1,940	1,920	137	2,057	1,556	81.0	75.6	439	62
2023	1,795	1,795	439	2,234	1,597	89.0	71.5	505	13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둘째,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비율이 과다한 측면이 있음.

앞의 용역 실시 현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회계연도에 계약을 체결한 전체 34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82.4%에 해당하는 28건의 계약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음.

연구용역의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되어있는바, 같은 법 제7조[19]에 따르면 일반경쟁에 부치는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 집행지침 또한 불가피하게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과거 예·결산 심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지적이 제기되어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된 바 있음.

그럼에도 아직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부분의 정책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5)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일반회계, 7133-500)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보화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문화정보원에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을 지원하고, ‘문화정보서비스 운영지원’, ‘문화정보화기반 구축’, ‘문화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및 ‘문화정보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103억 9,700만원으로 모두 한국문화정보원에 교부되었고, 이 중 98억 7,700만원이 실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10,397	10,397	-	-	-	10,397	10,397 [9,877]	-	-	9,421
▪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운영 지원	2,854	2,854	-	-	-	2,854	2,854 [2,711]	-	-	2,910
▪ 문화정보서비스 운영 지원	2,536	2,536	-	-	-	2,536	2,536 [2,490]	-	-	2,229
▪ 문화정보화 기반 구축	631	631	-	-	-	631	631 [588]	-	-	444
▪ 문화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3,322	3,322	-	-	-	3,322	3,362 [3,103]	-	-	2,906
▪ 문화정보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1,054	1,054	-	-	-	1,054	1,054 [985]	-	-	93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예산 편성·집행 방식 개선 필요>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기본법」 제11조제3항[20]에 따라 지정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각종 정보화 사업을 보조사업 형태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임.

한국문화정보원의 2024년도 기준 예산은 총 200억 6,700만원이고, 전체 인원은 총 65명으로, 각종 문화정보서비스의 운영, 문화정보화 기반구축 등 고유사업 외에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문화비 소득공제 활성화 지원 및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주요 정보화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해오고 있음.

다만, 한국문화정보원에 교부되고 있는 보조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편성·집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첫째,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경비 외에도 각 사업비에 분산·편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국문화정보원에는 44명의 정규직 직원과 22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근무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이 중 정규직 30명과 무기계약직 6명에 대한 인건비만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운영 지원'이라는 기본경비성 내역사업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는 '문화정보화 개방체계 구축' 및 '안전

20)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체계 구축',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와 같은 개별 사업비 내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한국문화정보원 인건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내역사업명 (보조사업명)	금 액	내 용
한국문화정보원 운영(7133-500)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운영 지원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2,140**	**정규직 30명, 무기계약직 6명**
	문화정보서비스 운영지원, 문화정보화 기반 구축, 문화정보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342	**무기계약직 6명,** 인턴 2명
	문화정보화 개방체계 구축 (문화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및 개방 활성화)	251	**무기계약직 2명,** 계약직 3명, 인턴 1명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7133-502)	안전관리체계구축 (사이버안전센터 전담운영)	514	**정규직 9명, 무기계약직 1명**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7133-520)	실감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구축	50	계약직 1명
	지능형 멀티큐레이팅봇 구축	98	**무기계약직 1명,** 계약직 1명
	문화기반 가상융합세계 조성	47	**무기계약직 1명**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 활성화(1333-301)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657	**정규직 3명, 무기계약직 4명,** 계약직 3명, 인턴 2명, 전문변호사 3명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1531-304)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문화비 소득공제 활성화 지원)	119	**정규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계약직 1명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1533-306)	전통문화 융합 활성화 (전통문양 산업활용 기반 구축)	40	계약직 1명 (10개월)
지역문화통합정보 시스템 구축(2135-500)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30	**정규직 2명,** 인턴 2명
계		**4,389**	**정규직 44명, 무기계약직 22명,** 계약직 10명, 인턴 7명, 전문변호사 3명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분산·편성될 경우 기관의 전체 인력 현황 및 인건비 규모 등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인력·예산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각 직원의 인건비가 편성된 사업과 해당 직원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업비 내역 산출 등의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공기관 전체 대상 인건비 인상률의 미적용이나 인력 운용에 수반되는 기타비용의 미반영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한국문화정보원의 각 사업비에 분산·편성되어 있는 인건비를 기본경비에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둘째,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의 세부 내역과 한국문화정보원에 실제 교부된 보조사업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음.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2023년도 예산에는 본 사업의 내역사업이 한국문화정보원의 인건비·경상비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운영 지원’과 고유사업비인 ‘문화정보서비스 운영지원’, ‘문화정보화 기반 구축’, ‘문화정보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문화정보화 개방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그러나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에 교부한 보조사업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과 ‘문화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및 개방 활성화’ 두 가지로, 각 사업의 금액과 내용 등이 예산 내역과 상이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내역사업 및 실제 보조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액	실제 보조사업명	교부액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운영 지원	2,854 (인건비 2,229 및 경상비 625)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6,407
문화정보서비스 운영 지원	2,536		
문화정보화 기반 구축	631		
문화정보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386 (다부처 연계 플랫폼 서비스)		
	668 (다부처 문화정보 연계체계 구축)	문화데이터 연계체계 구축 및 개방 활성화	3,990
문화데이터개방체계 구축	3,322		
계	10,397	계	10,39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내역사업의 구분은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보조사업이 반드시 해당 내역사업과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나,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세부 구분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실제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해당 구분을 무시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편성된 보조금을 경상경비성 목적에 사용할 여지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예산의 편성 및 보조금 교부 방식 등을 개선하여 내역사업과 보조사업의 구분 및 사업 내용 등이 최대한 일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 문화정책관

(1)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일반회계, 1531-304)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사업은 문화영향평가제 운영,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문화여가 정책기반 구축 등 문화 정책 진흥 및 제도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90억 1,500만원 중 87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9,015	9,015	-	-	-	9,015	8,792	-	223	7,417
▪ 문화영향평가제 운영	1,594	1,594	-	-	-	1,594	1,436 [1,436]	-	158	1,515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4,135	4,135	-	-	-	4,135	4,101 [3,902]	-	34	1,470
▪ 남북문화교류 기반조성	200	200	-	-	-	200	182 [182]	-	18	102
▪ 문화여가 정책기반 구축	417	417	-	-	-	417	405 [405]	-	12	50
▪ 연결사회 지역거점 구축	1,285	1,285	-	-	-	1,285	1,285 [1,076]	-	-	-
▪ 문화비 소득공제 서비스체계 구축	1,010	1,010	-	-	-	1,010	1,010 [895]	-	-	1,220
▪ 여가친화인증기업 선정·지원	374	374	-	-	-	374	374 [344]	-	-	35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예산감액 시 신중한 접근 필요>

내역사업 '문화다양성[21] 보호 및 증진'은 국적,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41억 3,500만원 중 41억 100만원이 집행되었고,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4,135	4,135	-	-	-	4,135	4,101 [3,902]	-	34	1,47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세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문화다양성 확산		2,231	2,230	-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200	2,200	-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31	30	-
문화다양성 교육		500	500	620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운영		504	504	500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분석		200	178	200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200	189	150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 지원(창원)		500	500	-
계		4,135	4,101	1,47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1)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 신념, 가치, 언어, 전통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2001년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이 공식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2010년 7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면서 협약 이행을 위하여「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동 내역사업 내 ‘문화다양성 확산’은 이주민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지역민 간 소통·교류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및 타문화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舊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2년 연속지원’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공모하였음.

[2023년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계획]

구분	내 용
사업기간	**2023.3.~2024.12.(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2년간 연속지원)** - 단, 사업평가를 통해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대비 사업 추진실적이 미비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2024년도 예산 반영에 따라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대상	지자체 출자·출연 문화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문화예술유관기관
지원내용	문화다양성확산사업 사업비(국고보조금), 관계자 대상 교육 및 워크숍 등
지원규모	약 20개 기관 선정 후 단계별 지원(기관 당 2,000만원~1억 5,000만원) - 준비: 2,000만원~3,000만원 / 심화: 5,000만원~8,000만원 / 확산: 1억원~1억 5,000만원 ※ 동일한 금액을 2년 간 지원하며, 자부담금은 1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2년차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에 기선정된 22개 각 지역기관은 계획된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한 상황으로, 당초 2년 연속 지원체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의도한 바와 달리, 오히려 지역 사업 추진 일정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문체부는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4년 문체부 소관 예산에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이관 등 재정사업 조정은 없어 문화다양성 분야 사업 자체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2년차 사업 전면 지원 중단은 관련 분야 민간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정부 재정사업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문체부는「문화기본법」및「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등 문화다양성 관계 법률의 소관부처로서,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 연차보고서 작성 등 기본적인 정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위원회 참석비, 여비, 인쇄비 등)도 2024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기본경비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상황임.

결론적으로 재정사업 간 재원 조정은 현안 및 정책우선순위 판단에 따라 유동적인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나, 이미 공표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조정은 정부 시행 사업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한편,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일반회계, 1533-301)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사업은 훼손·멸실 위기에 있는 민간소장 국학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보존을 통해 향후 K-콘텐츠 자산을 축적하려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185억 1,8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8,518	18,518	-	-	-	18,518	18,518 [16,440]	-	-	13,853
▪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9,576	9,576	-	-	-	9,576	9,576 [9,286]	-	-	7,997
▪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2,532	2,532	-	-	-	2,532	2,532 [2,486]	-	-	46,522
▪ 국학진흥 청년 일자리 창출	3,040	3,040	-	-	-	3,040	3,040 [2,934]	-	-	2,100
▪ 국학진흥 실버 일자리 창출	1,800	1,800	-	-	-	1,800	1,800 [1,734]	-	-	500
▪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570	1,570	-	-	-	1,570	1,570 [-]	-	-	74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취지에 적합한 사업수행방식을 강구할 필요>

내역사업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인문학 전공 청년들을 선발하여 전통 기록자료 국역 및 디지털화 사업에 투입하여 전통기록 유산 보존 및 대국민 서비스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30억 4,0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국학진흥 청년 일자리 창출	3,040	3,040	-	-	-	3,040	3,040 [2,933]	-	-	2,1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한국국학진흥원(영남권) 및 한국유교문화진흥원(충청권) 등 2개 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추진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실집행액은 29억 3,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7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보조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세목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320	01	한국국학진흥원	2,200	2,200	2,200	2,200	-	2,200	2,170	-	30
320	01	한국유교문화진흥원	840	840	840	840	-	840	763	-	77
계			3,040	3,040	3,040	3,040	-	3,040	2,933	-	10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인문학 분야 출신의 청년(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 장기적으로는 국학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연령별 고용 내역을 살펴보면 40세~49세 26명, 50세 이상 13명으로, 전체 고용인원(1개월 이상 근무자) 156명 중 39명(25%)이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연령별 고용 내역]

(단위: 명)

보조사업자	고용인원	연령 구분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 이상
한국국학진흥원	96	44	37	12	3
한국유교문화진흥원	60	9	27	14	10
계	**156**	**53**	**64**	**26**	**13**

* 주: 고용인원은 1개월 이상 근무자를 기준으로 함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사업 내 연령에 따른 보수 집행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보수 집행액 21억 4,000만원 중 40세 이상 고용인력에 지급된 보수는 총 6억 7,900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31.7% 수준임.

[2023회계연도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보수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자	보수 집행액(구성비)		
	소계	39세 이하	40세 이상
한국국학진흥원	1,517 (100.0%)	1,094 (72.1%)	423 (27.9%)
한국유교문화진흥원	624 (100.0%)	368 (58.9%)	256 (41.1%)
계	**2,140 (100.0%)**	**1,462 (68.3%)**	**679 (31.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40세 이상 채용인력의 대부분은 박사급 인력으로서 국역·표점[22]·국학자료 목록 정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체부는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양질의 성과물 도출을 위해 전문인력의 채용 및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청년 일자리 확충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한 사업이라는 점, 국역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현재 각 진흥원 내 연구인력이 수행하는 직무로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진흥원 자체 경비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통해 청년층이 아닌 인력을 전체인원 대비 25% 수준으로 채용하면서 그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 집행액의 30%를 초과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적합한 사업수행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문체부 및 피보조기관은 동 사업 수행 시 청년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한국국학진흥원 등 피보조기관 내 전문인력이 보조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업추진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에 투입된 재원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국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사업목적에 온전히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2) '표점(標點)'은 구두점이 없거나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한문 원문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온점, 반점 등 적절한 표점부호를 표기하여 문장을 구분하는 작업을 말함.

<보조사업의 사전절차,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강화 필요>

내역사업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사업은 부안 도동서원 옛터에 전라유학자산의 발굴·연구·활용 등을 위한 전라유학진흥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15억 7,000만원 전액 집행되었으나, 보조사업자(전라북도)의 실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음.

[2023회계연도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570	1,570	-	-	-	1,570	1,570 [-]	-	-	13,85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는 100억원(국비보조율 50%)이며,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종지(始終址)인 부안 도동서원 옛터(전북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473)에 대지면적 7,028㎡, 연면적 1,912.79㎡ 규모의 전라유학관 및 디지털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종지(始終址)인 부안 도동서원 옛터에 전라 유학자산의 발굴·연구·활용 사업거점 조성
사업위치	전북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 473 일원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2021 ~ 2025년,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 지방비 50억원)
추진경과	'20.10. 건립부지 확정 '21.01. 부안군 건립부지 매입 결정 '21.02.~'21.05.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1.02.~'21.05. 전라북도 지방투자심사 및 중기계획 반영 '21.09.~'22.05.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2.~'22.05. 부안 도동서원지 유적 발굴조사 '22.09. 전라북도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22.11.~'23.11. 부안도동서원지 유적 추가 발굴조사 '23.01.~'23.11. 설계용역 '23.12.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 계약 '25.12. 준공 예정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동 사업의 사업 경과를 살펴보면, 2020년 건립부지가 확정된 이후 2021년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두 차례에 걸친 도동서원지 유적 발굴조사('22.2~5. / '22.11.~'23.11.)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고, 2023년 12월에야 시공업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현재 2025년 1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음.

이는 당초 계획 대비 약 18개월 지연된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2년 설계를 거쳐 2023년 착공, 2024년 6월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2023년 말 설계가 완료되면서 2024년 2월 착공되었음.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사업 계획 대비 추진현황]

사업 절차	당초 계획	변경 계획
기본계획 수립	2021년 완료	2022년 5월 완료
건립부지 발굴조사	2022년 5월 완료	2023년 11월 완료
건축설계공모	2022년 9월 완료	2023년 3월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	2022년 9월~12월	2023년 4월~11월
착공 및 준공	2023년 3월~**2024년 6월**	2024년 2월~**2025년 12월**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산의 이월도 반복되고 있는데, 2022년 설계비 17억 5,000만원에 이어 2023년 공사비 15억 7,000만원이 전액 이월되면서, 2022~2023년 교부된 국비 33억 2,000만원 중 2023년 말 기준 실집행된 금액은 설계비 4억 1,600만원으로, 현재 2024년도로 이월 및 재이월된 국비는 총 29억 400만원임.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사업 연도별 재원 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지방비		-	-	-	1,500	1,750	1,750
국비	예산액	500 (설계비)	200 (기본계획 수립)	1,750 (설계비 등)	1,570 (공사비)	740 (공사비)	740 (공사비)
	예산현액	500	200	1,750	3,320	3,644	
	실집행액	0	108	-	416		
	불용액	500	92	-	-		
	이월액	-	-	**1,750**	**2,90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제4회 추경에 반영된 설계비 5억원은 전액 불용되었는데,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도 자체) 및 지방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비 등 5억원을 편성했을 뿐 아니라, 다음 해인 2021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2억원 중 1억 800만원만 집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전절차 이행, 소요예산 규모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또한,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2022년의 설계비는 전라북도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9월) 이전인 6월 및 8월에 교부되었으나 이후 2차 발굴조사가 결정됨에 따라 전액 이월되었고, 2023년의 경우에도 설계용역이 연말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공사비 15억 7,000만원의 집행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말 2차례(11월, 12월)에 나누어 교부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및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23]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

2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 략)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각각 50% 비중으로 투입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설계비 등은 국비에서 충당하고 이후 공사비 50억원을 지방비로 매칭할 계획인데,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 초기비용을 국비로 충당할 경우 이월 등으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 및 설계 등 사업 초기 절차 비용을 지방비로 부담한 이후 사업추진계획 및 일정, 소요예산 규모가 확정된 경우에 추가 비용을 국비로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재원 활용 방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문체부는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시 사전절차 및 집행가능성, 소요재원규모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사업 추진경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일반회계, 1533-306)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사업은 전통문화 청년 창업 지원, 전통문화 전문인력 육성 및 실태조사, 전통문양 콘텐츠 구축 등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58억 5,0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음.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5,850	5,850	-	-	-	5,850	5,850	-	-	8,936
▪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	3,230	3,230	-	-	-	3,230	3,230 [2,915]	-	-	4,630
▪ 전통문화 융합 활성화	2,950	2,950	-	-	-	2,950	2,950 [2,491]	-	-	2,306
▪ 전통문화 해외진출 지원	-	-	-	-	-	-	-	-	-	1,000
▪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	-	-	-	-	-	-	-	-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기간 이후 기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내역사업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 사업은 전통문화의 전승 및 계승, 산업화 정착을 위해 전통문화 분야 예비창업 보육, 초기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및 보육·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24]으로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은 32억 3,0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을 반영한 피보조사업자의 예산현액은 36억 5,300만원이며, 실집행액은 33억 3,8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 보조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세목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320	0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3,230	3,230	3,230	3,230	423	3,653	3,338	311	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타 산업 분야의 청년 대상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 산업의 경우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전통문화 분야[25]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가의 산업진출 확대 및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목적을 지니고 있음.

---

24) 2023년 기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1억원임(1년차 2,000만원, 2년차 3,000만원, 3년차 5,000만원).

25) 문체부는 전통문화 산업 분야를「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자목에 규정된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간주하고 있음.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전통문화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으로, 예비창업자는 최대 1천만원, 초기창업기업은 3년 간 최대 1억원이 지원됨.

[2023년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예비창업	·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사업화 아이디어 구체화 등 최종 상격에 따라 최대 10백만원 시상	입선 ~ 10백만원
초기창업 (창업 3년 이내)	· 판로 개척,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3년간 최대 1억원 (1년차) 20백만원 (2년차) 30백만원 (3년차) 50백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의 주된 목적이 전통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창업 지원사업의 실질적 성과 측정 및 결과 환류를 위해서는 지원 기간 이후의 기업이 나타내는 성과(생존율, 매출성장률, 투자 및 채용 성과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문체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 지원기간인 3년이 경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창업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재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지원 3년차 창업기업의 생존율로 설정되어 있는데, 지원기업은 대부분 초기 창업기업으로 2023년 전체 평균 매출액이 9,150만원이고, 지원금이 매년 2,000만원~5,000만원 수준

으로 매출액 대비 지원금 비중이 높아 지원기간 내에 폐업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원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표로 보임.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전통문화 초기 창업기업 3년 생존률 (단위: %)	목표	-	-	-	50	81	지원 3년차 창업기업 생존율	생존기업수/지원기업수	창업지원기업 추적조사
	실적	-	100	96	96	-			
	달성도	-	-	-	192.0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문체부는 지원 기간 이후의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환류하는 한편, 성과지표도 지원 사업 이후 자립한 기업들이 실제 시장에서 거둔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피보조기관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이며, 2023년 기준 예산 32억 3,000만원 중 이월집행액을 포함한 집행액은 31억 8,500만원임.

그런데 상기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내 임차료 1억 2,900만원은 공진원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 일부의 임차료 및 관리비로 집행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 600만원은 공진원 직원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공진원 경상경비로서, 동 사업에서 집행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26].

[전통문화 창업 활성화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보조비목	집 행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인건비	사업인력 보수	141	120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일반용역비 등	546	525
임차료	건물 임차료(1~9월)	131	129
일반용역비	홍보물 디자인, 행사 대행 등	246	246
여비	출장비 등	3	2
업무추진비	간담회, 업무회의비	5	4
직무수행경비	직원 직급보조비	6	6
보전금	공모전 상금	54	54
민간이전	창업기획자 교부금 및 사업인력 고용부담금	2,475	2,474
계		3,230	3,18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6) 이 외에 건물임차료의 3개월분(4,300만원)은 ‘전통문화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사업에서, 공진원 내 보직자의 직급보조비(2,300만원)는 ‘한식문화 홍보’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집행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진원의 운영경비는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진흥(1635-300)’의 내역사업인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으므로, 문체부는 사업비와 공진원 운영경비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예술정책관

(1)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일반회계, 1632-324)

<사업개요 및 결산 내역>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은 공연연습공간의 제공, 공연 창제작 유통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공연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창작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예산현액 355억 1,500만원 중 348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공연예술 진흥 기반 조성	35,483	35,483	-	32	-	35,515	34,814 [30,983]	180	521	22,197
▪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3,146	3,146	-	32	-	3,178	3,177 [859]	-	-	725
▪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5,367	5,367	-	-	-	5,367	5,367 [5,363]	-	-	7,842
▪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4,120	4,120	-	-	-	4,120	4,120 [3,913)	-	-	2,630
▪ 공연예술통합 전산망 운영	2,000	2,000	-	-	-	2,000	2,000 [1,967]	-	-	2,000

▪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K-뮤지컬)	3,200	3,200	-	-	-	3,200	3,200 [2,931]	-	-	3,300
▪ 전국공연예술 창제작 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15,600	15,600	-	-	-	15,600	15,600 [15,010]	-	-	-
▪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지원	650	650	-	-	-	650	650 [650]	-	-	400
▪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지원	1,000	1,000	-	-	-	1,000	500 [0]	-	500	3,000
▪ 뮤지컬콤플렉스 조성	200	200	-	-	-	200	-	180	20	-
▪ 2023 서울국제하모니카 페스티벌 개최	200	200	-	-	-	200	200 [200]	-	-	2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편성 사업 지연 해소 및 실집행 관리 강화>

동 사업의 내역 사업인 '**연극교육체험관 조성**'은 연극 특화도시를 조성하여 연극 공연 관람 및 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수도권 국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또한, 내역 사업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 폐·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민간 공연예술단체와 예술가를 위한 연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공연연습공간의 신규 조성을 추진을 위한 예산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사업 개요]

사업명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제주 공연예술연습공간 신규 조성
사업기간	2023.7~2026.5.	2023.2.~2024.6.
사업위치	경남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 82번지 일원	제주시 삼도2동 108-13외 4 (지하 3층/지상 8층) *구) 아카데미극장
총사업비	190억원 (국비 92억 5,000만원, 지방비 97억 5,000만원)	20억원
수행방식	자치단체 보조사업 (경상남도)	자치단체 수행 (제주도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두 사업은 공통으로 2023년에 세부사업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및 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부족하여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먼저,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사업**의 경우 2023회계연도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계획하고 예산 1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총사업비 규모 및 건축설계 대가 요율 검토 결과 총사업비 규모에 적절한 설계비는 10억원으로 국비 5억원이 지원되는 것이 적절한 바, 설계비가 적정 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예산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5억원은 불용하였음.

또한, 사업 공모를 통해 2023년 7월에 경상남도 밀양시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였으나, 밀양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27] 진행 등 사전 절차가 수행되어야 함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회계연도 말인 11월과 12월에서야 5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교부된 보조금 5억원은 실집행 단계에서 전액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현재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보조사업자는 2024년 7월에서야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당초 2024년 이내에 1년 차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던 것에 비해 지연되고

---

27)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시·도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있으며, 이로 인해 2024년에 편성된 1년 차 공사비 예산 30억원 역시 집행 단계에서 차년도로 이월 또는 불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추진 내용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공모를 통한 사업수행자(밀양시) 선정	2023.7.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2023.8.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2023.10.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023.11.
밀양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2023.12.
건축기획 용역 완료	2024.1.
건축 설계공모	2024.2.~2024.7.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4.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으로, **제주 공연예술연습공간 신규 조성 사업**의 경우 당초 2024년 1월에는 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연습공간을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설계 및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업 기간이 6개월 순연되었음.

이에 보조사업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2023년 12월이 되어서야 간접보조사업자인 제주도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교부된 보조금 20억원은 전액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제주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추진 내용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기획설계	2023.7~2023.9.
실시설계 및 철거 실시	2023.12.
실시설계 완료	2024.4.
철거 및 리모델링	2023.12.~2024.6.
리모델링 공사 준공 및 개관 준비	2024.6.~2024.10.
개관	2024.1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처럼 2023년 신규로 편성된 공간 조성 사업인 '연극교육체험관 조성'과 '제주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 사업의 예산이 회계연도 말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내 실집행이 완료되지 못하고 전액 차년도로 이월된 바, 이는 보조금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8]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신규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계획과 예산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이월 및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2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의 예산 편성 필요>

내역사업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에는 세부사업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의 운영 지원을 위한 경상경비 1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 예산의 일반수용비에서 상당액이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추진에 집행되었음.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3,146	3,146	-	32	-	3,178	3,177 [859]	-	-	725
- 일반수용비 (210-01)	106	106	-	-	-	106	106	-	-	106
- 국내여비 (220-01)	44	44	-	25	-	69	68	-	1	44
- 국외여비 (210-01)	14	14	-	7	-	21	21	-	-	12
- 사업추진비 (210-01)	7	7	-	-	-	7	7	-	-	7
- 민간경상보조 (210-01)	2,975	2,975	-	-	-	2,975	2,975 [657]	-	-	556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년을 맞이하여 개최하며 기초예술 및 대중예술 분야별 발전 공헌자를 중심으로 국내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2023년에도 1월 4일 예술의전당에서 동 행사를 개최하여 다과회 및 전시 관람 등을 진행하였음.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행사 개요]

일시	2023.1.4.(수) 18:25~18:55
장소	예술의전당 음악당 행사장
참석자	원로 및 신진예술인, 장애예술인, 청년예술인, 유관대표 협회장 80명 내외 (2022년 활약이 돋보이는 문화예술인, 기초예술·대중예술 분야별 발전 공헌자 중심)
형식	스탠딩 다과회 및 전시관람
소요예산	공간조성, 전시준비, 케이터링 등 4,545만 500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의 케이터링, 전시준비 및 공간조성 등 행사 진행을 위해 4,545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예산을 세부사업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과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1632-327)’**에 각각 편성된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음.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예산 집행 내역]

세부사업명	비목	지출건명	금액(원)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632-324)	210-01	신년인사회 다과비 등	1,565,000
		신년인사회 전시출입구 시트지 제작 및 시공대행	3,267,000
		신년인사회 사회자 등 사례비	3,000,000
		신년인사회 전시 작가 출품 사례비	3,200,000
		신년인사회 작품반출입 및 설치대행	4,988,500
		신년인사회 전시 바닥재 구입 및 시공대행	4,940,000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1632-327)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케이터링	11,950,000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공간조성	12,540,000
계			45,450,5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가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소관 부서의 경상경비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비를 동일한 행사의 추진을 위해서 별도의 내역 변경 없이 추진한 것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의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심의·편성한 국회의 예산 편성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약 4,500만원 가량으로, 두 세부사업에 편성되는 경상경비 전체인 1억 7,600만원의 25%에 해당하는 큰 비중인바, 해당 행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성격의 행사임을 고려할 때,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여 사전에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아 단일한 세부사업에서 집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세부사업 간 구분을 고려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의 행사 계획을 정기적으로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일반회계, 1632-326)

<사업개요 및 결산 내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은 공연예술 산업의 발전과 문화시설의 지역확산을 통해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문화예술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예산현액 258억 6,000만원 중 209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48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18,721	18,721	7,085	-	-	25,806	20,984	-	4,822	43,179
▪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5,838	5,838	6,728	-	-	12,687	11,850 [11,850]	-	837	-
▪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1,000	1,000	-	-	-	3,000	3,000 [3,000]	-	-	26,300
▪ 부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5,883	5,883	-	-	-	5,883	5,883 [5,883]	-	-	7,718
▪ 양주 아트센터 건립	2,000	2,000	-	-	-	-	- [264]	-	-	-
▪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4,000	4,000	357	-	-	4,236	251 [251]	-	3,985	-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	-	-	-	-	-	- [187]	-	-	2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른 내역 사업간 예산 조정 지양>

동 사업의 내역 사업인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과 **‘양주 아트센터 건립’**은 각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각각 평택시와 경기도 양주시의 미군기지 이전·공여구역을 개발하여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에 설계 및 공사계약을 위해 각각 10억원과 2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음.

[사업 개요]

사업명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양주 아트센터 건립
사업기간	2017~2025년	2020~2028년
사업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산121-3 일원	양주시 유양동 일원
사업규모	부지 20,000㎡, 연면적 19,862㎡	부지 28,842㎡, 연면적 17,100㎡
총사업비	1,156억원 (국비 750억, 지방비 406억)	871억원 (국비 350억, 지방비 521억)
2023년 예산	10억원	20억원
수행방식	자치단체 보조사업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은 2019년 말부터 기본설계를 진행하였으나 실시설계 및 시공 사업자 선정이 유찰되면서 지연되었고, 이후 2022년 10월에서야 건축 및 토목공사 일부에 대한 우선시공과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2023년 8월 본공사에 착공한 상태임.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사업 추진 경과]

추진 내용	추진 경과
기본설계 수립	2019.11~2020.4.
기술제안도서 심사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2022.3.
기술제안 심사 및 협상	2022.4.~2022.7.
우선시공분 공사 착공 및 실시설계 병행	2022.10~2023.7.
실시설계 적격심사 완료	2023.7.
우선시공분 공사 준공 및 본공사 착공	2023.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양주 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가 지연되면서 설계용역이 지연되었고, 22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타당성 조사 및 투자재심사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2023년 9월부터 설계용역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임.

[양주 아트센터 건립 사업 추진 경과]

추진 내용	추진 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착수	2020.11.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2021.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2.1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2.12.
설계용역 일시 중지	2023.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당초의 예산 편성 내역과 달리, ‘양주 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편성된 사업비 20억원 전액을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는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역 사업 간 예산 변경을 진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및 양주 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여 국회의 지적을 받아온 사업으로, 2023년 편성된 내역사업 예산도 각 사업의 실집행률과 사업 진척 정도를 고려하여 심의·확정된 것인데, 부처의 집행 단계에서 해당 예산을 내역사업간에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집행·교부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편성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평택시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8	2,689	2,689	2,689	2,689	0	2,689	9	2,680	0	0.3
2019	3,764	3,764	3,764	3,764	2,680	6,444	343	3,761	2,330	5.3
2020	16,000	1,000	1,000	1,000	3,761	4,761	1,287	3,474	-	27.0
2021	3,000	3,000	3,000	3,000	-	6,474	630	2,370	3,474	9.7
2022	1,000	1,000	-	-	2,370	2,370	2,370	-	-	100
2023	1,000	1,000	3,000	3,000	-	3,000	3,000	-	-	1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양주 아트센터 건립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평택시)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1	1,636	1,636	1,636	1,636	-	1,636	-	1,636	-	-
2022	2,400	2,000	2,000	2,000	1,636	3,636	2,296	1,310	30	63.1
2023	2,000	2,000	-	-	1,310	1,310	264	1,046	-	20.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집행 단계에서 내역사업 간에 임의적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3)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일반회계, 1632-327)

<사업개요 및 결산 내역>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사업은 전통예술에 특화된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공간·시설 및 사업 지원을 통해 창제작 등 전통예술분야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예산현액 23억 6,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2,360	2,360	-	-	-	2,360	2,360	-	-	1,970
▪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2,360	2,360	-	-	-	2,360	2,360 [2,295]	-	-	1,97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역변경 및 전용절차를 생략한 예산 집행 주의>

동 사업은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의 1개 내역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창작마루'의 관리운영·시설유지 및 전통예술 창·제작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22억 9,000만원, 사업 경상경비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2,360	2,360	-	-	-	2,360	2,360	-	-	1,970
- 일반수용비 (210-01)	70	70	-	-	-	70	70	-	-	60
- 민간경상보조 (210-01)	2,290	2,290	-	-	-	2,290	2,290	-	-	2,29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세부사업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1632-326)'**의 내역사업으로 국·공립 단체의 무대용품을 보관·대여하며 전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동 사업에는 58억 3,8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사업 개요]

사업목적	국·공립 예술단체의 무대용품 보관·대여 및 전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조성
사업기간	2017~2023년
사업규모	부지 50,000㎡, 연면적 13,443㎡
총사업비	349억원
2023년 예산	58억 3,800만원 (공사비 58억 700만원, 감리비 1,6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에 편성된 일반수용비 7,000만원 중 3,778만원을 별도의 내역 변경 없이 **'문화 예술 인프라 구축'**의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공사를 위한 조달수수료 및 사례비 납부 등을 위해 집행하였음.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사업 중 파주아트센터 관련 집행 내역]

세부사업명	비목	지출건명	금액(원)
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1632-327)	210-01	파주 현장사무실 PC 임차료	907,500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립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35,972,710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평가위원 사례비	900,000
계			37,780,21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 지침」에 따르면, 공사 및 공사계약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시설부대비(420-05)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시설부대비는 부처의 자체 전용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따라서 파주 무대예술센터 건립 사업에 필요한 조달 수수료를 타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한 것은 시설부대비로의 전용 및 타 세부사업으로의 내역 변경 절차를 집행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제46조[29]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비목의 용도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사업 간 예산 편성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인 예산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미술진흥기반구축(일반회계, 1635-311)

<사업개요 및 결산 내역>

‘미술진흥기반구축’ 사업은 미술, 공예 등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를 지원하여 인력 양성을 도모하고, 미술 유통업 등 시각예술 시장의 육성을 위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며, 미술주간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미술 향유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예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임.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예산현액 478억 2,100만원 중 270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198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4,800만원을 불용함.

[2023회계연도 미술진흥기반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미술진흥기반구축	35,620	35,620	12,165	36	-	47,821	27,045 [17,618]	19,828	948	44,719
▪ 시각예술 인력양성	2,509	2,509	-	-	-	2,509	2,509 [2,059]	-	-	2,833
▪ 시각예술 시장육성	4,014	4,014	-	-	-	4,014	3,650 [3,369]	350	14	3,824
▪ 한국미술 해외쇼케이스	-	-	-	-	-	-	-	-	-	4,700

▪ 시각예술의 국제화	2,791	2,791	-	-	-	2,791	2,791 [2,512]	-	-	3,009
▪ 디지털 시각예술 생태계 육성	1,841	1,841	-	-	-	1,841	1,841 [973]	-	-	2,939
▪ 미술 향유 지원	8,627	8,627	-	-	-	8,627	7,684 [7,564]	468	475	3,966
▪ 문화창작 공간 조성	15,795	15,795	12,165	36	-	27,996	8,527 [2,894]	19,010	459	23,255
▪ 미술진흥기반구축 정책 지원	20	20	-	-	-	43	43 [43]	-	-	43
▪ IAA 한국위원회 활동지원	-	-	-	-	-	-	-	-	-	15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사업의 실집행 부진 해소 필요>

내역 사업 '문화창작 공간조성'의 **'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지원'**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 서예 발전 및 서예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전주시에 서예교육 및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는 기관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수행되며, 2023년에는 1년차 공사비로 편성된 55억 9,500만원이 전액 사업수행자에게 교부되었음.

[사업 개요]

사업명	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지원
사업목적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 서예 발전 및 서예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기관 건립
사업기간	2021~2026년
사업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88-4
주요시설	전시실, 수장고, 체험실, 교육실, 편의시설, 사무실 등
사업규모	연면적 7,801㎡ (지하 1층, 지상 2층)
총사업비	324억원 (국비 198.8억원, 지방비 125.2억원)
수행기관	전라북도
2023년 예산	55억 9,500만원 (공사비 42억 9,300만원, 감리비 12억 8,800만원, 시설부대비 1,400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2022년 10월에 설계에 착수하여 2023년에 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설계 적정성 검토, 기술 심의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의 완수가 2024년 6월로 지연되면서 전체 공사 일정이

순연되었고, 2023년에 편성된 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 전액이 실집행 단계에서 차년도로 이월되었음.

[서예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당초 계획 대비 추진 경과]

추진 내용	당초 계획	추진 경과
기본계획 수립	2021.5.~2021.12.	
설계공모	2022.5.~2022.8.	
실시설계 수립	2022.10~2023.7.	2022.10~2024.6.
공사 착공 및 시행	2023.8.~2025.4.	2024.9.~2026.12.
공사 준공 및 개관	2025.4.	2026.1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30]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잔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며,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행정절차인 설계용역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연내 집행가능성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인 12월에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고, 1차 교부 이후 3주 만에 잔여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면서 실질적으로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기교부된 보조금의 집행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보조금 지급내역]

지급일자	금액 (백만원)	지출건명	수령인
2023.12.1.	3,000	2023 서예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사업 1차 국고보조금 교부	전라북도
2023.12.18.	2,595	2023 서예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사업 2차 국고보조금 교부	전라북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보조금 교부 시에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의 연례적 이월 및 집행잔액을 통한 신규 용역 발주 지양>

내역 사업 '문화창작 공간조성'의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의 화력발전소를 지하화함에 따라 폐기된 서울화력발전소 4·5호기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23년에는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01억원이 편성되었음.

[사업 개요]

사업명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사업목적	당인리발전소 지하화로 폐기된 4·5호기를 문화공간으로 조성
사업기간	2018년~2025년
사업위치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서울화력발전소 4호기 및 5호기
주요시설	전시실, 공연장, 프로젝트실, 발전소 원형 전시, 자료실 등
사업규모	건축연면적 27,048㎡(지하2층~지상6층)
총사업비	72,486백만원
2023년 예산	101억원 (공사비 90억 5,000만원, 감리비 10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당초 동 사업은 2019년에 설계에 착수하여 2023년 5월에 건립공사를 착공, 2024년 6월에 준공하여 같은 해 개관할 계획[31]이었으나,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면서 실시설계가 2022년 11월에서야 완료되었고, 구조 해제 심의 및

31) 동 사업은 최초로 예산이 편성된 2018년 당시 2021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설계 지연으로 인해 2024년 준공·개관으로 일정을 변경함.

배관 내 잔류 독성 물질 제거 등 공정일정이 지연되면서 2023년 11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2025년 12월 준공될 예정임.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당초 계획 대비 추진 경과]

추진 내용	당초 계획	추진 경과
기본계획 수립	2018.10.	
설계 공모 및 착수	2018.10.~2019.1.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2019.3~2020.4.	
실시설계	2020.5.~2020.10.	2020.5~2022.12.
공사 착공 및 시행	2023.5~2024.6.	2023.11.~2025.12.
공사 준공 및 개관	2024.6.	2025.1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당인리 문화발전소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 관리 측면에서 유의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사업의 설계 및 공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면서 당인리 문화발전소 조성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설계에 착수한 2019년 이후로 연례적으로 이월되었으며, 2022년에는 편성된 공사비 및 감리비 139억원 중 121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고, 2023년에는 예산 현액 222억 4,500만원 중 190억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음.

특히, 2022년에 차년도로 이월된 공사비 120억 9,000만원을 2023년에도 거의 집행되지 못한 채 94억 4,600만원이 2024년으로 재이월되는 등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음.

[2020~2024년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0	517	-	-	517	179	270	68	34.6%
2021	1,996	270	-	2,266	315	811	1,140	13.9%
2022	1,533	811	△797	1,547	872	670	5	56.4%
2023	11,613	670	△1,250	11,033	2,848	8,036	149	25.8%
2024	11,931	8,036	-	19,967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둘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1633-302)과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진흥(1635-300)의 예산을 조정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당인리 문화발전소 아카이브 영상 제작 용역을 수행하였음.

[세목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 사업명	세목		세부 사업명	세목	
'23. 10. 20	세목조정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633-302)	일반 수용비 (210-01)	30	미술진흥 기반구축 (1635-311)	일반 용역비 (210-14)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아카이브 영상 제작을 위해 세목 변경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진흥 (1635-300)	일반 수용비 (210-01)	6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잔여 재원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영상 제작 용역을 타 세부사업으로부터의 세목 조정을 거쳐서 회계연도 말인 11월에 발주한 것은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해소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연 없이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을 잔여 재원을 통해 추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총괄(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32]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16조[33]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계획현액 5,396억 7,600만원 중 5,755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209억 5,200만원을 불용(여유자금운용 제외)함.

[2023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총계	539,637	539,676	-	539,676	575,596	-	20,952	579,821
▪ 사업비 총계	384,585	387,585	-	387,585	385,693	-	1,892	408,520
▪ 기금운영비	23,282	23,282	-	23,282	22,117	-	1,165	20,656
▪ 기금간거래	17,865	17,895	-	17,895	-	-	17,895	20,591
▪ 여유자금운용	113,875	110,914	-	110,914	167,786	-	-	113,01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3)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상 적정 비목 예산 집행 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운영비, 기금간거래,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고 8개 세부사업에 3,875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비로 편성된 계획현액 중 3,856억 9,300만원을 집행하여 99% 이상의 집행률을 보였음.

[2023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사업비 총계	384,585	387,585	-	387,585	385,693	-	1,892	408,520
▪ 예술창작지원	51,644	51,644	-	51,644	50,923	-	720	58,814
▪ 예술인력육성	32,629	32,629	-	32,629	32,367	-	262	26,573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18,000	21,000	-	21,000	21,000	-	-	18,000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1,087	1,087	-	1,087	1,087	-	-	907
▪ 지역문화예술지원	3,294	3,294	-	3,294	3,275	-	19	-
▪ 예술의 관광자원화	7,083	7,083	-	7,083	7,083	-	-	4,908
▪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22,055	22,055	-	22,055	21,430	-	625	24,169
▪ 문화예술향유지원	248,793	248,793	-	248,793	248,526	-	267	275,14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 집행 과정에서 비목별 용도에 맞지 않는 집행이 일부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파견 인력을 제공받고 있는데, 파견 인력의 인건비의 경우, 기관의 업무를 인력 파견 업체에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음.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기금 집행 내역을 보면, 파견직에 대한 인건비를 보수(110-01), 상용임금(110-03), 일반수용비(210-01), 일반용역비(210-14)의 4개 세목에서 혼용하여 지출하고 있음.

[파견직 관련 예산 집행 내역 사례]

집행 비목	세부사업명	지출건명	적정 비목
보수 (110-01)	인건비 (7276-100)	무대기술부 조명팀 파견직 인건비 지급	일반용역비 (210-14)
상용임금 (110-03)	예술창작지원 (1761-300)	공연예술부 파견직 인건비 지급	
	예술인력육성 (1761-301)	예술인력양성부 파견직 인건비 지급	
	문화예술향유지원 (1765-301)	지역협력부 파견직 인건비 지급	
	기관운영비 (7276-200)	경영지원부 파견직 인건비 지급	
일반수용비 (210-01)	예술창작지원 (1761-300)	융합예술부 파견직 인건비 지급	
	예술인력육성 (1761-301)	일자리기획부 파견직 인건비 지급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1761-301)	지원총괄부 파견직 인건비 지급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보수(110-01) 및 상용임금(110-03)으로 지출된 경우는 해당 사업수행 인력의 긴급 결원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하여 파견직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기존 결원 인원의 예산에서 지급한 경우이며, 일반수용비(210-01)로 지출된 경우는 계획안 변경 편성을 지속 검토·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복합기, 노트북 등 사무기기에 대한 임차료, 베니스비엔날레 공연장 임차료, 간담회 등을 위한 차량 임차료, 교육용 소프트웨어 임차료 등 임차료(210-07)로 집행하여야 적절한 지출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있음.

[임차료 관련 집행 내역 사례]

집행 비목	지출건명	적정 비목
일반수용비 (210-01)	파견인력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PC) 임차료	임차료 (210-07)
	2023년도 문학주간 후원사 간담회 차량 임차료	
	2023 아르코미술관 50주년 전시 장비 임차	
	인사미술공간 복합기 임차료	
	아르코무대예술아카데이 교육운영장비 임차료	
	아르코웹진 워크숍 장소 임차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심의 전용공간 장비 임차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재정법」 제45조[34]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산을 그 편성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 지출 건들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향후 적정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지출 추계 대비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편성되고 있는 일반용역비(210-14) 및 임차료(210-07)에 대해서 적정한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34)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6)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총괄(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개요 및 결산 내역>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수입 계획현액 5,396억 7,600만원 중 5,755억 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음.

[2023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 문화예술진흥기금	539,637	539,676	539,676	575,596	575,596	-	-	579,82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면밀한 수입 추계 필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체수입 중 **‘민간출연금(59-594)’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재원 다각화를 위하여 유치된 민간 기부금 수입으로, 크게 기부자가 특정사업 또는 단체 지원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조건부 기부금’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3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건축물미술작품설치대체 기부금’으로 구분됨.

또한, **‘입장료수입(64-641)’**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의 골프장인 ‘뉴서울CC’의 운영 수익금과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기록원, 예술가의 집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시설에서 추진하는 공연·전시·교육 등에서 발생한 수입임.

두 수입의 경우 연례적으로 계획액이 수납액에 비해 과대 편성되는 등 계획액의 추계가 부정확하여 수납률이 반복적으로 저조하므로, 차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5)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 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민간출연금(59-594)에 해당하는 기부금 현황을 살펴보면, 조건부 기부금의 경우 계획현액 대비 수납액이 70% 이상이나, 건축물미술작품설치대체기부금의 경우 수납률이 70% 이하로 저조하며 특히 2023년도의 경우 수납률이 40.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최근 3년간 민간출연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유형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B)
		당초	수정					
2021	조건부기부금	11,847	11,847	-	11,847	8,933	8,933	75.4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대체기부금	14,320	14,320	-	14,320	9,280	9,280	64.8
2022	조건부기부금	10,070	10,070	-	10,070	9,249	9,249	91.8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대체기부금	16,097	16,097	-	16,097	7,800	7,800	48.5
2023	조건부기부금	10,070	10,070	-	10,070	10,088	10,088	100.2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대체기부금	17,814	17,814	-	17,814	7,255	7,255	40.7

*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축물미술작품설치대체기부금의 경우 신규 건축물의 증설 및 건축주의 출연 의사 등 정확한 수입을 추계하기 곤란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간의 계획액을 살펴보면 전년도의 수납액과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추계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입장료수입(64-641)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설로부터의 공연·전시·교육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골프장인 뉴서울CC의 운영 수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뉴서울CC로부터의 수납액이 계획현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50% 이하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입장료수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유형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B)
		당초	수정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시설 공연·전시 수입 등	244	244	-	244	93	93	38.1
	뉴서울CC 운영수익	6,000	6,000	-	6,000	2,500	2,500	41.7
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시설 공연·전시 수입 등	244	244	-	244	106	106	43.5
	뉴서울CC 운영수익	6,000	6,000	-	6,000	2,500	2,500	41.7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시설 공연·전시 수입 등	244	244	-	244	136	136	55.9
	뉴서울CC 운영수익	6,000	6,000	-	6,000	3,000	3,000	50.0

*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시설은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예술가의 집, 아르코예술기록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임.

아울러 뉴서울CC 운영수익뿐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아르코·대학예술극장 등 운영시설로부터의 수입계획액도 연례적으로 2억 4,40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가동횟수 축소 등 운영시설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수입 계획안을 편성하여 수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여유 자금 재원 고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수입의 연례적 과다 편성은 과다한 기금 지출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향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민간출연금 및 입장료 수입을 산출할 때 전년도의 수납 실적 및 기관별 실현 가능한 수납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기금운용계획안 수입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7) 예술창작지원(문화예술진흥기금, 1761-300)

<사업개요 및 결산 내역>

‘예술창작지원’ 사업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에 대하여 장르별·단계별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전시·공연 및 창작공간을 운영하여 예술가의 창작 역량을 제고하고 우수작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통해 한국 예술인 및 단체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동 사업의 계획현액 516억 4,400만원 중 509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예술창작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예술창작지원	51,644	51,644	-	51,644	50,923 [47,601]	-	721	58,814
▪ 문학창작육성	3,537	3,537	-	3,537	3,510 [3,497]	-	27	3,036
▪ 시각예술창작육성	4,745	4,745	-	4,745	4,687 [4,684]	-	58	3,423
▪ 공연예술창작육성	29,467	29,467	-	29,467	28,938 [25,939]	-	529	34,447
▪ 국제예술교류지원	4,899	4,899	-	4,899	4,890 [4,656]	-	9	4,738
▪ 예술과기술융합지원	6,596	6,596	-	6,596	6,514 [6,493]	-	82	-
▪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	2,400	2,400	-	2,400	2,385 [2,332]	-	15	2,172
▪ 창작공간활성화지원	-	-	-	-	-	-	-	10,000
▪ 아르코공공예술	-	-	-	-	-	-	-	99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편성되지 않은 예산 신규 사업 집행 유의>

‘예술창작지원’의 내역 사업 **‘시각예술창작육성’**은 시각예술 창작을 위한 연구·전시·공간운영·비평 활동을 지원하고 아르코미술관의 운영을 통해 예술가의 전시 기회를 확대하려는 사업이며, 내역 사업 **‘국제예술교류지원’**은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하는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지원하고,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등 기관 차원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한국 예술인 및 단체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아르코미술관 전시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과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에 ‘2024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시(동 전시는 2024년 4월에 개막하여 같은 해 9월까지 전시를 진행할 예정)를 추진하면서, 해당 전시 사업 준비를 위해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운영TF를 구성하였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시 개요]

전시 주제	모든 섬은 산이다 《Every Island is a Mountain》
전시 기간	2024. 4. 19.~ 9. 8.
전시 구성	하이라이트 전시, 아카이브 전시, 야외 전시, 오프닝 퍼포먼스, 공공프로그램 등
전시 장소	이탈리아 베니스 몰타기사단 수도원(Ordine di Malta)
참여작가	1995-2022년 역대 미술전 한국관 참여작가 36명(팀)

*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러나 전시 준비단계인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시를 위한 계획액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예술창작지원’ 내의 다른 내역 사업에 편성된 계획액과 함께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1765-300)’, ‘예술인력육성(1761-301)’, ‘문화예술향유지원(1765-301)’ 등 다른 세부사업으로부터 자체적으로 계획변경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거나 경상경비를 계획변경 없이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운영TF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하였음.

구체적으로, 특별전시 사업의 전시공간 조성, 작품 제작 및 그래픽 디자인 용역을 발주하기 위하여 ‘예술창작지원’에서 4,400만원을,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에서 8,00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로 계획변경하여 집행하였음.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변경 증액			변경 감액			변경 사유
		세부 사업명	세목	금액	세부 사업명	세목	금액	
’23. 9. 20	자체변경	예술창작지원 (1761-300)	일반 용역비 (210-14)	44	예술창작지원 (1761-300)	시설 장비 유지비 (210-09)	△44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 준비사업 추진예산 확보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1765-300)	일반 용역비 (210-14)	80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1765-300)	일반 연구비 (260-01)	△8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큐레이터 용역 계약 사례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운영 TF의 경상경비 및 사업 추진비로 ‘문화예술향유 지원’,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예술인력육성’ 등 타 세부 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국외여비·사업추진비·기타운영비 약 1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30주년 특별전 예산 집행 내역]

세부사업명	비목	지출건명	금액(원)
예술인력육성 (1761-301)	일반수용비 (210-01)	특별전시 큐레이터 용역 계약 사례비	34,750,000
		전시 공간 임차 중도금	29,618,320
		연구 보조원 사례비	7,000,000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1765-300)	일반수용비 (210-01)	전시 공간 임차 중도금	19,709,920
	일반용역비 (210-14)	작품 제작 및 전시공간 조성·디자인 용역	80,000,000
	사업추진비 (240-01)	홍보 및 자문인력 회의·간담회	206,500
문화예술향유지원 (1765-301)	사업추진비 (240-01)	특별전 공청회 및 간담회비	1,378,162
계			172,662,90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집행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절차를 우회한 소지가 있으며, 사업 목적과 명확한 연관성이 없는 다른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편성된 예산이 편성된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에 대한 자의적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4. 지역문화정책관

(1)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일반회계, 2131-301)

<사업개요 및 결산 내역>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사업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등 국가도서관위원회[36] 운영을 지원하고 도서관 정책 기반을 강화하며,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공도서관 조성,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통해 도서관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예산현액 168억 6,200만원 중 163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16,832	16,832	30	-	-	16,862	16,341 [15,454]	-	521	11,589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1,667	1,667	30	-	-	1,697	1,321 [1,321]	-	376	1,516
▪ 도서관 서비스 개선	1,762	1,762	-	-	-	1,762	1,733 [1,722]	-	29	1,599
▪ 도서관 기반조성	11,553	11,553	-	-	-	11,553	11,437 [10,800]	-	116	8,474
▪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	1,850	1,850	-	-	-	1,850	1,850 [1,611]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6)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8일부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장기간 미구성으로 인한 불용 유의>

「도서관법」 제11조 및 제12조[37]에 따르면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이전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은 2년간의 임기 동안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및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심의·조정함.

2007년 대통령 소속으로 제1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족한 이래로 동 위원회는 2년 임기로 제7기까지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활동

37) **「도서관법」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왔으며, 2020년 4월에 창단한 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22년 4월을 끝으로 해단하였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활동 연혁]

기수	활동기간	위원장
제1기	2007. 6. 12. ~ 2009. 6. 11.	한상완
제2기	2009. 6. 12. ~ 2011. 6. 11.	김봉희
제3기	2011. 8. 1. ~ 2013. 7. 31.	김봉희
제4기	2013. 12. 3. ~ 2015. 12. 2.	최은주
제5기	2016. 3. 1. ~ 2018. 2. 28.	신숙원
제6기	2018. 4. 9. ~ 2020. 4. 8.	신기남
제7기	2020. 4. 9. ~ 2022. 4. 8.	신기남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해단한 이후 법률에 따라 즉시 8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까지 8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2023년에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 1억 8,4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정비 방침 추진 및 「도서관법」 개정 법안의 계류 등으로 신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국가도서관위원회 정비 관련 도서관법 개정안 내용]

개정 항목	현행	개정안 내용[38]
위원회의 소속	대통령 소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위원회 위원장 구성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구성	공동위원장 2인으로 구성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위촉 위원중 호선된 자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됨
당연직 위원의 임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의 위촉·해촉	위원장이 위촉·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39]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수립·추진하

3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7676, 정부 제출, 임기만료폐기

39) **「도서관법」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지침을 심의·결정하며 이를 통보해야 할 뿐 아니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등 연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기 심의 업무가 있는 위원회임.

그러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계류되어 있는 1년 동안 국가도서관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심의·결정해야 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의 사항이 적절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어야 할 사항들이 사무국 및 기획단 등을 통해 우회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통해 도서관 정책을 심의하도록 한 「도서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의 처리를 전제로 하고 예산을 불용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장기간 미구성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위원회의 업무사항이 원활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의 부합도
2.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문화유산과학센터 건립(일반회계, 2831-316)

<사업개요 및 결산 내역>

‘문화유산과학센터 건립’은 국가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기능의 강화, 국내외 박물관 보존 처리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재 디지털 자료화 및 가치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문화유산 과학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2023년 예산현액 110억 3,300만원 중 28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80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11,613	11,613	670	△1,250	-	11,033	2,848 [2,848]	8,036	149	11,93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시정>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기능 강화 및 문화유산 디지털 자료화 등을 위하여 2020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92억원,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임.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0~2025년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내 (용산동6가 168-6 외 5필지)
총사업비	292억원 (공사비 260억원, 설계비 12억원, 감리비 19억원, 시설부대비 1억원)
사업규모	대지면적 285,990.7㎡, 연면적 9,196.65㎡(지하1층, 지상3층)
주요 시설	문화재 보존 실감형 콘텐츠 체험실, 개방형 보존처리실, 기타 관리실 등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2021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개관할 계획이었으나,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등의 사전 절차로 인해 실시설계용역의 완수가 2022년도 말로 1차적으로 지연되었고, 2023년 5월 착공 이후 부지 내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등 추가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서 준공 시점이 2025년 8월로 연기되었음.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당초 계획 대비 추진 경과]

추진 내용	당초 계획	추진 경과
기본계획 수립	2020.2.	2020.2.
설계공모	2020.4.~2020.9.	2020.4.~2020.9.
기본설계 수립	2020.9~2021.2.	2020.10~2021.6.
실시설계	2021.2~2021.9.	2021.6~2022.12.
공사 착공 및 시행	2021.9~2024.3.	2023.5~2025.5.
공사 준공 및 개관	2024.3~2024.6.	2025.5~2025.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에는 문화유산 과학센터 공사의 공정률이 40% 이상일 것으로 계획하고 공사비 108억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6억 1,300만원의 예산이 동 사업에 편성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업 일정의 지연으로 인해 12억 5,000만원은 2023년 호우·태풍 피해 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비로 자체 이용하였고, 잔여 예산 현액 110억 3,300만원 중에서도 80억 3,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이 25.8%에 불과함.

또한, 동 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2020년부터 공정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편성된 예산의 상당 비중을 차년도로 이월하거나 불용하여, 집행률이 2020년 34.6%, 2021년 13.9%, 2022년 56.4%로 연례적으로 저조함.

[2020~2023년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0	517	-	-	517	179	270	68	34.6%
2021	1,996	270	-	2,266	315	811	1,140	13.9%
2022	1,533	811	△797	1,547	872	670	5	56.4%
2023	11,613	670	△1,250	11,033	2,848	8,036	149	25.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과 같은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과도한 이월 및 불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사업 일정의 순연으로 인해 문화유산 과학센터의 개관이 1년 지연된만큼 향후 동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3)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일반회계, 2831-362)

<사업개요 및 결산 내역>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은 중원문화권 지역 문화재의 전시·수집·연구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예산 현액 8억 4,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3,323	3,323	841	△3,323	-	841	841	-	-	8,996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 및 예산 추계 필요>

국립중앙박물관은 경주, 광주, 전주, 대구 등 전국 13개 지역에 지방 박물관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은 충주시에 새롭게 국립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8억원이며 2026년 공사를 준공하고 개관할 계획임.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1년~2026년(6년)
사업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533-4, 600-23(탄금공원 내)
총사업비	488억원 (공사비 395억, 설계비 17억, 감리비 28억, 시설부대비 1억, 부지매입비 47억)
사업규모	대지면적 20,000㎡, 연면적 8,964.51㎡(지상 3층)
주요 시설	전시관, 수장고, 어린이관, 사무·연구시설 등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2023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박물관 건축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2023년 예산에 1년차 건축 공사를 위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3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심의 및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을 설계에 반영함에 따라 실시설계 완료가 지연되어 2023회계연도 내에 건축 공사 착공이 어려워졌음.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당초 계획 대비 추진 경과]

추진 내용	당초 계획	추진 경과
기본계획 수립	2021.5.	2021.5.
설계공모	2021.6.~2021.12.	2021.6.~2021.12.
기본설계 수립	2021.12~2022.12.	2021.12~2022.12.
실시설계	2022.12.~2023.7.	2022.12.~2023.11.
건축공사 발주·착공 및 시행	2023.9~2025.12.	2024.1~2026.9.
전시공사 착공 및 시행	2025.5~2026.6	2025.9.~2026.9.
공사 준공 및 개관	2026.6~2026.12.	2026.9.~2026.1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 33억 2,300만원 전액을 하절기 호우 피해 및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한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재해복구비(체육)(5131-302)로 이용하였음.

[이용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 사업명	세목		세부 사업명	세목	
'23. 9. 26	이용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2831-362)	공사비 (420-03)	3,096	재해복구비 (5131-302)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소관 피해 시설물 복구를 위한 예산 이용
			감리비 (420-04)	201			
			시설 부대비 (420-05)	26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재해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예산의 이용 자체에 절차적 위반이 있는 것은 아니나,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 전액을 이용함으로써 동 사업은 2023년에 전년도의 이월액을 집행하는 데에 그쳤다는 점에서 사업의 진척도가 낮음.

또한, 사업 지연 이전에도 실시설계 용역이 하반기인 7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음을 고려하면, 당초 공사비 예산이 사업 수행 기간의 여유 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은 향후 사업 계획과 예산 추계를 면밀히 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임.

(4)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2831-362)

<사업개요 및 결산 내역>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설공연장 조성, 문화콘텐츠 제작 등 핵심사업을 통해 도시 문화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예산 현액 513억 7,700만원 중 493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	51,377	51,377	-	-	-	51,377	49,377 [42,101]	-	2,000	21,633
▪ 5G기반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개발	591	591	-	-	-	591	191 [1,294]	-	400	-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2,000	2,000	-	-	-	2,000	2,000 [1,613]	-	-	-
▪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1,370	1,370	-	-	-	1,370	1,370 [1,397]	-	-	845
▪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600	600	-	-	-	600	600 [600]	-	-	-
▪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1,700	1,700	-	-	-	1,700	1,700 [6,046]	-	-	-
▪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	1,800	1,800	-	-	-	1,800	1,800 [2,800]	-	-	-

▪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550	550	-	-	-	550	550 [550]	-	-	-
▪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344	344	-	-	-	344	344 [332]	-	-	-
▪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500	500	-	-	-	500	500 [500]	-	-	500
▪ 아시아 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	800	800	-	-	-	800	800 [800]	-	-	800
▪ 국제문화창의산업전	880	880	-	-	-	880	880 [880]	-	-	880
▪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4,000	4,000	-	-	-	4,000	4000 [4000]	-	-	4,150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500	500	-	-	-	500	500 [500]	-	-	1,400
▪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운영	1,000	1,000	-	-	-	1,000	1000 [1000]	-	-	788
▪ 사직 국제문화교류타운 프로그램 운영	200	200	-	-	-	200	200 [200]	-	-	100
▪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	3,797	3,797	-	-	-	3,797	3797 [453]	-	-	500
▪ 광주폴리V사업	1,000	1,000	-	-	-	1,000	1000 [1000]	-	-	-
▪ 아시아 이스포츠산업 교육플랫폼 조성	450	450	-	-	-	450	450 [450]	-	-	-
▪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창작랩 운영	1,000	1,000	-	-	-	1,000	1000 [1000]	-	-	-
▪ 아시아음식 관광명품화 거점 공간 조성	-	-	-	-	-	-	-	-	-	600
▪ 아시아 콘텐츠 인터랙티브 월 운영	500	500	-	-	-	500	500 [500]	-	-	-
▪ 광주 첨단실감콘텐츠 인력양성 통합 플랫폼	4,000	4,000	-	-	-	4,000	4000 [4000]	-	-	-
▪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 사업	400	400	-	-	-	400	400 [400]	-	-	400
▪ 아시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구축 운영	550	550	-	-	-	550	550 [550]	-	-	480

▪ 분청사기 도예 창작소 조성	1,000	1,000	-	-	-	1,000	1000 [1000]	-	-	-
▪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400	400	-	-	-	400	300 [-]	-	100	-
▪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750	750	-	-	-	750	750 [750]	-	-	-
▪ 빛의로드 도심야간 관광활성화 사업	2,500	2,500	-	-	-	2,500	2500 [2500]	-	-	-
▪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 개발	500	500	-	-	-	500	500 [500]	-	-	500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745	745	-	-	-	745	745 [1903]	-	-	-
▪ 아시아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	2,550	2,550	-	-	-	2,550	2,550 [863]	-	-	950
▪ 광주비엔날레 AI 라키비움 구축	1,500	1,500	-	-	-	1,500	1500 [1500]	-	-	3,500
▪ 아시아 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	700	700	-	-	-	700	- [-]	-	700	-
▪ 아시아 신화설화 킬러콘텐츠 개발	2,000	2,000	-	-	-	2,000	2000 [-]	-	-	-
▪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	5,800	5,800	-	-	-	5,800	5800 [-]	-	-	-
▪ 디지털 아트 컬처랩 구축 운영	3,000	3,000	-	-	-	3,000	3000 [-]	-	-	1,000
▪ 아시아 커뮤니티 아트타운 조성	800	800	-	-	-	800	- [-]	-	800	1,500
▪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	600	600	-	-	-	600	600 [600]	-	-	600
▪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 파크	-	-	-	-	-	-	-	-	-	540
▪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	-	-	-	-	-	-	-	-	-	500
▪ ACC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거점 벨트 조성	-	-	-	-	-	-	-	-	-	500
▪ 버추얼 콘텐츠 제작 지원	-	-	-	-	-	-	-	-	-	200
▪ 디자인, ICT 융합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육성	-	-	-	-	-	-	-	-	-	4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 사업 중단으로 인한 불용 주의>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에는 2023년 38개의 내역사업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사업 **‘아시아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은 시각예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2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80억원의 총사업비(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를 투입하여 아시아 문화공유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및 미디어아트 콘텐츠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며, 2023년에도 2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아시아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 사업 개요]

사업명	아시아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
사업목적	비엔날레 미개최 기간에도 시각예술과 함께 즐기는 시민 일상 속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문화관광 자원의 공유를 도모
사업기간	2022 ~ 2024년(3년)
사업내용	① 아시아 소통미디어 문화공간 조성(15억원) - 비엔날레 전시관 인프라를 활용, 인터랙티브 미디어 상설공연 및 시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 아시아 디지털가든 조성(30억원) - 아시아예술정원에 성장하는 미래형 디지털 가든 조성·상설 운영 ③ DJ센터 ‘아시아 문화 공유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35억원) - DJ센터 외벽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 및 ACC·시립미술관 전시작품’ 공유 플랫폼 구축
총사업비	80억원 (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의 세부내용 중 가장 큰 예산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DJ센터에 미디어 시스템을 조성하여 전시작품 공유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설계비로 1억원이 교부·집행되었고,

2023년에는 미디어아트 시설 조성공사를 위하여 잔여 국비 16억 5,000만원이 교부되는 등 2년에 걸쳐 17억 5,000만원의 국비 전액이 보조사업자인 광주광역시에 교부되었음.

그러나 동 사업은 5대 5로 매칭된 지방비가 최종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었고, 미디어아트 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교부된 보조금 전액이 실집행 단계에서 불용되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40]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함.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비 확보 여부 및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23년 7월 14일에 공유플랫폼 구축을 위한 보조금 16억 5,000만원 전액을 광주광역시에 교부하였고, 이에 보조금이 교부된 후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4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서 매년 신규 내역사업이 편성되는 사업이나, 예산이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된 후 실집행 단계에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및 불용이 연례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해 온 사업이기도 함.

[최근 5년간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신규 내역사업]

연도	신규 내역사업
2019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2019 국제전자예술 심포지엄 광주대회, 아시아 유럽 창의혁신 도시연대 시장회의 (4개)
2020	5G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개발,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조성,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4개)
2021	광주 대표문화마을 조성, 인공지능활용 콘텐츠 창작랩 구축 운영, 아시아 아트 아카이빙 플랫폼 건립, 아시아 이스포츠산업 교육 플랫폼 조성, 주민밀착형 문화 씨앗뿌리기 사업, 2021베니스비엔날레 518 특별전, 광주폴리 V 사업, 아시아 콘텐츠 인터택티브 월 조성 및 운영,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파사드 콘텐츠 개발, 아시아 문화콘텐츠 광장 조성, 스마트 문화체험 존 조성 (11개)
2022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사업,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아시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 구축 운영, 첨단실감콘텐츠 인력양성 통합 플랫폼, 아시아 문학테마공원 조성,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무등산 플랫폼 개발, 빛의로드 도심야간관광활성화 사업,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중앙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 아시아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 Y프로젝트, ACC주변 문화예술집적화 사업, 아시아 문화예술로 잇는 평화의길 프로젝트 (15개)
2023	광주비엔날레 AI라키비움 구축, 아시아 예술융복합창작센터 조성, 아시아 설화신화 킬러콘텐츠 개발,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 디지털 아트 컬처랩 구축 운영, 아시아 아트 커뮤니티 타운 조성,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 (7개)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광주광역시)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9	20,964	20,964	20,964	20,964	11,186	32,150	14,806	15,290	2,054	46.1
2020	33,082	33,082	33,062	33,062	15,290	48,352	32,780	14,919	653	67.8
2021	42,392	42,392	40,920	40,920	14,919	55,839	37,370	17,245	1,224	66.9
2022	44,443	44,443	43,593	43,593	17,245	60,838	36,843	22,240	1,755	60.6
2023	51,377	51,377	49,377	49,377	22,240	71,617	42,101	23,715	5,801	58.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에 신규 편성되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인 사업 2년차에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된 것은, 당초 신규 내역사업을 편성할 때부터 보조사업자인 광주광역시의 지방비 부담 능력 및 집행 가능성 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방비 부담능력 및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신규 내역사업을 편성할 때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5. 국제문화홍보정책실

(1)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일반회계, 1231-303)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은 국내 콘텐츠산업 및 한류연관 산업의 해외수출확대 및 한국문화 관심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568억 4,400만원 중 567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54,439	54,439	-	745	1,660	56,844	56,730	-	114	74,233
▪콘텐츠 수출지원	32,332	32,332	-	-	-	32,332	32,332 [29,330]	-	-	43,869
▪한류교류 및 확산 지원	5,413	5,413	-	-	-	5,113	5,113 [4,622]	-	-	3,783
▪한류 연관산업 지원	16,500	16,500	-	-	-	16,500	16,500 [14,329]	-	-	26,386
▪해외진출 정책지원	194	194	-	745	1,660	2,599	2,485 [2,485]	-	114	19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조정 및 집행 시 재정 관계 법령 준수 노력 필요>

내역사업 ‘해외진출 정책지원’ 사업은 한류지원 관련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및 콘텐츠 해외진출, 한류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선정 및 정부포상 수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25억 9,900만원 중 24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고(95.6%), 1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해외진출 정책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해외진출 정책지원	194	194	-	745	1,660	2,599	2,485 [2,485]	-	114	19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해외진출 정책지원’ 사업은 당초 본예산 1억 9,400만원 외에 전용액 7억 4,500만원, 예비비 16억 6,000만원 등 총 24억 500만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이 중 23억 3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폐막행사인 K-POP 슈퍼라이브 행사(이하 “K-POP 행사”) 비용을 위한 것임.

당초 K-POP 행사를 비롯한 잼버리 관련 사업은 잼버리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행사 당시 태풍 등에 따른 기상 악화로 인해 기존에 예정되었던 K-POP 행사일정이 변경(8월 6일, 새만금

야외무대 개최 → 8월 1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개최)되면서 문체부에서 K-POP 행사 주최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를 비롯한 행사 관련 예산을 문체부에서 마련하고 집행한 것임.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만으로는 행사 실시를 위한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른 '문화·관광행정지원(7100)' 내의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7112-252)' 예산 5억 9,200만원을 별도의 이용 등 예산조정 절차 없이 K-POP 행사에 함께 집행하였는바, 이는「국가재정법」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을 고려할 때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POP 행사 관련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콘텐츠 산업 육성 (1200)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 (1231)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231-303)	-	745	1,660	2,405	2,303
문화·관광 행정지원 (7100)	본부 기본경비 (7112)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7112-252)	-	592	-	592	592
계			-	1,337	1,660	2,997	2,89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당초 잼버리 관련 예산이 여성가족부 소관인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일반회계, 2254-542)' 사업에 편성[41]되어 있었음에도 당시 정부

41) 2023회계연도 K-POP 행사를 비롯한 잼버리 관련 예산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일반회계, 2254-542)' 사업에 95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교부되었으며, 그 외에 폭염 및 태풍 등에 따른 물자지원 및 프로그램 비용 보전 등을 위해 예비비 151억 7,800만원, 전용액 29억 5,800만원 등이 추가 재원으로 투입되었음.

합동대응에 따라 문체부에서 별도 재원이 지출됨에 따라 잼버리 관련 행사에 투입된 재정이 분산 집행되었고, 특히 주요사업비로 분류되지 않는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에서 행사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측면에서 해당 집행 건은 재정투명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K-POP 행사비를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료 항목으로 집행하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한국방송공사와 K-POP 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문체부는 K-POP 행사가 별도의 행사가 아닌 한국방송공사의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의 특별편으로 편성됨에 따라 잼버리 행사에 대한 협찬광고 성격을 가지게 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K-POP 행사는 당초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한국방송공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내에 반영된 잼버리 관련 행사의 일환으로서, 특히 변경된 K-POP 행사는 잼버리 폐영식을 겸한 행사라는 점, 해당 행사는 '뮤직뱅크'가 결방되고 대체 방영된 별도의 콘서트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프로그램 내의 협찬광고라기보다 별도의 잼버리 행사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동 행사비용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광고료 지출이 아닌 문체부에서 한국방송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42]하여 집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예산집행 절차였을 것으로 보임.

---

42) 기존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KBS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산출내역서를 살펴보면, 전체 계약액 53억 5,000만원 중 2억 7,050만원(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제외)은 방송 및 홍보비용으로 사용된 바,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광고로 보아 언론진흥재단의 매체사(KBS) 광고계약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체부는 예산 조정 및 집행 과정에서「국가재정법」등 재정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한편, 동일한 지출 건에 대해 별도의 사업에서 예산이 각각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고, 집행 방식의 적절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여 재정 관계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제품개발 기간 확보 등 사업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등>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지원’ 사업은 내역사업 ‘한류 연관산업 지원’ 사업에 포함된 내내역사업으로, 일반분야와 전통분야의 제품 개발, 컨설팅 등 기획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 6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한류 연관산업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한류 연관산업 지원	16,500	16,500	-	-	-	16,500	16,500 [14,239]	-	-	26,386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지원	6,000	6,000	-	-	-	6,000	6,000 [5,487]	-	-	3,886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한류 IP 연계를 통한 신규 제품의 제작·개발 및 홍보, 유통, 컨설팅 등을 통한 해외 판로개척을 목표로 하며, 일반분야로서 패션, 뷰티, 리빙, 라이프 등을, 전통분야로서 한복 및 한지를 선정하여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예산액	실집행액
일반 분야(패션, 뷰티, 리빙, 라이프 등)	4,500	4,170
전통 분야(한지)	1,000	989
전통 분야(한복)	500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일반 분야의 사업은 “기획개발 지원” 사업과,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신제품의 기획·개발(한류 IP 연계 포함), 양산, 홍보, 해외 수출 등 사업 전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이미 기보유한 IP 연계 상품을 대상으로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지원 사업 공모 유형]

공모 유형	
기획개발 지원(16개사)	IP 자율형(7개사)
	IP 매칭형(9개사)
해외진출 지원(50개사)	글로벌 플랫폼 지원형(20개사)
	B2B 판로개척 지원형(30개사)

* 주: 각 유형 중복 선정 불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2023년 동 사업의 성과 및 추진내용을 살펴본 바, 향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참여기업의 제품개발 및 홍보 일정, 사업 성과관리 등을 고려한 사업기간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지원 내 일반분야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 내 한류 IP와 연계한 신제품의 기획·개발, 양산, 홍보, 해외 수출 등을 지원[43]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연간 일정을 살펴보면, 한류 IP 연계 사업에 참여할 기업공모 후 회의를 거쳐 약 3달 간 제품 기획·개발·양산을 완료한 후 9월부터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12월 사업이 완료되는 일정임.

[2023년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지원 추진일정]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당초 일정	기업공모 및 선정	한류IP 기획회의	제품 기획·개발		제품 양산완료	해외 수출 프로모션			사업종료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상기 일정에 따르면, 제품 기획부터 양산까지의 개발 과정 기간이 약 3개월로서 각 상품 특성 및 기획·제작 역량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촉박한데, 실제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기업의 37.5%가 사업기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며, 상품 기획개발기간과 양산기간을 합쳐 최소 6~8개월 가량 소모된다는 답변이 70% 이상에 달하였음.

43) 선정된 기업은 4,000만원~8,000만원의 개발지원금이 지급됨

더욱이 2023년의 경우, 기업 공모·선정 절차가 완료된 시기가 IP 자율형은 5월 9일, IP 매칭형은 6월 28일로, 당초 계획보다 1~2개월 지연됨에 따라 참여기업들의 제품 개발 일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와 같은 사업기간의 한계로 인해 사업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볼 수 있는 매출액, 계약액 등에 대한 집계기간이 제품 양산 후 본격적인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9월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12월까지로 한정[44]되며, 사업 종료 이후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각 기업의 제출의무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문체부 및 콘진원은 동 사업의 제품개발, 홍보 일정 및 사후 성과관리 기간 등을 고려한 사업기간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경우,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참여 유인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지원 사업은 상기한 기획개발지원 외에 해외진출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기획개발지원 사업이 제품 개발 및 IP 연계·홍보·판로개척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에 비해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기보유한 한류 IP 연계 상품의 홍보 및 판로

44) 참고로 2023년 동 사업을 통한 2024년 1월 기준 매출액은 30.74억원임.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플랫폼 유통 지원형’(20개사)과 ‘B2B 판로개척 지원형’(30개사) 등 총 50개사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었음.

그런데 2023년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최종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글로벌 플랫폼 유통지원형 7개사, B2B 판로개척 지원형 1개사 등 총 8개사로 당초 계획한 50개사 대비 16% 수준이며, 공모에 지원한 회사도 13개사에 불과하였음.

[2023년 해외진출지원 사업 지원 내역]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예정	접수	최종지원
해외진출 지원사업	**(글로벌 플랫폼 유통지원형)** 한류 IP 연계상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 아마존 전담 매니저 배정 및 입점 관련 컨설팅, 입점 제비용 300만원 한도 내 지원	20개사	10개사	7개사
	(B2B 판로개척 지원형) 한류IP 연계 상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 B2B 전시참여 및 참여 박람회 마케팅 지원 - 2023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박람회 참가 및 마케팅 서비스 300만원 한도 내 지원	30개사	3개사	1개사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처럼 해외진출지원 사업 수요가 저조한 것은 민간기업에서 사업 참여를 위한 서류제출 및 사업 참여 후 요구될 수 있는 자료 및 결과물을 관리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지원 내용이 아마존 입점 지원, 약 2~3회의 박람회 참여 및 마케팅 지원금(300만원) 등으로서 참여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한편,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지원사업의 예산 45억원 중 기업 지원금 약 10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마케팅 및 홍보, 관련 행사 비용으로 집행되는데, 프로모션 행사비는 고정비가 큰 반면 콘텐츠 추가 비용은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한류 IP 연계 상품 홍보를 위해서는 해외진출 지원형 사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문체부 및 콘진원은 동 사업 기획 시 기업 참여 유인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2)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일반회계, 3131-304)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은(1979년~, 직접) 재외문화원의 원활하고 안정적 운영 및 한국문화제 운영을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855억 9,600만원 중 846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83,839	83,839	1,657	100	-	85,596	84,676 [84,876]	217	702	86,159
▪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50,121	50,121	-	1,416	-	51,537	51,181 [51,181]	58	301	53,677
▪ 재외 한국문화원 인프라 확충	9,652	9,652	-	36	-	9,688	9,688 [9,688]	-	-	14,816
▪ 재외 한국문화원 우수브랜드	9,266	9,266	-	△402	-	8,861	8,819 [8,819]	-	42	9,266
▪ 한국문화제 운영	8,000	8,000	-	△110	-	7,890	7,507 [7,507]	159	224	8,000
▪ 미디어아트활용 한류 확산	6,800	6,800	1,657	△840	-	7,617	7,481 [7,481]	-	136	4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재외문화원 주요사업비가 운영경비로 소진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등>

내역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은 재외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에 두는 한국문화원의 직원 인건비, 경상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위해 편성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현액은 515억 3,700만원이며, 이 중 511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음.

다만, 재외 한국문화원(이하 “재외문화원”)의 결산현황을 살펴본 바, 재외문화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외문화원 주요사업비가 운영경비로 소진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의 재외문화원 운영 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관리용역비, 고용부담금 등 재외문화원 운영에 필수적인 경직성 경비에 대한 지출을 매년 이·전용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해당 경비의 이·전용액 규모는 2021년 73억원에서 2023년 13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2021~2023년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필수경비 예·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비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결산액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결산액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액
공공요금 (210-02목)	1,622	**1,906**	3,528	3,528	1,622	**1,906**	3,528	3,527	1,670	**2,912**	4,582	4,512	1,670
임차료 (210-07목)	11,560	**3,487**	15,047	15,039	11,910	**4,715**	16,625	16,623	12,410	**7,312**	19,722	19,713	14,404
관리용역비 (210-16목)	1,734	**1,779**	3,513	3,513	1,734	**2,718**	4,452	4,452	1,940	**3,280**	5,220	5,160	1,940
고용부담금 (320-09목)	403	**143**	546	543	459	**240**	699	689	514	**250**	764	698	1,687
계	15,319	**7,315**	22,634	22,623	15,725	**9,579**	25,304	25,291	16,534	**13,754**	30,288	30,083	19,70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문체부는 최근 3년간 재외문화원 개소수가 증가하였고,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임차료 등 필수운영비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2020년부터 코로나19발 물가상승 및 원화약세 등으로 해외송금액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용을 통한 재원충당은 2019년 44억원, 2020년 65억원 등 코로나19 확산 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뿐 아니라, 필수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대부분 일반수용비로서 해당 경비는 재외문화원의 한국어교육, 정기문화강좌, 상설 전시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고려할 때, 이·전용으로 인해 재외문화원 주요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재외문화원 운영사업비를 일원화하여 재정의 투명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재외문화원 운영 관련 세부사업은 일반회계의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일반회계, 3131-304) 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관광진흥개발기금, 4362-308) 등이 있으며, 이 외에 '국가이미지홍보'(일반회계, 3131-300)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국문화소개행사 개최 및 지원'에 재외문화원 사업경비 일부가 편성되어 있음.

[2023년 재외문화원 관련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구분	사업내용	2023년			2024년
		예산액 (계획액)	예산현액 (계획현액)	집행액	예산액 (계획액)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일반회계, 3131-304)	재외문화원 운영 및 인프라 확충, 한국문화제 운영 등	83,839	85,596	84,676	86,159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관광기금, 4362-308)	주재국 지역 특화사업, 한일축제한마당, 한중일예술제	5,568	5,568	5,399	5,582
한국문화소개행사 개최 및 지원 (일반회계, 3131-304 국가이미지 홍보의 내역사업)	한류 확산 및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순방계기 문화행사, 해외 주요계기 한국문화소개, 재외홍보관 대상 한국문화 바로알리기사업, 주한 외국인 및 외래방한객 대상 문화홍보 사업 등 추진	7,552	7,965	7,796	7,347

* 주: 한국문화소개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중 일부가 재외문화원 사업비로 집행되었음.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에는 일반적인 재외문화원 운영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은 주재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국가이미지홍보’ 사업 내 ‘한국문화소개행사 개최 및 지원’에 순방계기 문화행사, 해외 주요계기(재외문화원 개원, 국제행사 등) 한국문화 소개, 재외홍보관 대상 한국문화 바로 알리기 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각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문화원의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국가홍보사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업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여 이를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해야 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재외문화원 사업비가 일반회계 및 관광기금 내 다수의 사업에 산재됨에 따라 재외문화원 전반의 예·결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 사업별로 추진되는 재외문화원의 사업현황 및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현재 재외문화원의 예산구조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문화원의 사업경비 일원화를 통한 재정투명성 및 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종무실

(1) 종교문화시설건립(일반회계, 1131-302)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2000년～, 보조)은 전통종교문화 체험시설, 종교 유적지 복원, 종교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및 국민의 여가·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임.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22억 7,600만원으로, 이 중 194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권 건립 14억 1,000만원, 용인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 4억 2,500만원 등 28억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종교문화시설건립	26,026	26,026	-	-	-	22,276	19,440 [9,379]	-	2,836	33,487
▪ 10.27법난기념관 건립	633	633	-	-	-	633	633 [569]	-	-	4,711
▪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1,412	1,412	-	-	-	1,412	1,412 [26]	-	-	-
▪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1,230	1,230	-	-	-	1,230	1,230 [1230]	-	-	-
▪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1,180	1,180	-	-	-	1,180	1180 [328]	-	-	1,470
▪ 신안기독교체험관 건립	900	900	-	-	-	-	-	-	-	-
▪ 청도 운문사 문화역사관 건립	800	800	-	-	-	800	800 [106]	-	-	-
▪ 마이산 전통문화체험전시관 건립	1,100	1,100	-	-	-	1,100	1,100 [429]	-	-	1,100
▪ 군산 선교 역사관 건립	797	797	-	-	-	797	797 [10]	-	-	897
▪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000	1,000	-	-	-	1,000	1,000 [197]	-	-	1,100
▪ 공주 마곡사 수련체험관 건립	860	860	-	-	-	860	860 [272]	-	-	-
▪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600	600	-	-	-	600	600 [-]	-	-	200
▪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1,200	1,200	-	-	-	1,200	1,200 [312]	-	-	234
▪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건립	800	800	-	-	-	800	800 [800]	-		-
▪ 나바위성당 성지 문화체험관 건립	1,410	1,410	-	-	-	1,410	- [108]	-	1,410	1,440
▪ 무성서원 유교 수련원 건립	827	827	-	-	-	827	827 [765]	-	-	826
▪ 용인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	1,525	1,525	-	-	-	1,525	1,100 [-]	-	425	-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팔공산 동화사 사명대사 체험관 건립	2,150	2,150	-	-	-	2,150	2,150 [2,150]	-	-	2,950
▪ 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관 건립	1,200	1,200	-	-	-	1,200	1,199 [771]	-	1	1,200
▪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역사문화자원화	50	50	-	-	-	-	- [-]	-	-	451
▪ 신안 불교문화 유산 순례길 조성	600	600	-	-	-	600	- [-]	-	600	600
▪ 울릉도 회당명상 문화체험관 건립	200	200	-	-	-	200	200 [-]	-	-	1,200
▪ 수덕사 복합문화 센터 건립	150	150	-	-	-	150	150 [-]	-	-	1,200
▪ 상주사 불교체험관 건립	102	102	-	-	-	102	102 [-]	-	-	798
▪ 해미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	900	900	-	-	-	900	900 [15]	-	-	-
▪ 천태 국제다문화 종합센터 건립	2,500	2,500	-	-	-	-	- [-]	-	-	-
▪ 구례 사성암 불교 문화체험관 건립	200	200	-	-	-	200	200 [-]	-	-	1,000
▪ 창원 가야 불교 문화교육관 건립	400	400	-	-	-	400	- [-]	-	400	1,800
▪ 경남 남해 성담사 국제명상센터 건립	300	300	-	-	-	-	- [-]	-	-	-
▪ 강화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000	1,000	-	-	-	1,000	1,000 [91]	-	-	5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

동 사업은 민간 보조(정액)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정률 30% 이내) 방식으로 추진되며 부지 매입, 시설 설계 및 공사 등으로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음.

2021년도 이후 사업 현황을 보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2차년도 이상) 모두 증가 추세임. 신규사업은 2021년 1개, 2022년 11개, 2023년에는 팔공산 동화사 사명대사 체험관 건립 등 13개를 추진 중이며, 계속사업의 경우 2021년 11개, 2022년 12개, 2023년 10.27 법난기념관 건립 등 16개 사업을 시행 중임.

[2021~2023년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현황]

구 분	사업 현황	
2021	신규사업	흑산도 정약전 평화의 길 조성(1개)
	계속사업	10.27 법난기념관 건립 등 11개
2022	신규사업	마이산 전통문화체험전시관 건립 11개
	계속사업	10.27 법난기념관 건립 등 12개
2023	신규사업	팔공산 동화사 사명대사 체험관 건립 13개
	계속사업	10.27 법난기념관 건립 등 16개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연도별 예산 실집행률을 보면 2020년 38.3%, 2021년 68.9%, 2022년 61.8%, 2023년 52.5%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예산 이월액 규모는 2020년 106억 1,900만원, 2021년 66억 6,800만원, 2022년

50억 4,100만원, 2023년 113억 9,000만원으로 미집행액 대부분이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어 국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음.

[2020~2023년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본예산(A)	추경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B)	교부 현액(C=A+B)	실집행액(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D/C)
2020	12,400	6,940	6,940	-	6,940	13,395	20,335	7,797	10,619	1,919	38.3
2021	12,411	12,411	10,967	1,444	10,967	10,619	21,586	14,866	6,668	52	68.9
2022	9,160	9,160	6,968	2,192	6,968	6,668	13,635	8,432	5,041	163	61.8
2023	26,026	26,026	19,440	2,836	19,440	5,041	24,480	12,853	11,390	237	52.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사업부지 변경 및 설계변경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지연, 종교편향 등 문제로 인한 지자체의 사업포기, 지자체의 지방비 미확보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023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주요 지연 사유]

구 분	사업 기간	사업 지연 사유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2020~2024	문화재 발굴에 따른 설계변경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	2022~2024	행정절차(인허가) 지연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2022~2024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 따른 설계변경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2022~2025	사업부지 변경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2022~2024	도시관리계획 변경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지연
신안 불교문화유산 순례길 조성	2023~2024	종교편향 등 문제로 사업 재검토('24년 사업포기)
창원 가야 불교문화교육관 건립	2023~2025	사전행정절차 지연(지방비 미확보) 등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와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 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확보 여부 확인 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노력하고, 예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 추진 독려 등 예산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콘텐츠정책국

(1) 콘텐츠정책국 소관 보조사업 총괄

<보조사업의 실집행 부진 등 개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은 영상·음악·대중문화·게임·패션·만화·이야기 등을 비롯한 각 장르의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보조사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만, 콘텐츠정책국 소관의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연례적으로 일부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사업이 다수 있었음.

구체적 사례로는 먼저, 영상콘텐츠산업 육성(1232-300) 중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 허브 구축사업'[45]의 경우 설계 공모 및 건축기획 심의 등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었고, 건축 기본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추진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금 예산액 10억원을 전북 전주시에 교부하지 않았고, 이 중 6억원은 '잼버리 K-pop 콘서트' 실시를 위하여 타 사업[46]으로 전용하였으며, 나머지 4억원은 불용하였음.

---

45) 보조사업자: 전북 전주시, 사업목적: 영상물 특수효과 전문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영화제작 활동 효율성 제고 및 수도권 등에 편중된 영화산업 지역 불균형 해소, 사업기간: 2022년~2025년(연장 검토중), 사업장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내, 총사업비: 230억 3,800만원(국비: 112억 7,600만원, 지방비: 117억 6,200만원)

46)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1231-303)

[사업지연에 따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보조사업(예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세부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2023년도 예산액(A)	2023년도 실집행(B)	B/A	사 유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 허브 구축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전북 전주시	1,000	-	-	설계 공모 및 건축기획 심의, 건축 기본설계 지연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전북 전주시	4,530	-	-	국가유산 발굴에 따른 사업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
영상콘텐츠 소스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한국 영상자료원	3,000	1,866	62.2	예산축소에 따른 전면 재설계 및 보안성 검토 및 사전협의 등 지연
충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게임산업 육성)	한국 콘텐츠진흥원 (충청남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1,000	56	5.6	주관기관의 부지매입 확약서 제출 지연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영상물등급 위원회	6,330	4,586	72.4	안정적 사업 기간 확보를 위해 사업 종료 시점 연장
부산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조성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4,220	149	3.5	설계용역계약 소관 이관(부산지방조달청 → 조달청 본청)에 따른 사업 지연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경기 고양시	2,874	-	-	담당 기관 및 실무 부서 간 설계 관련 이견 조율 등 사전협의 기간 발생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다음, 영상콘텐츠산업 육성(1232-300) 중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47]의 경우 지난 2022년 사업부지에서 국가유산이 발굴되어 사업 내용 및 설계의 변경 등이 불가피하였고, 그에 따른 설계용역 적정성

47) 보조사업자: 전북 전주시, 사업목적: 독립영화 전용상영관 및 영상문화복합공간 조성으로 대안·독립영화의 메카로서 위상 제고 및 시민 영상문화향유 확대, 사업기간: 2018년~2026년(연장), 사업장소: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 총사업비: 657억 3,400만원(국비: 192억 2,100만원, 지방비: 465억 1,300만원)

평가 및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전북 전주시에 교부된 45억 3,000만원의 보조금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다음, 영상콘텐츠산업 육성(1232-300) 중 '영상콘텐츠 소스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사업'[48]의 경우 예산축소에 따라 사업모델을 전면 재설계하면서 사전 조사 등의 작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고, 보안성 검토 및 관련 부처 사전협의 등의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음. 그로 인해 한국영상자료원에 교부된 보조금 30억원 중 18억 6,600만원만이 연내에 실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월되어 사업이 최종 완료된 2024년 4월경에 모두 실집행되었음.

다음, 게임산업 육성(1232-302) 중 '충남 이스포츠상설경기장 구축사업'[49]의 경우 주관기관의 부지매입확약서 제출 지연 등으로 사업수행 및 설계가 늦어져 당초 2023년 말까지였던 1차년도 사업 기간이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되었고, 전체 사업 기간도 2025년 말 완공으로 순연되었음. 그로 인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부된 보조금 10억원 중 5,600만원만이 실집행되었고, 대부분이 이월되었음.

다음,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1232-306) 사업의 경우 OTT 등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 시행에 대비하여 2023회계연도 보조금

48) 보조사업자: 한국영상자료원, 사업목적: 2D·3D 소스 데이터 및 한국영화 원본 소스데이터 보상수집, 사업기간: 2023.3.~2024.4.(완료), 총사업비: 30억원

49) 보조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간접보조사업자: 충청남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목적: 권역별 이스포츠 경기장 구축을 통한 이스포츠 경기장 수도권 편중 현상 완화 및 지역 이스포츠 저변 확대, 사업기간: 2023년~2025년, 사업장소: 충남 아산시, 총사업비: 200억 7,000만원(국비: 40억원, 기타: 160억 7,000만원)

지원 예산을 전년도 40억 9,000만원 대비 54.8% 증액된 6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온라인 교육포털 구축 및 영상 제작’의 안정적인 사업 기간 확보를 위해 사업 종료 시점을 2024년 6월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45억 8,600만원만이 실집행되고, 12억 7,7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4억 6,800만원은 불용되었음.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된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1231-300) 중 ‘부산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조성사업’[50]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의 소관이 부산지방조달청에서 조달청 본청으로 이관되는 등의 과정에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음. 그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부된 보조금 42억 2,000만원 중 1억 4,900만원만이 실집행되었고, 대부분이 이월되었음.

다음,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1231-300) 중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51]의 경우 담당 기관 및 실무 부서 간 설계 관련 이견 조율 등 사전협의 기간 발생에 따라 기본설계 착수 등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그로 인하여 경기 고양시에 교부된 28억 7,400만원의 보조금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50) 보조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간접보조사업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목적: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시설의 조성·운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기여, 사업기간: 2023.6.~2024.9., 사업장소: 부산 부산진구, 총사업비: 84억 4,000만원(국비: 42억 2,000만원, 지방비: 42억 2,000만원)

51) 보조사업자: 경기 고양시, 사업목적: 콘텐츠 IP 창작-성장-확산-재창조로 이어지는 IP 융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두가 참여·소통·협력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 시설을 구축하고, IP 융복합 가치사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기간: 2021년~2024년, 사업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총사업비: 244억 300만원(국비: 109억 8,600만원, 지방비 134억 1,700만원)

둘째, 사업 기간이 불가피하게 2개 연도에 걸쳐 추진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매년 보조금이 이월되고 있는 사업도 다수 있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게임산업 육성(1232-302) 내의 보조사업을 들 수 있는바, ‘게임인재원 운영’ 및 ‘이스포츠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의 경우 통상적으로 학사일정이 매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로 운영되고 있고, 게임 관련 기업들도 매년 2월 이후에 채용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보조사업을 이에 맞추어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임. 또한, ‘게임유통지원’ 및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등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 기간 확보 및 사업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사업 기간을 다음연도 초까지로 매년 연장하고 있음.

그 외에도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1232-303) 중 ‘기업육성 지원사업’의 경우 입주공간의 상시운영을 위해 매년 사업 기간을 다음 해 3월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같은 세부사업(1232-303) 내의 ‘장애인 대상 실감콘텐츠 드림존 조성사업’[52]의 경우 장애인 지원시설 대상 공모절차 실시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사업기간을 다음 해 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음.

또한, 이야기산업 활성화(1232-310) 중 ‘스토리텔러 양성’ 및 ‘국내외 스토리 유통 지원’의 경우 사업 특성을 고려해 매년 사업 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하고 있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7132-303)의 ‘패션 마케팅

52) 보조사업자: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 사업목적: 장애인에게 국내외 관광·공연 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실감콘텐츠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업기간: 2023.1.~2024.2.(완료), 총사업비: 34억원

지원사업’ 또한 글로벌 패션 업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 기간 등 특성에 따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보조사업(예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세부사업)	보조사업자	2023년도 예산액(A)	2023년도 실집행(B)	B/A	사 유
인재양성(게임인재원 운영) (게임산업 육성)	한국콘텐츠 진흥원	4,958	3,605	72.7	학사일정(다음연도 2월까지)에 따라 일부 이월
건전게임문화 확산 지원 (게임산업 육성)	한국콘텐츠 진흥원	7,465	5,489	73.5	교육·프로그램이 매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일부 이월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中 한국콘텐츠진흥원 소관) (게임산업 육성)	한국콘텐츠 진흥원	3,015	2,285	75.8	전문인력 양성이 매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일부 이월
실감형 콘텐츠 기업육성 지원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한국콘텐츠 진흥원	16,469	13,138	79.8	기업 입주공간 상시운영을 위해 불가피
장애인 대상 실감 콘텐츠 드림존 조성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한국실감 메타버스 콘텐츠협회	3,400	2,655	78.1	공모절차 후 해당 시설에 맞는 공간설계 및 실내외 조성공사 추가 소요
스토리텔러 양성 (이야기산업 활성화)	한국콘텐츠 진흥원	1,185	869	73.3	인력 양성 사업 특성상 사업 기간을 18개월로 설정
국내외 스토리 유통 지원 (이야기산업 활성화)	한국콘텐츠 진흥원	3,097	2,264	73.1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해 사업 기간을 18개월로 설정
메타버스 활용 디자이너 패션 마케팅 지원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한국콘텐츠 진흥원	2,300	1,775	77.2	글로벌 패션 업계 행사 일정(1~3월경 패션위크 개최) 고려
영화제작지원	민간 영화사 등	14,396	7,226	50.2	장기간 소요되는 영화 및 애니메이션영화 제작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설정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영화발전기금으로 편성된 영화제작지원(1261-300)은 독립예술영화 및 애니메이션영화의 제작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영화·애니메이션 제작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의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된 그해의 실집행률은 부진한 실정이나, 사업종료 시점 기준의 실집행률은 양호한 편이라는 것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명임.[53]

셋째,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된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기도 하였음.

먼저,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1232-301) 중 '파주 대중음악 전용공연장 조성사업'[54]의 경우 사업계획 구체화 및 지방비 확보 등 지연에 따라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고, 그로 인한 사업 일정 순연으로 경기 파주시에 교부된 보조금 30억원이 전액 이월되었음.

다음, 영상콘텐츠산업 육성(1232-300) 중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55] 또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고, 그로 인한 사업 일정 순연에 따라 전남 순천시에 교부된 보조금 2억원이 전액 이월되었음.

---

53) 다만, 이에 대해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시정요구가 있었는바, 영화진흥위원회는 그에 따라 꾸준히 개선 노력을 실시 중이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임.

54) 보조사업자: 경기 파주시, 사업목적: 지역 대중음악 공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문화향유 격차 해소 및 지역 기반 아티스트 배출, 사업장소: 경기 파주시, 총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55) 보조사업자: 전남 순천시, 사업목적: 애니메이션 제작기지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기간: 2023년~2024년, 사업장소: 순천만 국가정원 및 원도심 일원, 총사업비: 390억원(국비: 195억원, 지방비: 195억원)

[수시배정 대상 지정에 따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보조사업(예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세부사업)	보조사업자	2023년도 예산액(A)	2023년도 실집행(B)	B/A	사 유
파주 대중음악 전용공연장 조성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경기 파주시	3,000	-	-	구체적 사업계획 미흡으로 수시배정 대상 지정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전남 순천시	200	-	-	구체적 사업계획 미흡으로 수시배정 대상 지정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종합하면, 첫 번째 유형과 같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사전준비 과정이 미흡하거나 관계기관과 원활한 행정협조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등, 집행계획 수립과 사업 관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수립 및 사업 관리 등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두 번째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의 특성상 2개 연도에 걸쳐 실시되는 등의 이유로 매년 부득이하게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급적 보조사업의 기간과 국가의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3조[56]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56)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끝으로, 세 번째 유형과 같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신설·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시배정 대상 지정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일반회계, 1231-306),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일반회계, 1231-322)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콘텐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 관련 각종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문화산업 완성보증계정’에 대한 출연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프로젝트성 보증을 지원하는 ‘완성보증계정 출연’과 중소 콘텐츠 기업의 제작자금 등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하는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지원’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268억 2,000만원으로, 이 중 252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6,820	26,820	-	-	-	26,820	25,272 [25,192]	-	1,548	34,520
▪ 완성보증계정 출연	20,000	20,000	-	-	-	20,000	20,000 [20,000]	-	-	25,000
▪ 콘텐츠기업 투융자 기반 조성	2,820	2,820	-	-	-	2,820	2,820 [2,740]	-	-	4,520
▪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4,000	4,000	-	-	-	4,000	2,452 [2,452]	-	1,548	5,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는 콘텐츠산업에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는 출자금을 다시 민간 벤처캐피탈에 출자하고, 벤처캐피탈이 여기에 민간 투자금을 더해 조성한 자펀드를 통해 콘텐츠 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한편,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2023년도까지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에도 영화발전기금을 통한 출자가 이루어졌으나,[57] 2024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본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통합되었음.

2023회계연도 ‘문화계정’ 출자액은 1,900억원, ‘영화계정’ 출자액은 100억원임.

[2023회계연도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등 출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 펀드 출자 계	198,000	200,000	-	-	-	200,000	200,000	-	-	340,000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문화계정)	190,000	190,000	-	-	-	190,000	190,000	-	-	270,000
▪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영화계정)	8,000	10,000	-	-	-	10,000	10,000	-	-	25,000
▪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	-	-	-	-	-	-	-	-	45,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7) 영화제작지원(영화발전기금, 1261-300) 중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내역사업

<내실있는 콘텐츠 정책금융 실시 필요>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통해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58]을 발표하며, 향후 2027년까지 5조원대의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대한 출자 확대를 통해 약 2조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를 위한 전략펀드를 약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완성보증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약 9,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콘텐츠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약 7,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임.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문화·콘텐츠 시장도 큰 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는바, 이를 계기로 우리 콘텐츠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하여 콘텐츠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흐름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아울러, 완성보증 및 이차보전 또한 영세한 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고위험성 등으로 인해 충분한 민간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콘텐츠 분야에 대해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자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콘텐츠 업계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58)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 2024. 6.

다만,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것이 정부가 제시한 계량적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양적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콘텐츠 정책금융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완성보증의 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09년부터 시행된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프로젝트성 보증으로서, 제작 완료 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임. 정부는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기금의 보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하며, 보증사고 발생 시 정부가 출연한 기본재산을 통해 대위변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문화산업 완성보증 개요]

○ 사업개요: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프로젝트성 보증으로, 제작 완료 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2009. 9. 시행)
*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보증(기업 재무구조를 기준으로 한 일반기업 보증과 차별)
** 요건: 영화 배급계약서, 공연 대관허가서, 방송편성계약서 등 선판매계약 체결
○ 대상장르: 문화산업 10개 장르(완성보증 업무방법서)
- 만화, 애니,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영화, 방송, 게임, 공연, 출판
○ 보증한도: 프로젝트별 15억원(방송, 영화 장르 최대 30억원)
○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2009년~), 신용보증기금(2019년~)
○ 정부출연 총 규모: 1,790억원(2024년도 예산 포함)

(단위: 억원)

구 분	2009~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출연금	240	50	100	200	200	250	300	200	250	1,79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완성보증 관련 연도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5%, 2022년 3.3%였던 사고율이 2023년에는 10.2%로 급증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하여 2021년·2022년 실시된 한시적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그간의 제작 지연이나 흥행 부진 등으로 인한 콘텐츠 기업들의 부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그에 따라 2024년 말 기준 사고율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임.

[연도별 완성보증 기본재산·보증잔액 및 사고율 등 통계]

(단위: 억원, 배,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4.
기본재산(A)	144	305	450	631	868	960	1,127
신규공급	321	862	1,024	1,417	1,928	2,210	959
보증잔액(B)	318	636	898	1,389	1,822	2,380	2,526
운용배수(B/A)	2.2	2.1	2.0	2.2	2.1	2.5	2.2
사고금액(C)	**11**	**35**	**64**	**21**	**60**	**244**	**139**
사고율(C/B)	**3.5**	**5.5**	**7.1**	**1.5**	**3.3**	**10.2**	**5.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사고율 급증은 단지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현재 콘텐츠 업계의 여러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영세 콘텐츠 기업의 자금 여력이 단기간에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출연을 통한 기본재산 확충 외에도 무리한 신규공급 확대 지양 및 부실기업에 대한 적극적 사후관리 등을 비롯해 다양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둘째, 지난해 이차보전 예산의 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8년부터 시행된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은 문화·콘텐츠 기업이 필요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정부가 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융자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이차보전율은 2.5%p임.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개요]

○ 사업개요: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문화콘텐츠기업의 운영 또는 프로젝트 제작 자금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이차보전율 2.5%p)
○ 지원대상: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2018년부터 시행)
○ 한도금액: 기업별 융자한도 5억원(단, 창업 및 청년 기업의 경우 10억원)
- (보증기관) 지원대상 문화콘텐츠 기업에 보증서 발급(신보, 기보)
- (협약은행) 보증서를 기준으로 대출시행, 이차보전금 정산 및 신청
* IBK기업은행(2018년~), 신한은행(2018년~), 국민은행(2021년~), 우리·하나은행(2024~)
- (문체부, 콘진원) 이자 차액을 협약기간 내 보전(분기별) 및 사업 관리
○ 연도별 예산 편성·집행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 산	2,000	2,000	1,625	1,625	2,000	**4,000**	5,000
집 행	341	1,222	1,361	1,610	1,957	**2,452**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을 시작한 2018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는 연간 20억원 이내의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2023년 이를 대폭 증액해 4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2024년도 예산에는 이를 재차 증액하여 50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음. 그러나 2023년도 집행액은 위 표와 같이 24억 5,20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률이 6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고금리로 인하여 대출 자체가 감소하였고, 기업당 총 1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약에 따라 지원대상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그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 가능 횟수를 기존 '기업당 총 1회'에서 '기업당 연간 1회'로 확대하고, 협약 금융기관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는 등, 집행부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임.

그러나 고금리 등의 상황은 그 이전부터 예견되던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59] 지원대상이 고갈되었다는 것은 영세 콘텐츠 기업들의 실제 대출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정책목표 달성만을 위해 예산을 과다 편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이차보전 등 정책금융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무리한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있는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와 관련하여 저조한 투자실적 및 자펀드의 조성 지연 등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모태펀드 문화계정에는 2024년 3월 말 현재까지 정부의 신규 출자액과 재출자액을 합해 총 1조 6,216억원이 투입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민간자본을 더해 총 3조 3,133억원 규모로 142개 자펀드가 조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콘텐츠 기업 등에 총 3조 2,938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음.

---

59) 국내 기준금리 추이(한국은행): 1.00%(2021.11.) → 1.25%(2022.1.) → 1.50%(2022.4.) → 1,75%(2022.5.) → 2.25%(2022.7.) → 2.50%(2022.8.) → 3.00%(2022.10.) → 3.25%(2022.11.) → 3.50%(2023.1.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자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개, 건)

구 분	2006~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신규 출자액	4,631	360	530	540	630	1,130	1,148	1,388	1,900	12,257
총 출자액 (재출자 포함)	5,513	750	912	1,320	1,080	1,460	1,440	1,641	2,100	16,216
결성액	13,716	1,576	1,696	2,416	1,968	2,438	2,548	2,488	4,286	33,133
신규조성 자펀드 수	61	7	10	9	10	11	11	8	15	142
투자액	15,614	2,022	1,785	1,629	2,394	2,259	2,504	2,233	2,498	32,938
투자 건수	2,807	330	278	278	320	305	355	312	304	5,28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연도별 예산안 규모와 이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정부는 2018년 이후 매년 그 규모를 크게 증액해 제출하고 있고,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매년 이를 100억원 이상 감액하고 있음.

특히,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300억원 이상의 감액이,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200억원의 감액이 있었는바, 주요 감액 사유는 기존의 출자로 조성된 펀드의 투자실적 부진에 따라 상당한 투자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정부 출자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음.[60]

60) 참고로, 2024년 3월 말 기준 2020년에 조성된 자펀드의 투자여력은 266억원, 2021년 조성 자펀드는 457억원, 2022년 810억원, 2023년 3,300억원으로, 현재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총 투자 여력은 4,834억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연도별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관련 정부안 규모 및 국회 확정 규모]

(단위: 억원)

연 도	정부안	국회 심의 증감	국회 확정
2014	200	-	200
2015	600	△100	500
2016	500	△140	360
2017	800	△270	530
2018	580	△40	540
2019	750	△120	630
2020	1,230	△100	1,130
2021	1,278	△130	1,148
2022	1,737	△349	1,388
2023	2,200	△300	1,900
2024	2,900	△200	2,7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지난 2023년도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자펀드의 결성 지연 현상이 연례적으로 발생해 출자가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 조속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된 바 있음.[61] 실제 지난해에는 당초 6개 분야에 대하여 16개의 자펀드를 조성하려는 계획[62]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펀드가 2023년 8월에 들어서야 조성되기 시작해 연말까지 15개의 자펀드만이 조성되었고, 1개 자펀드[63]는 조성에 실패한 바 있음.

6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Ⅳ)」, 2023. 11. 등
62) 콘텐츠IP 5개 900억원, 문화M&A 2개 400억원, 유니콘 2개 300억원, 밸류 2개 200억원, 문화상생 2개 300억원, 문화일반 3개 300억원 등, 총 2,400억원 규모
63) 콘텐츠IP 분야, 300억원 규모. 운용사의 유동성 악화 등 사유로 출자 포기(자진철회)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금융 확대 기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펀드 출자를 지속하는 경우 출자금이 바로 개별 콘텐츠 기업 등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펀드의 대기 자금으로 남게 되어 국가재정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64]

정부는 2024년 대형 콘텐츠 투자목적의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향후 펀드 출자를 지속 확대할 방침인바,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투자 여력이 과도하게 유지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콘텐츠 정책금융이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64) 이에 정부의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서도 이러한 펀드 출자사업의 경우 기 출자예산의 집행실적(기존 출자예산을 통한 자펀드 결성 실적 및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 현황 등), 투자금의 회수 및 재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적정한 출자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3) 게임산업 육성(일반회계, 1232-302)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게임산업 육성’은 게임인재원의 운영을 통해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게임의 기획·제작·유통 지원 및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게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건전게임문화 확산 지원,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게임 국가기술 자격검정 운영 등 게임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타 게임정책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61억 800만원으로 300만원의 불용액 외에 대부분의 예산이 각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액은 563억 1,700만원에 그쳤음.

[2023회계연도 게임산업 육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게임산업 육성	66,118	66,118	-	△10	-	66,108	66,105 [56,317]	-	3	67,915
▪ 인재양성	4,958	4,958	-	-	-	4,958	4,958 [3,605]	-	-	5,360
▪ 게임기업 육성	38,185	38,185	-	-	-	38,185	38,185 [34,386]	-	-	42,560
▪ 글로벌게임허브 센터 운영	4,156	4,156	-	-	-	4,156	4,156 [3,758]	-	-	4,216
▪ 게임활성화 생태계 조성	16,480	16,480	-	-	-	16,480	16,480 [12,644]	-	-	13,514
▪ 기타 게임정책 지원	2,339	2,339	-	△10	-	2,329	2,326 [1,924]	-	3	2,26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게임시간선택제의 실효성 제고 필요>

‘게임’이라는 콘텐츠 분야는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총매출액이 22조 2,149억원, 세계시장 규모가 2,082억 4,900만 달러에 이르는 유망 산업임과 동시에,[65]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청소년의 86.4%, 아동의 74.9%가 게임이용군, 특히 전체 3.1%~3.2%의 아동·청소년이 ‘문제적’ 게임이용군으로 분류되고 있어[66] ‘게임 과몰입’ 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복합적 영역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본 사업을 통한 각종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게임 과몰입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도 함께 마련하고 있음.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흥정책 중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제도 및 규제정책 중 ‘게임시간선택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첫째,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이 당초 취지 및 기대에 비해 관심도와 활용도가 떨어져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게임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으로서, 게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2002년 도입되었으며, 현재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및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로 나누어 자격검정시험이 실시되고 있음.

---

65)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4. 2.
66)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아동·청소년 게임행동 종합 실태조사」, 2024. 2.

최초 도입 후 2009년까지는 다른 자격제도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소관이었으나, 2010년부터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되었음. 다만, 제도 도입 직후인 2003년에는 4,000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1,000명 이상이 응시하였으나, 업무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소관으로 이관된 이후 응시자가 지속 감소하여 2023년 기준으로는 연간 486명이 1차 필기시험에, 374명이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도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합격 현황]

(단위: 명, %)

구 분		게임기획			게임그래픽			게임프로그래밍			합 계		
		응시	합격	비율	응시	합격	비율	응시	합격	비율	응시	합격	비율
필기	1회(4.29)	118	89	75.4	143	113	79.0	34	24	70.6	295	226	76.6
	2회(9.9)	68	48	70.6	93	66	71.0	30	17	56.7	191	131	68.6
실기	1회(7.8)	68	32	47.1	110	51	46.4	20	19	95.0	198	102	51.5
	2회(11.18)	70	51	72.9	98	33	33.7	8	8	100.0	176	92	52.3
계		324	220	67.9	444	263	59.2	92	68	73.9	860	551	64.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이와 관련한 취업 현황 등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게임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192명 중에서 이미 취업 상태였던 47명을 제외한 145명 중 19명만이 신규로 취업하여 13.1%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바,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에 대한 관심도 및 효용성 등이 모두 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 및 기대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게임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구 분	평균응시 (20~22년)	건강보험 기준					워크넷
		취득자	재직자	미가입자	신규취업 (23.6월)	신규취업률 (23.6월)	구인 (22년)
게임기획	163	74	16(21.6)	58	8	13.8	3
게임그래픽	144	98	24(24.5)	74	8	10.8	6
게임프로그래밍	40	20	7(35.0)	13	3	23.1	4
계	**347**	**192**	**47(24.5)**	**145**	**19**	**13.1**	**13**

* 자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시행, 2022년도 취득자 등 대상 노동시장 활용현황(23.6월 기준)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효용성평가 결과(2023년)

그에 따라 과거 예·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 등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실효성 제고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67] 언론 등을 통해서도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며 최근까지도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68]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게임국가기술자격 검정 개선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본 제도의 개선을 위해 ① '장기적으로 제도운영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위해 전문운영기관으로 이관', ② '기초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으로 개편' 외에도 ③ '제도의 폐지' 방안까지 제시되기도 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①과 ③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현재 ②의 취지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개선을 추진

6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등
68) 아이뉴스24, "[단독] 빛바랜 게임국가기술검정…한콘진, 성과 못내고 손 떼나", 2023. 7. 17. 등

중이라는 입장인바,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제도가 '게임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인 게임산업 육성에 이바지한다'는 당초의 제도 도입 취지 및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둘째, 게임시간선택제 또한 그 이용자가 사실상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게임시간선택제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2년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을 강제로 제한하던 '셧다운제'[69]의 폐지와 함께 그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70] 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게임문화재단으로 하여금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위 시스템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비스를

---

69) 「(舊)**청소년 보호법**(2021. 12. 7. 법률 제18550호에 따라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청하면, 협력 게임사가 제공하는 게임에 대해 이용자가 신청한 시간 외에는 게임이용이 제한되도록 작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위 서비스를 통해 게임시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협력 게임사는 네 곳뿐이고 서비스 정식 개시 이후 총 이용자 수 또한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71]

[2023년도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 운영 실적]

(2024. 5. 기준)

구 분	내 용
누리집 오픈	- 게임시간선택제 통합 서비스 '게임시간 선택 서비스(gamehour.or.kr)' 오픈(2023.2.27.)
협약실적	- 엔씨, 넥슨, 카카오게임즈, 스마일게이트, 엑스엘게임즈*(5개사)
협력 게임사	- 엔씨, 넥슨, 카카오게임즈, 스마일게이트(4개사)
서비스 게임 현황	- 총 41개 게임
방문인원	- 19,754명
신청인원	- 94명
문의건수	- 59명(서비스 문의, 협약 및 API 연동 관련 문의)

* 엑스엘게임즈는 2024. 6. 27. 서비스 개시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2023년 기준 국내의 '게임 이용자의 게임 분야별 이용률'[72]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비스는 현재 인터넷을 통한 'PC 게임'에만 적용되고

71) 뉴스1, "[단독]'셧다운제' 대신 도입한 게임시간 선택제…지난해 실사용 94명 불과", 2024. 5. 14.
72)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4. 2. 참고로, PC게임은 61.0%, 콘솔 게임은 24.1%, 아케이드 게임은 11.8%로 나타남.

있으며,[73] 국내 게임 이용순위에서 해외 업체가 제공하는 게임이 꾸준히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음[74]에도 위 서비스의 적용대상 게임사 또한 국내 업체로 한정되는 등의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75]을 발표하면서 게임시간선택제를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는바, 현행 제도하에서도 게임시간선택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율규제 전환으로 인하여 제도가 더욱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73)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바일 기기는 그 자체가 개인 인증에 이용될 정도로 이용자와 기기가 1:1로 대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기 자체 운영체제에 기술적으로 PC나 콘솔 기기보다 더욱 강력한 청소년 보호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게임시간선택제 적용이 불필요하고, 모바일 게임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각 플랫폼마다 이용 약관과 정책이 상이하다는 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서드파티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일관된 시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74) PC방 온라인 게임 순위·통계 서비스인 더로그(The Log)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해외 업체인 '라이엇 게임즈(Riot Games Inc.)'가 제공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가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75) 관계부처 합동, "게임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2024. 5.

(4)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일반회계, 1232-304)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76]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 전문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관련 사업 대부분을 보조사업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385억 5,400만원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전액 교부되었고, 실집행액은 372억 6,600만원, 이월액은 10억 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4,400만원임.

[2023회계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한국콘텐츠 진흥원 지원	38,554	38,554	-	-	-	38,554	38,554 [37,266]	-	-	38,661
▪ 인건비	29,949	29,949	-	-	-	29,949	29,949 [29,940]	-	-	30,585
▪ 경상비	2,861	2,861	-	-	-	2,861	2,861 [2,717]	-	-	2,739
▪ 사업비	5,744	5,744	-	-	-	5,744	5,744 [4,609]	-	-	5,33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7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보조금 집행의 철저한 관리 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본 사업을 통한 지원금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각종 콘텐츠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연간 총 5,000억원에 이르는 국고를 보조받고 있음. 그러나 보조사업의 수행에 있어 각 사업의 구분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통합해 집행함으로써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사업 구분 등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가 있음.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1231-303, 이하 '한류사업')' 내 보조사업인 '해외시장 개척지원'의 일환으로 'K-콘텐츠 엑스포 in UAE'를 실시하면서, 단위사업이 다른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1232-301)' 내 '현지 인프라 활용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보조금 중 일부를 하나의 동일 용역계약[77]에 함께 사용하였음.

['K-콘텐츠 엑스포 in UAE' 관련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보조사업명)	예산액 (국회 확정 기준)	집행액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1231)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1231-303)	콘텐츠 수출지원 (해외시장개척지원 中 K-콘텐츠 B2C 해외마케팅 활성화)	2,450	1,840
문화콘텐츠산업 육성(123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1232-301)	음악산업 육성 (현지 인프라 활용 해외진출 지원)	-	590
계			2,450	2,43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산보고서 재구성

77) '2023년 K-콘텐츠 엑스포 in UAE' 개최 위탁용역(제안요청서상 용역비: 24억 5,0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임차료·홍보비 등 절감 및 모객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음악산업 육성사업(1232-301) 내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한류사업(1231-303)의 'K-콘텐츠 엑스포 in UAE'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는 서로 다른 단위사업에 속한 두 사업의 연계 추진 관련 계획이 전혀 제시된 바 없다는 점,[78] 그리고 연계 추진에 따라 소요예산이나 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확대된 것이 아니라 한류사업(1231-303)에서 처음 계획했던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만이 투입되었을 뿐이며 실제 행사내용도 예산안 심사 당시 제출된 계획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보다는 한류사업(1231-303)의 보조금이 충분하지 않아 음악산업 육성사업(1232-301)의 보조금을 함께 활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이처럼 단위사업(세항)의 구분을 무시하고 보조금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도 외 사용 금지원칙[79]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가재정법」상 전용[80]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81]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78) 당초 한류사업(1231-303)에만 편성되어 있던 위 행사는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K-콘텐츠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B2C(Business to Consumer) 성격의 행사이고,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1232-301)의 '현지 인프라 활용 해외진출 지원'은 중소·신인·인디 아티스트의 해외진출을 위한 B2B(Business to Business)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취지가 다른 측면이 있음.

7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0)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로 다른 내역사업에 별도의 보조사업으로 계획하였던 ‘서울국제뮤직페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박람회’를 최초 계획과 달리 하나로 통합하여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두 사업을 통해 교부된 보조금 외에도 ‘현지 인프라 활용 해외진출 지원’ 및 ‘ICT 음악 콘텐츠 지원’ 등 다른 보조사업 목적으로 교부된 보조금까지 활용하여 하나의 용역계약[82]에 함께 사용하였고,

매년 ‘대중문화예술분야 시상식’을 실시하면서 별도의 보조사업인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의 보조금 일부를 함께 사용하는 등,[83] 각 보조사업의 구분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통합하여 집행함으로써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프로그램·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등의 구분까지 무의미하게 하고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들이 있었음.

특히, 그중에는 아래 표와 같이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성격의 항목에 다른 개별 사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아 집행한 경우도 있었는바, 이처럼 개별 사업비의 보조금을 기관운영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사업비와 경상비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할 뿐 아니라, 개별 사업비가 경상비에 비하여 증액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8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82) ‘2023년 서울국제뮤직페어·엔터테인먼트산업 박람회(MU:CON 2023)’ 개최 및 운영 위탁용역 (제안요청서상 용역비: 27억 3,400만원)

83) ‘23 대중문화예술분야 시상식 및 융복합 공연 개최’ 통합운영(제안요청서상 용역비: 4억 6,600만원) 이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 지원센터 운영’ 사업 내에 ‘대중문화예술 성과홍보를 위한 공연 지원’ 예산이 기 편성된 바, 시상식 행사 운영의 효율성 및 연계성 제고를 위해 위탁용역을 통합 발주한 것이므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임.

[기관운영 목적에 개별 사업비의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금액	해당 계약에 보조금이 집행된 개별 사업명
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관 통합홍보 위탁용역	870	23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운영 23한국콘텐츠진흥원홍보활성화 23신성장게임콘텐츠제작지원 23게임기획지원 23건전게임문화확산지원 23글로벌게임허브센터운영 23OTT특화콘텐츠제작지원 23중소제작사글로벌도약지원 23방송영상콘텐츠후반제작지원 23애니메이션제작지원 23실감콘텐츠제작지원 23실감콘텐츠글로벌페스티벌개최 23콘텐츠해외시장개척지원 23관계부처합동한류마케팅지원 23해외거점운영 23온·오프라인음악콘텐츠개발지원 23플랫폼기반대중음악활성화지원 23현지인프라활용해외진출지원 23메타버스활용패션마케팅지원 23만화콘텐츠기업육성 23국내외스토리유통지원 23콘텐츠기업투융자기반조성 23실감콘텐츠기업지원인프라운영 23콘텐츠원캠퍼스구축운영 23콘텐츠현업인재교육 23신기술콘텐츠융복합아카데미운영 23온오프라인 음악 콘텐츠 개발 지원 23CT사업화촉진(R&D)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회가 예산으로써 심의·확정한 프로그램·단위사업 등의 구분 및 각 보조사업의 구분을 준수해 보조금

을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보조사업자가 사업실시 과정에서 위와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음.

(5)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일반회계, 1232-306),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일반회계, 1232-307)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84]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각종 영상·광고·선전물의 등급분류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63억 3,000만원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전액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액은 45억 8,600만원, 이월액은 12억 7,7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6,8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영상물등급 위원회 지원	6,330	6,330	-	-	-	6,330	6,330 [4,586]	-	-	7,28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8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85]에 따라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역시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어 있음.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125억 2,200만원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전액 교부되었으나, 실집행액은 120억 2,000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200만원임.

[2023회계연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게임물관리 위원회 지원	12,522	12,522	-	-	-	12,522	12,522 [12,020]	-	-	14,4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8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등급분류 관련 신뢰 확보 노력 필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내용정보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과 관련 실태조사·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86] ‘게임물관리위원회’ 또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게임물 등급분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과 게임물 이용자·사업자 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함.[87]

---

8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3.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제73조(구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8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의2.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역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

과거에는 舊「영화진흥법」과 舊「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비디오물·게임물 모두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였음. 그러나 게임물이 음반·비디오물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게임이용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지난 200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신인 舊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분리·이관된 것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두 영화·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 콘텐츠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콘텐츠의 주제·내용 및 표현 정도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콘텐츠의 연령별(전체·12세·15세 및 청소년 불가 등)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과거와 같이 콘텐츠의 내용을 통제하는 사전 검열의 성격에서 벗어나 콘텐츠의 선택·이용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영화·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이용자 등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양 기관의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한 신뢰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도 있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다고 할 것인바,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신뢰 확보의 노력도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먼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우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고,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일부 게임물의 등급분류 '거부' 및 등급 재조정 등과 관련하여 공정성·편파성 및 투명성 등 논란[88]이 발생·확대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바 있음.

당시 이용자들은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집단적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에는 현행의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가 헌법[89]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12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진 바도 있음.[90]

현행과 같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게임물 유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부분[91]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88) 파이낸셜뉴스, ""청불이냐, 아니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재분류 권고 논란", 2022. 10. 13., 인벤, "다시 불거진 등급 분류 이슈,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 2022. 10. 5., 이투데이,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2022. 10. 30. 등 기사 참조

89) **헌법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90) 심사결과: 계속심사(이후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9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②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

으로 결정[92]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와 마찬가지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위 청원의 취지와 같은 문제제기가 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게임물 등급분류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에도 이전부터 등급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으나, 최근 조사[93]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2022년 87.8%, 2023년 88.8%로 나타나는 등 다소 개선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지난 2023년 OTT(Over The Top) 콘텐츠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 시행 이후 적극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94] 전체관람가 등 영화에 앞서 상영되는 '광고' 및 '예고편' 영화에 대한 선정성·폭력성 등 논란,[95] 전체적으로 등급분류가 점차 관대해지고 있다는 지적[96] 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한 다방면의 제도개선을 통해 영상물의 등급분류 관련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92)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등급분류보류는 비디오물 유통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즉 검열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4헌가18

93) 영상물등급위원회, "2023년도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 2023. 12.

94) MBN, ""선정성·살인 장면 청소년에 노출" OTT 자체등급분류 141건 무더기 '부적절'", 2023. 9. 20., 아시아경제, "마약·성범죄 장면에도 '15세 관람가'…OTT 자체 등급 분류제 문제없나", 2024. 5. 24. 등 기사 참조

95) 한겨레, "아이들 보는 전체관람가 영화에 '19금 예고편'?", 2019. 9. 8. 기사 참조

96) 영상물등급위원회, 위 조사 및 데일리안, ""아이와 보는데 노출씬에 깜짝"…느슨해진 관람 등급? [15금·19금의 '기준'①]", 2023. 11. 10. 등 기사 참조

(6)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일반회계, 7132-303)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은 예술·게임·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전통문화·한류·패션·한국어교육·스포츠·문화여가 등 각종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당초 예산액은 162억 4,0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900만원 및 다른 사업으로의 전용액 2억 5,0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60억 1,900만원으로, 이 중 158억 9,400만원을 집행(실집행액 144억 8,800만원)하고 1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16,240	16,240	29	△250	-	16,019	15,894 [14,488]	-	126	7,061
▪ 전통문화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공급	3,000	3,000	-	-	-	3,000	3,000 [2,922]	-	-	1,400
▪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1,700	1,700	-	-	-	1,700	1,700 [1,627]	-	-	830
▪ 장르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활성화 지원	8,590	8,590	-	-	-	8,590	8,590 [7,667]	-	-	3,546
▪ 한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	1,100	1,100	-	-	-	1,100	1,100 [1,078]	-	-	840
▪ 스포츠 아카이브 범용화 지원	900	900	-	-	-	900	900 [589]	-	-	270
▪ 문화여가 메타버스 진흥체계 운영	950	950	29	△250	-	729	604	-	126	17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통폐합 등 편성체계 개편 필요>

본 사업은 2022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서, 메타버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던 당시 상황에 맞춰 이를 활용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음. 이후 2023년까지 총 32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24년도에도 사업명만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변경되어 총 70억 6,1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사업을 문화·예술·스포츠 등 전 분야에 걸쳐 메타버스 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기획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이를 총괄하도록 하였음. 이에 사업 분류(사업코드) 또한 기획조정실 소관의 '문화·관광행정지원' 프로그램(7100) 내 '종합정책연구' 단위사업(7132)에 포함된 세부사업(7132-303)으로 설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사업은 콘텐츠정책국을 비롯해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체육국 등이 각자의 분야에서 메타버스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 내역사업 간의 연계나 총괄관리 등을 위한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크지 않았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부터 본 사업을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콘텐츠정책국 소관으로 이관하였음.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세부사업의 분류를 기획조정실 소관 '문화·관광행정지원' 프로그램(7000)의 '종합정책연구' 단위사업(7132) 내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그 취지와 내용이 상이한 ‘행정지원’ 프로그램 및 ‘종합정책연구’ 단위사업 내에 계속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묶음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정책 위주의 예산 편성 및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편성은 전체적인 사업 구조의 파악과 분야별·정책별 재원 배분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각 정책 및 사업의 성과관리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임.

또한,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97]은 국회의 사전 의결이 없는 한 예산을 각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주요사업비를 경상경비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나, 본 사업과 같이 주요사업비를 경상경비 성격의 ‘문화·관광행정지원(7000)’ 프로그램 내에 편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한 전용[98] 절차만으로도 주요사업비를 기관운영 등의 경상경비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도 있음.

---

97)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8)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일반연구비(260-01) 3억원을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대부분을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7112-252)’의 일반수용비(210-01)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바, 이는 본 사업(7132-303)이 위 기본경비와 동일한 ‘문화·관광행정지원(7000)’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2023회계연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3.2.22)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7132-303)	210-01	33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7132-303)	210-14	용역계약 추진을 위한 세목 변경
세목조정 (‘23.5.3)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7132-303)	210-01	520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7132-303)	210-14	용역계약 추진을 위한 세목 변경
전용 (‘23.9.12)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 (7132-303)**	**260-01**	**250**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7112-252)**	**210-01**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 K-pop 콘서트 방송제작비 충당을 위한 전용**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해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산업을 육성’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반영하여, 본 사업을 ‘콘텐츠산업 육성’ 프로그램(1200) 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단위사업(1232)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본 세부사업에 포함된 각 내역사업은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는 공통점 외에는 사업 간 내용의 차이가 상당하고, 특별히 내역사업 간의 연계나 공동실시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각 내역사업별로 소관 부서 및 사업수행 주체가 전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묶어 편성하기보다는 각 부서별 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99]

[메타버스 콘텐츠 사업의 내역사업별 소관 부서 및 사업수행 주체]

내역사업명	소관 부서	사업수행 주체
○ 전통문화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공급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 예술 메타버스 확장 지원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장르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 메타버스 활용 디자이너 패션 마케팅 지원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류 메타버스 콘텐츠 공급 및 운영	국제문화정책관 한류지원협력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세종학당재단
○ 스포츠 아카이브 범용화 지원	체육국 체육정책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문화여가 메타버스 진흥체계 운영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직접수행)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99) 참고로, 정부는 당초 프로그램예산구조를 개발할 당시 '부문'은 각 부처, '프로그램'은 실·국, '단위사업'은 과(課)에 해당하는 사업에 연계되는 방향으로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이나 단위사업은 실·국 또는 과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활용하였음.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나 단위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 박기영, 「한국재정」 개정판, 법우사, 2018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도부터 기존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1232-303)’ 사업을 ‘신기술 융합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으로 개편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기존의 실감형 기술 외에도 메타버스·AI(인공지능) 등 각종 신기술과 융합된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내역사업 중 ‘장르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은 ‘신기술 융합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에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100]

[신기술 융합 콘텐츠산업 육성(1232-303) 개요]

○사업목적: 콘텐츠 제작지원 및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산업 육성
○사업내용
- 신기술 융합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장애인, 해외, 지역 등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공간 운영 및 콘텐츠 제공을 통해 대국민 문화향유 증진
-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다양한 AI기술(모션캡처, 공간인식, 디지털휴먼, 생체인식 등)과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
-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 미래 미디어 실증 및 영상관 조성, 기타 정책지원

○사업기간: 2022년~2027년
○총사업비: 1,476억원 ※ 일반회계 - 콘텐츠산업 육성(1200)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1232)
○2024년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감	증감률
	예산(A)	실집행액	예산(B)	(C=B-A)	(C/A)
□ 신기술 융합 콘텐츠산업 육성	40,588	34,433	30,131	△10,457	△25.8
▪ 신기술 융합 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	16,469	13,138	-	△16,469	순감
▪ 신기술 융합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23,800	21,110	19,000	△4,800	△20.2
▪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	-	9,200	9,200	순증
▪ 미래 미디어 실증 및 영상관 조성	-	-	500	500	순증
▪ 한류메타버스전당 조성	200	141	-	△200	순감
▪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사업	-	-	1,140	1,140	순증
▪ 정책 지원	119	44	291	172	144.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100) 참고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 5억 2,00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로 조정하여 ‘메타버스·AI 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는데, 해당 행사는 ‘AI 기술 활용 문화콘텐츠 공모전’, ‘신기술 활용 문화콘텐츠산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 개최 등으로 구성되었는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도 본 사업의 대상을 ‘메타버스 콘텐츠’에 국한하지 않고 ‘AI 콘텐츠’ 등 신기술 융합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7) 기타잡수입(영화발전기금, 69-691)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기타잡수입’은 한국영화아카데미 등록금·전형료 수입과 같이 영화발전기금의 운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2023회계연도 징수 계획액은 31억 3,500만원이었으나, 4억 6,800만원만을 징수결정하여 대부분 수납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타잡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목 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 기타잡수입	3,135	3,135	-	3,135	468	468	0.1	-	3,22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수입계획 계상오류 시정 필요>

영화발전기금의 기타잡수입에는 과거 '남양주종합촬영소'의 운영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종합촬영소의 부산 이전 결정에 따라 남양주 촬영소가 민간에 매각되고 2019년부터 그 운영이 종료되면서 위 운영 수입은 영화발전기금의 수입에서 제외되었음.

이후 영화진흥위원회는 남양주종합촬영소의 매각대금 일부를 활용하여 '부산종합촬영소'의 건립을 추진하였는바,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023년도 영화발전기금의 기타잡수입 계획에 부산종합촬영소의 완공에 따라 발생할 운영 수입을 30억원 규모로 다시 계상하였음.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타잡수입 수입계획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	3,135	▪ 사업 운영 수입금 - 한국영화아카데미 등록금 및 배급수입, 영사기사 자격검정수수료 및 기타 잡수입 등: 135 - **부산종합촬영소 운영 수입: 3,000**
2024	3,229	▪ 사업 운영 수입금 - 한국영화아카데미 등록금 및 배급수입, 영사기사 자격검정수수료 및 기타 잡수입 등: **3,22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시협약 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사업예정 부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제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업 일정이 재차 지연되기도 하였음.[101] 그 결과 종합촬영소의 완공 및 운영 재개 시점은 2027년으로 연기되었고, 그로 인해 2023회계연도 영화발전기금의 기타잡수입이 당초의 계획액 31억 3,500만원 대비 14.9%에 불과한 4억 6,800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친 것임.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사업 개요]

○위　　치: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20번지(기장도예촌 부지 일부)
○규　　모: 실내스튜디오 3개동 및 야외세트(약 23,600평) 조성
○총사업비: 약 853억원(남양주종합촬영소 매각대금 일부)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16. 8.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
- 2019. 4.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 완료
- 2020. 7. 설계 용역 공고 및 계약체결　　※ 계획·협약 변경 등으로 사업 지연 발생
- 2023. 3. 건립 실시협약 수정 요청(기장군)
- 2023. 9. 기장군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건립부지일부매각)' 통과
- 2023. 11. 기장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건립부지일부매각)' 통과
- 2023. 12. 건립 실시협약(변경) 체결, 대부계약 체결,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 2024. 2. 실시설계 완료
- 2024. 3.~4. 공사용역 공고 및 업체 선정·계약
- 2024. 5. 부산종합촬영소 건립 공사 착공(5.2.)

○예산 집행계획(당초 및 수정)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소요예산	연도별 집행계획											
		사업기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당 초	66,014	2017~2020	317	21,585	18,906	25,206	*완공·운영(2021년~)						
수 정	85,328	2020~2026	-	-	-	675	359	539	3	46,089	22,824	5,139	완공운영 *9,700

* 27년 기준 토지매입비 분납금 잔액 97억원(20년 간 분할납부)

*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101) 부산일보, "법 모르고 강행… 부산종합촬영소 연내 착공 불확실", 2023.7.20. 기사 참조

최근 사업부지의 일부 매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이 재개되어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갔다는 것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명이나, 대규모 종합촬영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4개월 이상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종합촬영소의 완공은 빨라야 2026년 말경으로 예상됨.

따라서 2024년도에도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부산종합촬영소의 운영에 따른 수입 발생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2026년 말경에 촬영소 건립이 완료된다고 한다면,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부터 그 수입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도 2023년도와 같은 규모로 기타잡수입의 수입계획이 계상되어있는 상황인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실제 수입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과다 계상한 기타잡수입 계획의 오류를 시정하고, 부산종합촬영소의 완공 시점을 반영하여 이를 추후에 계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8) 영화유통지원(영화발전기금, 1261-301)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영화유통지원’은 우리 독립·예술 영화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영화의 개봉·유통·배급 및 인프라를 지원하고, 디지털 온라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해외 영화제 및 필름마켓 등을 활용하여 우리 영화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국내외 각종 영화제를 육성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당초 계획액은 205억 700만원이었으나 수정 계획 및 전년도 이월액을 반영한 계획현액은 206억 6,000만원으로, 이 중 197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9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영화유통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영화유통지원	20,507	20,440	220	20,660	19,721 [18,951]	-	939	15,798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	9,526	9,409	87	9,496	8,992 [8,250]	-	504	7,878
▪ 해외진출지원	5,352	5,402	133	5,535	5,172 [5,146]	-	363	5,105
▪ 국내외영화제 육성	5,629	5,629	-	5,629	5,557 [5,556]	-	72	2,81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관련 제도개선 등 필요>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102]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상영되는 영화에 관한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2020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 이는 OTT 및 IPTV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하여 오프라인에서의 영화 상영 관련 통계만으로는 우리 영화 시장의 현황과 유통 실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임.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개요]

○ (내용) IPTV, CATV 사업자와 통합전산망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온라인 VOD 이용 건수 등 영화 부가시장 통계 집계·제공
○ (경과) 통합전산망 시스템 구축('20.9.), IPTV 및 디지털케이블TV 사업자 업무협약 체결('21.10.), 연동오류 개선('21.12.~'22.7.), 전자적 연동 전면시행('22.9.5.)
○ (제공 정보) 일간, 주간, 월간 영화 온라인 이용건수 및 순위

구분	참여사업자	제공 데이터	수집 방식
IPTV	KT, SKB, LGU+	판매형태, 판매일자, 판매건수, 판매금액 등	전자적 연동 (일단위)
디지털케이블TV	홈초이스		
OTT	웨이브, 씨네폭스, 왓챠, 티빙	순위 정보, 신작 정보	엑셀 또는 사이트 방문(주단위)

* 건별 결제방식의 VOD 이용 건수 집계·제공(구독형 데이터 미집계)
○ (예산) 2023년도 기준 총 12억 3,800만원

*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10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와 같이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면서 IPTV 사업자 등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온라인 영화(VOD) 이용 건수 및 순위 등 데이터[103]를 지속 확보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음.

다만,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음.

첫째, '넷플릭스(Netflix)' 등을 비롯하여 OTT(Over The Top) 플랫폼을 통한 영화유통 관련 정보의 제공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최근 영화산업이 위기에 놓이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외에도 넷플릭스, 티빙(Tving), 웨이브(Wavve) 등 다양한 OTT 플랫폼의 등장과 그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영화관람 수요 등이 꼽히고 있음. 영화진흥위원회도 이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국내 KT(Genie TV), SK브로드밴드(Btv), LG유플러스(U+ TV) 등의 IPTV(Internet Protocol TV) 및 CATV(CAble TV)에서 유통되는 영화 관련 데이터에 국한되어 있음.

---

103) 참고로,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통해 집계되는 '일(日) 단위' 자료는 온라인사업자별로 D-2일자 데이터를 다음날 오전에 통합전산망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전산망을 통해서는 D-3일자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음.

IPTV 및 CATV는 한때 지상파 TV의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OTT 플랫폼의 등장 이후 그 성장세가 꺾이며 2024년도에 들어서는 IPTV 가입 증가율이 최초로 0%에 그치기도 하였음.[104] 이러한 상황에서, OTT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영화에 관한 데이터 없이 IPTV 등의 데이터만을 대상으로는 '온라인'의 영화유통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도 향후 OTT 사업자를 포함하여 데이터 연동·집계 및 제공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고, 지난 2022년에는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티빙·웨이브 등 국내 OTT 4사의 '영화 랭킹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이는 각 OT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주간 이용순위'만을 그대로 가져와 보여주는 방식에 불과할 뿐 아니라,[105] OTT 서비스 이용률 1위[106]인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Disney Plus)와 같은 해외 업체의 데이터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OTT 플랫폼의 영화유통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여 통합전산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추진함으로써, 적지 않은 국가재정을 들여 구축·운영하는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이 그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

104) 뉴시스, "케이블 이어 IPTV마저? …넷플릭스發 코드커팅 가속화", 2024.5.18. 기사 참조
105) IPTV 등 사업자로부터는 이용순위 외에도, 일간·주간·월간·연간 등 실제 이용 건수 데이터를 매일 집계하여 통합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106) 나스미디어, "2024 인터넷 이용자 조사 보고서", 2024. 3.

둘째,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영화정보에 성인물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성인인증 등 별도의 통제 장치가 없어 청소년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에는 기간별·역대 '박스오피스(box office, 흥행 정보)' 등 외에 온라인상영관을 통해 유통된 모든 영화의 제목, 포스터, 제작연도, 출연진·제작진 및 줄거리 등 정보가 함께 제공되고 있음. 이는 온라인상영관의 영화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 소비자 등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영화유통 관련 통계 등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위 정보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나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통제 장치가 없어, 청소년 등의 접근을 허용하기 부적절한 성인물 등 관련 정보도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음.

이는 오프라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도 마찬가지이나, 온라인상영관의 경우 그 특성상 오프라인 극장과 달리 특정 기간의 영화 이용순위에 성인물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정보가 청소년 등에게 쉽게 노출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청소년 등의 접근이 부적절한 성인물 등 관련 정보의 경우 성인인증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시스템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는 것 또한 '정보화 사업'의 일환임에도, 오프라인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이 정보화 사업으로 지정된 것과는 달리 정보화 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련 지침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정보화 사업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의미함. 정보화 사업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ISP·ISMP[107] 수립 완료 이후에만 요구할 수 있고, 이·전용 및 낙찰차액의 사용이 제한되는 등, 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 일반적인 사업과는 다른 지침을 적용받고 있음.[108]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만이 정보화 사업으로서 포함되어 있고,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위와 같은 정보화 사업 관련 지침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임.[109]

이 경우 사실상 정보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사업을 일반 통합전산망 사업에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위 사업이 정보화 사업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

107)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108)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09) 다만, 영화진흥위원회는 정보화 사업에 준하여 관련 규정·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임.

(9) 영화기획개발지원(영화발전기금, 1261-305) 등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영화기획개발지원’은 다양성과 참신함을 갖춘 영화 소재 발굴을 지원하고, 창작인력 및 중소제작사 등의 기획개발을 지원하여 영화 창작 기반의 저변 확대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시나리오 공모전 운영, 기획개발 지원금 지급, 전문역량 강화 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음.

2023회계연도 당초 계획액은 69억 9,800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17억 1,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400만원을 반영한 계획현액은 53억 5,500만원으로, 이 중 47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원을 이월하여 4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영화기획개발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영화기획개발 지원	6,998	5,281	74	5,355	4,757	140	458	3,725
▪ 시나리오 공모전 운영	414	414	-	414	393	-	21	161
▪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1,630	1,617	-	1,617	1,617	-	-	1,630
▪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2,805	1,505	74	1,579	1,141	140	298	-
▪ 기획개발 전문 역량강화 지원	2,150	1,746	-	1,746	1,607	-	139	1,934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영화제작지원’ 사업과 함께 ‘영화창제작지원’ 사업으로 통합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면밀한 기금운용 및 집행관리 필요>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110]에 따라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집행에 비해 다소간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음.[111] 다만, 기금 또한 국가재정의 주요한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의 편성·집행에 준하는 면밀성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그러나 영화발전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관리 등을 면밀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110)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111)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④~⑦ (생 략)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기획개발지원’ 사업 내 기획개발지원금 등으로 지급하기 위한 일반연구비(260-01)의 2023년도 계획액을 전년 대비 13억 6,200만원 증액해 3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억 5,000만원만을 기획개발지원금 등으로 집행하였음.

나머지 금액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영화제작지원(1261-300)’ 사업의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에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그 후 잔액은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영화기획개발지원 일반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중	비 고
당초 계획	3,850	100.0%	전년도 계획(2,488) 대비 54.7%(1,362) 증액
기획개발지원금 등 지급	**1,650**	**42.8%**	**전년도 집행액: 1,587**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영화제작지원’ 사업)	1,700	44.1%	2023.11.6. 기금운용계획 변경
다음연도 이월	140	3.6%	
불 용	361	9.4%	

* 주: 전년도 이월액 제외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는 본 사업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실제 지원 수요와 연간 지원금 지급 실적

및 최근의 추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획액을 증액한 데에 기인함.

아래 표와 같이 최근 5년간 일반연구비의 집행실적은 연례적으로 부진한 측면이 있었고, 특히 2022년도의 경우 집행액이 15억 8,700만원에 불과하여 계획액 24억 8,800만원 대비 63.8%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기도 하였음.

[최근 5년간 영화기획개발지원 일반연구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A)	수정							
2019	2,488	2,588	-	2,588	2,286	91.9	88.3	178	124
2020	2,488	2,593	178	2,771	2,251	90.5	81.2	20	500
2021	2,488	2,488	20	2,508	2,157	86.7	86.0	-	351
2022	**2,488**	**2,488**	**-**	**2,488**	**1,587**	**63.8**	**63.8**	**74**	**827**
2023	**3,850**	**2,150**	**74**	**2,224**	**1,723**	**44.8**	**77.5**	**140**	**36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2023년도 일반연구비 계획액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으로 크게 증액해 편성함에 따라 더욱 저조한 집행률과 과다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초래된 것인바, 이는 기금을 면밀하게 운용하지 못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겠음.

한편, 다음의 사례와 같이 영화진흥위원회는 국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한 당초의 비목과 다른 항목에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금을 집행하여 「국가재정법」[112] 및 기타 법령·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도 여러 건 있었음.

먼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유통지원(1261-301)'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2월 독일 베를린에서 'K-Movie Night'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업추진비(240-01)로 집행해야 하는 케이터링(catering) 비용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해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하였음. 또한, 2023년 5월 프랑스 '칸 영화제(Festival de Cannes)'의 '필름마켓(Marché du Film)'에 '한국영화종합홍보관(K-Movies Center Cannes)'을 설치·운영하면서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해야 하는 용역 대금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기도 하였음.

그 외에도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정책지원(1261-302)' 사업과 관련하여, '한·아세안 영화협력 홍보 책자 발간기념 행사'를 실시하면서 임차료(210-07)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관료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는 등, 기금의 집행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음.[113]

---

112)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제35조·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제45조·제49조·제50조·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13) 참고로, 지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영화기금 기금관리비(7277-200)' 내 웹매거진 '한국영화' 발간 경비집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기금 기금관리비 예산 편성 시,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코드와 비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주의)이 채택된 바 있음. 영화진흥위원회는 2023회계연도에도 이와 동일하게 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하였으나, 이는 위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기 이전에 집행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화진흥위원회는 향후 영화발전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실제 수요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과정에서도 「국가재정법」 및 기타 법령·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겠음.

한 것으로서, 그 이후로는 즉시 개선 조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8. 저작권국

(1)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일반회계, 1331-303)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는 저작권 위반 등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지원하고, 국내·외 저작권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330억 4,700만원으로, 이 중 327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실집행액 292억 1,800만원) 3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33,047	33,047	-	-	-	33,047	32,734 [29,218]	-	313	30,359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1,377	1,377	-	-	-	1,377	1,086 [1,086]	-	291	866
▪ 한국저작권 보호원 지원	9,229	9,229	-	-	-	9,229	9,229 [8,457]	-	-	9,226
▪ 국내 저작권 보호활동	15,242	15,242	-	-	-	15,242	15,242 [13,015]	-	-	14,066
▪ 해외 저작권 보호·협력	7,199	7,199	-	-	-	7,199	7,177 [6,713]	-	22	6,20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개정 취지에 맞는 사업개편 필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22조의2[114]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 시책 집행,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저작권 보호 관련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등 각종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115]

과거에는 위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민간의 저작권단체연합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나누어 수행했으나, 불법저작물 단속 기능이 두 기관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 및 분쟁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단속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바, 이에 201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하고 위 업무의 수행 주체를 이곳으로 통합하기로 한 것임.

---

114) **「저작권법」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15) **「저작권법」 제122조의5(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2.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3의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5.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6.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7.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다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신설된 후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계속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저작권 침해대응 업무를 위한 해외사무소를 운영함에 따라 여전히 기능 중복 및 비효율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었음. 이에 두 기관은 업무조정 협약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사무소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하기로 하였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서 ‘저작권 보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2020년에 「저작권법」이 재차 개정되면서 법적으로는 저작권 보호 업무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완전히 통합되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태국·필리핀·베트남 주재 저작권사무소가 모두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된 것과 달리, 중국 주재 저작권사무소는 현재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음.

[해외 저작권사무소 운영 현황]

구 분	중국사무소	태국사무소	필리핀사무소	베트남사무소
설 립	‘06.04 개소 ‘06.11 설립인가	‘07.05 개소 ‘08.05 설립인가	‘11.12 개소 ‘12.04 설립인가	‘12.12 개소 ‘14.01 설립인가
위 치	북경 한국문화원4층	방콕 CW빌딩 38층	마닐라 따귁 HSS 코퍼레이트 플라자 타워1 22층	하노이 참빛타워 17층
인 력	소장: 1명 직원: 3명(현지인1)	소장: 1명 직원: 3명(현지인2)	소장: 1명 직원: 2명(현지인1)	소장: 1명 직원: 2명(현지인1)
2024년도 예산	3억 6,700만원	2억 8,500만원	2억 2,700만원	2억 2,000만원
소 속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저작권사무소 설립 당시 당국으로부터 해외저작권인증기구로 지정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연락사무

소로서 설립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지 법에 따라 해외저작권인증기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소속으로 해당 사무소를 이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그로 인하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신설 및 저작권 보호 업무의 이관·통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일정 부분 저작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1331-303)' 세부사업 중 '해외 저작권 보호·협력' 내역사업에 편성된 보조금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두 기관에 나뉘어 교부되고 있는 실정임.

[2023회계연도 해외 저작권 보호·협력 보조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금 편성 내역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 저작권사무소 구축·운영	(위원회) 중국 저작권사무소 운영 (보호원) 태국, 필리핀, 베트남 저작권사무소 운영	375	703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및 합법이용 활성화	(위) 중·일·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저작권 해외 유통 컨설팅, 현지 저작권 인식제고, 한·중 정부·민간 교류협력 사업 등 (보) 저작권 포럼 개최(태·베·필), 주요국 저작권 집행 담당자 연수, 정부·민간 교류협력 사업 등	356	137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해외 모니터링, 침해대응방안 조사·연구, 저작권보호동향 제공 등	-	974
해외진출 저작권 인증서비스 운영	저작권 인증서비스 운영, 인증서 발급(중국)	120	-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관련 조사, 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감시	-	1,800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저작권 바우처 지원, 저작권 보호 서비스 수행기관 심사, 바우처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500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개발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개발	-	1,200
계(보조금 총액: 6,165)		851	5,31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그 외에도 본 사업 내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앞의 표와 같이 ‘저작권 포럼 개최’, ‘저작권 해외 유통 컨설팅’, ‘저작권 인증서비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업무는 개정된 「저작권법」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인 ‘저작권 진흥 및 저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해당하므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봄.

그러나 위 사업이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1331-303)’라는 세부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작권 보호’라는 세부사업의 전체 취지와 맞지 않고, 두 기관의 기능을 구분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봄.

따라서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1331-303)’ 사업 중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함이 타당하지만 ‘저작권 보호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1331-301)’이나 ‘저작권 유통지원 및 이용 활성화(1333-301)’ 사업으로 이관하는 등, 「저작권법」 개정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신설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9. 미디어정책국

(1)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일반회계, 1432-300)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우수 방송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인프라·전문인력 양성 등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연계 등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1,234억 6,300만원 중 1,234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123,463	123,463	-	-	-	123,463	123,459 [106,414]	-	-	111,452
▪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지원	6,797	6,797	-	-	-	6,797	6,797 [6,555]	-	-	6,183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99,112	99,112	-	-	-	99,112	99,108 [84,655]	-	-	76,264
▪ 방송영상콘텐츠 유통지원	9,023	9,023	-	-	-	9,023	9,023 [8,105]	-	-	11,104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8,531	8,531	-	-	-	8,531	8,531 [7,099]	-	-	17,90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기획부터 유통까지 사업 전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는 인력양성 및 촬영 스튜디오 운영, 기획개발 단계에서는 기획안 공모 및 기획개발 랩 운영, 제작 단계에서는 다양한 방송영상의 제작비 지원, 유통 단계에서는 마케팅 및 사업자연계 등을 지원하는 구조로 추진되며 특정 행사 및 교육사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지원 구조]

(인프라 구축・인력양성➔기획개발➔제작➔유통)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효과적인 콘텐츠기획개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내역사업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지원'은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 기획안 및 역량 있는 신진 창작자를 발굴하고, 발굴된 기획안이 제작·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 연계 지원을 통해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반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67억 9,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지원	6,797	6,797	-	-	-	6,797	6,797 [6,555]	-	-	6,183
기획안 공모전 개최 및 사업화 연계	1,817	1,817	-	-	-	1,817	1,817 [1,575]	-	-	1,987
기획개발 랩 운영	4,980	4,980	-	-	-	4,980	4,980 [4,980]	-	-	4,196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콘텐츠 기획개발지원 사업은 기획안 공모전 개최 및 사업화 연계, 기획개발 랩(신기술융합 콘텐츠 랩, 방송포맷 랩) 운영 등 영상콘텐츠 사업 초기단계인 기획개발 단계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2023년 동 사업에서 수행된 기획안 공모전 및 신기술융합 콘텐츠 랩 운영 사업 등에 관해서는 향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기획안이 제작계획 등 후속단계로 진입될 수 있도록 사업화 연계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콘진원은 매년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작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후속단계 사업인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모 시 가점을 제공하는 한편, 선정작 중 일부에 대해 컨설팅, 특강, 사업자연계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후속단계 진입(제작·편성)을 유도하고 있음.

2023년 기획안 공모전의 경우, 드라마 22편, 예능 20편, 다큐멘터리 28편 등 총 70편의 우수기획안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 21편에 대해 후속지원이 이루어졌음.

[2023년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개요]

구 분	내 용
공모목적	독창적이고 참신한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지원내용	상용화(방송채널 및 OTT 편성 등) 목적의 방송콘텐츠 기획개발 비용 지원 ※ 선정작 중 희망 프로젝트 20편에 대해 컨설팅, 기획개발 특강, 비즈매칭 등 후속지원
지원대상	중소방송영상제작사
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정규모	총 70편 선정, 작품지원금 총 13억 6,000만원
부문별 선정	드라마 중편 및 장편 22편(6억 1,000만원) 예능 20편(3억 1,500만원) 다큐멘터리 28편(4억 3,500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은 기획안 공모전 개최는 영상콘텐츠제작 초기단계에 대한 지원으로서 다양한 콘텐츠 기획 장려 및 후속지원을 통해 우수한 콘텐츠의 제작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2023년 공모전 수상 및 사업화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모전 수상작은 전년 대비 10편이 증가하였으나 사업화 지원작은 29편에서 21편으로 감소하였음.

[연도별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수상 및 사업화 지원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공모전 수상작 (공모전 개최 예산)	50편 (8.3억원)	60편 (15억원)	70편 (15.3억원)	78편(예정) (17억원)
사업화 지원작 (사업화 지원 예산)	25편 (330백만원)	29편 (379백만원)	21편 (287백만원)	20편 내외(예정) (287백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해 문체부는 2023년 사업화 연계 수요를 고려하는 한편, 사업화 지원 참여 전체 공모작에 비즈매칭을 제공하기 위해 21편에 대해 사업화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모전 개최 관련 예산은 2022년 15억원에서 2024년 1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사업화 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3억 7,900만원에서 2억 8,7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영상콘텐츠 산업은 기획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로서, 특히 동 공모전은 중소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만큼 기획 이후의 단계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절실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이 각 사업단계별 맞춤·연계형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제작여건을 보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획안 선정 이후 제작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신기술융합 콘텐츠 랩 운영 사업은 실질적인 기획개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검토하는 한편, 신기술 관련 인력양성 사업은 산업기반조성 사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신기술 융합콘텐츠 랩 운영 사업은 새로운 제작 기술이 적용된 방송영상 콘텐츠의 기획개발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창작자 교육 및 기획개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총 8개 기관을 선정하여 총 36억원을 지원하였음.

[2023년 신기술융합 콘텐츠 랩 운영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목적	새로운 제작 기술이 적용된 방송영상 콘텐츠의 기획개발 지원 및 역량 강화
지원내용	창작자 교육, 기획개발 비용, 트레일러, 프로그램 제작비 등
지원대상	중소방송영상제작사, 방송사, 협단체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3. 10. 31.
산출물	사업 전체 결과보고서 최소 4개 이상의 기획안, 트레일러(5분이상), 파일럿 프로그램(20분 이상)
지원규모	8개 기관 각 4억 5,000만원(총사업비 10% 자부담)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디지털 제작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장르물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현재 디지털 기반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창작자는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창작자 육성 및 기획개발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은 40억원으로 기획개발지원 사업(약 68억원)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① 신기술 기반 콘텐츠 랩 운영 사업자 공모·선정, ② 선정된 사업자가 15인 내외의 창작자를 모집공고, ③ 창작자 선발 및 교육, ④ 기획개발 및 산출물 제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정 콘텐츠 기획안을 준비하는 창작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 및 제작노하우에 대한 교육과정('AI 융합 In-Camera VFX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XR Creative Lab 2023 글로벌 VP 마스터 과정' 등)에 기반하여 창작자를 모집·선발하고 있어,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보다는 신기술 분야 교육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023년 신기술 기반 콘텐츠 랩 운영 창작자 모집공고예]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동 사업의 중점사항인 방송제작 신기술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VR, XR, AI, 버추얼 프로덕션 등의 새로운 제작 기술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공고를 살펴보면 단지 '새로운 제작 기술'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신기술의 분야 및 활용범위·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고, 각 랩 운영사의 사업기간은 10월 말까지로 한정됨에 따라 교육 이후 창작자가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신기술 기반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신기술의 범주나 활용수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없이 한정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각 랩 운영사가 제출한 결과물 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랩 운영사가 주도한 일부 콘텐츠의 경우 제작미팅 및 행사 출품 등이 예정된 사례가 있는 반면, 창작자가 교육 수료 후 습작을 제작해보는 데 그치는 경우도 있어 각 랩 운영사의 신기술 분야, 교육 및 커리큘럼, 제작 역량 등에 따라 선발된 창작자의 교육연수경험 및 기획안 완성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문체부 및 콘진원은 신기술융합 콘텐츠 랩 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양성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기획개발지원보다는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분야로 사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기획개발지원에 중점을 둘 경우에는 신기술의 범위 및 수준, 활용예시 등 기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기획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사업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일반회계, 1433-302)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사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운영 및 기본사업 지원, 출판 국내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등 출판문화산업 지원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액은 182억 1,9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지원	18,219	18,219	-	-	-	18,219	18,219 [16,776]	-	-	-
▪출판 국내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	6,285	6,285	-	-	-	6,285	6,285 [5,444]	-	-	-
▪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1,368	1,368	-	-	-	1,368	1,368 [1,350]	-	-	-
▪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2,901	2,901	-	-	-	2,901	2,901 [2,782]	-	-	-
▪출판문화산업 지속 성장 인프라 구축	1,147	1,147	-	-	-	1,147	1,147 [982]	-	-	-
▪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지원	6,518	6,518	-	-	-	6,518	6,518 [6,219]	-	-	-

* 주: 동 세부사업은 2023년 종료되었으며, 각 내역사업은 재구조화하여 2024년 신규사업 ‘출판산업 활성화’(일반회계 1433-301)에 일부 반영되었음.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북토큰 지원 사업 일정 지연 및 수혜대상 선정의 문제>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은 내역사업 ‘출판 국내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약 200여 권[116]의 지정도서 중 1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북토큰(도서교환권)을 배포하는 사업이며, 2023년 예산액 34억 1,200만원 중 28억 300만원을 실집행하였음.

[2023년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 구분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실집행률)
출판 국내수요 창출 및 유통선진화		6,285	6,285	5,444(86.6)
	청소년 북토큰 지원	3,412	3,412	2,993(85.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청소년 독서문화 활성화와 서점이용 습관 장려를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2024년 출판 관련 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2023년 종료되었으나, 2023년도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다음의 문제를 고려하여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2023년 북토큰 지원사업은 교환도서 목록 지정 논의 지연 등에 따라 북토큰 배포시기가 늦어져 수혜 청소년의 도서선택 및 활용에

116) 지정도서의 목록은 매년 변경되며, 2023년은 235종이었음.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사업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음.

북토큰 지원 사업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진흥원은 매년 북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는 도서를 지정하고, 이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북토큰을 제작·배포하여 사업수혜 청소년들이 도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3년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청소년 독서·독후활동 장려 및 지역서점 발전 기여, 미래 출판수요 창출	
수행기관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예결산액	예산액: 34억 1,200만원, 결산액 28억 300만원	
사업기간	2013 ~ 2023년 ※2024년 폐지	
사업추진 경과	**2023년**	**2022년**
	4월: 교환도서 지정(143종) 및 도서교환권 가격 설정 5~6월: 북토큰 신청 및 접수 7~8월: 사업계획 변경 - 신청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환권 가격 상향 - 교환도서 추가 지정(235종) 8월: 북토큰 제작·배포·정산 등 운영 용역 계약 체결 **9월: 북토큰 배포(18.8만명)**	3월: 교환도서 지정(191종) 및 도서교환권 가격 설정 3~4월: 북토큰 신청 및 접수 4월: 북토큰 제작·배포·정산 등 운영 용역 계약 체결 **6월: 1차 배포(1차, 16만명)** 6~7월: 북토큰 신청 및 접수 **9월: 2차 배포(2차, 9만명)** 8~9월: 북토큰 신청 및 접수 **10월: 3차 배포(3차, 1천명)**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2023년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4월 교환도서 지정에 이어 5~6월 북토큰 신청·접수가 진행되었으나, 북토큰 제작·배포·정산 등 사업 운영 용역 계약이 8월 말에 체결됨에 따라 북토큰은 9월 이후에야 제작·배포되었음.

이는 2022년 동 사업의 1차 북토큰 신청·접수가 3~4월에 이뤄지고 6월에 배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 3달 지연된 것으로, 정산 등의 대금 지급절차로 인해 북토큰의 사용기한이 11월 30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3년의 경우, 북토큰 교환이 가능했던 기간은 2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바, 수혜 청소년의 도서선택 및 활용에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임.

또한, 2023년 북토큰 신청자는 총 188,082명인데, 이는 2023년 예산 편성 기준인 276,000명에 약 8.8만 명 감소, 전년도 신청자 258,976명에 약 7.1만 명 감소한 규모로, 2022년에는 3차례에 걸쳐 북토큰 신청·접수가 진행된 것과 달리 2023년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북토큰 신청·접수를 1회만 실시하게 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문체부 및 진흥원은 보다 공신력있는 교환도서목록 구성을 위해 관련 기관(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한국과학창의재단 등)과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북토큰 신청 접수 등 관련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북토큰 교환도서목록 구성은 사업절차의 첫 단계로서 조기에 추진될 필요가 있고, 대상 도서를 전년도 발행된 아동·청소년 도서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 당해연도 초기에 도서목록에 대한 구성 및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여 사업 일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임.

둘째, 사업 수혜대상 선정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편, 수혜대상을 청소년 일부로 한정함에 따라 독서문화 장려 등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한계가 발생하였음.

당초 북토큰 사업은 청소년의 독서문화 활성화, 서점이용 습관 장려, 미래 출판수요 창출 등에 사업목적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나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 및 문화복지 측면을 고려하여 수혜대상을 교육복지우선지원[117] 사업 학교에 한정하여 북토큰 신청을 접수받았음.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118]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전국 7,275개교(유치원 제외 초·중·고·특수학교) 내 취약계층 학생 수를 257,233명으로 보고 있음.

[202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비운영학교 현황]

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운영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				
		소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주2)
학교 수(개교)	4,641	7,275	3,720	1715	1,754	86
전교생 수(명)	2,168,991	2,974,313	1,419,573	625,176	917,131	12,433
취약계층주1) 학생수(명)	329,154	257,233	101,367	55,217	93,391	7,258

* 주1) 취약계층은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임
  주2) 특수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55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함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11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2호)과 시도교육청별 조례 및 훈령에 따라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학생(초·중·고교 학생 중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차상위 계층, 탈북 및 다문화, 특수교육대상)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23년 동 사업을 운영하는 초·중·고·특수학교는 총 4,641개교(유치원 제외)임.

118)「202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현황 조사 결과」9~10p, 87p. 한국교육개발원, 2024. 2.

즉, 수혜대상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 내 지원대상 청소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동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은 북토큰 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상황으로, 문화복지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한편, 북토큰의 전달방식을 살펴보면, 사업을 신청한 교사 및 교육복지사가 수혜대상인 청소년에게 개별적으로 북토큰을 전달하거나 요청도서 확인 후 대리 주문하여 책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수혜대상을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자로 제한함에 따라 북토큰 수혜대상 여부가 공개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일 것으로 보임.

그러나 북토큰 사업이 복지적 측면에서 청소년 중 일부에게만 비공개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로 추진될 경우, 낙인효과 등으로 인해 사업 수혜대상자들의 도서 구매 및 독서 활동 등 온전한 문화활동 향유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진흥원에서 2023년 실시한 '청소년 북토큰 사업평가 및 사용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북토큰 사용에 있어 서점에서 불편함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9.4%이며[119], 그 이유가 북토큰 사용이 부끄럽게 느껴지거나 북토큰 문의에 대해 불친절하여 눈치가 보였다는 응답이 있어 북토큰의 수령 및 사용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119) 「청소년 북토큰 사업평가 및 사용실태 조사 연구」 65~68p,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 12.

이는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보다 세심한 사업설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북토큰 배포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은 청소년 독서·독후활동 장려 및 지역서점 발전 기여 등 사업의 주요목적 달성에 있어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하겠음.

결론적으로, 상기한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생 및 북토큰 사업의 선별 지원으로 인한 문제는 동 사업의 주요 목적을 문화적 차원(독서활동 장려·지역서점 발전 기여 등)에 둘 것인지, 복지적 차원(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에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북토큰 사용을 통한 독서활동 활성화는 또래 집단 내에서의 공통문화로 공유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이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하겠음.

따라서, 향후 유사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기획·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10. 국민소통실

(1) KTV 운영(일반회계, 3831-300)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KTV 운영'은 국가의 주요정책과 국민생활에 유익한 공공정보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공공채널 등을 통해 송출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영상물 제작 협조·지원 및 기록보존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사업비임.

2023회계연도는 예산현액 260억 7,500만원 중 254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일반용역비 등 5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KTV 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KTV 운영	26,090	-	-	△15	-	26,075	25,476 [25,476]	-	599	32,815
▪ 방송프로그램 제작	12,915	-	-	1,227	-	14,142	13,661 [13,661]	-	481	14,024
▪ 방송운영지원	6,318	-	-	△1,387	-	4,931	4,819 [4,819]	-	112	13,011
▪ KTV 홍보	97	-	-	-	-	97	97 [97]	-	-	97
▪ KTV 인터넷 방송운영	720	-	-	-	-	720	717 [717]	-	3	720

▪ 개방공유 아카이브 운영	2,257	-	-	△55	-	2,202	2,199 [2,199]	-	3	2,257
▪ 뉴미디어 정책 홍보 채널운영	1,872	-	-	200	-	2,072	2,072 [2,072]	-	-	2,006
▪ KTV 국민플랫폼 전환	500	-	-	500	-	500	500 [500]	-	-	500
▪ 디플랫폼용 브랜드 프로그램 개발	500	-	-	-	-	500	500 [500]	-	-	-
▪ 미래형 스마트 미디어서비스 운영	911	-	-	-	-	911	911 [911]	-	-	2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편성비목에 부합한 예산 집행 및 자체전용권 제한을 우회하는 예산 전용에 주의할 필요>

내역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국가 주요정책 및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등을 통해 방영하는 사업임.

동 사업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작방식에 따라 자체제작 프로그램, 외주제작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2023년도 동 사업 예산액은 129억 1,500만원으로, 세부 산출근거는 공무직 운영 31억 2,600만원, 자체 프로그램 제작·방송(1,894편) 57억 1,200만원, 프로그램 외주제작(259편) 및 구매(449편) 28억 3,000만원, 장애인 자막·수어 등 방송 지원 12억 4,700만원이었음.

[2023년 방송프로그램 제작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편)

구분	프로그램명		'23 편성		'23 집행	
			예산액	산출 근거 편수	집행액	제작 구매 편수
자체 제작	정책 뉴스	KTV 대한뉴스, KTV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5,712	1,894	7,028	3,483
	정책 정보	생방송대한민국 1부, 생방송대한민국 2부, 생방송 정책&이슈, 생방송 경제 인사이트 등				
	정책 일반	시청자가 만드는 TV 하이큐, UHD 영상미학,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추억의 문화영화 등				
외주	국악 우리가 잇다, 리얼다큐 나의 길, 냥이와 멍이, K-특강 생각의 힘, 정책다큐K 숨은 일꾼을 찾아서 등		2,054	259	1,548	200
구매	다큐 온, 다큐 인사이트, 부모 클래스, 인생이야기 파란만장,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다문화 고부열전 등		776	449	1,386	1,153
계			8,542	2,602	9,962	4,836

* 자료: 한국정책방송원

2023년도 실제 집행현황을 보면, 자체제작 프로그램은 3,483편(70억 2,800만원), 외주 프로그램은 200편(15억 4,800만원), 구매 프로그램은 1,153편(13억 8,600만원)을 제작 또는 구매하여 총 99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음. 이는 공무직 운영비(31억 2,600만원)를 제외한 당초 편성 예산 85억 4,200만원을 14억 2,000만원 초과한 것임.

특히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편성기준인 1,894편보다 대폭 증가한 3,483편을 제작하였는바, 국정 2년차 주요 국정어젠다[120]의 확산을 위해 국가 주요행사 생중계, 국가 정책이슈 홍보 등 계기성 특집 콘텐츠

120) 약자복지, 저출산극복, 노동교육연금 개혁, 정부혁신, 국민통합, 국민안전 등 120대 국정과제, 해외순방시 글로벌외교·경제안보외교, 양자회담을 통한 부산엑스포 유치홍보 등

제작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었음. 부족한 재원은 동 세부사업 내 인건비(110-03), 자산취득비(430-01)에서 일반수용비(210-01)로 전용하여 충당하였음.

[2023년 방송프로그램 제작 사업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감액			증액			금액	전용사유
	세부사업	내역사업	목-세목	세부사업	내역사업	목-세목		
전용 ('23.4.19)	KTV 운영 (3831-300)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공무직 운영)	110-03	KTV 운영 (3831-300)	방송 프로그램 제작 (자체 제작비)	210-01	150	주요 계기성 특집 콘텐츠 제작 등
전용 ('23.4.19)	KTV 운영 (3831-300)	방송운영 지원 (방송장비 관리)	430-01	KTV 운영 (3831-300)	방송 프로그램 제작 (자체 제작비)	210-01	1,330	

* 자료: 한국정책방송원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반수용비(210-01목)”의 편성 용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등 행정사무비,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및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수수료 등임.[121] 외빈초청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회의 및 행사 경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등은 “사업추진비(240-01목)”로 편성하도록 규정함.[122]

121)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97.
122)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13.

한편,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타 비목에서 업무추진비(240목)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바, 이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절감하려는 취지임.[123]

그런데,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 중 방송 '제작진행비'라는 명목으로 5,156건(119,473,904원)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사업추진비(240-01목)로 집행하여야 할 내역으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위반한 집행임. 이 중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등 계기성 특집 콘텐츠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자체전용 대상에서 업무추진비(240목)로의 전용을 제외하고 있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규정을 우회한 집행이기도 함.

이에 대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은 「KTV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한국정책방송원 예규 제194호)에 따라 방송제작에 투입되는 프리랜서 스태프의 식비 등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있으며,[124] 방송제작 현장의 특수성과 프리랜서 스태프에게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예산안편성지침"과 "예산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중앙

123)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33.
124) 「**KTV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별표 2] 방송제작 진행비 지급기준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으로,[125] 한국정책방송원 예규인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으로서 동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비목을 규정할 수는 없는바, 제작비 중 프리랜서 식비 등은 업무추진비(240목), 특근매식비(210-05목) 등으로 집행하도록 예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현금성 상품권의 경우 동 지침에서 업무추진비(240목)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공식 업무를 위해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지급일시, 지급대상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집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126] 소속 직원의 생일시 지급하는 소액상품권의 경우 복리후생비(210-12목)[127], 공익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상금의 경우 포상금(310-03목)[128]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한국정책

구 분			기준	금액	비 고
야외	스태프**식비**		1인, 1식	7	
	진행비	ENG	1팀, 1일	25	· 5명기준(1인당 5천원)
		중계	1팀, 1일	55	· 11명기준(1인당 5천원)
기본 (ST)	야간스태프**식비** 및 조기출근**식비**		1인, 1식	7	
	진행비	주1회프로	10분, 회당	18	
		주2회프로	〃	10	
		주2회이상	〃	7	
		온라인콘텐츠 SB	편당	40	· 5분 내외, 주간제작 기준
현장답사비			1일	15	

1. 모든 진행비 사용은 영수증으로 증빙함을 원칙으로 하며 방송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2. 야외진행비는 1인당 지급단가(5천원)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3. **야외진행비는 야외제작시 소요되는 스태프의 식음료, 식대부족분에 사용**한다.
4. 기본진행비는 일상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따르는 기획·조사, 섭외경비 및 ST제작 시 **식음료**, 교통비 등(기술스태프 포함)에 사용한다.

125)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6)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77.

127)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60.

방송원은 일반수용비(210-01목)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23.11.27 등, 3건, 2,800,000원)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한국정책방송원은 편성비목과 부합하지 않은 제작진행비(119,473,904원), 상품권 구입비(2,800,000원) 집행분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점검하고,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적정 비목으로 예산 편성, 자체내규 정비,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또한, 향후 '업무추진비(240목)'로 집행하여야 할 식음료비, 행사경비 등을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거나, 동 비목과 타 비목을 섞어서 집행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자체전용권 제한을 우회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128)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72.

11. 체육국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00)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만 5세 이상 18세 이하 저소득층[129] 및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장애인[130]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세부사업 전체 운영을 위한 '시스템관리 및 사업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자체 보조사업(보조율 70%, 시스템관리 및 사업운영 제외)임.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852억 3,200만원 중 852억 2,000만원을 지자체 등에 교부하였고, 이 중 691억 5,500만원이 실제로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1,200만원임.

내역사업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계획현액 730억 9,600만원 전액이 지자체에 교부되었으나, 이 중 590억 8,900만원이 실제로 집행되어 140억 700만원이 불용[131]되었음.

---

129)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의 유·청소년(경찰청 추천) 등을 의미함.
130) 2023년 기준 만 5~18세 장애인은 내역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의 지원대상임(2022년~)
131) 교부된 금액을 집행하는 지자체 단위에서의 실제 불용액임.

[2023회계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85,232	85,232	-	-	-	85,232	85,220 [69,155]	-	12	120,344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73,096	73,096	-	-	-	73,096	73,096 [59,089]	-	-	100,799
▪ 시스템관리 및 사업운영	503	503	-	-	-	503	491 [491]	-	12	554
▪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11,633	11,633	-	-	-	11,633	11,633 [9,575]	-	-	18,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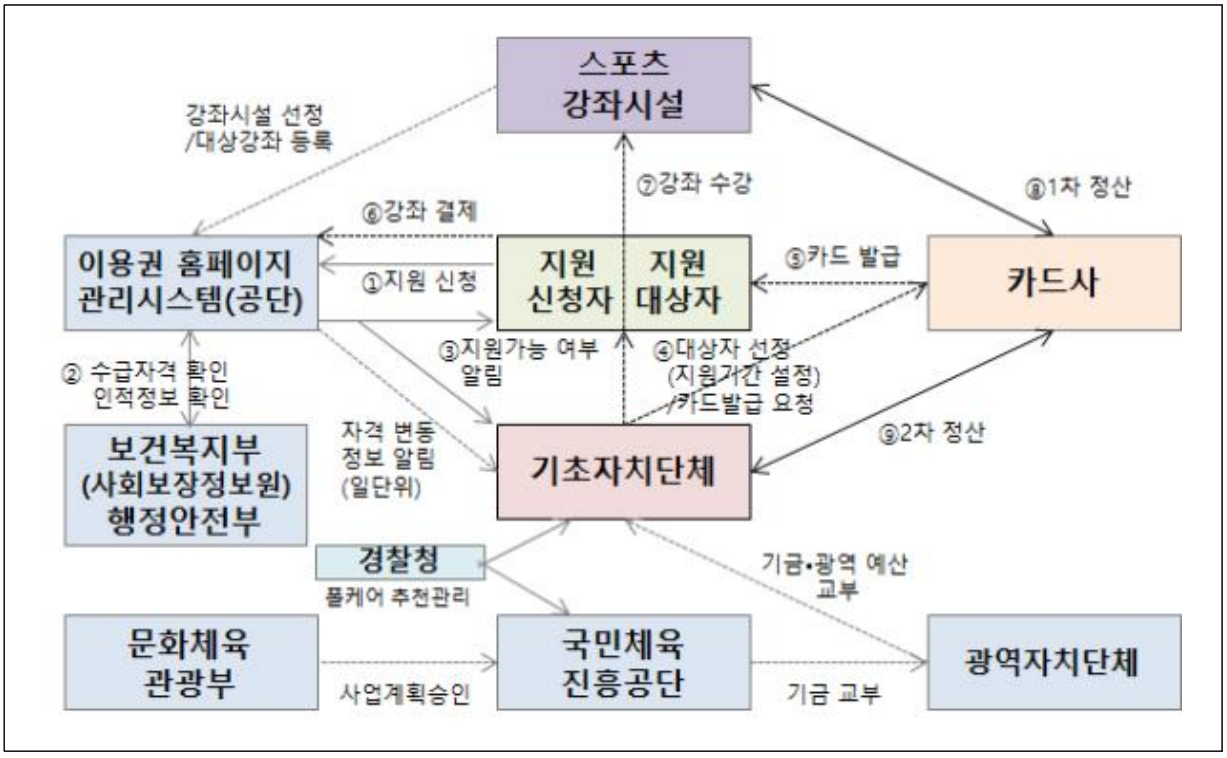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료의 탄력적 이용 허용, 국민체력 100과의 사업 연계 필요>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매월 9.5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스포츠참여 기회확대, 건강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는 복지 바우처 사업임.

저소득층 유·청소년 또는 그 부모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선정하며, 선정된 이후 카드 발급을 통해 가맹시설에서 한도 내에서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추진체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유지 조건은 강좌 신청 이후 월 출석일수를 50% 이상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이용이 중지되고, 연속 3개월 이상 미사용 시 지원이 중단됨. 월 출석일수 점검은 이용 가맹시설 점주가 해당 회원에 대한 사용기록을 전산에 입력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수강자의 종목 선택 다양화와 가맹시설 유입 확대를 위해 월별 제한 금액의 기간 간 이월을 허용하는 방식 또는 연간 총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자가 수강한 스포츠강좌는 태권도가 58.3%로 대부분의 결제 실적을 차지함. 이는 자기 부담이 없는 월 9.5만원의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132]은 한정되고, 이로 인해 지원 대상자는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골프, 테니스 등의 종목에 대한 수강 신청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해당 종목 시설업자들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에 가입할 유인이 적음. 지원대상자의 종목 선택 및 체육시설업자의 가맹시설로의 유입 제한은 체육 종목의 다양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132) 「2023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집단의 월평균 체육활동 비용은 '10만원 이상'(29.5%)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참고로,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집단 중 32.1%가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체육활동 지출비용 여유'를 선택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의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에서도 ‘골프, 승마, 야구, 스쿼시’ 등의 종목은 고가의 스포츠용품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고, ‘야구, 축구,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 등 사설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스포츠강좌는 별도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여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에 자비까지 포함해서 강좌를 수강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133]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자 이용 종목 순위 현황]

순위	종목	결제실적(%)	가맹시설(개 수)
1위	태권도	58.3	7,571
2위	합기도	6.1	1,023
3위	수영	3.3	555
4위	복싱	3.2	934
5위	헬스	3.1	1,12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편집

이를 위해, 월 한도액의 이월 또는 연 단위 총액 지급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절기별로 이용권을 지급하고, 동절기 이용권을 하절기에 당겨쓰게 하거나, 하절기 남은 이용권을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바우처 사용 기간에 보다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음[134].

133)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24.7.4.) p.63

134)

[에너지바우처 사업 현황]

○ 신청대상: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정 등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

둘째, 국민체력 100 사업과 연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국민체력 100 사업은 참여자의 체력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 방식 및 프로그램을 처방하는바, 이와 연계된다면 스포츠강좌 수강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체육활동 의지 확보와 구체적인 종목 선택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스포츠강좌 바우처와 국민체력 인증 사업이 연계될 경우 수강자에게 등급별 체력 측정값과 결과값을 부여하여 스포츠활동 의지를 유발할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체력 및 건강관리를 보다 구체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체육시설 확대 및 종목 다양화를 위해 해당 월의 바우처 금액을 익월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거나 연 단위 총액 지급방식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수강생들의 수강 과목 선택 지원 및 데이터에 입각한 체력·건강관리를 위해 국민체력 100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원금액

세대구분	1인	2인	3인	4인이상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 유연성 부여: ①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②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2)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01)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 동호인 리그 및 클럽 개최, 학교체육시설 개방, 생활체육지도자 보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임.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1,460억 3,500만원 중 1,456억 3,500만원을 교부하였고, 이 중 1,301억 1,9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억 7,900만원이 발생하였음.

[2023회계연도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146,035	146,035	-	-	-	146,035	145,656 [130,119]	-	379	145,754
▪ 맞춤형생활체육활동지원	27,176	27,176	-	-	-	27,176	26,990 [26,209]	-	186	25,389
▪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43,448	43,448	-	-	-	43,448	43,444 [38,803]	-	4	44,523
▪ 스포츠클럽육성	29,274	29,274	-	-	-	29,274	29,274 [23,529]	-	-	30,274
▪ 생활체육동호회리그지원	2,320	2,320	-	-	-	2,320	2,320 [2,242]	-	-	3,320
▪ 스포츠클럽디비전	22,692	22,692	-	-	-	22,692	22,692 [22,214]	-	-	23,172
▪ 생활체육대회지원	3,050	3,050	-	-	-	3,050	3,050 [2,962]	-	-	3,350
▪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4,131	4,131	-	-	-	4,131	4,131 [4,068]	-	-	4,198

▪ 기타생활체육 단체지원	700	700	-	-	-	700	700 [684]	-	-	200
▪ 생활체육국제 교류지원	410	410	-	-	-	410	410 [361]	-	-	510
▪ 생활체육정보 제공	3,297	3,297	-	-	-	3,297	3,295 [3,248]	-	2	3,397
▪ 동계스포츠발전 지원	2,700	2,700	-	-	-	2,700	2,513 [2,513]	-	187	2,325
▪ 스포츠클럽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6,837	6,837	-	-	-	6,837	6,837 [3,286]	-	-	4,546
▪ 스포츠주간 계기 대국민 스포츠 장려	-	-	-	-	-	-	-	-	-	55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해(달)맞이 체조교실: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실내공간 보안 활용방안 마련 필요>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지원의 세부 내역사업 중 하나인 해(달)맞이 체조교실은 새벽 또는 저녁 시간대에 광장, 공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체조, 댄스 등 지역주민 선호종목(체조, 에어로빅, 국학기공 등)의 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해 교습하는 사업으로, 2023회계연도 계획액 9억 6,000만원 중 8억 9,006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 해(달)맞이 체조교실 사업 현황]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o 새벽·저녁 시간대 지역주민 체육활동 지원 o 무료 강습 실시로 생활체육 참여 문화 확산과 건강 증진에 기여
사업대상	전 국민
사업기간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행주체	시・군・구 체육회
사업내용	o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개설 및 체육지도자 배치 o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우수개소 선정
소요예산	9.6억원(전년동) / (집행)8.9억원
추진실적	17개 시・도 174개소 총 516,677명 참여

* 자료: 대한체육회 / 2023년 동 사업 사업계획서

2021년 처음 시작된 동 사업은 지난 3년간 운영개소 및 참여인원이 확대되고 있고, 2023년 기준 17개 시・도의 174개소에서 총 516,677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 참가자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91.5점을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최근 3년간 사업 현황]

구 분	참가 지자체 수	운영개소 수	참가인원	예산 (백만원)
2021	13개 시·도 93개 시군구	145개	270,016명	960
2022	17개 시·도 126개 시군구	163개	325,686명	960
2023	17개 시・도 26개 시군구	174개	516,677명	96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교습비용이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공원, 약수터 등 주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에서 교습한다는 점에서, 꾸준하고 건강한 운동 습관을 유도하는 등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다만, 동 사업은 야외 공간에서 체육활동이 이루어져 추위, 눈・비, 미세먼지 등 계절과 기후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의 진행 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음.

현 사업지침 상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또는 체감온도 영하 15.4도 미만 시, 고농도미세먼지(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가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나, 참여주민의 연령대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할 때 눈과 비가 오는 등의 기상 상황에서 진행되기도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동 사업은 기상 상황 악화 시 실내 체육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바, 2022년 말 기준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은 35,941개소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간이운동장 25,983개소, 체육관 1,337개소, 축구장 1,109개소 등이 있고 이 중 체육관, (실내)테니스장, 수영장 등의 경우 날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음.

[2022년 말 기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시설유형	육상경기장	축구장	체육관	간이운동장	테니스장	수영장	기 타	합계
개소 수	247	1,109	1,337	25,983	873	512	5,880	35,941

* 주: 공공체육시설=건립중인 시설, 학교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체육시설 등 제외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는 기상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해(달)맞이 체육교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 등 지역의 공공체육시설과 적극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국체육인회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사단법인 한국체육인회는 「민법」 제32조[135]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으로, 2023년도 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원로체육인 복지증진, 체육인재 발굴 등의 사업을 수행함.

[한국체육인회 지원 사업내용 및 조직체계]

(단위: 천원)

구분	주요내용
사업내용	· 은퇴유공 원로체육인 지원 68,960 · 원로체육인 워크숍 및 한마음건강걷기대회 24,540 · 한국청소년 체육상 21,900 · 은퇴체육인 화합한마당 7,000 · 소식지 발행 7,000 · 기관운영비(인건비: 사무총장 1명, 사무직원 1명) 69,600
조직체계	· 회 장: 김창규(전 한국체육학회장, 전 아시아레슬링연맹 회장) · 부회장: 조재기(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1976 올림픽 유도 동메달리스트) 외 20명 · 회 원: 2,200명 * 회원자격: 보편적으로 55세 이상 된 국가대표 및 대표급 정도의 원로 체육인

* 주: 사업내용 이외에 대한체육회 회계검사 수수료 100만원 지출.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법인에게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등에 근거하여[136] 1994년부터 계속 동 단체의 사업비 및

135)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36)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는바, 2023년 기준 누적지원액은 총 43억 9,500만원임.

[한국체육인회 연도별 지원금액]

연도	지원금액
1994~1995년	94백만원
1996년	64백만원
1997년	96백만원
1998년	109백만원
1999년	121백만원
2000년	119백만원
2001년	122백만원
2002년	128백만원
2003년	130백만원
2004년	127백만원
2005~2007년	130백만원
2008년	100백만원
2009년	57백만원
2010년	44백만원
2011~2023년	연 200백만원
총 액	**4,395백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거나 정부가 정책상 지원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도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연례적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사업비 지원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보조금 예산의 지원 원칙임.[137]

---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생 략)

137)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p.100-101.

그러나, 동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는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인 복지 일반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고, 특정 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참고로, 대한민국헌정회,[138] 한국교육삼락회,[139] 대한민국재향경우회[140] 등의 퇴직자 단체는 법적 근거에 바탕하여 지원되고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체육인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단순 경상사업비가 아닌 정책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기타생활체육단체지원 사업의 집행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38)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헌정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139)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6조(재정) ① 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4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10)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은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스포츠행사 운영자,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법 제도 개선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보조사업임.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50억 4,400만원 중 49억 9,400만원을 교부하였고, 이 중 46억 7,4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5,000만원이 발생하였음.

[2023회계연도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5,044	5,044	-	-	-	5,044	4,994 [4,674]	-	50	4,403
▪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2,000	2,000	-	-	-	2,000	1,950 [1,862]	-	50	1,850
▪ 체육시설 안전 시스템 구축	3,044	3,044	-	-	-	3,044	3,044 [2,812]	-	-	2,55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국가의 비용부담 확대 검토 필요>

내역사업 체육시설 안전시스템 구축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사업으로, 체육시설법령에 따라 국가체육시설, 취약시설[141]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상·하반기 각 1회씩 국가체육시설 103개소, 취약시설 20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800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이행하였으며, 이외의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였음.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이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수행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음.[142]

141)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문체부고시)상 취약시설

142)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체육시설별 안전점검 시행 주체]

점검 주체	해당 시설
시·도지사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중 시·도 설치·운영 시설
	직장 체육시설 (군부대 직장체육시설 제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시·군·구청장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중 시·군·구 설치·운영 시설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포함)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중 국가 설치·운영 시설
	안전관리 취약시설 (문체부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에 의한 200여개 시설)

* 자료: 「체육시설법」 제4조의3 및 제4조의4, 동법 시행령 제2조의5[143]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감독하는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자체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바,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43) 제2조의5(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 또는 시·도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 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제4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국가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로 한정한다)
2. 안전관리가 취약한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지방자치법」 제158조[144]에 따르면 국가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21조[14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함.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체육시설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임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사무이기도 하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2023년 안전점검 등록률[146]은 약 51%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등 안전점검 관련

144) 제158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45)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146) 지방자치단체 점검 대상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약 6만개소 중 소규모 체육시설업 약 5.3만개소는 시설업자가 자율점검 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체부고시)
1.3 적용범위
- ○ 「체육시설법」 제5조(전문체육시설), 6조(생활체육시설), 제7조(직장체육시설)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
- ○ 「체육시설법」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시설
  - 소규모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연면적에 상관없이 자율점검시설로 한다.
  - 자율점검시설은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안전관리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체육시설알리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점검 대상인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 등에 국가의 역할 및 관련 비용의 국가 부담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안전점검이 수행되도록 민관합동 안전점검 등 안전점검 비용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164-300)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은 초등학교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시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시·도교육청 보조 사업(보조율 20%)임.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104억 5,100만원 중 104억 4,500만원을 교부하였고, 이 중 104억 1,3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600만원이 발생하였음.

[2023회계연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10,451	10,451	-	-	-	10,451	10,445 [10,413]	-	6	5,351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10,451	10,451	-	-	-	10,451	10,445 [10,413]	-	6	5,351

* 주: 2024년도부터 국비 보조율이 20%→10%로 조정됨에 따라 계획액이 절반가량 줄어듦.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지위 및 고용안정성 향상과 다양한 스포츠 종목 강사 및 프로그램 제공 필요>

2009년 교과부와 문화부의 '문화예술·체육 교육 진흥을 위한 MOU'로 시작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은 스포츠강사가 체육 수업을 전담함에 따라 기존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전문가에 의한 체육지도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흥미 향상, 학교스포츠 클럽 지도를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음.

다만, 해당 사업은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배치되는 스포츠강사의 지위 및 고용안정성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해당 사업 수혜학교 학생 대상 스포츠강사 만족도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94점을 상회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스포츠강사 수혜자 만족도]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목표	93.7	93.8	93.9	94.2
실적	94.2	95.6	94.6	93.2
달성도	100.5	101.9	100.7	98.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스포츠강사의 경우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학교체육 진흥법」 및 관계 법령[147]이 스포츠강사의 역할을 정규 체육수업 “보조”로 한정하고 있고,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한정하여 스포츠강사의 의욕 저하와 스포츠 활동 및 지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음.

스포츠강사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스포츠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권한이 있지만, 체육 교과과정에서는 여전히 보조역할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육 수업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실태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148]

또한, “1년 단위 재계약”의 경우 스포츠강사는 이미 각 지자체 교육청을 통해 자질 및 태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임이 드러났음을 고려할 때, 1년 단위 계약이라도 최소한 3~5년의 재임용 보장 또는 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등 고용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시・도체육회, 경기단체 등과의 협의를

---

147)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148) 「학교체육 진흥법」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스포츠강사의 진학 과정에서의 역할도 법률상 인정된다고 보여짐.

통해 다양한 스포츠강사 인력을 투입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미래 세대의 체육 교육은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신체 활동 참여를 위해 그들의 수준과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개인 및 팀 스포츠, 건강 관련 활동 등 세분화된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아가 학생의 체육 종목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선택 학습이 강조되어야 함.[149]

참고로 일본은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종목으로 체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문체육을 신장시킬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겠음.[150]

이처럼,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 종목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도교육청이 한정된 스포츠강사 자원을 단독으로 정하여 임용하는 것이 아닌 일선 지방체육회, 경기단체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스포츠강사 자원을 파악·제공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체육 진흥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지위 및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사업 방식에 있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49) 「미래사회 대비 체육교과의 교육방향 탐색」, 정현우·박정준·유창완, 교과교육학연구 2017.
150) 「일본의 스포츠정책과 국제경기력 향상을 통한 시사점」,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2.12.19.

(5) 대한체육회 운영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5261-300)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대한체육회 운영지원은 전문체육 진흥, 국제체육 교류, 스포츠클럽 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문체부 인가 법인 대한체육회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대한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회관관리비와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함.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364억 8,900만원 전액을 교부하였고, 이 중 248억 5,5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36,489	36,489	-	-	-	36,489	36,489 [24,855]	-	-	29,762
▪ 인건비	14,818	14,818	-	-	-	14,818	14,818 [14,818]	-	-	15,318
▪ 기관운영비	5,005	5,005	-	-	-	5,005	5,005 [4,917]	-	-	14,444
▪ 회관관리비	3,756	3,756	-	-	-	3,756	3,756 [3,754]	-	-	-
▪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운영	12,910	12,910	-	-	-	12,910	12,910 [1,366]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교육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 확정 필요>

체육인교육센터 건립운영은 체육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장흥에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교육시설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체육인교육센터는 2024년 6월 기준 공정률 73%로, 금년 12월 완공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인 운영[151]에 들어갈 예정인바, 동 센터의 운영주체는 대한체육회임.

[체육인교육센터 시설 개요]

○ 부지위치: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7-1번지 일원
○ 운영주체 및 운영인력(안): 대한체육회 / 행정직·전문기술직 등 30명
○ 운영예산: (추정액) 연 30억
○ 주요시설: 교육동(4층), 숙박동(4층), 다목적체육관(2층) 등 200명 수용

교육동	지상 4층(3,462㎡) / 교육인원 200명 동시 수용 기준 배치 ▷ 1층: 서고, 열람실, 체험실, 운영지원시설(사무실 등) ▷ 2층: 소강의실, 분임실, 세미나실, 체험실 등 ▷ 3층: 중강의실, IT교육실 등 / 4층: 대강의실(200명) 등
숙박동	지상 4층(5,497㎡) / 숙박인원 200명 동시 수용 기준 배치 ▷ 1층: 2인실, 장애인실, 휴게공간 등 / 2층: 식당. 2인실, 4인실 등 ▷ 3~4층: 1인실, 2인실, 4인실, 세탁실 등 ※ 1인실: 6실 / 2인실: 57실 / 4인실: 20실
다목적 체육관	지상 2층/ 2,152㎡/체육관(핸드볼 경기장 규격), 체력단련실 등

* 자료: 대한체육회

체육인교육센터 내 시설은 크게 교육동, 숙박동, 다목적체육관으로 구성됨. 교육동은 서고, 열람실, 체험실 및 강의실, IT교육실 등으로, 숙박동은 1인실부터 4인실까지 최대 200명 규모의 인원을 수용하는

151) 대한체육회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체육회,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시범교육 운영을 한 이후 5월부터 본격 운영을 할 것이라는 계획임.

숙박시설 및 식당으로, 다목적체육관은 핸드볼 경기장 규격의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으로 운영될 예정임.

다만, 2025년 본격 운영을 앞둔 대규모 교육시설인만큼 운영 조직·인력·예산 등 준비가 철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운영계획은 그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체육인 교육센터 운영 계획(안)]

연도	과정	주요내용
2025	31개 과정	▪(선수) 2개 교육과정(연령별) ▪(지도자) 6개 교육과정(전문, 생활, 학교체육 분야별) ▪(심판) 4개 교육과정 ▪(행정가) 8개 교육과정 ▪(일반인) 11개 교육과정(청소년 3개, 성인 8개)
2026	46개 과정	▪(선수) 5개 교육과정(연령별, 역량강화) ▪(지도자) 10개 교육과정(전문, 생활, 학교체육 분야별, 역량강화) ▪(심판) 4개 교육과정 ▪(행정가) 16개 교육과정 ▪(일반인) 11개 교육과정(청소년 3개, 성인 8개)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체육인 교육센터는 조직·인력·예산 등 기본 운영 방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교육과정은 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31개, 2026년 46개를 운영할 것이나, 교육 내용, 센터 교통편, 수강생과의 비용분담 등에 대한 내용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

또한, 체육지도자의 경우 2022년 양성된 체육지도자는 총 2만 1,386명, 109개 종목에 달하는바, 체육인교육센터가 계획하는 집체적인 교육 방식의 경우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보다는 폭력예방, 인권교육 등 기본적 교육과정 수행에 그칠 우려가 있음.

향후 체육인교육센터가 운영 계획에 체육지도자에 대한 연수과정을 내용으로 포함할 경우, 기존에 지정된 체육지도자 연수기관과 교육 내용, 과목과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체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현황]

(2024년 기준)

구분	지역	연수기관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수도권	국민체육진흥공단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수도권	중앙대, 한국체육대, 한양대
	경상	동아대
	충청	충남대
	전라	조선대, 국기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수도권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라	원광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수도권	경기대, 경희대, 동국대, 숭실대, 용인대, 을지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경상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충청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전라	군산대, 목포대, 전남대, 전북대
	강원	강릉원주대, 강원대
	제주	제주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수도권	중앙대, 을지대
	경상	경남대
	충청	호서대
	전라	광주대
	강원	가톨릭강원대
노인스포츠지도사	수도권	경희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상	신라대
	충청	대전대
	전라	목포대, 호남대
	강원	가톨릭관동대
건강운동관리사	수도권	연세대
	경상	부경대
	충청	순천향대
	전라	조선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수도권	국민체육진흥공단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수도권	용인대, 한체대
	경상	신라대
	충청	백석대
	전라	원광대

*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외에도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2023년 11월 개관한 스포츠가치센터(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와의 차별성, 심판 및 행정가 교육을 위한 관련 전문인력 상시 배치 여부 등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교육센터가 개관한 이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센터 운영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 예산 소요액 대책 등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6)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국민체육진흥기금, 5365-300)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은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에게 융자 및 이차보전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800억 중 769억 1,800만원을 교부하였고, 전액이 실제로 집행되었으며 불용액 30억 8,200만원이 발생하였음.

[2023회계연도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80,000	80,000	-	-	-	80,000	76,918 [76,918]	-	3,082	163,730
▪ 융자금	76,100	76,100	-	-	-	76,100	76,100 [76,100]	-	-	157,880
▪ 이차보전금	3,900	3,900	-	-	-	3,900	818 [818]	-	3,082	5,85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원적 방식의 스포츠산업융자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필요>

2023년부터 스포츠산업융자는 직접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 Two-Track으로 추진되었음.

직접융자는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투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대출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용이율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변동금리(2023년 4분기 기준 3.73%)이며, 이차보전은 직접융자 지원대상과 더불어 운전·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대출 수요까지도 포함하되, 시중은행(협약은행)[152]이 기업에 대해 대출심사한 후 은행 자금을 대출할 경우 그 대출금리의 일부(2.5%p)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임.

[직접융자와 이차보전 제도 비교]

	직접융자	이차보전
지원방식	대출 원금 지원	대출 이자 지원 * 협약은행 자금으로 대출
적용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변동금리 공통적용 * 2023년 4분기 3.73%(분기별 변동)	시중금리 일부 지원(2.5%p) * 예) 은행 대출금리가 7.5%인 경우, 사업자 부담 5.0%
지원자금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투자	시설설치, 개·보수, 설비투자, 운전, 연구개발
23년도 규모	761억원	39억원

*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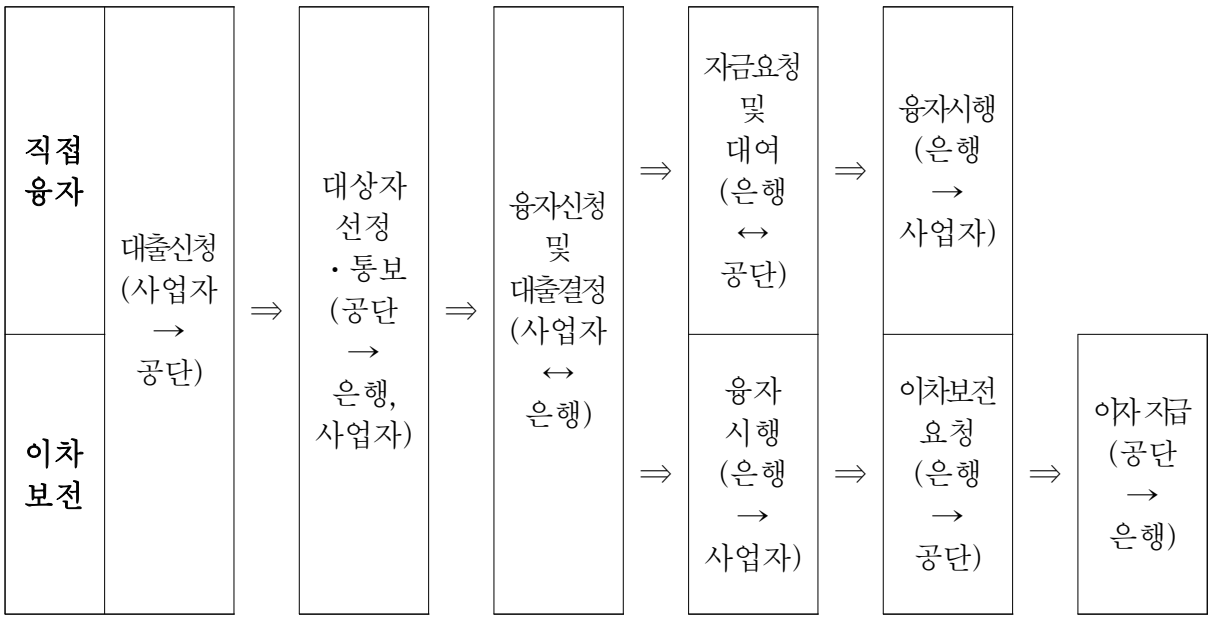
다만, 2023회계연도 기준 직접융자의 실집행률은 100%인데 비해, 이차보전의 경우 전체 계획현액 39억 중 30억 8,200만원이 불용으로

152)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

실집행률이 21%임을 고려하면, 기업의 이차보전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이는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대출하는 구조이므로, 대출 심사나 대출 규모 결정에 있어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권이 직접융자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융자 방식보다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다소 엄격할 수 있다는 점 153)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154)

[직접융자와 이차보전 대출절차]



*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153) 「관광기금 융자 지원방안 개선연구」, p.10, 한국금융학회 · 문체부

154) 참고로,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사업(세부사업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1231-306)'의 내역사업)은 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심사 및 이차보전 협약 보증서 발급 후 은행을 방문하게 하고 있어 은행의 대출 리스크를 줄여주고 있지만, 스포츠산업 이차보전은 보증기관을 거치는 절차가 별도로 없어 은행으로서는 심사에 더욱 엄격할 수 있음.

또한, 2022년과 달리 직접융자 대상에서 운전자금을 제외함으로써 직접융자는 시설비와 같은 대규모 자금에, 이차보전은 운전자금과 같은 소규모・유동적 자금에 활용하려던 당초의 취지와 달리, 2023년 직접융자 예산이 감소하여 조기 소진됨에 따라 이차보전 방식으로도 시설비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차보전 지원 중 시설비 대출 비중이 54.5%나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 방식이 구분되어 직접융자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시설비 원금 대출을 지원받지 못한 기업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융자		융자		융자		이차보전	
시설·개보수·설비	92,292	67.8	180,112	78.7	76,100	100	446	54.5
운전·연구개발	43,808	32.2	48,788	21.3	-	-	372	45.5
예산 (집행)	136,100	100	228,900	100	76,100	100	818	100

* 주: 기업당 대출잔액 기준 85억 한도 내에서 양 방식으로 중복 대출도 가능함

*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만약 직접융자가 스포츠기업의 수요가 많은 기성고(시설·개보수·설비)를 비롯하여 공단과 수탁은행의 기업에 대한 혁신기술 평가 등을 기반으로 스포츠산업체의 연구개발과 경쟁력 강화 위주로 지원하고, 이차보전은 그 외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을 이원화한다면 Two-Track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다만, 2023년 기준 이차보전에 대한 수요가 적었고,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의 대상이 사실상 같으나 대출 규모나 절차의 용이성 등

지원방식 차이로 우선순위가 달리 나타났으므로[155], 기존의 Two-Track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지원대상과 목적상 차이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업의 직접융자 선호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으로 융자 방식을 이원화하는 기존의 사업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자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5) 참고로, 2024년에는 대규모·장기 자금(시설설치, 개보수 등)은 직접융자, 소규모·단기 자금(운영자금 등)은 이차보전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음

(7) 재해복구비(체육)(일반회계, 5131-302)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재해복구비(체육)는 2023년 강원도 산불, 집중호우, 태풍 카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복구 비용을 지원(지자체 지원비율 50%)하는 것임.

2023회계연도 기준 본예산에서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고 문체부 자체이용[156]을 통해 차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예산현액 64억 4,200만원 중 6억 8,9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재해복구비(체육)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재해복구비(체육)	-	-	-	6,442	-	6,442	6,442 [689]	-	-	-
▪ 재해복구비(체육)	-	-	-	6,442	-	6,442	6,442 [689]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56)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생 략)

<재해복구를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 검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구호활동 및 피해복구를 위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음.[157]

2023년도의 경우 산불이 발생한 대전, 충북 등의 10개 기초지자체와

---

1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 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생 략)

강원도 강릉시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예천, 공주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사업비,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등을 자체이용하여 공공체육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비(체육)를 마련하여 집행하였음.[158]

[재해복구비(체육) 자체이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이용일자	세부사업명	목-세목코드	금액	사유	지자체 교부일자
8.16.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1532-300)	430-01 (자산취득비)	25	산불피해 복구지원	-강원: 9.19.
9.26.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2831-362)	420-03 (공사비)	3,096	집중호우 피해 및 태풍 카눈 피해 복구지원	-세종: 11.09., 11.28. -강원, 전북, 충북, 충남: 11.28. -경북: 12.7.
		420-04 (감리비)	201		
		420-05 (시설부대비)	26		
	전통생활문화진흥 (1533-303)	330-03 (지자체 자본보조)	2,000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7102-105)	110-01 (성과상여금)	218		
	문화유산과학센터 건립 (2831-316)	420-03 (공사비)	876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자체이용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첫째, 피해복구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는 미리 편성된 예산이 아닌 자체이용을 통한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소요된 측면이 있음.

158) 체육 분야 이외에도 종교, 관광 분야에서 재해복구비를 자체이용을 통해 마련하여 편성하였음.

2023년 강릉 산불사태는 4월 발생하였으나 자체이용이 8월, 지자체 교부는 9월에서야 이루어졌음. 또한, 6~7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예산액은 9월 말 자체이용을 통해 확보되었고 지자체 교부는 11월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이루어짐. 이에 재해복구비를 교부받은 지자체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교부액 64억 4,200만원 중 89.3%인 57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음.

[재해복구비(체육)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지자체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강원특별자치도	294	294	-
경상북도	357	-	357
세종특별자치시	4,583	-	4,583
전라북도	48	-	48
충청남도	799	34	765
충청북도	361	361	-
계	6,442	689	5,75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둘째, 자체이용으로 인해 기편성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이용하여 재난복구비를 편성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재난 및 그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집행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확보가 매년 제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복구 예산 소요 발생 시 불가피하게 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음.

또한, 매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022 재해연보」에 따르면, 2022년 자연재난[159]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94명(사망 62명, 부상 30명, 실종2명), 피해액은 5,926억원이고 이를 위한 복구비는 1조 6,636억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액 및 복구비 모두 크게 증가하였음.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현황]

(단위: 명,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명피해	사망	4	2	0	7	7	52	48	72	42	62
	부상	0	0	0	4	15	4	37	28	42	30
	실종	0	0	0	0	0	1	0	3	0	2
	합계	4	2	0	11	22	57	85	103	84	94
피해액		1,721	1,801	318	2,888	1,873	1,412	2,162	13,181	660	5,926
복구비		3,865	5,070	381	5,906	4,996	4,432	13,487	41,615	2,973	16,636

* 자료: 행정안전부, 2022 재해연보(자연재난) 재구성

1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생 략)

재해복구의 신속성, 기존에 편성된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재난의 상시화 대비 등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해복구를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체육협력관

(1) 스포츠 종목 보급(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11)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스포츠 종목 보급은 씨름, 바둑, 전통무예 등 비인기 스포츠 종목을 지원하고, 레저스포츠 등 아직 저변 확대가 미흡한 종목을 보급하여 스포츠 종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임.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154억 7,000만원 중 137억 7,800만원을 교부하였고, 이 중 121억 5,1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6억 9,200만원이 발생하였음.

[2023회계연도 스포츠 종목 보급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스포츠 종목 보급	15,470	15,470	-	-	-	15,470	13,778 [12,151]	-	1,692	12,204
▪ 전통스포츠보급 및 무예진흥	1,650	1,650	-	-	-	1,650	1,350 [848]	-	300	1,650
▪ 민속씨름진흥	6,276	6,276	-	-	-	6,276	6,276 [5,865]	-	-	6,666
▪ 레저스포츠 보급	1,500	1,500	-	-	-	1,500	1,500 [1,172]	-	-	1,500
▪ 바둑대회 지원	2,162	2,162	-	-	-	2,162	2,162 [1,992]	-	-	-
▪ 바둑보급사업	1,713	1,713	-	-	-	1,713	1,713 [1,628]	-	-	1,542

▪ 유네스코국제 무예센터 운영	777	777	-	-	-	777	777 [644]	-	-	846
▪ 충주 전통무예 진흥시설 건립	1,392	1,392	-	-	-	1,392	-	-	1,392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신속한 지정과 국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노력 필요>

전통스포츠보급 및 무예 진흥은 줄넘기, 줄다리기 등의 전통스포츠를 프로그램 체험, 대회 유치 등을 통해 보급하고 전통무예를 발전·육성하려는 내역사업임.

2023년도 기준 줄넘기 강습회, 직장인 족구교실, 줄다리기 큰마당과 같은 전통스포츠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였고,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160]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를 통해 전통무예를 지원하였음.[161]

[전통스포츠보급 및 무예 진흥 사업 현황]

세부 내역사업	전통스포츠보급	전통무예진흥
수행기관	(보조) 대한체육회 (간접) 대한민국줄넘기협회, 대한민국 족구협회,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	(보조)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간접) 세계무술연맹
사업내용	·줄넘기 강습회, 대회 유치 ·족구 강습회 ·줄다리기 강습회·대회 유치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 ·국제연무대회, 가족무예캠프, 전통스포츠축제 참여
2023년 예산	1억 5,000만원	15억(12억 교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60)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발효일 2015. 12.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2015. 12. 18, 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161)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함.[162]

국내에서 자생된 무예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무예까지도 독창성, 정형화, 체계화 등을 거쳐 전통무예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무예는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은 개념이며, 종국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무예라는 점에서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정 행위가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2019.8.~2024.8.)에서 전통무예의 진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을 추진한 바 있음. 육성종목 지정은 해당 종목 및 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종목 유지·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육성종목 지도자 육성, 관련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전통무예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선결 조건임.

이를 위해, 현재 전통무예 및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수행되어야 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망한 전통무예를 선정한 후 해당 무예 단체들의 의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육성종목을 지정해야 할 것임.

---

16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육성종목은 지정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1차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은 육성종목 지정 신청 시 종목별 주요 단체 또는 단체간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종목별 단체 난립으로 대표단체 구성이 곤란함을 그 이유로 들고 있음.

이에 따라,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2019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조사 이후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전통무예진흥위원회라는 자문위원회만이 구성되어 2년간(2020.5.~2022.5.) 6차례의 회의실적만을 보여주었음.

또한, 전통무예 육성종목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23년도 전통무예 진흥 내내역사업 중 세계무술연맹이 추진한 가족무예캠프는 택견, 활쏘기, 씨름 등 세 종목에 한정하여 체험이 진행되는 등[163] 전통무예 전반에 대한 육성 노력이 부족하였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전통무예 육성종목을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전통무예 실태조사 수행, 전통무예진흥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며, 전통무예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편성하는 등 우리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163) 세 종목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임

(2) 국립체육박물관 건립(국민체육진흥기금, 5261-315)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은 올림픽 체육공원(서울특별시 송파구) 내에 국립체육박물관을 건립하여 대한민국의 스포츠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전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포츠 분야 전시와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사업임.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114억 8,100만원 전액이 교부되었고, 이 중 17억 8,300만원이 실제로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11,481	11,481	-	-	-	11,481	11,481 [1,783]	-		9,424
▪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10,228	10,228	-	-	-	10,228	10,228 [554]	-		8,290
▪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보존	1,253	1,253	-	-	-	1,253	1,253 [1,229]	-	-	1,13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체육박물관과 한국체육박물관의 소장물품 및 컨텐츠의 통합 또는 교류·협력 필요>

‘국립체육박물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 예정인 박물관으로 2023년 기준 구술채록, 영상 등의 제작과 기증 및 구입 등을 통해 47,546점의 소장품을 확보하는 등 내부 전시컨텐츠를 관리하고 있음. 사업기간은 매장문화재 등의 발굴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이고, 2023년 4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2023년 11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2월 준공예정임.

[국립체육박물관 사업 현황]

○ 운영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 규 모(건축연면적): 5,228㎡(지하2층부터 지상4층)
○ 총사업비: 274억원(198억에서 총사업비 조정)
○ 사업기간: 2016년~2025년
○ 추진경위
- 2016: 건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 2017: 인허가 완료 / 2020.01.: 건축공사 계약체결
- 2020.06.: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공사정지 / 2021.11.: 매장문화재 발굴완료
- 2022.06.: 문화재심의위원회 완료(현지보존 결정)
- 2022.08.: 설계변경에 따른 인허가 / 2023.02.: 실시설계, 설계단가 적정성 검토완료
- 2023.04.: 총사업비 조정 / 2023.11.: 건축공사 착공
○ 박물관 소장유물: 47,546점

(단위: 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기 증	2,158	4,115	5,845	5,134	5,141	3,766	1,379	5,625	33,163	69.7%
구 입	1,576	1,321	1,973	569	3,413	3,512	761	1,258	14,383	30.3%
소 계	3,734	5,436	7,818	5,703	8,554	7,278	2,140	6,883	47,546	1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한국체육박물관’은 대한체육회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육박물관으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등록문화재

9점을 포함하여 소장유물 만여점을 보유하고 있고, 4개 전시관을 통해 한국 체육역사, 올림픽, 전국체전 등의 컨텐츠를 전시하고 있음.

[한국체육박물관 현황]

○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태릉국제스케이트장
○ 운영주체: 대한체육회
○ 운영인력 및 예산: 학예사 1명 / 연 약 7,000만원(태릉선수촌 운영비 예산 활용)
○ 규　모: 744.42㎡
○ 전시관: 4개관 (역사관, 올림픽관, 전국체전관, 경기단체관)
○ 소장유물: 만여점
○ 운영여부 : 운영중(무료) / 하절기 운영중지
○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국가등록문화재 6건 9점 보유

연번	등록번호	내　　용	등록일자
1	등록 490호	제14회 런던올림픽 후원권 1건	2012.04.18.
2	등록 491-1호	이원순 유물(여행증명서) 1건(2점)	2012.04.18.
3	등록 492호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페넌트 1건	2012.04.18.
4	등록 493호	제1회 아시아컵 축구대회 우승컵 1건	2012.04.18.
5	등록 498호	청년단 야구대회 우승기 1건	2012.08.13.
6	등록 499호	전국체육대회 우승기, 2위기, 3위기 1건(3점)	2012.08.1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단의 국립체육박물관이 대한민국 스포츠 유물의 집적체로써 스포츠 문화 전시 등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박물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일원화 또는 협력 체계하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또한, 2개 박물관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확보하는 유물, 컨텐츠는 각 기관의 박물관에만 소장될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전 및 IOC 관련 기념 물품, 컨텐츠는 독자적인 박물관 운영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개별 박물관 또는 기관에만 소장될 것임.

이는 박물관의 다양성, 접근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면, 한국체육박물관의 관람인원을 따로 집계하지 않을만큼 기관의 관심도가 적다는 점, 소장품이 만여점에 불과하다는 점 등으로 박물관의 이원적 운영은 관심도 미흡, 운영 콘텐츠 부족, 운영경비 낭비 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164]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체육박물관의 체육박물관으로서의 위상 고려 및 소장물품의 다양화, 스포츠 유물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등을 위해 대한체육회 및 한국체육박물관의 콘텐츠를 통합하는 방안 또는 양 기관·박물관의 교류·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64)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한국체육박물관을 태릉선수촌 내 월계관 또는 승리관으로 이전하는 등의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태릉선수촌의 역사성과 한국체육박물관의 콘텐츠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임.

(3) 태권도진흥(국민체육진흥기금, 5461-304)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태권도 진흥은 우리나라의 국기(國技)인 태권도 진흥을 위해 태권도 사범·봉사단 파견, 시범단 공연 등 태권도 세계화와 관련 산업 및 콘텐츠를 육성하는 보조사업임.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163억 9,700만원 전액을 교부하였고, 이 중 156억 9,8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태권도진흥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태권도진흥	16,397	16,397	-	-	-	16,397	16,397 [15,698]	-	-	14,473
▪ 태권도 세계화	12,147	12,147	-	-	-	12,147	12,147 [10,754]	-	-	11,933
▪ 태권도 교육·연구	650	650	-	-	-	650	650 [1,284]	-	-	415
▪ 태권도 산업화	1,350	1,350	-	-	-	1,350	1,350 [1,518]	-	-	1,065
▪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550	550	-	-	-	550	550 [531]	-	-	-
▪ 생활태권도 활성화	300	300	-	-	-	300	300 [292]	-	-	-
▪ 태권도 관광육성	1,100	1,100	-	-	-	1,100	1,100 [1,313]	-	-	560
▪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300	300	-	-	-	300	300 [6]	-	-	-
▪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	-	-	-	-	-	-	-	-	5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관광객 모집을 위한 태권도 스테이 내실화 필요>

태권도 스테이는 태권도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주 태권도원에서 머물며 태권도 콘텐츠 및 주변 지역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렴한 가격[165]에 숙박, 식음, 관광,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종합 관광 상품으로 기획된 사업임.

태권도 스테이는 코로나19가 심했던 2022년을 제외하면 2021년 9,401명, 2023년 9,539명이 방문하여 증가하는 추세이고, 2023년 기준 수익금이 국고 지원액을 상회하였으며, 고객만족도도 꾸준히 4.6점대를 유지하는 등의 성과를 보여왔음.

[최근 3년간 태권도 스테이 운영 실적]

	2021	2022	2023
예산	4억원	4억원	4억원 (3.79억원 집행)
참가자	9,401명	7,359명	9,539명
수익금	미산정	미산정	3억 8,400만원
고객만족도	4.6점	4.6점	4.6점

* 자료: 태권도진흥재단

우리 정부는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해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수요를 조기 선점하는 취지에서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한 태권도 관광을 추진한바 있음.

이를 위해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과 주한 외국인들을 국기원,

165) 2023년 기준 태권도스테이 가격은 1인 3만 8,000원부터 4만 2,000원까지임.

태권도원과 같은 태권도 성지로 유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지 방문시 외국인들이 태권도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임.

그러나, 태권도 스테이는 2023년 기준 주로 내국인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별도의 통역이나 외국인 그룹 대상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판매는 국내 사이트 한 곳을 통해서만 판매를 대행하여 티켓팅을 위한 외국인의 접근이 어렵고, 사후관리와 개선을 위한 외국인 방문객 수 통계도 수집하지 않았음.

한국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그리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쉽게 태권도를 접하여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임.

또한,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태권도 스테이에 관심이 높은 주한 외교사절 등을 정례적으로 초대하여 대한민국 태권도를 통해 외교력을 강화하고 태권도 및 태권도원에 대한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음.[166]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스테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 제고와 향유를 위해 통역, 별도 프로그램 구성, 판매처 다양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한 외교사절 방문 정례화 등 태권도 외교력 및 인지도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166) 2006년 문화관광부는 40여개국 60여 명의 주한외교사절을 덕수궁으로 초청해 태권도와 판소리, 전통음악 등 한국 전통 예술 체험의 자리를 마련한 바 있음(태권도신문, 2006.10.23.).

13. 관광정책국

(1)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일반회계, 4331-308)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은 한국관광 발전의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임.

2023회계연도는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예산현액 8억 500만원을 전부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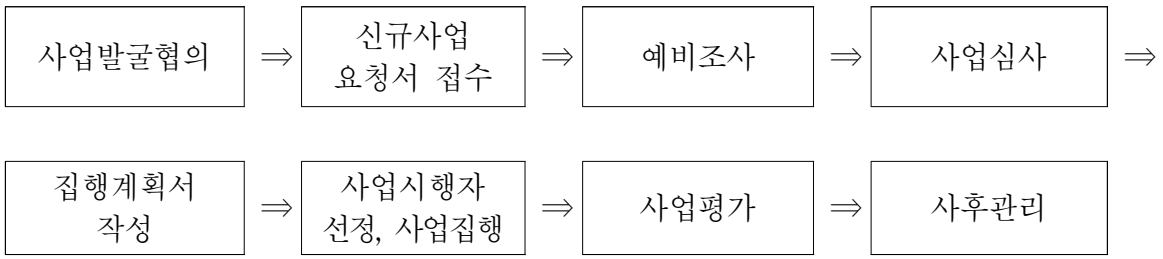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 (ODA)	805	805	-	-	-	805	805 [0]	-	-	540
▪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	805	805	-	-	-	805	805 [0]	-	-	54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방안 개선 필요>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은 국가협력전략(CPS)[167]을 근거로 추진하는 양자 무상원조[168] 사업으로, ODA 추진절차에 따라 2020년도 몽골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무상원조 방식으로 추진 중임.

[ODA 사업(양자무상) 추진 절차]



자료: ODA Korea(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수원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과 함께 전략적 양자관계 구축, 친한(親韓) 네트워크 육성,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ODA 사업의 경우 관광업계 및 인력, 관광학계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관광개발정책의 우수사례를 세계에 전파하는 효과가 있음.

167)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개별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목표, 중점협력분야 및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ODA 지원 전략

168) ODA 지원형태

구분	상환의무 유무	원조유형
양자 원조	무상원조(증여): 상환의무 없음	예산지원, 공동 프로그램 및 기금지원, 프로젝트 원조, 전문가 파견 및 기타 기술협력,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채무구제 등
	유상원조(비증여): 상환의무 있음	
다자 원조	국제기구 출연(분담금) 및 출자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관광부처 공무원 등에 대해 관광정책 포럼, 방한 초청연수 등을 실시하여 관광산업의 동반성장과 관광분야 친한인사 육성을 지원해왔고,[169] 2019년부터는 “KOPIST”(Korea Partnership Initiative for Sustainable Tourism)라는 명칭으로 한국형 관광 ODA사업을 브랜드화하였음.

2020년부터는 기존의 관광인력 연수 외에 관광인프라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관광 ODA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첫 사업지로 몽골을 선정하여 관광종합 교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였음.[170]

특히 2021년부터는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역량강화 실무급 연수 액션플랜 경진대회 수상국가[171]인 스리랑카와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국형 지역관광개발 프로그램인 ‘관광두레’를 접목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현지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 공동체를 조성하여 운영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및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으로 수원국의 관광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 것임.[172]

이에 동 사업 추진경과를 보면, 우선 최초 사업지 몽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기본계획 협의 지연, 교육센터 건설부지 내 난방배관 발견 등에 따른 부지 변경, 겨울 혹한기로 인한 공사 중단 등으로 당초

169)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4300-4331-303
170) 2018년 1월 몽골 정부(환경관광부)가 주몽골 한국대사관에 신규사업조사서(Project Concept Paper, PCP)를 제출한 후 사업심사 등을 거쳐 ODA 사업으로 선정됨.
171) 스리랑카(’18), 필리핀(’19)이 각각 우승국임.
172) 스리랑카의 경우 2019년 3월 스리랑카 정부(관광개발야생종교부)가 주 스리랑카 한국대사관에 신규사업조사서(PCP)를 제출하여 심사절차 등을 거쳐 ODA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필리핀의 경우 2021년 4월 필리핀 정부(관광부)가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신규사업조사서(PCP를 제출하여 심사절차 등을 거쳐 ODA 사업으로 선정됨.

2022년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23년까지 1년 연장하였으나, 2024년 6월말까지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9월 준공 예정)임.[173]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스리랑카의 경우 스리랑카 정부의 디폴트 선언 등 정치상황에 따라 협의의사록(RoD)[174]을 2023년 3월에서야 체결함으로써 당초 2022년까지였던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로 2년 지연되었으며, 2024년 5월말에서야 관광기반 시설인 종합안내소 공사를 착공(10월 준공 예정)한 상황임.[175]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필리핀도 협의의사록 체결을 위한 협의가

---

173) ※ 몽골 관광종합 교육센터 건립 및 인적 역량강화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20년~2023년(당초 2022년까지에서 1년 연장) ㅇ 소요예산: 54억 8,600만원 ※ 연도별 예산: '20년 23억 300만원(건축비·인적역량강화 교육비), '21년 19억 8,900만원(건축비), '22년 11억 9,400만원(건축비), ㅇ 사업내용 ① 몽골 관광교육 종합센터 건립 - 위치: 몽골 울란바토르시 - 규모: 부지 7,000㎡, 연면적 2,516,86㎡(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대강당, 강의실, 실습실, 전시공간, 기숙사 등 ② 몽골 인적역량 강화(총 362명) - 몽골 관광인력 역량강화 온라인 일반연수(가이드 130명, 호텔리어 172명) - 몽골 관광인력 역량강화 온라인 일반연수 우수자초청 심화연수(20명) - 게르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현지연수(40명)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74)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s, RoD)은 개별 프로젝트형 기술협력을 시행하기 전에 상대국 실시기관과 협력내용에 대한 합의사항을 정리하여 서명한 문서로, 구체적으로 협력의 목적·대상, 협력기간, 실시계획, 공여국 지원사항과 수원국 부담사항 등 양국 정부간 합의내용을 담은 해당 기술협력 시행의 기초문서임.

175) ※ 스리랑카 중부-동북부 지역사회기반 관광개발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21년~2024년(당초 2022년까지에서 2년 연장) ㅇ 소요예산: 21억 7,200만원 ※ 연도별 예산: '21년 4억원, '22년 17억 7,200만원 ㅇ 사업내용: - 관광두레 공동체 구성: 종합계획 수립, 관광두레 조직 구성 및 운영 - 인적역량 강화: 공무원·마을지도자교육, CBO조직 및 활동 교육, 관광안내서비스교육 - 프로젝트 운영역량 강화: 프로젝트 실행조직 구성 및 운영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기반시설 확충: 쿠루네갈라(관광농촌체험), 하바라나(농촌+문화유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연되면서 예산현액 8억 5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2024년 4월 협의의사록 체결 이후 현지사업관리단 선정을 위한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7월말 기준 실집행액이 405만원(실집행률 0.5%)[176]에 불과함.[177]

[연도별 사업추진경과 및 실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추진경과	연도별 예산(실집행액)			
		'20년	'21년	'22년	'23년
몽골 관광종합 교육센터 건립 및 인적역량강화	('20년) 한-몽골 협의의사록 체결, 공사 기본계획 확정 ('21년) 환경영향평가 완료, 코로나19 및 건설부지 내 난방배관 발견 등에 따른 건축부지 변경 ('22년) 건축 시공사 계약 체결, 착공 ('23년) 몽골정부 분담사항인 외부 인프라 공사(난방, 상하수도, 전기, 통신) 시공사 유찰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24년) 준공예정(9월)	2,303 (429)	1,989 (18)	1,194 (1,519)	- (1,787)
스리랑카 중부-북동부 지역사회기반 관광개발사업	('21년) 스리랑카 정부 협의 ('22년) 한-스리랑카 협의의사록 검토 ('23년) 협의의사록 체결(3월), 현지사업관리단 선정 및 파견(6월) ('24년) 관광기반 시설 착공(5월), 관광인력 역량강화 교육 실시(9월) 예정, 기반시설 완공(10월)예정	-	400 (-)	1,772 (-)	- (423)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	('23년) 협의의사록 체결 관련 필리핀 정부에 대한 지속 협의 ('24년) 한-필리핀 협의의사록 체결 완료(4월), 현지사업관리단 선정 예정	-	-	-	805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76) 2023년도 이월액 8억 500만원에 대한 실집행률임.

177) ※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2023년~2026년
ㅇ 소요예산: 38억 6,600만원
※ 연도별 예산: '23년 8억 500만원, '24년 5억 4,000만원 *'25년, '26년 미확정
ㅇ 사업내용:
- 관광두레 시범마을 선정 및 개발종합계획(국가관광 두레 발전 전략) 수립
- 관광두레 공동체 구성
- 관광기반시설 확충: 관광두레 상품 개발, 방문자안내소 및 관광안내판 구축
- 공무원, 마을 지도자교육, 마을 주민 및 여성 교육 등 역량 강화

이와 같이 동 사업은 처음 추진된 이래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실집행률이 2020년 18.6%, 2021년 0.8%, 2022년과 2023년에는 실집행액이 없는 등 연례적으로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주요 집행부진 원인은 ①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②수원국 현지 상황에 의한 기반시설 조성 착공 지연 등임.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원국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정치상황 변동 또는 국가위기 상황 등의 발생으로 협의의사록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경우 수원국마다 상이한 사전행정절차와 현지 기후변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착공과 준공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현지에 사업관리단(PMC)[178]을 파견하여 수원국 정부 및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전체 사업 과정을 조율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ODA사업 특성상 수원국에서의 정치상황 변동 등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사업지연의 주요 원인인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국의 신규사업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 PCP) 검토단계에서 협의의사록 체결기한을 약정하는 등 단계적 사업추진 절차 및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178) 사업관리단(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PMC): 사업기획(사전조사, 실시협의, 사업집행계획), 단위사업시행자 선정 포함 사업 자문 및 관리, 기술이전(초청 연수, 전문가파견 등) 등 ODA 사업의 일상적 관리, 조정 및 실행 등 전반적인 업무 수행

또한, 몽골의 경우 2020년 협의의사록 체결 이후에도 사전행정절차 이행, 시공사 선정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2022년 착공 이후에도 혹한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으로 2024년 6월말까지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관광 ODA사업에서는 기반시설 조성 등 건설사업보다는 스리랑카와 필리핀의 사례처럼 낙후된 지역을 관광지로 성장시킬 주민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사업 위주로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179)]

2024년 우리나라 ODA 사업 전체규모 6조 2,629억원 대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관광 ODA 사업규모는 19억 9,600만원으로 전체 사업 중 0.032%에 불과한 상황임. ODA 사업 전체규모가 전년도 4조 7,771억원에서 추가로 1조 4,858억원(31.1%) 증가할 때, 관광 ODA 사업 규모는 전년도 23억 8,500만원 대비 3억 8,900만원(16.3%)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2020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의 경우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신규 사업지 선정과 예산 확대가 어려웠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ODA 사업예산의 비중 확대 등 사업 발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신규 사업지 선정시 사업 대상국과의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을 약정하거나 사업 대상국의 사업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단계적 추진 방안을 명확히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79) 스리랑카의 경우 2023년 3월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고 2024년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임.

더불어, 기반시설 조성 등 건설사업보다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관광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관광산업이 주민 빈곤을 해결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광 ODA 사업의 방향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법정부담금(관광진흥개발기금, 59-593)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법정부담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180]에 따른 국내 공항 등을 통한 출국자에 대해 부과되는 납부금(출국납부금)과 카지노사업자 매출액에 대해 부과되는 납부금(카지노납부금)으로 발생하는 수입임.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5,893억 5,9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4,994억 2,500만원(84.7%)이고, 징수결정액 중 4,994억 1,000만원(99.9%)을 수납하였음.

[2023회계연도 법정부담금 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 법정부담금	589,359	589,359	-	589,359	499,425	499,410	15	-	634,98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8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관광진흥법**」 **제30조(기금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출국납부금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강구 필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에 따라 정부 출연금,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구성됨.

이 중 법정부담금인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납부금은 기금의 주요 재원인바, 2023년도 수납액 4,994억 1,000만원은 기금운영 총규모 1조 5,955억 1,800만원의 31.3%에 해당함.

[2023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총계
법정부담금	융자원금회수	재산수입	기타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타	소계			
499,410	548,343	64,474	24,242	1,136,469	17,376	-	-	-	17,376	300,000	141,673	1,595,51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부터 2024년 5월말까지 출국납부금과 카지노납부금 수납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국제관광이 어려웠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음.

2023년부터는 국제관광이 재개되며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액 5,893억 5,900만원 대비 수납액은 4,994억 1,000만원(수납률 84.7%)으로 미달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467억 6,800만원)의 77.1% 수준에 해당함.

[출국납부금 및 카지노납부금 수납현황(2019～2024)]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5월말)
출국납부금	400,591	92,996	13,439	66,693	288,800	158,265
카지노납부금	247,077	269,669	85,842	86,641	210,610	84,798
합계	647,668	362,665	99,281	153,334	499,410	243,06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수입이 감소한 기금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을 차입해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공자기금 예수금 누적액은 크게 증가하였음.

[공자기금 예수금 차입 현황(2015～2023)]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수금	예수금(누적)	차입금리	차입기간	상환(예정)일
2015	258,361	258,361	2.246	7년	2022-06-09
2016	60,000	318,361	2.125	7년	2022-12-08
2016	120,000	438,361	1.874	7년	2023-03-09
2016	40,000	478,361	1.874	7년	2023-03-09
2016	133,260	611,621	1.480	7년	2023-09-09
2017	150,000	761,621	1.786	7년	2023-12-08
2017	70,125	831,746	2.188	7년	2024-09-09
2020	230,000	1,061,746	1.432	10년	2030-06-09
2021	300,000	1,361,746	1.547	10년	2030-12-09
2021	281,500	1,643,246	1.730	10년	2031-03-09
2021	150,000	1,793,246	1.912	10년	2031-06-09
2021	469,165	2,262,411	1.931	10년	2031-09-09
2022	400,000	2,662,411	2.547	10년	2032-03-09
2022	100,000	2,762,411	2.547	10년	2032-03-09
2022	200,000	2,962,411	3.211	10년	2032-06-09
2023	200,000	3,162,411	4.043	10년	2032-12-09
2023	100,000	3,262,411	3.569	10년	2033-03-0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부터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출국납부금 등 법정부담금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자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기금 재정상태도 호전될 것이라는 입장이었음.

실제 2024년의 경우 5월말 기준 계획액 6,349억 8,500만원 대비 법정부담금 수납액은 2,430억 6,300만원(수납률 38.3%) 수준이었음. 이 중 출국납부금이 1,582억 6,500만원, 카지노납부금이 847억 9,800만원으로, 특히 출국납부금이 국제관광 재개에 따라 기금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4. 3. 27. 기재부 발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상 국민 실생활 관련 부담금 폐지 또는 경감 조치의 일환으로, 출국납부금을 현행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부과 연령을 현행 2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2024. 7. 1.부터 시행됨.[181]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는 출국납부금이 674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며, 2025년부터는 연간 1,3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182]

---

18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39호, 2024. 6. 4. 일부개정, 2024. 7. 1. 시행예정)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12세 미만인 어린이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182)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출국인원을 42,777,964명(2019년도 기준, 출국납부금 면제자 제외)으로 할 때 2024년 출국납부금은 674억 3,695만원 감소(당초 4,005억 9,127만원 → 변경 3,331억 5,431만원)하고, 2025년 출국납부금은 1,338억 7,391만원 감소(당초 4,005억 9,127만원 → 변경 2,667억 1,736만원)함.

감소분에 대해서는 ①2024년 4월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 항공사에 대한 수수료율을 5.5%에서 4.0%로 조정하고, ②기금 지출 중 41%를 차지하고 있는 융자사업비[183]를 전대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임.

그러나,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지출 절감은 연간 55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임.[184] 융자사업비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관광사업자가 시중은행에서 융자할 경우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지출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으나, 전대융자의 경우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데 비해 이차보전은 이자차액의 투입규모와 정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기금 재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185]

공자기금 예수의 차입잔액도 2023년 말 2조 5,007억 9,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186] 코로나19 등 일시적이고 특수한 기금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차입하고, 기금 건전성을 위해 점차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또한, 동 시행령은 3. 24. 기재부 발표 이후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에 대한 관광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한

183) 2023년도의 경우 사업비 지출 1조 843억 5,200만원 중 경상사업비가 6,536억 2,200만원, 융자사업비가 4,487억 3,0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중 융자사업비 비중이 41.38%임.
184)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출국인원을 45,621,957명(2019년도 기준)으로 할 때 위탁수수료율을 5.5%에서 4.0%로 조정할 경우 출국납부금 징수위탁금이 160억 7,079만원(5.5% 기준)에서 106억 532만원(4.0% 기준)으로 54억 6,547만원 감소함.
185) 2023년도 기금 수입현황을 보면 융자원금회수분이 5,483억 4,300만원에 달하고 있음.
186) 공자기금 예수금 누적액이 3조 2,624억 1,100만원 중 만기상환분을 차감한 잔액임.

측면이 있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등은 동 조치에 따라 기금이 축소될 경우 관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정책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1,300억원 정도의 출국납부금 수입 감소 예상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기금적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사업 구조조정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분야 사업 대부분이 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출국납부금 인하가 가져올 관광산업 위축에 대한 관광업계의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기금 사업의 일방적 종료 또는 통폐합 보다는 취약계층 관광 지원사업인 열린관광지 조성, 무장애관광도시 조성 등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관광기금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령 개정과 정책 추진 시 기금 수입감소 또는 지출확대에 따른 기금의 건전성 위협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조정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는 등 정책추진의 절차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전통문화체험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4262-303)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전통문화체험 지원’은 한국의 전통 유·불교 문화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및 서원·향교의 운영과 시설을 지원하고, 인천공항 내 국내외 관광객 대상 전통문화체험관 운영과 상설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의 경우 계획현액 350억 4,800만원 중 350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전통문화체험시설 지원 중 서원·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집행잔액 3,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전통문화체험 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전통문화체험 지원	35,048	35,048	-	-	-	35,048	35,017 [30,440]	-	31	33,781
▪ 템플스테이 지원	23,000	23,000	-	-	-	23,000	23,000 [21,244]	-	-	25,000
▪ 전통문화체험 시설 지원	7,108	7,108	-	-	-	7,108	7,077 [5,746]	-	31	4,589
▪ 전통문화 활용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4,940	4,940	-	-	-	4,940	4,940 [3,450]	-	-	3,092
▪ 서당문화 체험	-	-	-	-	-	-	-	-	-	1,1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 회복을 위한 운영사업 개선 방안 검토 및 개별 사찰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 필요>

내역사업 '템플스테이 지원'은 우리나라 전통불교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자원인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전통사찰에 대해 운영자금과 시설 신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템플스테이는 2009년 OECD가 선정한 '세계의 성공적인 5대 문화관광 상품'이었으며, 같은 해 코리아타임즈의 "Korea's 10 Icons" 기사에서 10대 아이콘 중 3위로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체험 콘텐츠로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였음.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은 205개국의 외국인 총 411,723명[187]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188]

또한, 2017~2021년 국적별 외국인 참가자 수를 보면, 템플스테이 수요는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동서양을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특히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구·미주 지역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187) 순인원(참가자 1인이 1박2일 템플스테이 참여시 인원수를 1인으로 계산) 기준 411,723명
연인원(참가자 1인이 1박2일 템플스테이 참여시 인원수를 2인으로 계산) 기준 656,908명
188) 문화체육관광부(2022), 템플스테이 20년 성과 분석

[2017~2021년 템플스테이 외국인 참가자 수 국적별 현황]

(단위: 명)

순위	국가	참가자	순위	국가	참가자	순위	국가	참가자
1	미국	27,264	6	영국	4,768	11	호주	3,388
2	프랑스	11,464	7	일본	4,015	12	태국	3,160
3	중국	9,985	8	캐나다	3,611	13	대만	2,964
4	독일	7,029	9	싱가포르	3,469	14	필리핀	2,067
5	베트남	7,275	10	러시아	3,829	15	스페인	2,07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최근 10년간(2014~2024.5월말 기준)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 현황을 보면, 2017년의 경우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123개에서 137개로 확대되면서 순인원 기준 전년 대비 참가자 수 증가율이 24.14%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이후 연간 참가자 수 증가율은 2~3% 수준임. 즉, 2017년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추가되며 참가자 수가 증가했던 것이고, 이후 마케팅, 홍보 등 운영사업 등의 효과로 인한 참가자 수 증가율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14~2024년(5월말)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찰수(개)	순인원			연인원		
		내국인	외국인	합계 (증감률)	내국인	외국인	합계 (증감률)
2014년	110	167,828	25,560	193,388 (3.64)	331,620	42,334	373,954 (-2.28)
2015년	122	184,275	28,014	212,289 (9.77)	363,124	46,525	409,649 (9.55)
2016년	123	186,186	36,536	222,722 (4.91)	358,965	55,787	414,752 (1.25)
2017년	137	229,264	47,221	276,485 (24.14)	416,454	70,910	487,364 (17.51)

구분	사찰수(개)	순인원			연인원		
		내국인	외국인	합계 (증감률)	내국인	외국인	합계 (증감률)
2018년	135	233,319	53,291	286,610 (3.66)	438,327	77,091	515,418 (5.76)
2019년	137	247,738	47,058	294,796 (2.86)	458,730	70,520	529,250 (2.68)
2020년	139	111,197	4,760	115,957 (-60.67)	230,888	7,500	238,388 (-54.96)
2021년	141	115,946	4,021	119,967 (3.46)	251,319	6,705	258,024 (8.24)
2022년	142	191,592	26,587	218,179 (81.87)	390,791	38,599	429,390 (66.41)
2023년	150	236,136	50,469	286,605 (31.36)	462,550	83,432	545,982 (27.15)
2024년 (5월말)*	150	100,251	16,577	116,828	195,627	25,437	221,06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참가자 수가 대폭 감소하였고, 2022년부터 참가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며 2023년의 경우 순인원 기준 참가자 수가 286,605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참가자 수 294,796명 수준에 근접하였음. 그렇지만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2017년 137개소에서 2023년 150개소로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사찰당 평균 참가자 수는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024년도의 경우에도 5월말 기준 참가자 수가 116,828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 확대를 위해서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시설의 확대 외에도 기존 운영사업을 점검하고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점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동 사업의 추진체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189]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1차 보조사업자)에 전액 교부하고, 다시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소속 “한국불교문화사업단”(2차 보조사업자)에 전액 교부하며, 교부된 금액 중 일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는 개별 사찰(3차 보조사업자)로 재교부하는 방식임.

2023년의 경우 운영지원 사업 계획액 120억원[190] 중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직접 사업비 76억 8,018만원을 제외하고 43억 1,982만원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150개소에 운영비와 사찰음식홍보행사비 등으로 재교부하였으며, 운영지원 사업 전체 자부담률은 약 20%임.[191] 참고로 2023년도 계획액 120억원은 2022년도 계획액 136억원 대비 16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사업(16억원)이 2022년도에 종료된 데 따른 것임.

[2023년도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명	예산현액		집행액	
	국고보조	자기부담	국고보조	자기부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차 보조사업자)	7,680,180	-	7,609,875	-
개별사찰 (3차 보조사업자)	4,319,820	2,929,751	4,315,061	2,929,742
계	12,000,000	2,929,751	11,924,936	2,929,74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 사업의 2022년도와 2023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면, 운영사찰

18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190) 2023년도 계획액은 총 230억원으로 운영지원 120억원 시설지원 110억원임.
191) 보조금 120억원, 자기부담금 29억 2,975만원, 보조금비율 80.38%

육성 및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정책 및 기관운영 사업 예산은 증가하였고, 사찰음식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사업 예산 비교(2022년 및 2023년)]

(단위: 백만원, %)

구분	관	단위사업	2022년 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	
					증감액(B-A)	증감률
운영지원			13,600	12,000	-1,600	-11.8%
	운영사찰 육성 및 지원		5,356	5,445	89	1.7%
		운영사찰 정책지원	4,867	4,898	31	0.6%
		운영사찰 육성	58	69	11	19.0%
		운영인력 양성	431	478	47	10.9%
	홍보 및 마케팅		2,341	2,432	91	3.9%
		홍보	1,987	2,063	76	3.8%
		마케팅	354	369	15	4.2%
	사찰음식		1,829	1,386	-443	-24.2%
		사찰음식 대중화	1,371	1,017	-354	-25.8%
		사찰음식 전문화	458	369	-89	-19.4%
	정책 및 기관운영		2,474	2,737	263	10.6%
		정책연구	50	288	238	476.0%
		기관운영	2,424	2,449	25	1.0%
	20주년 기념사업		1,600	0	-1,600	-100.0%
		20주년 기념사업	1,600	0	-1,600	-1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사업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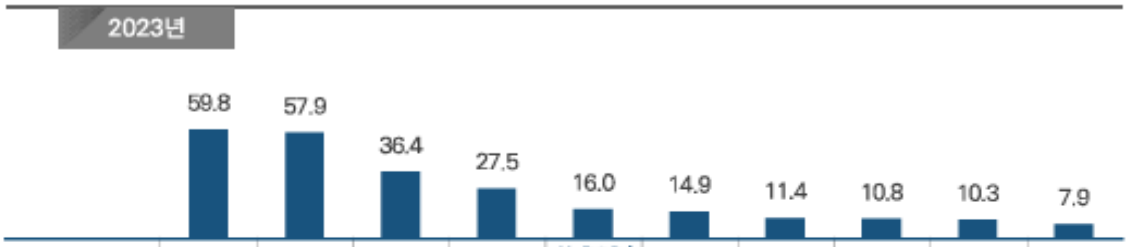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 (B-A)
□ 주요 증액사업			
○ 정책연구개발	50	231	181
○ 운영사찰지원	197	318	121
○ 문화상품개발	108	200	92
○ 해외홍보행사	367	450	83
○ 운영자연수	75	150	75
○ 방송광고제작	256	326	70
○ 국내개최국제대회	0	66	66
○ 공익 템플스테이	397	450	53
□ 주요 감액사업			
○ 20주년 기념사업	1,600	0	-1,600
○ 디지털 콘텐츠 제작	360	251	-109
○ 사무환경운용관리	349	262	-87
○ 온라인 홍보	283	220	-63
○ 사찰음식문화캠페인	113	50	-63
○ 사찰음식 인력양성	151	92	-59
○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운영	309	257	-52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고려하는 활동으로 '식도락 관광'이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점, 2022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Taste of Paris'에서 한국의 사찰음식이 소개되는 등 외국인의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찰음식은 템플스테이 중요 프로그램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또한, 2023년도 템플스테이 페이스북(영문) 방문자가 전년 대비 205% 증가할 때 사찰음식 페이스북(영문) 방문자는 전년 대비 622%가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2023년도에는 관련 예산이 24.2% 축소되었는바[192] 향후 사찰음식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의 사업집행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2023년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방문 선택시 고려사항]



구분	식도락 관광	쇼핑	자연경관 감상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K-POP/ 한류스타 관련 장소 방문	전통문화 체험	오락	뷰티/미용 관광	박물관, 전시관 관람	유흥
2023년	59.8	57.9	36.4	27.5	16.0	14.9	11.4	10.8	10.3	7.9
2022년	68.0	51.5	38.0	35.5	12.9	-	13.0	3.3	-	-
2019년	61.3	66.2	36.3	23.6	12.7	-	6.3	4.4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외래관광객조사

둘째, 홍보 사업의 경우 매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20억 6,300만원을 계획하였는 바 전체 운영지원 사업 예산의 17.19%에 해당하는 비중임.

192) 예산액 13억 8,600만원, 집행액 13억 8,118만원임.

그런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비중이 전체 홍보사업 집행액 18억 7,900만원 중 1억 9,148만원으로 10.19%인데 비해, 언론홍보, 방송, 신문광고, 계간지, 사진콘텐츠, 웹툰 등 종이매체와 방송을 통한 홍보 집행액은 8억 1,095만원으로 전체 홍보사업 집행액 대비 43.16%로 나타나고 있음. 템플스테이 페이스북 방문자는 국문의 경우 136% 영문의 경우 205% 증가하고, 유튜브 구독자는 17,687명으로 전년 11,316명 대비 72% 상승이라는 홍보효과를 감안하면,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와 기존 방송, 신문, 홍보지 등 레거시미디어를 통한 홍보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양자의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3년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홍보사업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명	집행액	사업내용 및 주요실적
국내언론홍보	14,694,570	국내 언론매체 보도자료 작성 45건, 전체보도건수 3,873건
해외언론홍보	34,870,000원	국외 언론매체(일간지, 전문지, 방송 등) 기획보도, 보도횟수 2,831건, 조회수 58,413건
언론홍보 팸투어	4,605,400	크리에이터 팸투어 14명, 기자 팸투어 6명
온라인 홍보	109,000,000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총 8개 채널 운영, 537개 온라인 콘텐츠 발행
유튜브채널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	82,480,800	52개 유튜브 콘텐츠 발행 구독자 17,687명으로 전년 11,316명 대비 72% 증가
방송제작 지원	139,127,180	템플다큐 청춘만다라(시청률 1.2%), 4인용 식탁(시청률 2.1%)
광고제작	142,900,000	광고이미지 4종 제작, 6개 매체 광고 진행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BBS, BTN, 월간불광, 경향신문)
템플스테이 계간지	344,271,000	국문 4천부, 영문 3천부
홍보물 제작	74,369,820	탬풀스테이 지도리플릿, 소식지 등

사업명	집행액	사업내용 및 주요실적
사진콘텐츠 제작 및 관리	56,197,270	사진콘텐츠 7,811장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홍보부스 운영	3,279,100	5.21.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홍보부스 방문인원 2,540명
해외홍보행사	260,560,106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교류 홍보행사
홍보콘텐츠(영상) 제작	0	적정 업체가 없어 미추진
웹툰 제작	111,960,000	걸어서 템플 속으로 시즌 2 웹툰 4편 제작, 조회수 89.2만회
불교 문화콘텐츠 공모전	35,000,000	공모작품 140건, 최우수상 '온고지신' 등 16개 수상작 선정
문화상품 개발	379,083,300	신규 문화상품 5품목 11종류, 지속 문화상품 13품목 26종류 제작 등
템플스테이 홍보관 운영	80,704,860	홍보관 내방객 37,158명 (내국인 27,079명, 외국인 10,079명)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5,872,700	회의 개최(8회)를 통한 사업단 사업 방향과 홍보전략 논의
계	1,873,103,406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작성

셋째, 2023년도의 경우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150개소 중 운영중지 된 사찰 등을 제외한 129개소에 대해 운영경비를 지원하였음. 운영경비는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서 제정한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근거로 지정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대해 지원 중임.

그런데, 지원한 129개소 운영사찰별 템플스테이 연간 참가자 수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 참가자 수가 연간 1,000명에 미달하는 사찰이 8개소로, 이 중 1개소는 참가자 수 유치 의무인원인 500명[193]에도 미달하였지만, 해당 8개 사찰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액은 640만원에서 2,720만원까지로 차이가 상당한 바, 이는 템플스테이 운영실적과 무관하게 지원하였기 때문으로 보임.[194]

193)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제7조(운영사찰의 의무) 운영사찰로 지정된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운영사찰은 연간 5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유치하여야 한다. 단 예비운영사찰은 예외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 사찰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은 대부분 지도법사와 실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국고지원액(최대 2,320,000원～최소 1,100,000원)과 자부담액(최대 700,000원～최소 390,000원, 자부담률 20～39%)이 결정되고,[195] 각 사찰의 배정액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운영사찰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함.[196]

지원액은 템플스테이 참가사찰 규모나 프로그램의 품격·차별성 등에 따라 참가인원은 적더라도 많이 받는 차이가 생길 수 있음. 그러나, 한국불교문화의 세계화·대중화라는 사업목적을 감안하면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 등은 고려하지 않고 근속기간 등만으로 국고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목적이나 방향과 부합하기 어렵고, 템플스테이 참가자 유치활동에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194) 개암사 620명(지원액 18,520,000원), 도갑사 917명(지원액 25,300,000원), 안국사 770명(14,650,000원), 용문사(예천) 924명(22,500,000원), 용연사 792명(8,700,000원), 운주사 708명(27,200,000원), 정혜사 611명(6,400,000원), 화암사 466명(14,000,000원)

195)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인건비 지원기준

(단위: 원)

구분		근속기간		최저기준액	국고 비율	국고 지원액	자부담비율	자부담액
전담	1급	20년 이상		2,900,000	80%	2,320,000	20%	580,000
	2급	15년~20년		2,700,000	80%	2,160,000	20%	540,000
	3급	11년~15년		2,500,000	80%	2,000,000	20%	500,000
	4급	9년~11년		2,200,000	80%	1,760,000	20%	440,000
	5급	7년~9년		2,000,000	80%	1,600,000	20%	400,000
	6급	5년~7년		1,830,000	79%	1,440,000	21%	390,000
	7급	3년~5년	지도법사	1,700,000	76%	1,300,000	24%	400,000
			실무자	1,820,000	71%	1,300,000	29%	520,000
	8급	1년~3년	지도법사	1,650,000	74%	1,220,000	26%	430,000
			실무자	1,810,000	66%	1,200,000	34%	610,000
	9급	1년 미만	지도법사	1,600,000	69%	1,100,000	31%	500,000
			실무자	1,800,000	61%	1,100,000	39%	700,000
겸임		지도법사·실무자		근로기준법 준수		700,000		

196)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령**」 제15조(경상보조금 배정 및 집행) ① 문화사업단은 운영사찰 평가결과를 근거로 경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상보조금은 템플스테이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한해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문화사업단장은 경상보조금의 배정절차에 따라 각 사찰의 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운영경비에 통합된 인건비 지원액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가사찰의 시설 대비 참가자 수 증감과 유치 활동성과 등을 반영하여 사찰별 자부담률의 조정 방안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성과를 한 단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2차 보조사업자)에 사업비를 일괄 교부하는 사업 방식임에 따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개별 사찰 평가, 운영경비 및 시설비 지원 대상 선정과 규모 결정을 전담하고 있음. 이는 개별 사찰의 운영 및 성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면, 사찰별 템플스테이 참가비 수익 등과 사용용도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사업성과를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197]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찰음식 등 외국인이 선호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 뉴미디어 활용 홍보 확대를 통한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 확대 등 전통문화체험 확대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성과 및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을 지속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등 ‘개별 운영사찰의 사업’에 대한 조화로운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97)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2023년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개별 템플스테이 사업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4) 관광산업 융자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4267-300)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관광산업 융자지원’은 관광사업체에 융자를 지원하여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의 경우 계획현액 4,522억 800만원 중 4,487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24억 6,300만원 불용 등 34억 7,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관광산업 융자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관광산업 융자지원	449,100	449,100	3,108	-	-	452,208	448,730 [448,730]	-	3,478	541,733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446,500	446,500	-	-	-	446,500	446,336 [446,336]	-	164	536,500
▪ 융자금 이자감면 지원	-	-	3,108	-	-	3,108	2,335 [2,335]	-	773	-
▪ 이차보전 운영지원	2,500	2,500	-	-	-	2,500	37 [37]	-	2,463	5,133
▪ 운영비	100	100	-	-	-	100	22 [22]	-	78	1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차보전 운영지원 사업 신청 저조의 원인 파악 및 수요 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198]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음.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전대융자 방식[199]과 이차보전 방식[200]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이차보전 방식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2023년부터 도입되었음.

구체적으로는 기존 융자예산 중 일부인 1,000억원을 직접 지원방식이 아니라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25억원만을 지원함으로써, 기금 지출규모는 줄이면서도(1,000억원→25억원) 총 융자 규모는 그대로 유지(1,000억원)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된 정책이었음.

그런데, 2023년도 동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기존의 전대융자 방식의 경우 계획액 4,465억원 중 4,463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거의 100.0%인데 비하여, 이차보전의 경우 계획액 25억원 중 3,70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은 1.48%에 그치고 있음.

---

19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199) 정부가 은행에 자금을 융·투자하고 금융기관이 다시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하는 방식임.

200) 지원대상자가 은행으로부터 대부를 받고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정부에서 이차보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대상자가 납부하는 이자에 지원하는 방식임.

최근 3년간(2022~2024. 5월말 기준) 융자 신청 및 지원 현황을 보면, 전대융자는 2023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관광사업체 시설확충 수요 확대 등으로 2022년 대비 시설자금 융자신청 업체 수가 크게 증가(307→395개소)하여 10월에 융자신청이 마감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융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음(4,465억원→5,365억원)에도 5월말 기준 융자신청 업체 수는 801개소, 지원 업체 수는 647개소로 집행률이 52.5%로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수준임.

[최근 3년간 관광사업체 융자(전대융자) 신청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 억원, %)

연도	구분	계획액 (A)	신청		융자지원		지원률 (b/a)	집행률 (b/A)
			업체 수	금액(a)	업체 수	금액(b)		
2022	시설자금	1,940	307	4,532	269	2,721	60.0	140.2
	운영자금	3,134	1,243	2,310	1,192	2,005	86.8	64.0
	합계	5,254	1,550	6,842	1,461	4,726	69.1	90.0
2023	시설자금	1,920	395	4,961	320	2,432	49.0	126.7
	운영자금	2,545	857	2,512	797	2,031	80.9	79.8
	합계	4,465	1,252	7,473	1,117	4,463	59.7	100.0
2024 (5월말)	시설자금	2,680	222	2,952	184	1,551	52.5	57.9
	운영자금	2,685	579	1,853	463	1,267	68.4	47.2
	합계	5,365	801	4,805	647	2,818	58.6	52.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반면, 이차보전 지원의 경우, 2023년 융자신청 업체 수가 31개소, 대출실행 업체 수가 23개소로, 대출액 기준 당초 지원계획규모인 1,00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153억원 지원에 그쳤음.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청 및 대출실행 현황]

(단위 : 개, 억원, %)

연도	구분	예산	신규 지원규모	신청		대출실행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2023	시설자금	25	1,000	8	64	6	30
	운영자금			23	173	17	123
	합계			31	237	23	153
2024 (5월말)	시설자금	50	1,000	3	220	2	180
	운영자금			6	121	4	89
	합계			9	341	6	26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2023년에 처음 추진된 사업으로서 은행과의 업무협약, 이차보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소요되어 신청접수가 하반기(7.1)부터 시작되었고, 처음 도입된 융자방식으로 인지도가 낮고 취급은행도 부족하여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하였는바, 동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취급은행을 확대[201]함으로써 관광사업체의 신청을 장려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4년 5월말 기준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신청 건수는 9건으로, 전대융자 방식의 융자신청 건수 801건에 비해 적고, 대출실행 금액도 269억원으로 연말까지 신규지원 목표규모인 1,000억원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차보전 방식 융자신청 수요의 저조원인은 인지도 및 취급은행 부족의 사유보다는 이차보전이 기존 전대융자보다 대출실행에 있어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광사업체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임.

201) 2023년 10월 기존 3개 은행에서 12개 은행으로 취급은행이 확대되었음.

즉, 금리 부분에서 기존 전대융자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에 따른 것으로서 2024년 2분기 기준 3.73%이지만, 이차보전 금리는 각 은행이 개별 관광사업체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대출금리에서 2.5%(중소기업의 경우 3.0%)를 인하하는 것으로, 각 사업체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우량 관광사업체를 제외하고는 기존 전대융자 방식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대출기간에 있어 기존 전대융자 방식은 시설자금 최대 13년(거치기간 최대 5년, 최대 8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5년(거치기간 2년, 3년 분할상환)이나, 이차보전 방식은 시설자금 5년(거치기간 2년, 3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거치기간 없음, 만기일시상환)으로 상대적으로 단기임.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방식 비교]

구분	전대융자	이차보전
자금조달 주체	정부	민간금융기관
취급 은행의 수익	1% (대하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시중금리 (이차보전액+융자받은 사업자 이자납부액)
융자금리	기재부에서 분기별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 '24.2분기: 3.73%(중소기업 △0.75 ~ △1.25%P 우대)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적용금리 =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다만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5% 이내) *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3%, 중견·대기업 2.5%
융자기간	▪ 운영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7년(거치기간 3년 포함 ~13년(거치기간 5년 포함)	▪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 시설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신청한도	▪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150억원 이내 * 중견·대기업은 75억원 이내	▪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150억원 이내

구분	전대융자	이차보전
정산업무	대출은행은 융자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이자금액에서 기산원금의 1% 차감 후 문화체육관광부로 납부	대출은행은 차감된 이차보전금을 4월, 7월, 10월, 12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정산금액을 지급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전대융자 방식에 비해 이차보전 방식에 대한 관광사업체의 선호가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하는 등 융자사업을 점검·개선하고, 이차보전 방식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금리,[202] 대출기간 등에서의 전대융자 방식과 균형을 맞추는 조치 등 수요 진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02)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7. 1. 시행된 출국납부금 인하 조치(10,000원→7,000원)에 따른 기금 수입감소에 대해 융자사업 방식을 전대융자에서 이차보전 지원으로 일부 전환하여 기금 지출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 필요>

2023년도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전대융자) 사업으로 지원한 업종은 31개 업종이며, 총 지원 업체 수는 1,119개소인데 건설 250개소, 개보수 69개소, 운영지원 800개소로 구분됨.

지원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지원액 4,463억 3,600만원 중 건설자금은 1,793억 1,600만원(40.18%), 개보수자금 639억 1,700만원(14.32%), 운영지원자금 2,031억 300백만원(45.5%)의 비중임.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전대융자) 사업 업종별 지원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건설		개보수		운영지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가족호텔업	3	3,350	1	406	6	2,209
관광궤도업			1	149	2	2,000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					1	50
관광순환버스업					1	20
관광식당업	8	9,075	2	4,120	131	44,394
관광지원서비스업					15	2,260
관광특구내 신고숙박시설			3	2,580		
관광펜션업	91	36,510	3	929	50	3,805
관광호텔업	30	56,022	34	40,766	81	51,616
국내여행업					47	6,456
국내외여행업					37	6,403
국외여행업					70	2,565
국제회의기획업					16	4,873
기타유원시설업					28	4,970
미리나선박계류 보관업	1	98				

구분	건설		개보수		운영지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사후면세점					2	500
소형호텔업	3	3,230	1	634	7	1,383
수상・수중레저사업					1	1,000
숙박업(한국관광품질인증업소)	1	175	1	200	11	4,446
야영장업	49	22,859	7	3,064	56	5,34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3	575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	3,000
외국인환자 유치업					1	30
일반여행업					53	2,540
일반유원시설업	1	1,100			5	4,100
전문휴양업	2	3,170			2	454
종합여행업					77	37,135
종합휴양업			1	1,500	1	725
한옥체험업	2	449			47	1,960
호스텔업	59	43,278	13	8,240	37	7,471
휴양콘도미니엄업			2	1,329	1	820
합계	250	179,316	69	63,917	800	203,10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동 사업 성과지표는 관광호텔 객실증가에 대한 기금기여도, 개보수 관광호텔의 매출액 증가율 등 관광호텔업 대상이고,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객실증가와 개보수는 시설자금에만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전체 지원규모 중 45.5%인 운영지원자금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전혀 없는 상황임.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전대융자) 사업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관광호텔 객실증가에 대한 기금기여도(%)	목표	36.4	37.0	34.0	최근 3개년('19~'21) 실적 평균치	관광기금 지원 관광호텔 증가 객실 수 / 전국 관광호텔 증가 객실 수×100	시도별 관광호텔 등록현황 중 기금 지원 호텔 비중
	실적	33.1	-*	-			
	달성도	90.9	-	-			
개보수 관광호텔의 매출액 증가율(%)	목표	7.1	7.1	9.2	최근 3개년('19~'21) 실적 평균치	(객실 개보수 후 매출액-객실 개보수 전 매출액) / 객실 개보수 전 매출액×100	관광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실적	13.5	14.8	-			
	달성도	190.1	208.5	-			

* '23년도 관광호텔 객실증가에 대한 기금기여도 집계 중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숙박시설에 대해 융자지원을 집중할 때 설정된 지표를 현재까지 사용해왔던 것으로, 최근 융자지원 대상 업종이 다양화됨에 따라 수혜업체 전체 대상 성과지표로의 변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체육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사업의 경우 융자수혜업체의 매출액 증가율[203]이 성과지표임.

203)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사업코드: 5300-5365-300)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융자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 (단위 : %)	목표	6.1	10.1	-	과거 실적치 반영하여 조정	{(∑금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X100	스포츠산업융자 수혜업체 대상 실태조사
	실적	21.0	27.7	-			
	달성도	244	269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융자사업 수혜업체 전체를 포괄하는 성과지표로 개선하고, 건설·개보수 외에 운영자금 융자를 통한 관광사업체의 경영상태 개선이나 실적 증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는 등 관광산업 융자지원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4. 관광산업정책관

(1) 광역관광자원개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53-308, 309, 315)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단위사업 광역관광자원개발은 지역지원계정[204] 사업으로 장소성과 테마를 창조하는 관광 목적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역관광개발사업임.

2023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659억 8,800만원 중 530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1억 3,600만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0억 900만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50억 2,600만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55억원,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1,400만원 불용 등 총 127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광역관광자원개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본예산	추경								
광역관광자원개발	65,988	65,988	-	-	-	65,988	53,059	381	12,548	75,764

204) 「관광진흥법」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1,307	21,307	-	-	-	21,307	19,053	245	2,009	19,653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34,031	34,031	-	-	-	34,031	29,006	-	5,025	23,183
□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5,500	5,500	-	-	-	5,500	-	-	5,500	27,778
□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5,150	5,150	-	-	-	5,150	5,000	136	14	5,15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광역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광역관광자원개발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낙후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2023년도의 경우 권역별 사업인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4153-308),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4153-309), 남부권 광역관광개발(4153-315)과,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415-316)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음.

권역별 사업은 통상 5~10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시행하는데, 2023년도의 경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은 7년차 사업이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은 5년차 사업이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되는 본사업에 앞선 선도사업으로 각각 추진되었음.

[광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시행주체	사업내용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017~2026년 (10년간)	6,167억원 (국비 2,626억원, 지방비 3,456억원, 민자 85억원)	세종, 충남(8개 시·군), 전북(10개 시·군)	40개 사업 (29개 관광자원개발사업, 11개 관광진흥사업)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019~2028년 (10년간)	7,947억원 (국비 3,547억원, 지방비 4,400억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	47개 사업 (34개 관광자원개발사업, 13개 관광진흥사업)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023~2033년* (11년간)	3조 64억원 (국비 1조 3,265억원, 지방비 1조 4,023억원, 민자 2,776억원)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5개 시도 40개 시군)	142개 사업 (109개 관광자원개발사업, 33개 관광진흥사업)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선도사업 예산 반영으로, 선도사업과 본사업 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기간이 11년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작성

그런데, 2023년도 기준 사업 7년차인 서부내륙권 사업의 공정률은 46.4%, 사업 5년차인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의 공정률은 20.6%임. 각 사업의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을 보면, 서부내륙권 사업은 2021년도 48.4%, 2022년도 25.5%, 2023년도 6.0%,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은 2021년도 2.4%, 2022년도 8.2%, 2023년도 13.1%로 나타나고 있음. 서부내륙권 사업은 사업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실집행률은 2021년도보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은 실집행률이 연간 8% 수준인 바, 연례적인 사업 지연은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연례적 예산 이월 또는 불용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음.

[최근 3년간(2021～2023)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자체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1	세종특별자치시	1,600	1,600	2,360	2,360	935	3,295		2,360	337	2,958	-	21.1
	충청남도	19,581	19,581	10,801	10,801	10,246	21,047		10,801	7,544	10,990	2,513	38.5
	전라북도	19,963	19,963	19,363	19,363	10,928	30,291		19,363	12,048	15,738	2,505	60.1
	합계	41,144	41,144	32,524	32,524	22,109	54,633		32,524	19,929	29,686	5,018	48.4
2022	세종특별자치시	-	-	-	-	2,671	2,671	2,099	-	-	572	-	-
	충청남도	14,901	14,901	13,401	13,401	8,348	21,749	10,076	13,401	3,255	11,673	-	21.8
	전라북도	12,732	12,732	12,332	12,332	10,789	23,121	10,720	12,332	3,777	12,401	-	29.7
	합계	27,633	27,633	25,733	25,733	21,808	47,541	22,895	25,733	7,032	24,646	-	25.5
2023	세종특별자치시	-	-	-	-	859	859	572	-	-	287	-	-
	충청남도	11,850	11,850	9,850	9850	14,581	24,431	11,362	9,850	868	13,069	-	7.3
	전라북도	8,957	8,957	8,957	8957	17,742	26,699	5,757	8,957	379	20,942	-	4.2
	합계	20,807	20,807	18,807	18,807	33,182	51,989	17,691	18,807	1,247	34,298	-	6.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3년간(2021～2023)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자체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1	대전 광역시	2,890	2,890	200	200	520	720	378	200	200	342	-	6.9
	세종특별 자치시	200	200	200	200	-	200	65	200	65	135	-	32.5
	충청북도	8,403	8,403	9,553	9,553	446	9,999	1,045	9,553	108	8,954	-	1.3
	충청남도	12,685	12,685	10,165	10,165	3,855	14,020	1,537	10,165	208	12,483	-	1.6
	합계	24,178	24,178	20,118	20,118	4,821	24,939	3,025	20,118	581	21,914	-	2.4
2022	대전 광역시	2,500	2,500	800	800	527	1,327	506	800	379	821	-	15.2
	세종특별 자치시	500	500	500	500	133	633	10	500	-	623	-	-
	충청북도	8,585	8,585	7,585	7,585	9,138	16,723	3,275	7,585	1,300	12,919	529	15.1
	충청남도	8,842	8,842	7,542	7,542	13,351	20,893	5,367	7,542	1	15,525	1	0.01
	합계	20,427	20,427	16,427	16,427	23,149	39,576	9,158	16,427	1,680	29,888	530	8.2
2023	대전 광역시	5,545	5,545	5,545	5,545	636	6,181	1,731	5,545	914	4,450	-	15.5
	세종특별 자치시	936	936	936	936	625	1,561	96	936	-	1,465	-	-
	충청북도	13,255	13,255	10,030	10,030	13,264	23,294	8,207	10,030	899	15,087	-	6.8
	충청남도	14,295	14,295	12,495	12,495	14,658	27,153	11,781	12,495	2,633	15,372	-	18.4
	합계	34,031	34,031	29,006	29,006	29,183	58,189	21,815	29,006	4,446	36,374	-	13.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별로 교부된 보조금의 이월과 불용이 매년 발생하는 원인은 ①자본보조사업의 경우 공사 착공 전 부지확보, 투자심사 이행, 사업계획 변경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지연, ②지방비 매칭 사업으로서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분석할 수 있음.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주요 실집행 부진 사업지]

(단위: 천원)

편성연도	사업명	예산액(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실 집행률(B/A)	이월·불용 사유
							예산 현액	실 집행액(B)				
2021	산노리 자연 문화 예술촌	300,000	300,000	60,000	360,000	280,000	300,000	220,000	80,000	-	78	설계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21.3~'23.12)
2022		1,200,000	1,200,000	80,000	1,280,000	28,000	1,200,000	-	1,252,000	-	2.2	물가상승으로 인한 입찰 취소('23.10) 및 투자심사 재심사 추진(~'24.6)
2023		2,461,000	2,461,000	1,252,000	3,711,000	62,000	2,461,000	-	3,651,000	-	1.7	
2021	덕산 온천 휴양 마을	1,000,000	-	797,000	797,000	797,000	797,000	797,000	-	-	-	착공 전 사전행정절차 이행 (사업계획변경)
2022		1,500,000	-	-	-	-	-	-	-	-	-	
2023		2,000,000	-	-	-	-	-	-	-	-	-	
2021	호국 문화 체험 단지	250,000	2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	착공 전 사전행정절차 이행 (타 부처 협의)
2022		900,000	900,000	250,000	1,150,000	143,000	900,000	-	1,007,000	-	-	
2023		1,593,000	1,593,000	1,007,000	2,600,000	11,000	1,593,000	-	2,493,000	96,000	-	
2021	무주 생태 모험 공원	1,900,000	1,900,000	407,216	2,307,216	747,066	1,900,000	385,688	1,560,150	-	20.3	사업 위치변경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23.12 착공)
2022		2,335,000	2,335,000	1,560,150	3,895,150	1,292,089	2,335,000	34,818	2,603,061	-	1.5	
2023		1,193,000	1,193,000	2,603,061	3,796,061	579,976	1,193,000	-	3,216,085	-	-	
2021	완산 칠봉 한빛 마루	600,000	600,000	-	600,000	324,000	600,000	324,000	276,000	-	54.0	설계용역 준공기한 ('21.11~'23.12) 미도래
2022		2,600,00	2,600,000	276,000	2,876,000	276,000	2,600,000	-	2,600,000	-	-	착공 전 사전행정절차 이행 ('23.11 착공)
2023		3,000,00	3,000,000	2,600,000	5,600,000	331,000	3,000,000	-	5,276,000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주요 실집행 부진 사업지]

(단위: 백만원)

편성연도	사업명	예산액(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실 집행률(B/A)	이월·불용 사유
							예산 현액	실 집행액(B)				
2021	효문화 뿌리 마을 (대전)	1,390	-	520	520	178	-	-	342	-	-	실시설계 계약시기 지연 ('21.12~'22. 4.)
2022		1,700	-	342	342	-	-	-	342	-	-	부지확보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 준공 지연
2023		3,245	3,245	342	3,587	88	3,245	-	3,499	-	-	설계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21.12~'24. 9.)
2021	입신 양명 과거길 (제천)	940	940	182	1,122	-	940	-	1,122	-	-	설계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20. 9~'22. 3)
2022		470	470	1,122	1,592	189	470	-	1,403	-	-	설계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20. 9~'23. 6.)
2023		1,478	1,478	1,403	2,881	1,370	1,478	-	1,511	-	-	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2022	화양동 선비 문화 체험 단지 (괴산)	1,000	-	500	500	-	-	-	500	-	-	공정부진 (타부처 사업과 중복 여부 검토)
2023		850	-	500	500	-	-	-	-	500	-	사업취소 (타부처 사업과 중복)
2021	담헌 천문 달빛 마당 (천안)	609	609	171	780	7	609	-	773	-	-	설계용역 발주 준비중
2022		600	600	773	1,373	85	600	-	1,288	-	-	설계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22. 1.~'23.11.)
2023		732	732	1,288	2,020	235	732	-	1,785	-	-	공사착공 지연 ('23.12.~'24.12.)
2021	토정 비결 체험관 (보령)	1,300	760	461	1,221	-	760	-	1,221	-	-	설계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20. 1~'22.12.)
2022		1,000	1,000	1,221	2,221	1,161	1,000	1	1,060	-	0.001	설계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20. 1.~'23. 9.)

편성 연도	사업명	예산액 (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실 집행률 (B/A)	이월·불용 사유
							예산 현액	실 집행액(B)				
2023		500	500	1,060	1,560	254	500	-	1,306	-	-	공사대금 지급기한 미도래 ('23. 9.~'25. 5.)
2021	선비 충의 문화관 (청양)	1,300	1,300	-	1,300	22	1,300	-	1,278	-	-	실시설계 계약시기 지연 ('21.12.~'22. 7.)
2022		500	500	1,278	1,778	312	500	-	1,466	-	-	설계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21.12.~'23. 9.)
2023		1,000	1,000	1,466	2,466	1,145	1,000	-	1,321	-	-	공사착공 지연 ('23.12.~'25.12.)
2021	사신들 의바다 순례길 (태안)	2,000	400	1,100	1,500	423	400	-	1,077	-	-	실시설계 계약시기 지연 ('21. 9.~'22. 7.)
2022		1,500	1,500	1,077	2,577	115	1,500	-	2,462	-	-	설계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21. 9.~'22.12.)
2023		500	500	2,462	2,962	1,430	500	-	1,532	-	-	공사대금 지급기한 미도래 ('23. 3.~'25.12.)
2022	대동 누리 청년 군자 마당 (논산)	900	900	-	900	-	900	-	900	-	-	실시설계 계약시기 지연 ('22.10.~'24. 5.)
2023	대동 누리 청년 군자 마당 (논산)	1,300	-	900	900	389	-	-	511	-	-	설계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22.10.~'24. 5.)
2023	의병 창의 마을 (제천)	1,540	-	-	-	-	-	-	-	-	-	부지 미확보 (부지변경 검토중)
2023	입신 양명 과거길 (영동)	300	-	-	-	-	-	-	-	-	-	부지 미확보 (부지변경 검토중)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연례적 이월과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부지 확보, 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 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0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도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 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음.[206]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과 인허가지연,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 등 공정부진에 따라 사업지별 이월 및 불용 건이 다수 발생하고는 있지만, 다음 연도까지 해당 지연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함. 또한, 문화재 현상변경 등으로 장기간 공정이 부진하거나 법률 위반 등에 따른 부정집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거나 감액 편성 또는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5)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09.
- ○ 부지확보, 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
- ○ 전년도 집행실적, 지자체 내 전년도 이월액, 사업 추진단계,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
  -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은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도 조사·설계 및 보상·공사 등의 주요단계를 나누어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소요만 편성

20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월 및 불용 등에 대한 사업지연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음. 예를 들면, 서부내륙권 사업 중 덕산온천휴양마을은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2022년부터 연내 사업비의 교부가 전혀 없는 데도 2024년까지 매년 예산을 편성하였고, 충청유교문화권 사업 중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는 공정부진으로 2022년 사업비를 교부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하였는데도 2023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음.

또한, 충청유교문화권 사업 중 효문화뿌리마을 및 토정비결체험관은 지방비 미확보에 따라 2021년 사업비를 불용하였음에도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차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속 점검하고 사업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지자체별 재정상태나 사업 이행능력에 대해 점검한 후 다음연도 예산반영 규모를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의 연례적 이월·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광역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업주기 및 사업권역 지정 기준 마련 필요 >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사업 중 '남부권'을 제외한 '서부내륙권'과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과 사업대상 지역이 유사함.

사업기간의 경우 서부내륙권 사업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기간을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으로 하고 있고,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기간을 2019년부터 2028년까지로 하고 있어,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과 사업시작 시점 간 차이가 1~2년 정도에 불과함.[207]

사업대상지역의 경우 서부내륙권 사업은 세종·충남·전북,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은 대전·세종·충북·충남으로, 사업대상지역에 세종과 충남이 일부 중복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지역의 수요 발생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개발계획의 수립 주기나 사업대상권역의 선정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함.

207) 남부권 사업의 경우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진행하여, 광역관광개발계획을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수립하고, 2023년부터 2033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절차]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사업기간이 10년으로 장기간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서부내륙권, 충청유교문화권, 남부권) 기준으로 6천억원에서 3조원 정도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할 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1~2년 사이에 중복 추진하는 것은 대상지역과 관광자원의 잠재력 평가, 사업관리상 어려움 등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사업대상지역이 중복되거나 콘텐츠가 유사할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동 사업의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가 지역 간 발전격차 해소, 지역 고유 정신문화 발굴이라는 점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208]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을 결정함에 있어 정책적 필요성 외에도 적정한 사업수립 주기 설정, 사업권역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효율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특별회계의 지원 취지에도 보다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임.

20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국회증액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전액 불용 문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은 남부권의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관광개발을 통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제6차(2021.11.12.)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보고 후 새 국정과제로 반영(2022.5.2.)되어 추진이 결정되었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1년이며, 총사업비는 3조 6,400억원(국비 1조 3,265억원, 지방비 1조 4,023억원, 민자 2,776억원)임.

사업대상지역은 남부권의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5개 시도 총 40개 시군이며, 남부권의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경관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체험형 여행 명소 조성을 목표로, 총 142개의 세부내역사업(광역관광개발사업 109개, 관광진흥사업 33개)을 추진할 계획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개요]

○ (개발목표) 남부권에 '하루 더 머무는 여행목적지' 발굴

○ (추진경과) 기본구상 연구('20.5.~'21.10.),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반영('22.12.), 신성장 4.0전략 반영('22.12.), 개발계획 수립('22.3.~'23.7)

○ (사업기간) 2023~2033년 *선도사업('23~), 본사업 ('24~)

○ (사업대상)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5개 시·도 40개 시·군)

○ (총사업비) 3조 64억원(국비 1조 3,265억원, 지방비 1조 4,023억원, 민자 2,775억원)

○ (지원조건/시행주체) 지자체 자본보조·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남부권의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경관 자원 활용 체류형·체험형 여행명소 조성,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관광기반 확대

- 5대 매력특화 프로젝트*, 소권역별 12개 전략, 남부권 이움·채움·키움 프로젝트 추진

* 관광만 구축, 관광경관명소 연출, 관광스테이 확충, 관광플로팅 조성, 관광정원 전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권역별 전략>

▲(남서권) 남도문화 예술지대 구축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형성

▲(남동권) 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 조성

소권역	소권역별 전략				거점·핵심
남서권	1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3	다채로운 신(Scene) 관광갤러리 조성	√거점 : 광주, 목포
	2	스토리가 있는 관광루트 세계화	4	남도다움 리브랜딩 관광진흥	√핵심 : 신안, 담양, 해남, 강진
남중권	5	한국판 웰니스관광 활성화	7	스토리텔링 접목 로컬투어 확대	√거점 : 순천, 여수, 진주
	6	산촌산림관광 매력자원 확충	8	남중권 관광 신활력 증진	√핵심 : 남해, 합천
남동권	9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 도약	11	자연사람 공존 관광벨트 구축	√거점 : 부산, 울산, 창원, 통영
	10	문화 콘텐츠 접목 관광스토리 구현	12	글로벌 메가관광권 형성	√핵심 : 고성, 거제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당초 개발계획의 수립(2022.3.~2023.7)이 끝난 후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선도사업[209] 예산 55억원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9) 땅끝 수상복합공연장 조성(해남) 9억원,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신안) 17억원,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광양) 11억 7,500만원,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곡성) 8억원, 그린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구례) 9억 2,500만원

2033년까지 11년간으로 확대되었음. 이는 동 사업이 국정과제로서 3조 6,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간의 대규모 프로젝트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개발과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판단에 따른 조치였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비 미확보를 사유로 2023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선도사업비 55억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의 경우, 지자체별로 사업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사업실행을 독려하여 최소한의 사업이라도 시작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210]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불용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더욱 충실히 검토하고, 2023년 선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반영한 취지를 고려하여 지자체별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을 독려함으로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10)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2)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53-316)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은 섬 관광자원과 콘텐츠 개발, 관광편의·서비스 기반 강화, 주민역량 강화 교육, 브랜드 가치 구축 및 홍보 등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

2023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 51억 5,000만원 중 50억원을 집행하고, 컨설팅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1억 3,600만원을 이월하고, 낙찰차액 1,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본예산	추경								
□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5,150	5,150	-		-	5,150	5,000	136	14	5,15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점검 및 섬 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방안 마련 필요>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은 세계인이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 관광과 K-컬처 융합을 통한 매력적인 섬으로 특화,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K-관광섬 구축을 목표로 2023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211]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동안 추진하였던 섬 관광 사업으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450억원 규모로 외연도, 청산도, 홍도, 매물도 총 4개 섬을 대상으로 추진한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2010년부터 독도, 백령도, 가거도, 마라도 총 4개 섬을 대상으로 추진한 "국토끝섬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으며,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의 경우 4개 섬 평균 관광객이 평균 52%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음.

[문화체육관광부 추진 섬 관광 사업]

구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국토끝섬 관광자원화
추진연도	2007~2011년	2010, 2013~2018(재추진)
사업대상	4개 도서(외연도, 청산도, 홍도, 매물도)	4개 도서(독도, 백령도, 가거도, 마라도)
목적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추진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및 영유권 강화
주요내용	-하드웨어: 관광시설 정비, 명소화 추진, 환경보전 및 관리 -소프트웨어: 섬 문화진흥, 홍보·마케팅, 안내시스템 정비, 정보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휴먼웨어: 섬 주민의 자발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섬 발전체계를 구축	-기반시설 정비,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 ※ 대상 도서 대부분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화
사업비	456억원(국비 220억원)	약 300억원

* 자료: 김향자(2020) 섬 관광정책 진단 및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11)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기재부) 결과: 85점(적격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국토끝섬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212]한 이후에는 별다른 섬 관광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휴식과 체험 중시 여행으로 트렌드가 변화하여 저밀도·청정지역인 섬에 대한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동 사업을 추진하였음.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고, 총사업비는 506억원(섬 관광 활성화 500억원, 컨설팅 6억원)으로, 5개 섬에 대해 개소당 평균 100억원 지원 예정임.

[섬 관광 활성화 사업 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내용: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객 체류기반 조성, 홍보·마케팅 등
  - 관광 콘텐츠: 관광코스 개발, 탐방로·전망대 조성, 해양레포츠, 먹거리 개선
  - 체류기반: 편의시설 확충, 민박 등 숙박서비스 개선, 캠핑장 확충
  - 홍보·마케팅: 종합정보 제공, 예약 서비스 등
- 사업기간: 2023~2026년(4년간)
- 사업대상: 5개 섬[거문도(전남 여수), 말도·명도·방축도(전북 군산), 백령도(인천 옹진), 울릉도(경북 울릉), 흑산도(전남 신안)
- 지원조건: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총사업비: 506억원
  - 섬 관광 활성화: 5개섬*4년*100억원
  - 통합 컨설팅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직접수행): 4년*1.5억원
- 추진경과
  - '23. 4. 지자체 공모를 통해 5개 섬 선정(14개 섬 신청)
  - '23. 5 컨설팅 용역 발주(문화체육관광부)
  - '23. 7~'24.2. 컨설팅 용역 계약체결 및 완료
  - '23.11. 5개 섬별 '섬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작성

212) 2008.12~2009. 8: 국토끝섬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용역
2009. 9~2011. 3: 섬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동 사업의 추진경과를 보면, 2022년 11월에 사업공모를 하고,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공모에 신청한 14개 섬[213]을 대상으로 서류·현장·발표심사 등을 진행하여 거문도(전남 여수), 말도·명도·방축도(전북 군산), 백령도(인천 옹진), 울릉도(경북 울릉), 흑산도(전남 신안) 등 5개를 선정하였음.[214]

그러나, 대상지 선정 이후 5개 섬별 'K-관광섬 육성사업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2023년 11월에서야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 경상비와 공사비가 대부분 이월되었음.

[섬 관광 활성화 사업 지자체별 실집행 현황]

사업시행주체	구분	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인천광역시 (백령도)	경상	500	500	50	450	-	10.0
	자본	500	500	-	500	-	-
소계		**1,000**	**1,000**	**50**	**950**	**-**	**5.0**
전라북도 (말도·명도·방축도)	경상	500	500	50	450	-	10.0
	자본	500	500	-	500	-	-
소계		**1,000**	**1,000**	**50**	**950**	**-**	**5.0**
전라남도 (거문도, 흑산도)	경상	1,000	1,000	100	900	-	10.0
	자본	1,000	1,000	-	1,000	-	-
소계		**2,000**	**2,000**	**100**	**1,900**	**-**	**5.0**
경상북도 (울릉도)	경상	500	500	50	450	-	10.0
	자본	500	500	-	500	-	-
소계		**1,000**	**1,000**	**50**	**950**	**-**	**5.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13) (인천) 옹진 백령도, (경기) 화성 제부도, (충남) 보령 삽시도, 태안 가의도 (전북) 부안 위도, 고창 죽도,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전남) 여수 거문도, 강진 가우도, 완도 보길도, 신안 흑산도, (경북) 울릉도, (경남) 사천 신수도, 통영 한산도

214) 선정절차: 분야별(관광, 문화·콘텐츠, 섬·해양 등) 전문가로 구성한 섬 관광 위원회가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 및 최종심사를 통해 5개 섬을 확정
평가기준: 섬의 가치 및 잠재력, 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 적절성,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동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당시인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동 사업의 공모 준비, 사업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 추진에 지연이 있을 경우 연내 편성된 보조사업비의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제 사업대상지 선정은 4월, 기본계획 수립은 11월에 있었음.

따라서, 향후 장기간 소요되는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단계별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예산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등 기존의 섬 관광 사업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큰 기반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적인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였는데, 데크 등의 과대한 개발로 인한 섬의 고유성 훼손,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음.[215]

2023년 11월에 수립된 동 사업의 당초 '섬 종합관광계획'을 보면, 친환경 장기체류 모델 등 각 섬의 자연경관 등을 보존하며 활용하는

215)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 5년 사업으로 종료됨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예산 낭비 55.6%, 데크 등 과다한 개발로 섬의 고유성 훼손 50.0%, 행정기관 주도의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음 44.4%, 사업이 섬이 가진 특성을 제대로 반영 못함 41.7% 등 출처: 김향자(2020) 섬 관광정책 진단 및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 50.

관광콘텐츠 개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민 주도의 운영조직·관광인력 양성 및 관광서비스 역량 강화 등의 사항을 담고자 하는 사업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섬 종합관광계획 주요내용]

구분	거문도	밀도·명도·방축도	흑산도
비전	함께 행복한 산다이-거문도	Walk on the sea, 고군산군도 하이트레킹	생태 역사 관광의 섬 '자산어보 흑산도'
목표	①더 재미난 섬(콘텐츠 차별화) ② 더 깨끗한 섬(환경보존) ③ 더 머무는 섬(체재율 증가) ④ 더 가고픈 섬(방문유인/재방문율 제고)⑤ 더 살고픈 섬(인구유입/정주)	①섬 트레킹 명소화 ②일자리 창출(18명) ③관광객 방문(5만명)	①숙박, 서비스 기반 강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②흑산도 대표자원인 자산어보와 파시, 철새를 테마로 신관광 브랜드 구축 ③지역민 관광서비스 역량 강화 등
주요사업	EDM 페스티벌, 해양레저 콘텐츠, 주민일일 클래스, 볼런투어 프로그램, 편의서비스 개선, 친환경 장기체류 모델 등	트레킹 캠핑장 조성, 등대쉼터 조성, 트레킹 경관조성, 트레킹 숙소 리모델링, 트레킹 쉼터, 트레킹 축제, 섬마을 주민학교 등	자산어보 캠프, 해상관광 콘텐츠 특성화, 탐조관광 활성화, 어메니티 제고 및 먹거리 개발, 친환경 모빌리티 및 해상레포츠 기반 조성, 흑산도 브랜드 정립 및 스토리텔링 등
총사업비	110억원 (국비 55, 지방비 55)	115억원 (국비 50, 지방비 65)	10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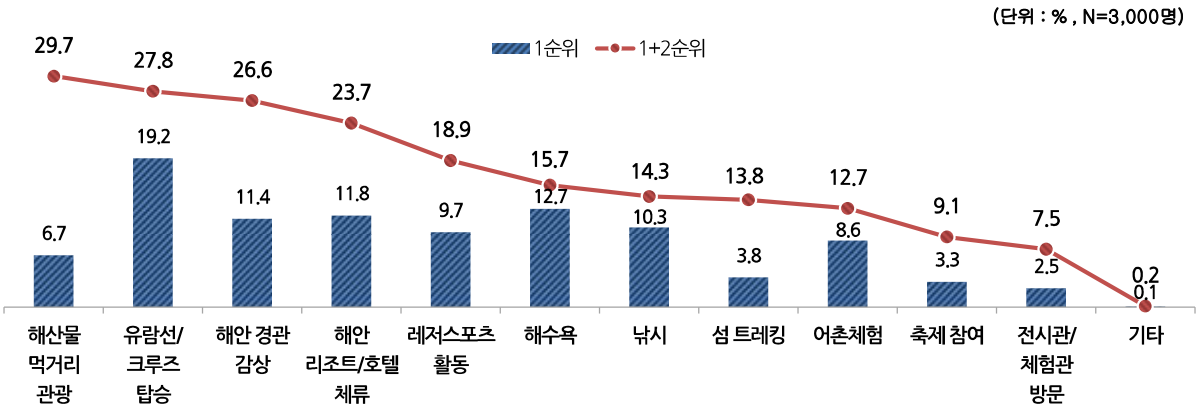
구분	울릉도	백령도
비전	아름다운 자연과 고유문화를 즐기는 섬 ululala	서해 최북단의 별뜨락 "대한민국 평화·생태 섬, 백령도"
목표	지속가능한 생태와 고유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섬 목적지 조성	관광객수 9.3만명→15만명 섬 체류일수 2.2일→2.8일 관광만족도 56점→65점
주요사업	울릉 화산섬 암벽 에코 트레킹, 해담길 도보관광, 태하스테이, 울릉 어드벤처 거점 조성(트레킹/캠핑 편의공간 등), 여름겨울 축제 개최	백령 아트 플랫폼(아트센터, 전시콘텐츠), 관광객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섬 여행패스 상품(백령-대청-소청 연계 관광) 등
총사업비	10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90억원 (국비 45, 지방비 45)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작성

그러나, 개발되는 관광콘텐츠가 트레킹·캠핑(고군산군도 하이트레킹, 자산어보 캠프, 울릉 화산섬 암벽 에코 트레킹 등), 축제(거문도 EDM 페스티벌, 울릉도 여름·겨울 축제 등), 전시콘텐츠·체험프로그램(백령도 아트 플랫폼) 등으로 섬이 아닌 육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보이는바, 섬이 지리적으로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양관광지로서의 섬 관광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2년 해양수산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다 여행 시 선호하는 활동(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 섬 트레킹(13.8%), 축제 참여(9.1%), 전시관·체험관 방문(7.5%) 등이 있었지만, 해산물 먹거리 관광(29.7%), 유람선·크루즈 탑승(27.8%), 해안리조트·호텔 체류(23.7%) 등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해안가에서 희망하는 여가활동]



*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2022년 해양수산 국민인식 조사

특히 각 섬에 체류하는 기간이 통상 1~2일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먹거리와 해안리조트·호텔 콘텐츠 개발 등은 섬 관광지 체류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임.

[섬별 체류일수 확대 목표]

구분	울릉도	백령도	흑산도	거문도	밀도·명도·방축도
2023년(기준)	2.13일	2.2일	1.2일	1.5일	-
2026년(목표)	3.0일	2.8일	2일	2일	3.0일

* 자료: 섬별 종합관광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섬별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울릉도 도동&나리마을 활성화, 흑산도 자산어보 밥상, 딜리셔스 거문도 등),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체류공간 및 프로그램 조성(울릉도 태하스테이, 백령도 레지던스 창작 아카이빙 등)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섬 체류시 불편사항으로 숙박시설·편의시설 부족, 물가수준과 숙박시설의 청결성 미흡, 획일적 음식 등이 꼽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216] 섬 숙박시설 등의 전반적인 수용력 확대와 질적 개선, 관광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개발 등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16) 예를 들면 충남 섬 관련 사업에서 관광객이 느끼는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놀거리, 물가수준 외에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이 있었으며, 충남 섬 관광객 중 젊은 층 인터뷰에서 숙박시설 청결성, 획일적 음식 등이 주로 언급되었음.
자료: 김향자(2020) 섬 관광정책 진단 및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53, 74

또한, 섬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해성, 육지와 떨어져 있는 격절성으로 인해 그동안 배로만 방문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음. 각 섬별 종합관광계획에 따르면, 먼 거리 이동에 따른 접근성 불편이 섬 관광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음.[217]

동 사업 추진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울릉공항(2028년 개항목표), 흑산공항(2027년 개항목표), 백령공항(2027년 개항목표)이 조성되어 항공편으로도 섬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218]

그러나, 거문도, 밀도·명도·방축도[219]의 경우에는 공항 조성 계획이 없고, 공항을 개항하더라도 각 지역 공항과의 연계와 운항편수의 한계 등으로 여전히 섬 방문 주요 교통수단은 배일 것이므로, 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코레일과 민간 선박 및 운수회사 등과 협력하여 선박운행 노선 신설 및 운행횟수를 확대하고, 육지에서 출항지까지의 버스나 철도 등 교통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선박 운항의 횟수 협의 등의 소관 부처는 해양수산부, 코레일 및 철도 운행의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섬별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섬까지의 교통

---

217) 백령도의 경우 백령도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 접근성 불편에 가장 많이 응답(56.2%)하였고, 흑산도의 경우 섬 여행시 교통 접근성 불편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32.7%)하였음.

218) 예를 들면 울릉도를 방문하려면 현재 강릉, 포항, 묵호, 후포 4개 항에서 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서울 기준 각 항구까지의 소요시간은 KTX 기준 최소 2시간(강릉) 이상이고, 각 항구에서 울릉도까지 소요시간도 최소 2시간 40분(묵호) 이상으로 이동에 총 소요되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이지만, 울릉공항이 개항할 경우 이동 시간이 1시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219) 말도·명도·방축도의 경우 3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섬 규모도 작아(말도 0.36㎢, 명도 0.47㎢, 빙축도 2.17㎢) 향후에도 접근수단이 배일 것으로 보임.

수단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끝으로, ‘가고 싶은 K-관광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섬의 자원과 고유성에 대해 인지도를 제고하고,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

거문도의 경우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흑산도의 경우 소셜 미디어(SNS, 유튜브, 틱톡 등)를 활용한 글로벌 홍보·마케팅, 백령도의 경우 섬 브랜딩 홍보마케팅 등 ‘섬 종합관광계획’에 각 섬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이 포함되어 있지만, ‘K-관광섬’ 사업의 전반적인 인지도 제고방안과 통합적 홍보·마케팅 계획은 부족한 측면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섬의 날 행사, 기획기사 배포 등으로 ‘K-관광섬’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를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그 동안 추진되었던 ‘섬 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섬 관광객이 2008년 521만명에서 2018년 551만명으로 큰 변동 없이 정체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220] 각 섬별 사업 컨설팅 외에도 ‘K-관광섬’의 통합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인이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이라는 사업취지에 부합하도록 숙박시설·먹거리·교통여건 개선 등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K-관광섬’ 인지도 제고 및 통합 홍보·마케팅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0) 김향자(2020) 섬 관광정책 진단 및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6.

(3) 국내관광 역량 강화(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09)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국내관광 역량 강화’는 국내관광 총량확대를 위한 전국민 대상 국내관광 캠페인, 지역별 관광소재·상품개발, 계층별·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광지원, 관광취약층에 대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근로자 휴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의 경우 계획현액 918억 9,300만원 중 917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 사업 등 집행잔액 1억 1,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2023회계연도 국내관광 역량 강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국내관광 역량 강화	47,693	91,893	-	44,200	-	91,893	91,779 [82,598]	-	114	53,129
▪ 국내관광 캠페인	11,905	51,110	-	39,205	-	51,110	51,097 [50,259]	-	14	10,424
▪ 관광소재 및 상품 개발	2,395	2,395	-	-	-	2,395	2,295 [2,006]	-	100	1,270
▪ 국민관광지원	29,178	34,173	-	4,995	-	34,173	34,172 [26,287]	-	-	34,770
▪ 관광통계 개선	3,215	3,215	-	-	-	3,215	3,215 [3,215]	-	-	3,215
▪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1,000	1,000	-	-	-	1,000	1,000 [831]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의 정기적인 추진을 위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내역사업 '국내관광 캠페인' 중 '숙박할인권 지원'은 숙박할인을 통해 국민의 국내여행을 독려하고 나아가 지역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된 국내숙박시설[221] 상품의 숙박을 "OTA(Online Travel Agency)" 등을 통해 예약할 경우 3만원의 '숙박할인권'을 제공하는데, 한국관광공사가 보조사업자로서 기획, 운영, 대국민 홍보, 사업성과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음.

2023년에는 상반기(6월), 추석연휴, 하반기(10월말~11월) 세차례 사업을 시행하여 목표사용량 130만장 중 100%가 넘는 총 1,303,965장의 할인권을 소진하였으며, 총 상품결제액은 1,808억원, 평균결제액 136,200원으로 정부지원금(3만원) 대비 소비자 지출효과(숙박경비)는 3.8배에 이르렀음.

또한, 숙박을 포함하여 총 여행경비 약 5,226억원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며, 쿠폰 사용자의 여행 1회당 평균경비는 395,406원으로서 정부지원금(3만원) 대비 약 11배의 여행지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반인원(2.4명)을 포함한 국내관광객 311만명을 유치하여, 156만명의 해외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는 효과 등도 있었음.[222]

---

221) 관광진흥법: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 농어촌민박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등

222) 한국관광공사의 사업효과 분석 연구용역(매 프로모션 종료 직후 숙박쿠폰 사용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시행, 쿠폰 사용 실데이터 활용 2023년도 전체 사업효과 분석)에 따른 것임.

[2023년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실적]

구분	상반기	추석연휴	하반기
쿠폰발급 및 사용기간	○ 전국편: 6. 2~6.30 ○ 지역편: 5.30~6. 1	9.27~10.15	10.27~11.24
숙박 가능기간	○ 전국편: 6. 2~7.14 ○ 지역편: 5.30~7.14	9.27~10.15	10.27~11.24
참여 OTA 수	○ 전국편: 44개사 34개채널 ○ 지역편: 17개사 19개채널	43개사 33개 채널	49개사 42개 채널
대상지역	○ 전국편: 전국 ○ 지역편: 12개 지자체 (경기, 인천,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강원, 전북, 전남, 대전, 대구, 부산)	전국	전국
해당 숙박상품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인허가된 국내 숙박시설 전체 (관광진흥법 4천여개, 공중위생관리법 3만여개, 농어촌민박 2만6천여개 등 대상)		
지원혜택	○ 전국편 5만원 초과 3만원 할인 ○ 지역편 7만원 초과 5만원 할인	5만원 초과 3만원 할인	5만원 초과 3만원 할인
사용건수	672,260장 (전국편 614,906장, 지역편 57,354장)	315,172장	316,533장
숙박시설 총 지출액	84,972백만원	34,187백만원	36,934백만원

* 자료: 한국관광공사

그런데, 동 사업은 2023년도에 내역사업 ‘국내관광 캠페인’의 내내역사업인 ‘여행가는 달 캠페인’ 중 ‘여행 할인혜택’으로서 4만 5,000명에 대해 3만원씩 지원(13억 5,000만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223]

223) ※2023년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예산 편성내역

사업명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편성액	산출근거
국내관광 역량강화 (4265-309)	국내관광 캠페인	여행가는 달 캠페인	13억 5천만원	여행할인혜택 숙박 3만원*4.5만명

기금변경 등을 통해 당초 계획 4.5만장 대비 28.9배인 130만장을 지원하였음. 이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내수활성화 대책('23.3.29) 일환으로 280억원을 계획변경('23.4.13)한 사실, 추석연휴 기간 숙박할인권을 발급하여 국민 여행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전환하고자 93억원을 계획변경('23.9.21)한 결과임.

[2023년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관련 계획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변경 증액(A)			변경 감액(B)			변경 사유
		세부사업명 (0000-000)	세목	금액	세부사업명 (0000-000)	세목	금액	
4.13	기재부 협의	국내관광 역량강화 (4264-309)	민간 경상 보조 (320-01)	28,0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9705-971)	비통화 금융 예치금 (470-03)	28,000	기획재정부 내수활성화 대책('23.3.29.) 발표에 따른 국내여행 수요 진작
9.21	기재부 협의	국내관광 역량강화 (4264-309)	민간 경상 보조 (320-01)	9,3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9705-971)	비통화 금융 예치금 (470-03)	9,300	기존 숙박할인권 지원사업과 더불어 추석 연휴기간 숙박할인권 추가(30만장) 발급을 통하여 국민 여행부담 완화, 해외여행의 국내 전환 유도를 통한 내수활성화 기여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도의 경우에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 중 '여행 할인혜택'으로 전년도보다 5억원 증액된 계획액 18억 5,000만원(3만원×6.1만명)이 편성되어 있지만,[224] 설민생안정대책 발표('24.1.16)를 통한 설연휴 여행 및 3월

224) ※ 2024년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예산 편성내역

사업명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편성액	산출근거
국내관광 역량강화 (4265-309)	국내관광 캠페인	여행가는 달 캠페인	18억 5천만원	여행할인혜택 숙박 3만원*6.1만명

여행가는 달 활성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24.1.4) 계기 6월 여행가는 달 활성화 등으로 총 107억원을 기금변경하여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의 효과를 고려할 때 내수진작 및 국내관광 활성화라는 기금 계획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매년 기금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은 정부발표 계기 비정기적 사업추진, 추진시마다 다른 숙박할인권 발행물량 차이 등으로 사업 시행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는 물론, 사업 참여사인 OTA 등은 급박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준비부담과 홍보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사업 수혜자인 국민의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떨어질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업계 피해지원과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2020년 추경(290억원)을 통해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 사업에 포함되며 처음 추진되었고, 2021년도에는 418억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2022년도에는 예산 편성 없이 전년도 이월액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도부터는 '국내관광 역량강화' 내 '여행가는 달 캠페인' 사업으로 이관되어 13억 5,000만원만 편성[225]된 바 있음.

225) '여행가는 달 캠페인' 산출근거상 동 사업 예산으로 1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액은 30억원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연도별 집행 및 추진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6월까지
예산	290억 (기금변경)	418억 (본예산)	(이월예산 활용)	403억 (본예산 30억*+ 기금변경 373억)	134억 (본예산 27억**+ 기금변경 107억)
세부사업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4264-330) * 코로나19 관광숙박업계 및 여행업계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신설			국내관광 역량강화(4264-309)	
쿠폰사용 건수	약 52만장	약 78만장	약 110만장	약 130만장	약 45만장

* 2023년의 경우 산출근거상으로는 13억 5,000만원 편성, 부족예산은 내역사업 '여행가는 달' 예산 활용
** 2024년의 경우 산출근거상으로는 18억 5,000만원 편성, 부족예산은 내역사업 '여행가는 달' 예산 활용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3년간 숙박할인권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편성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2021	41,800	-	18,850	60,650	19,681	41,800	1,381	40,419	550	32.4
2022	-	-	40,419	40,419	39,844	-	-	-	575	98.6
2023	37,300		-	37,300	37,192	37,300	37,192	100	8	99.7

*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4264-330)사업으로 편성
** 2023년 계획액 및 집행액은 '여행가는 달 캠페인' 사업에서 집행한 30억원이 제외된 수치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2023년 기준 정부지원금(3만원) 대비 숙박비를 포함한 약 11배(약 39만원)의 여행지출이 발생하는 등 내수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던 점이 검증된 만큼 정기적·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내수진작 효과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집중 추진 등 보다 면밀하게 동 사업을 분석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내수활성화 대책, 민생안정대책 등 이벤트성의 기금계획 변경으로 ‘숙박할인권’을 발행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실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조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관광활성화 기반구축(관광진흥개발기금, 4462-300)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관광활성화 기반구축’은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호텔등급제도 운영, 안전민박 활성화 등 관광숙박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을 관리하며,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사업체의 창업과 발전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의 경우 계획현액 263억 4,000만원 중 230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관광산업 정책개발 및 조사 사업 등 연구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6,200만원, 관광산업통계 기반조성 사업 연구용역 미실시에 따른 1억원,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조성 사업 일부 포기 등에 따른 31억원 등 총 32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26,156	26,156	184	-	-	26,340	23,027 [19,132]	62	3,251	18,586
▪ 관광호텔체인화 기반조성	100	100	-	-	-	100	100 [98]	-	-	70
▪ 관광산업 정책개발 및 조사	295	348	-	-	-	416	355 [355]	40	21	295
▪ 호텔등급제 운영	600	600	-	-	-	600	600 [486]	-	-	650

▪ 관광산업통계 기반조성	500	500	116	-	-	616	516 [351]	-	100	500
▪ 안전민박활성화	877	877	-	-	-	877	877 [875]	-	-	877
▪ 한국관광품질 인증제 운영*	2,890	2,890	-	-	-	2,890	2,890 [2,865]	-	-	1,800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1,560	1,560	-	-	-	1,560	1,560 [1,524]	-	-	1,560
▪ 관광두레 조성	11,951	11,951	-	-	-	11,951	11,951 [11,072]	-	-	11,951
▪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	183	130	-	-	-	130	78 [78]	22	30	183
▪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6,100	6,100	-	-		6,100	3,000 [307]	-	3,100	-
▪ 안전캠핑 기반 조성	-	-	-	-	-	-	-	-	-	700

* 한국관광품질인증제 운영,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은 2024년도부터 세부사업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이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베니키아 체인 호텔의 민간이양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내역사업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은 한국형 비즈니스호텔 체인 브랜드인 "베니키아(Best Night in Korea: BENEKIA)"의 홍보,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현액 1억원 중 98.0%인 9,800만원을 집행하였음.

동 사업은 국내 중소형 호텔을 '베니키아'라는 브랜드로 체인화하여 서비스와 예약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외국계 호텔 체인브랜드에 잠식되고 있는 국내 중소형호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6년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시범사업에 따라 출발하였고, 2007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체인운용본부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2009년에는 예약시스템(Benekia Central Reservation System: BCRS)을 구축하면서 한국관광공사로 사업을 이관하였는 바, 브랜드 홍보와 사업이 안착되면 2011년 민간기업으로 완전 이양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한국관광공사 이관시 체인호텔에 대한 가맹비와 수수료 등을 받지 않음에 따라 수익구조가 마련되지 않았고, 예약시스템(BCRS)도 정착되지 않아 민간이양 계획을 2013년까지로 연장하였음에도 동 기간 내 실행하지 못하였음.

이후 2014년 12월 베니키아호텔 협동조합의 설립[226]으로 당시 56개소인

체인호텔이 2017년 63개소까지 확대되지도 하였지만, 체인호텔의 휴폐업, 탈퇴 등으로 2019년 체인 수는 48개소로 감소하였고, 코로나19를 거치며 중소형 호텔들의 경영이 악화되며 체인 수가 급격히 감소, 2024년 6월말 기준 체인 수는 25개소에 그치고 있음.

[2019~2024년(6월말 기준) 베니키아호텔 체인 현황]

연도	'19	'20	'21	'22.	'23	'24.6월말
체인 수	48	42	32	27	25	25
객실 수	4,294	3,676	2,591	1,967	1,911	1,91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서비스 품질 면에서도 2023년도 베니키아 가맹 호텔 22개소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227] 결과에 따르면 종합점수가 77.2점으로 2022년도 80.0점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동 조사에 따른 브랜드 사용계약 준수 실태를 보면, ①조합비 미납 호텔이 5개소에 달하고 있고,[228] ②호텔 외부에 베니키아 현판을 부착하지 않은 호텔이 7개소, 객실키에 로고를 사용하지 않은 호텔이 8개소 등, 비품 트레이, 샴푸, 비누 포장 등에 로고를 적용하지 않은 호텔이 거의 대부분이었음.

226) 2014년 12월 베니키아호텔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는바, 협동조합이 가맹비와 수수료 등으로 호텔 체인을 자립 운영할 기반을 갖추게 한 다음 완전히 이양한다는 계획이었음.
227) 사업기간: 2023.11.2.~12.19.
사업대상: 베니키아 가맹호텔 22개소, 휴업 2개소(인천 중구 베니키아호텔 바다의별, 베니키아 더 제주리조트) 및 일본 1개소 제외
228) 베니키아 호텔체인 가입 계약 사항에 출자금과 조합비 납부의무가 규정됨.

또한, ③예약시스템(BCRS)으로 예약이 불가능한 호텔이 12개로 예약가능 호텔 10개보다 많았고, 예약가능 호텔의 경우에도 OTA(Online Travel Agency)에 비해 BCRS 판매가격이 최대 36,133원 높아 BCRS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도 BCRS를 통한 예약건수는 235건, 판매금액은 2,900만원에 그치고 있음.[229)]

[BCRS를 통한 베니키아호텔 예약 및 객실판매 현황(2019~2023년)]

연도	회원가입수(신규)	예약(건)	판매객실 수(개)	판매금액(백만원)
2019	1,749	3,394	6,234	469
2020	746	382	1,064	53
2021	494	585	737	72
2022	479	563	1,312	80
2023	309	235	539	29
2024.1-5월	124	88	189	9

* 총 회원가입수: 84,678명(24.6.12 기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은 베니키아호텔의 체인 감소와 품질 저하는 베니키아호텔 협동조합 이사장이 2020년 6월 사퇴하고 2021년 3월 남은 이사진의 임기까지 모두 만료된 이후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면서 2024년 6월말 현재까지 비대위 체제[230)]를 유지함에 따라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웠던 점에 따른 것임. 즉, 조합원이 호텔체인 가입시 계약사항인 조합비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조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음.

229) 베니키아 호텔체인 가입 계약 사항에 BCRS에 호텔 기본정보 및 객실 공급가격 명시, 보유객실 할당, OTA 최저가 객실료와 동등 이하로 객실료 책정 의무가 규정됨. 이외에도 교육, 관광공사에 영업보고, 체인본부에서 운영하는 공동구매 및 협력사업 참여, 총회 참여 등 베니키아 호텔체인 가입 계약의 주요 사항은 거의 모든 호텔이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230) 위원장 1명과 감사 1명으로 운영 중이며, 사무국은 전임 직원 1명만 근무 중임.

이처럼 ‘베니키아’는 외국계 호텔 체인브랜드에 대응한 국내 중소형 관광호텔 체인브랜드로 출범하여 2009년부터 민간이양을 준비해왔지만,[231] 2024년 6월말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이양 시점은 계획되지 않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장기간 부재로 호텔체인 관리와 품질 제고 등의 업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어 브랜드의 자립기반 형성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매년 민간이양을 준비하는 지원 예산만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사업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실집행액	사업내용
2020	300	282	체인호텔 서비스 품질관리 지원 베니키아 브랜드 홍보·마케팅 등
2021	200	196	
2022	150	142	
2023	100	98	
2024(5월말 기준)	70	- (6월 교부 예정)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협동조합이 정상화되어 민간이양하기 전까지는 베니키아 브랜드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서비스 품질관리와 홍보·마케팅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밖에 없고, 협동조합의 정상화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조합과는 브랜드 사용계약 해지 후 브랜드 매각 또는 조합에 협조적인 호텔들과 임시브랜드 사용계약 추진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임.

231) 최초 민간이양 계획시점은 2011년이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베니키아 체인 호텔’의 민간이양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협동조합을 정상화하는 방안 또는 협동조합과의 계약 해지 후 다른 민간기업에 브랜드를 매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의 조속한 사업완료 및 예산비효율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내역사업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은 「관광진흥법」 제48조[232]에 따라 지방 유휴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거나 장기 체류기반을 마련하는 등으로 지방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1년 4월 1차 사업지로 경북 봉화와 전남 해남을 선정한 후,[233] 기존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이후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 조성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폐해 등을 방지하고 공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기존 건축설계 방식과는 다르게 공간 운영 분야와 건축설계 분야에서 함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통한 통합운영을 추진한 바 있음.

그러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2021. 9월)에 따라 컨소시엄 방식은 중앙건설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공고, 선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설계·운영과 시공을 구분하기로 하였고, 설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234]가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

232)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233) 1차 사업지(2021년 선정): 경북 봉화 폐교(소천초등학교 분천분교), 전남 해남 노후시설(우수영유스호스텔)
· 2차 사업지(2022년 사업지): 전북 남원 한옥·민가(옛 명지각 외 2개소), 경남 하동 세트장·한옥호텔('토지'세트장 청송재)

23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235]가 입찰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과는 다르게 설계/숙박기획/시공/운영을 각각 발주하는 방식으로 변경(2021년 12월)하여 사업 초기부터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사업방식이 변경된 후에도 선정 사업지별로 군·관리계획 변경, 총사업비 증액 등의 사유로 설계가 중단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사업지별 사업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면 1차 사업지(경북 봉화, 전남 해남)의 경우 2023년에 조성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2024년 6월말 기준 준공 사업지가 전혀 없는 실정임.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구분	사업지	추진 현황
1차 사업지	경북 봉화	● 사업지 선정('21.4월) ● 설계 제안공모 완료('21.5.29), 공간기획·설계팀 계약('21.6.13.)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서' 제출('21.8.3)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21.10.6) ● 대상건물 구조안전등급 실시결과(안전등급 C) 통지('22.1월) ● 기획·설계 제안공모 공고('22.4.11), ● 공모결과 발표('22.5.27) ● 건축설계 진행 중(계약기간 '22.6.20.~12.30) 군 관리계획 재정비 등으로 설계 중단('22.10.31) ＊ 현, 자연취락지구→ 해제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구분	사업지	추진 현황
		• 시공비 증액(66억→94억, '22.10월) • 군 관리계획 변경('23.10월 설계완료) • 공사 착공('24.5월)
	전남 해남	• 사업지 선정('21.4월) • 설계 제안공모 완료('21.7.27), 공간기획·설계팀 계약('21.9.16.)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서' 제출('21.11.2)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21.12.16) • 건축설계 진행('22.9.16.~'23.4.13.) • 총공사비 증액(당초 76억 대비 115억 필요)에 따른 설계 중단('23.4.12.) • 전라남도 투자 재심사 절차 완료('23.7월) • 공사착공('24.6월)
2차 사업지	전북 남원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프로세스 완료(대상지 선정 전 완료 '21.11.112) • 사업지 선정('22.2월)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개최('22.3.7) • 설계 제안공모 완료('22.6.29), 공간기획·설계팀 계약('22.7.14.) • 건축설계 완료('23.6.30.) • 공사 착공('23.11월)
	경남 하동	• 사업지 선정('22.2월) • 군 부채 과다로 사업포기('22.12.1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경남 하동의 경우 2차 사업지로 선정된 후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항 없이 군 부채 과다로 사업을 포기하여 2022년도 사업비 9억원을 불용하였음.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2월 선정된 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없는 동 사업지의 2차연도 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2023년도 사업비 30억원이 재차 불용되었음. 이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 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에 위반되는 것임.[236]

236)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08.
○ 부지확보, 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편성 연도	보조사업자	예산액 (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실 집행률 (B/A)
							예산 현액	집행액 (B)			
2021	한국관광공사	2,000	2,000	-	2,000	52	2,000	52	1,948	-	2.6
2022	한국관광공사	200	200	1,948	2,148	311	200	105	1,837	-	52.5
	경북 봉화	3,000	3,000	-	3,000	-	3,000	-	3,000	-	0.0
	전남 해남	3,000	3,000	-	3,000	-	3,000	-	3,000	-	0.0
	전북 남원	900	900	-	900	330	900	330	570	-	36.7
	경남 하동	900	900	-	900	-	900	-	-	900	0.0
2023	한국관광공사	100	-	1,837	1,837	1,659	-	-	-	178	0.0
	경북 봉화	-	-	3,000	3,000	41	-	-	2,959		0.0
	전남 해남	-	-	3,000	3,000	-	-	-	3,000		0.0
	전북 남원	3,000	3,000	570	3,570	546	3,000	307	3,027		10.2
	경남 하동*	3,000	-	-	-	-	-	-	-	-	0.0

* 경남 하동은 2023년도 2차연도 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포기로 편성된 사업비를 교부하지 못한 채 전액 불용하였음.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결과적으로 동 사업은 ①사업방식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아 사업 초기부터 크게 지연되었고, ②사업지별 사전행정절차 추진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및 실집행 부진, ③일부 사업지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행정상 낭비 등으로, 2022년도 2차 사업지 선정 이후 신규 사업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에 그치고 말았음.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1월에 공사 착공한 전북 남원 소재 시설의 경우 2024년부터 호텔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북

○ 전년도 집행실적, 지자체 내 전년도 이월액, 사업 추진단계, 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가 당해 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

-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은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도 조사·설계 및 보상·공사 등의 주요단계를 나누어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소요만 편성

봉화와 전남 해남의 경우 2025년부터 일반숙박업 등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의 운영계획]

구분	건축현황	운영계획
경북 봉화	• 부지면적 9,840㎡, • 건축면적 1,059.17㎡, • 연면적 1,712.02㎡ - 본관(2층/8실), 신관(2층/7실)	일반숙박업 운영('25.4월~)
전남 해남	• 부지면적 16,532.19㎡, • 건축면적 1,822㎡, • 연면적 4,441㎡ - 지하1층, 지상 4층/ 32실	호텔업 운영('25.~) ※ 2024. 6월 공사 착공
전북 남원	• 부지면적 2,959㎡, • 건축면적 1,041.39㎡, • 연면적 916,87㎡(1층/ 11실)	호텔업 운영('24.9월~)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유휴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탈바꿈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침체된 지역관광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동 사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사업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사업지별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으로 예산·행정상 비효율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5)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관광진흥개발기금, 4463-306)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은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강화, 의료관광 수용 요건 개선 및 경쟁력 제고, 한국형 웰니스관광 기반 조성 및 상품화 지원과 의료·웰니스관광 융복합 클러스트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임.

2023회계연도의 경우 계획현액 132억 3,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13,231	13,231	-	-	-	13,231	13,231 [11,858]	-	-	-
▪ 의료관광 육성	5,051	5,051	-	-	-	5,051	5,051 [4,807]	-	-	9,520*
▪ 웰니스관광 육성	5,180	5,180	-	-	-	5,180	5,180 [4,991]	-	-	
▪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3,000	3,000	-	-	-	3,000	3,000 [2,055]	-	-	3,000**

* 2024년도부터 ‘의료관광 육성’, ‘웰니스관광 육성’은 세부사업 ‘융합관광콘텐츠 활성화’(4463-316) 내 내역사업 ‘치유관광산업 육성’으로 이관

** 2024년도부터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4462-301) 세부사업으로 회계 변경 및 이관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방한 의료관광 수요를 웰니스관광 수요로 연계하는 등 방한 웰니스관광객 유치 활성화방안 모색 필요>

내역사업 '웰니스관광 육성'은 추천 웰니스관광지 선정 등을 통해 웰니스관광지의 경쟁력 강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한국 웰니스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통합 홍보 및 웰니스 방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웰니스관광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운동(Fitness)의 합성어로 '웰니스관광'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활동을 의미함.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의 조사[237]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약 6,507억 달러로[238], 2027년까지 연 평균 16.6% 성장하여 1조 3,9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2019년 7,204억 달러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506달러(-51.3%)로 감소하였지만, 2021년 4,668달러, 2022년 6,507달러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성장률 36.2%로 시장 규모를 회복하고 있음.

동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전세계 17위에 해당하는 54억 달러 규모임.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237) Global Wellness Institute, 「The Global Wellness Economy Monitor 2023」
238) 원화 903조 415억원[2024. 7. 22. 환율(1USD=1,387,80원) 기준]

83억 달러에서 2020년 44억 달러로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가 대폭 감소(-47.2%)한 바 있었음. 이후 2021년 50억 달러, 2022년 54억 달러로 시장 규모를 회복하고는 있지만, 연평균 성장률이 11.3%로써 전세계 시장 연평균 성장률 36.2%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동 조사에서 2022년 기준 웰니스관광객의 해외여행 경비가 평균 1,764달러로 일반 해외여행 1,251달러보다 41%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바, 웰니스관광 시장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웰니스관광 시장 성장률이 전세계 평균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추진 중인 '웰니스관광 육성' 사업의 체계적인 점검과 보완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웰니스관광 육성' 사업은 한국관광공사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2023회계연도의 경우 계획현액 51억 8,000만원을 한국관광공사에 전액 교부하여 이 중 49억 9,100만원(96.4%)을 실집행하였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①추천 웰니스관광지 지정 등을 통한 웰니스관광 기반조성, ②추천 웰니스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홍보 및 상품화 지원, ③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선정 및 치유관광 페스타 개최, ④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 대상 치유와 일상회복을 위한 웰니스관광 체험 등임.

[2023년도 웰니스관광 육성사업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웰니스관광 기반조성	• 추천 웰니스관광지 선정을 통한 전국 우수 웰니스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2023년 총 9개소 신규 지정('23. 12월 기준 총 64개소) • 웰니스관광 운영 협의체: 추천 웰니스관광지 및 지자체 관계자 등과 협업 네트워킹('23. 4월, 9월, 11월 총 3회) • 웰니스관광 교육 운영: 총 129명 교육 참여 • 웰니스관광 종합정보체계 구축 기초조사 등
홍보 및 상품화 지원	• 추천 웰니스관광지 홍보물 제작·배포: 책자 5,600부, 지도 8,000부 • 국내외 주요 박람회 참가를 통한 홍보마케팅: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국내 2회, 국제 웰니스 투어리즘 엑스포 등 국외 2회 •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웰니스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 지원 • 여행업자·언론인 초청 팸투어 연계 방한 웰니스관광 홍보 및 상품개발 지원 등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선정 및 육성	• 지역 웰니스 관광자원 홍보·상품화 및 '치유관광 페스타' 개최: '강원도 정선군' 선정 • 치유관광 페스타: '23. 10~11월, 개막식 약 3천명(외국인 100명), 할인 캠페인(유료상품 구매 9,247건, 관광소비효과 약 25.6억), 55개 웰니스 상품 개발(방한객 4,201명 모객) 등
대국민 치유와 일상회복 지원 사업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보건소 소속 근무자 4,200여명(동반자 1인 포함 8,400여명) 대상 추천 웰니스관광지 체험 지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작성

2023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추천 웰니스관광지' 9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총 64개소의 웰니스관광지를 중심으로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로 강원도 정선을 선정하여 육성하였음.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에서 개최한 '치유관광 페스타'는 국내외 관광객 약 24만명이 참여하였으며, 방한관광객 4,201명을 직접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연도별 웰니스관광객 현황을 보면, 2023년의 경우 2,555만 2,384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1,084만 5,708명보다 약 2.4배 이상 증가하였음.

[연도별 의료관광객·웰니스관광객 수(2017～2023)]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의료관광객 수 (외래관광객)	321,574	378,967	497,464	117,069	145,842	248,110	605,768
웰니스관광객 수	10,421,496	9,893,321	10,845,708	4,178,845	4,703,823	9,804,406	25,552,384
국내관광객	10,313,900	9,766,343	10,627,141	4,142,083	4,698,141	9,779,092	25,445,673
외래관광객	107,596	126,978	218,567	36,762	5,682	25,314	106,71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2023년도 웰니스관광객 대부분은 국내관광객(2,544만 5,673명, 99.6%)으로, 외래관광객은 10만 6,711명에 그치고 있음.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21만 8,567명) 대비 51.2% 감소한 수준으로, 2017년 10만 7,596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치유관광 페스타' 개최 등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국내관광객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외래관광객의 경우 오히려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다는 점,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웰니스관광 시장 성장률이 전세계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웰니스관광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방한 웰니스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세부사업 내 '의료관광 육성' 사업으로 해외마케팅, 한국의료관광대전, 의료관광 안내센터(서울, 부산, 인천) 운영, 통합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추진 중임.

2023년 유치한 방한 의료관광객은 60만 5,768명임. 방한 웰니스관광객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비 51.2% 감소한 데 비해 의료관광객은 2019년 49만 7,464명 대비 21.8% 증가하였는 바, 방한 의료관광객(약 49만명)이 방한 웰니스관광객(약 11만명)으로 연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즉, '외국인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병행한다는 점에서,[239] '웰니스'의 범주에 속하는 스파(Spas), 뷰티(Personal care & Beauty), 한방(Traditional & Complementary Medicine),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건강식·다이어트(Healthy Eating, Nutrition, Weight Loss) 등[240]을 활용한 관광도 선호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수요로는 이어지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의료웰니스관광대전' 등 의료, 웰니스 테마 중대형 해외 B2B(Business to Business) & B2C(Business to Consumer) 행사 동시 개최 등으로 고부가가치 방한관광객의 유치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함.

그러나 해외 B2B & B2C 행사만으로 의료관광 수요가 웰니스관광 수요로 전환·연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사업에 웰니스 관광을 융합하여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등과의 협업으로 의료관광과 웰니스관광 연계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며,[241] 의료관광 안내

239)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40)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의 분류에 따른 것임.

241) 현재 강화도 성형외과+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 스파 체험 결합 상품, 인천성모병원 건강검진+약석원 체험, 명동 피부과 스킨케어+K-뷰티(헤어스파/스타일링 등) 체험 등의 의료와 웰니스를 융합한 체험상품을 운영 중임.

센터 방문객 대상 웰니스관광 상품 안내 및 홍보 등 웰니스관광 성장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한편, 2023년도부터는 강원, 대구·경북, 부산, 인천, 전북, 충북 이상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의료·웰니스융복합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있음. 동 클러스터는 의료와 웰니스를 융복합한 관광자원 발굴 및 기반 구축, 해외 마케팅 등으로 세계적 수준의 의료·웰니스관광 목적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의료·웰니스가 융복합된 관광 기반 조성보다는 클러스터 내 신규 웰니스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및 홍보·마케팅, 웰니스관광과 지역 관광의 연계, 웰니스 종사 인력 양성·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다음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동 클러스터의 2023년도 중간평가 결과 1위 지역인 인천의 사례를 보면, 의료기관과 웰니스관광지 간 협업을 통한 환자 맞춤형 건강간편식 신규 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의료·웰니스 융복합 관광 기반 구축으로 의료관광 수요와 웰니스관광 수요가 외래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는바, 이러한 방식을 참고하여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둘째, 웰니스 관광자원의 개발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외에도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에서도 추진 중임. 예를 들면 해수부의 '해양치유자원', 산림청의 '치유의 숲', 농업진흥청의 '치유농업' 등이 있으며, 각 부처는 개별법에서 '웰니스 관광자원'을 '치유자원' 등으로 정의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중임.

[부처별 웰니스 관광자원 개발 현황]

부처명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근거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추진 사업	● 해양치유센터 : 지역 해양자원(해수, 머드, 해조류 등)을 활용, 환자의 회복과 일반인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객 유치	● 치유의 숲 : 면역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 등 운영	●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 치유농장, 거점별 치유농업센터,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운영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정책 소관 부처로서 ‘웰니스관광 육성’ 사업 추진에 있어 타 부처 소관 ‘웰니스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의료관광 육성’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광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의료관광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의료관광 안내센터(인천)를 공동 운영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마케팅과 치료 후 한국관광 연계를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및 한국 내 치료와 정부 간 협력을 담당하는 등 의료관광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간 의료관광 협조체계]

구 분	세부내용
협의체 (공동)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관광의 융복합 자원 및 상품개발, 의료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등 논의
사업 (공동)	• 인천공항 의료관광센터 공동운영('18년 12월부터): 의료관광 정보제공·예약, 홍보마케팅 및 상담서비스, 의료불만·분쟁 상담 등 • 의료관광유치업체 협력 집합교육 등 실시
입국전 (분담·협력)	•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유치업체·병원 등 해외마케팅, 의료관광상품 개발·유치, 온라인 홍보 등 • (보건복지부) ICT 기반 비대면 사전상담(입국 전 환자상황 파악, 현지의사 협진)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입국후 (분담·협력)	• (보건복지부) 치료지원, 의료관광객 진료분화 다양화, 병원 등 유치기관 품질관리(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불법 유치행위 근절 등) • (문화체육관광부) 치료·진료후 K-컬처 등 융복합 관광체험 제공(유치병원·업체 치료후 1-day 투어프로그램 운영 등)
귀국후 (분담·협력)	• (보건복지부) 비대면 사후관리(현지의사 협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작성

'웰니스관광'도 '의료관광'의 사례처럼 개념과 범주,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242] '웰니스 관광자원'을 소관하는 부처들과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각 부처가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자원 관리 등은 소관 부처에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도록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42)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는 의료관광의 정의,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웰니스관광’ 육성과 방한 웰니스관광객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방한 의료관광 수요를 웰니스관광 수요로 연계하는 방안, 웰니스 관광자원을 소관하는 타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일반회계, 4631-300)

<사업개요 및 결산내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경비, 사행산업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비,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업임.

2023회계연도 계획현액 40억 8,200만원 중 35억 4,300만원을 교부하였고, 이 중 전액을 실제로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9,100만원, 불용액 4억 9,900만원이 발생하였음.

[2023회계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당초	수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4,031	4,031	51	-	-	4,082	3,543 [3,543]	91	448	4,398
▪ 조사연구 및 건전화 홍보	1,237	1,237	51	-	-	1,288	1,172 [1,172]	91	25	1,530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	619	619	-	-	-	619	514 [514]	-	105	619
▪ 위원회 운영 경비	2,175	2,175	-	-	-	2,175	1,857 [1,857]	-	318	2,249

*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에서 외국인 카지노 제외 검토 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2007년 9월 17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설치되었음. 사감위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사감위는 사행산업 총량 관리와 현장지도·감독,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징수,[243] 불법사행산업 단속,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 제공 등 사행산업 건전화 및 육성과 불법사행산업 근절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사행산업 총량 관리를 위해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매출액을 조정하는 ‘매출총량제’와 영업장 수를 관리하는 ‘영업장 수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 중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유효하도록 법령상 설정한 사행산업 규모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 개념임.[244]

---

243)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예방치유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외국인 전용 카지노)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44)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 11. (생 략)

사행산업 전체 매출총량은 매년 사감위 의결로 당해연도 예상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목표비율에 따라 설정하고, 7개 업종(내·외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별 매출총량은 전년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대비 업종별 순매출액 비율, 도박중독 유병률, 건전화 평가결과 및 기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분배하고 있음.

매출총량제는 전체 매출총량 및 업종별 매출총량의 설정 이후 해당 총량을 준수하도록 분기별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것임. 분기별 점검 시 해당 분기의 이행실적이 이행계획을 초과할 경우 차기 분기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정·권고[245]하거나, 연간 총량을 초과한 경우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총량기준

2.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기준

가.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이용자의 도박문제 수준 중 비문제성군·저위험군을 제외한 중위험군 및 문제성군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하 "도박중독 유병률(有病率)"이라 한다]이 일반인의 도박문제 수준 중 비문제성군을 제외한 저위험군, 중위험군 및 문제성군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보다 낮은 사행산업 업종이고,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을 조정하기 어려운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이 있을 것

나.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은 다음의 사항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해당 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해당 연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목표 비율

2) 전년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중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구성 비율. 다만, 전년도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을 초과한 사행산업 업종의 경우 초과한 금액 전부를 전년도 업종별 순매출액에서 감액하여 구성 비율을 산정한다.

3)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 도박중독 기준 유병률을 30%로 하여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의 과부족을 천분위로 환산한 값을 더하거나 뺌

4)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건전화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 및 최하위 등급에 대하여 각각 7%를 더하거나 빼고, 차상위 등급 및 차하위 등급에 대하여 각각 4%를 더하거나 뺌

5) 삭제

6) 그 밖에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45) 제17조(협의·조정 또는 권고 등) ①위원회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이 필요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적용 또는 조정

건전화 평가[246] 등을 통한 차년도 매출총량 설정 과정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만큼 감액하여 업종별 순매출액 구성 비율을 산정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 시 감면 혜택을 배제하는 등 여러 매출총량 이행수단을 통해 업종별 총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 규모가 줄어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제외하면 2009년 매출총량제 실시 이후 2023년까지 매번 매출총량을 넘는 이행실적(매출규모)을 기록함.

[2023년도 업종별 매출총량]

(단위: 억원)

구분	내국인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합계
매출총량	15,267	12,336	19,723	5,122	1,899	35,267	24,516	90	114,220

*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및 제5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246) 업종별 건전화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사회적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 설정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시 반영하도록 함. 이 때, 매출총량 준수율, 건전화 전략 실행도, 전자카드 이용, 온라인 발매 건전이용, 과몰입 완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평가함.

[사행산업별 매출총량 대비 이행실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내국인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소싸움	합계
'09	매출총량	10,579	7,095	19,611	6,280	1,866	11,195	6,760	-	63,386
	이행실적	11,538	9,196	19,564	6,222	2,006	10,946	7,785	-	67,257
'10	매출총량	11,009	8,341	20,759	6,621	1,961	13,106	7,087	-	68,884
	이행실적	12,534	10,056	20,354	6,832	1,818	12,502	8,160	-	72,256
'11	매출총량	11,501	8,150	21,707	6,938	2,065	13,895	7,675	-	71,931
	이행실적	11,857	11,256	20,907	6,996	2,053	15,067	8,322	5	76,463
'12	매출총량	13,180	8,576	23,555	7,674	2,169	14,202	11,631	-	80,987
	이행실적	12,092	12,510	21,042	6,951	2,020	15,619	12,049	32	82,315
'13	매출총량	12,613	8,900	21,707	7,656	2,197	16,247	13,054	55	82,429
	이행실적	12,790	13,685	20,681	6,428	1,934	15,938	12,580	55	84,091
'14	매출총량	13,199	8,871	21,387	6,685	2,027	16,716	13,198	56	82,139
	이행실적	14,220	13,772	20,526	6,161	1,901	16,163	13,728	3	86,474
'15	매출총량	13,945	9,152	21,703	6,815	2,094	17,237	13,737	57	84,740
	이행실적	15,604	12,433	20,767	6,359	1,879	17,307	13,722	50	88,121
'16	매출총량	14,409	9,465	21,637	6,660	1,980	18,747	14,696	47	87,641
	이행실적	16,277	12,757	20,795	6,386	1,926	19,082	16,050	84	93,357
'17	매출총량	14,421	9,915	21,951	6,754	2,049	20,810	15,824	84	91,808
	이행실적	15,230	12,072	20,935	6,080	1,778	20,403	15,777	85	92,360
'18	매출총량	14,857	10,561	22,695	6,608	1,942	23,510	17,528	84	97,785
	이행실적	14,001	16,253	20,216	5,737	1,733	21,469	17,241	76	96,726
'19	매출총량	15,584	10,840	22,171	6,299	1,966	24,210	19,221	82	100,373
	이행실적	14,816	14,489	19,724	5,130	1,674	23,525	19,066	74	98,498
'20	매출총량	15,815	10,924	20,745	5,401	1,821	26,919	20,986	77	102,688
	이행실적	4,435	5,978	2,919	982	190	26,159	18,467	7	59,137
'21	매출총량	16,115	11,059	19,489	4,769	1,693	29,511	22,362	72	105,070
	이행실적	7,750	4,050	2,716	1,060	422	28,719	21,295	64	66,076
'22	매출총량	17,233	11,824	19,770	4,904	1,953	31,423	24,046	84	111,237
	이행실적	12,235	7,145	17,146	4,717	1,734	31,134	21,919	83	96,113
'23	매출총량	15,267	12,336	19,723	5,122	1,899	35,267	24,516	90	114,220
	이행실적	13,202	14,070	17,422	4,589	1,819	32,612	22,312	76	106,102

* 주: 순매출액=총매출액-환급금 /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총량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은 매출총량의 예외임(「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17조제4항).

*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는 사행산업 총량제가 2009년 도입 직전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CPGI 기준 9.5%)이 주요국 대비 3~4배 수준이라는 점, 우리나라 이용객의 참여 빈도와 이용시간이 OECD 비교 대상국 대비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도입된바[247],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2011년부터 매년 매출총량 비율 고정(전체 매출총량의 10.8%), 건전화 평가제도(2011년~)에 미포함, 중독예방치유부담금(2013년~) 미부과 등 관리·감독대상에서 제외되어[248] 매출총량제를 준수할 유인이 적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매년 매출총량을 초과하는 이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매출총량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함.

따라서 사감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매출총량제에서 제외하고 해당 매출총량분을 타 업종으로 재조정하는 등 매출총량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47) 「2020~2022 사행산업 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3.12., p135.
248) 현재 내국인 출입 여부만 관리 중